



■ 정책보고서 2013-65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유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이현주 · 신윤정 · 신현웅 · 정경희 · 이선우 · 장영미 · 장지연 · 홍경준 · 유진영

【책임연구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공저)

【공동연구진】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영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차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13. 08. 13.)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발간사 <<

정보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평가와 기획에서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반이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자료원을 기반으로 하여 구축된 거대한 정보의 창고이다.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방대한 양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만 아직 이 자료에 대한 활발한 활용과 공유는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가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쉽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 있어 본 연구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와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정책기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가 정책의 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와 통계 생산에 활용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보가 정책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행정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하려면 정교한 설계와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정보의 입력 및 관리 수준, 공유를 위한 인프라의 마련 등 검토하여야 할 이슈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동향과 정책 동향을 기초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중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선정하고 동 정보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과제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가 향후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으로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향후 사회정책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리 원의 이현주 연구위원의 주관 하에 신윤정 연구위원, 신현용 연구위원, 정경희 연구위원이 참여하였고, 외부참여 연구진으로 인제대학교 이선우 교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장영미 박사,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지연 박사, 성균관대학교 홍경준 교수와 함께 본 원의 유진영 전문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학계 여러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특별히 연구과정 중 수많은 자료제공 요청과 끊임없는 질문에

흔쾌히 응해주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손승식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4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	5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기대효과	54
제3절 연구의 방법	56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요	59
제3장 보유정보 수요분석1: 기초보장 및 근로지원정책 영역	69
제1절 기초보장 분야 정보수요 분석	71
제2절 근로 및 자활 분야 정보수요 분석	104
제3절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분야 정보수요 분석	119
제4장 보유정보 수요분석2: 취약인구집단 지원정책 영역	139
제1절 아동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141
제2절 노인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168
제3절 장애인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189
제5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유정보 수요분석 종합	221
제1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 활용 현황 분석	223
제2절 정보 수요 분석 결과 종합	232
제3절 수요분석의 함의와 이슈	241

제6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243
제1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활용 현황 및 개선점	245
제2절 공공데이터 공개정책 및 사례	247
제3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활용 제고 방안	276
제7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 제공을 위한 과제	289
제1절 보유 정보 제공 방향과 단계의 구성	291
제2절 보유 정보 제공을 위한 과제의 정리	298
참고문헌	301
부록	315

표 목차

〈표2-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요 정책 영역	61
〈표2-2〉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복지정보통계시스템 통계자료원(DB분석)	62
〈표2-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M의 보유 정보 구성	67
〈표3-1〉 주제영역-주체의 필수정보 목록	74
〈표3-2〉 주제영역-신청의 필수정보 목록	76
〈표3-3〉 주제영역-수급자의 필수정보 목록	77
〈표3-4〉 주제영역-지급의 필수정보 목록	80
〈표3-5〉 주제영역-사후관리의 필수정보 목록	82
〈표3-6〉 주제영역-긴급복지의 필수정보 목록	83
〈표3-7〉 주제영역-주체의 선택정보 목록	85
〈표3-8〉 주제영역-신청의 선택정보 목록	86
〈표3-9〉 주제영역-수급자의 선택정보 목록	87
〈표3-10〉 주제영역-지급의 선택정보 목록	88
〈표3-11〉 주제영역-사후관리/긴급복지의 선택정보 목록	89
〈표3-12〉 주제영역-주체의 부가정보 목록	90
〈표3-13〉 주제영역-신청의 부가정보 목록	91
〈표3-14〉 주제영역-수급자의 부가정보 목록	92
〈표3-15〉 주제영역-지급의 부가정보 목록	94
〈표3-16〉 주제영역-사후관리의 부가정보 목록	95
〈표3-17〉 주제영역-긴급복지의 부가정보 목록	95
〈표3-1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통계의 필수통계 목록	96
〈표3-1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성의 필수통계 목록	97
〈표3-20〉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특성의 필수통계 목록	97
〈표3-21〉 기초생활보장- 급여통계의 필수통계 목록	98
〈표3-22〉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의 필수통계 목록	98
〈표3-23〉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필수통계 목록	98
〈표3-24〉 기초생활보장- 신청, 탈락 통계의 필수통계 목록	99
〈표3-25〉 기초생활보장- 정기통계의 필수통계 목록	99
〈표3-26〉 자활사업- 대상자의 필수통계 목록	100
〈표3-27〉 자활사업- 참여자의 필수통계 목록	100

〈표3-28〉 자활사업- 급여의 필수통계 목록	100
〈표3-2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성의 선택통계 목록	101
〈표3-30〉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특성의 선택통계 목록	101
〈표3-31〉 기초생활보장- 급여통계의 선택통계 목록	102
〈표3-32〉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의 선택통계 목록	102
〈표3-33〉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선택통계 목록	102
〈표3-34〉 기초생활보장- 신청, 탈락 통계의 선택통계 목록	103
〈표3-35〉 기초생활보장- 정기통계의 선택통계 목록	103
〈표3-36〉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설문 문항	106
〈표3-37〉 자활사업 참여현황 데이터(월별) 세부 항목 제안	110
〈표3-38〉 자활사업 대상자 및 참여자 개인 데이터의 세부 항목 제안	110
〈표3-39〉 가구 데이터의 세부 항목 제안	111
〈표3-40〉 자활 및 근로 지원정책 영역 연구의 정보 수요 분석결과	111
〈표3-41〉 자활사업 관련 정형통계	117
〈표3-42〉 데이터 구성 방식, 주기 및 주요 내용 요약	119
〈표3-43〉 의료이용 관련 연구 등에 사용된 변수 들 예시	121
〈표3-44〉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자 평가지표 예시	122
〈표3-45〉 공통 영역의 주요 의료급여정보	125
〈표3-46〉 주체 영역의 주요 의료급여정보	126
〈표3-47〉 신청 영역의 주요 의료급여정보	127
〈표3-48〉 수급자 영역의 주요 의료급여정보	129
〈표3-49〉 수급자 영역의 주요 의료급여정보	130
〈표3-50〉 복지대상자 영역의 통계자료	132
〈표3-51〉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통계자료	133
〈표3-52〉 장애인복지 영역의 통계자료	134
〈표3-53〉 시설/법인 영역의 통계자료	134
〈표3-54〉 자활 영역의 통계자료	135
〈표3-55〉 의료급여 영역의 통계자료	136
〈표4-1〉 아동 분야 주요 정책 내용 및 관련 정부 통계 자료	142
〈표4-2〉 보육 분야 주요 정책 내용 및 관련 정부 통계 자료	145
〈표4-3〉 한부모 가족 분야 주요 정책 내용 및 관련 정부 통계 자료	149

〈표4-4〉 주체 영역의 주요 아동복지 정보	155
〈표4-5〉 신청 영역의 주요 아동복지 정보	156
〈표4-6〉 지급 영역의 주요 아동복지 정보	157
〈표4-7〉 시설 영역의 주요 아동복지 정보	158
〈표4-8〉 아동 영역의 주요 아동복지 정보	159
〈표4-9〉 아동복지 영역의 통계자료	166
〈표4-10〉 노인을 보는 관점별 연구주제	169
〈표4-11〉 국제적 노년 연구 과제 대비 국내 노년학 연구 현황	170
〈표4-12〉 한국 노인의 삶의 질 대표지표	175
〈표4-13〉 공통 및 주체 영역의 주요 노인복지정보	179
〈표4-14〉 신청 영역의 주요 노인복지정보	180
〈표4-15〉 수급자 영역의 주요 노인복지정보	181
〈표4-16〉 지급 영역의 주요 노인복지정보	182
〈표4-17〉 정형통계상의 주요 노인복지정보	183
〈표4-18〉 시설 영역의 주요 노인복지정보	183
〈표4-19〉 바우처 영역의 주요 노인복지정보	184
〈표4-20〉 노인복지 분야 통계생산을 위한 정보 수요 분석 결과	185
〈표4-21〉 공통 영역의 주요 장애인복지정보	203
〈표4-22〉 신청 영역의 주요 장애인복지정보	204
〈표4-23〉 수급자 영역의 주요 장애인복지정보	205
〈표4-24〉 지급 영역의 주요 장애인복지정보	205
〈표4-25〉 시설 영역의 주요 장애인복지정보	207
〈표4-26〉 장애인 영역의 주요 장애인복지정보	208
〈표4-27〉 바우처 영역의 주요 장애인복지정보	209
〈표4-28〉 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장애인복지 통계	211
〈표4-29〉 장애인복지 분야의 주요 통계: 장애등록	212
〈표4-30〉 장애인복지 분야의 주요 통계: 장애급여	214
〈표4-31〉 장애인복지 분야의 주요 통계: 장애인 자녀교육비	215
〈표4-32〉 시설 법인 분야의 주요 장애인복지 통계	215
〈표4-33〉 상담사례와 통합업무 분야의 주요 장애인복지 통계	217
〈표5-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 이용현황	224

〈표5-2〉 DW 외부 요청통계 현황(2013년)	231
〈표5-3〉 정형통계 중 통계생산 수요가 높은 정보	235
〈표6-1〉 미국의 오픈데이터 정책 구현을 위한 주요 원칙	250
〈표6-2〉 영국의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 주요내용	252
〈표6-3〉 EU 오픈데이터 전략(ODS)의 주요내용('11년 12월)	254
〈표6-4〉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	256
〈표6-5〉 공공데이터 개방 분류체계	257
〈표6-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59
〈표6-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 별 정보제공 범위	277
〈표6-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 관리 포털의 주요기능	281
〈표6-9〉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285
〈표6-10〉 통계청의 원시자료 제공 절차	286
〈표6-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절차	287
〈표 7-1〉 단계별 원시자료 제공 방식	297
〈부표1〉 원자료 구성을 위한 정책분야별 전문가 추천 항목	317

그림 목차

[그림4-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보완계획	177
[그림 6-1]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체계	258
[그림 6-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통계 제공 방식	262
[그림 6-3] 통계청 원시자료 제공방식	264
[그림 6-4] 통계청 원시자료 취득 방법	265
[그림 6-5] 통계청의 통계시각화 콘텐츠	267
[그림 6-6] 통계청 통계자료설명 서비스 화면	268
[그림 6-7]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이용절차	270
[그림 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제공 절차	274
[그림 6-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개념도	280
[그림 6-10] 원시자료 공개수준에 따른 제공 정보	282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으나, 보유 정보 활용은 미흡한 수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 수행을 위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자료원을 기반으로 구성된 정보의 창고
-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된 이후 축적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복지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보통계시스템(DW)을 구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17개 부처 복지사업(292개)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연계하여 업무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 지원하고 복지사업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와 같은 공공행정자료는 정책의 개발과 평가, 그리고 기획을 위한 각종 연구에서 강한 이점을 가진.

- 공공행정자료의 이점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체 인구에 대한 자료를 갖추게 되고, 표본 편이 등이 없고 정확성이 높으며, 발생빈도가 낮은 문제나 연구하기 어려운 집단에 대하여 연구가 가능하도록 함
 - 지역단위의 분석도 가능해지며 종단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제공함. 한편 회기의 문제가 거의 없는 정확한 자료임.
 -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social desirability bias를 없앨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수집이기에 신뢰도가 높음

□ 행정자료 이용의 비활성화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자면 각종 급여의 수급 현황 등 보유 정보가 연구기관 등 외부에 제공되지 않아 정책 효과분석 등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를 구축하여 통계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업무 관련자 외에는 접근이 차단되어 외부에서 통계적 활용이 곤란하였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연구 활용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수립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정보공유·공개,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정책기조에 따라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정책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도록 하고,
 - 다양한 연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DW 개방 방안 마련 필요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통계, 재정추계 등 업무 신설에 따른 다양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에 대한 활용 기반 마련

2. 연구내용과 기대효과

가. 연구의 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에 대한 수요 파악
 - 연구 및 정책 수요를 고려할 때 생산해야 할 정보의 유형 및 세부 정보항목 도출
 - 기존의 연구 방법을 고려한 적절한 정보의 구성 방식 검토. 예를 들어 종단 자료 구성의 필요성 검토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요 정보의 활용 가능성 분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수요 분석
 - * 연구 기관 등 외부기관 수요 정보 현황 파악 및 DW 생산 가능 여부 분석
 - 활용도가 높은 정보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구성과 입

력의 수준에 대한 분석

- 자주 활용되는 분석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의 구성방식과 추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보의 구성과 외부 공유 방안 마련

- 보유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데이터 세트의 구축방안 마련
-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 정보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의 연구를 위하여 공유할 원자료 구성과 DW 구성안을 마련
- 자료의 생산가능성과 적정 공유주기에 대한 검토
- 정보 공개 관련 법령 검토와 정보 제공의 원칙과 절차 마련

○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

-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여타의 조건이나 방식에 대하여 검토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정보 공개 방식 등 검토
- 접근성과 안정성이 높은 원자료 활용 방식에 대한 검토
- DW의 경우 기존 이용자의 활용에서 접근성 제고 방안 검토
- 외부에서도 DW 통계를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 효율적 통계추출이 가능한 DW 구성과 제공방식에 대한 검토

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첫째, 정책 설계에 필요한 통계 생산 및 원시자료의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정책의 합리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 정책은 그 기획단계를 비롯하여 운영과정의 합리화,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全) 단계에서 기초자료를 필요로 함.
- 둘째, 정보 이용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정책에 대한 신뢰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를 제고

-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향후 제공과정에서 기초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임.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과 관련된 후속 연구 및 제반 준비과정에서 본 연구가 참고가 될 수 있음.

3. 연구방법

○ 사회복지 분야 연구동향 분석

-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등 시스템 구축 관련 선행연구 및 지식정보 발굴 관련 기존 연구 검토 및 고찰
- 사회복지분야 연구 영역별 주요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로 활용되는 정보와 연구 방법에 대하여 파악

○ 현황 분석

- 사회보장 관련 각종 보고통계 현황 파악
-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 항목, 실태, DW 현황 등 시스템 현황 분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이용 현황 자료 분석

○ FGI, 자문회의

-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기관, 전문가, 실무담당자, 정책결정권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 및 통계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 방법, 정보항목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위하여 FGI를 실시
 - 기존의 DW 이용 확대 시 이용이 예상되는 관계자 대상 설문, 그리고 각 정책분야 연구자 대상 의견조사
 - 예를 들어 기존의 DW 이용자를 대상으로 FGI 실시. DW 이용 빈도, 주 이용 정보, 이용에서 어려운 점, 향후 추가를 희망하는 정보 등에 대한 문항을 포괄
- 법적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전문적 의견 수렴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요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 개요

□ 보건복지 관련 전체 DW 운영

- 보건복지 관련 전체 DW의 운영은 복지정보통계시스템인 행복e음 DW와 보육정책 DW,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실적통계자동화시스템, 그리고 전자바우처통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요 정보가 포괄하는 정책 영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보들이 포괄하는 정책 영역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아동·청소년, 기초노령, 보육, 의료급여 등 14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요 정보 구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는 아래와 같은 영역으로 구성된 자료 군으로 이해
- 공통, 주체, 신청, 조사결정, 소득재산, 수급자, 지급, 사후관리, 시설, 자활 지원, 긴급복지지원, 상담사례, 장애인, 아동, 바우처, 결혼중개업, 정부양곡지원이 그 자료군의 영역임.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마켓(Data Market)의 구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DM은 정보의 이용방식에 따라 정형통계, 비정형통계로 구분됨.
- 정형통계 중 일부는 정기통계로 기 현황자료 등에서 정제된 상태로 집계되었던 자료로 가장 신뢰도, 충실도가 높은 자료임.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Data Warehouse)의 이용 현황

○ DM 이용 현황 개요

- DW 사용자는 행복e음 사용자로 등록된 전 사용자로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시군구 공무원 중 행복e음 사용자임.
- 중앙부처 이용자는 전체 31명 수준으로 한정된 상태. 이 중 보건복지부가 27개과임.
- 온라인 DW이용자는 시군구가 전체 이용 중 약 59%로 가장 많고 읍면동이 26%정도로 조희가 빈번한 이용자 중 하나임. 복지부가 약 4.6%정도임.
- 그 밖의 다른 기관에서 정보개발원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전 이용 중 58%, 감사원이 21%, 외부기관이 14%, 그리고 국회가 7%임.
 - 보건복지부의 경우 실제 보건복지부의 요청과 보건복지부로 자료 협조 요청이 온 외부 기관을 구분하지 못하여 그 수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실정임.

제3장 보유정보 수요분석1: 기초보장 및 근로지원정책 영역

-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정보가 포괄하는 주요 정책 영역별로 정보의 제공에서 우선 제공 정보로 고려하여야 하는 정보들을 검토 하였음.
- 주요 정책영역은 기초보장, 자활 등 근로지원,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 아동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그리고 한부모 등 기타 정책영역임.
- 정책영역별로 원시자료를 구성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정보, 통계자료 생산을 위하여 DM를 구성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정보를 추천하였음.
- 정보의 추천은 제공하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고려하여 우선 포함하여야 하는 주요 정보와 후순으로 제공을 고려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여 진

행하였음. 예를 들어 통계생산을 위한 DM 구성 정보는 필수통계 목록과 선택 통계 목록으로 구분하기도 함.

- 정보의 선정은 크게 네 가지 자료를 참고함.
 - 원시자료의 경우는 전자의 두 가지 자료를,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DM의 경우는 후자의 두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참고하였음.
 - 각 정책영역별 연구동향
 - 정책영역별 중견 연구자의 추천
 - 각 정책영역별 정책 환경 변화
 - 기존 DM이용자의 이용현황 등

제1절 기초보장분야 정보 수요 분석

1. 연구의 동향과 정보 수요 분석

- 한 연구의 조사결과(이현주 외 2006)에 따르면 2000년대 발표된 빈곤을 주제로 한 논문의 총량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
- 기존 빈곤연구의 주된 흐름은 i)빈곤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연구 ii)빈곤의 실태와 양상에 관한 연구 iii)빈곤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김교성·노혜진, 2011).
 - 여성, 노인, 아동, 근로빈곤층 등과 같은 특정인구집단별로 빈곤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도 증가
 - 빈곤의 원인과 진입 및 탈퇴를 정태적,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도 증가
 - 빈곤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소득보장제도의 분배효과나 노동공급효과를 다양한 성과측정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
- 빈곤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구와 개인들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소득과 지출, 욕구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소득 변화나 노동시장 지위 변화 등에 관한 동태적인 정보의 산출이 전제되어야 함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중 원시자료 구성을 위한 수요 전망

- 주제 영역 중 ①복지제공주체에 대한 대-중-소분류 코드와 ②출생,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정보, ③가구구성 및 세대구분, 자녀수와 같은 가구정보, ④근로능력, 취업상태, 직종 등과 같은 노동시장 관련 정보, ⑤수급자 구분 코드와 의료급여 관련 코드와 같은 제도 수급관련 정보는 기초보장 및 소득보장 분야의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판단
 - 인구학적 빈곤과 정책 효과 등을 분석할 때 필수 정보들에 속함.
 - 빈곤의 경우 가구단위 분석과 개인단위 분석이 공히 필요하므로 가구정보와 개인정보가 함께 포괄될 필요
 - 근로빈곤문제는 빈곤문제 중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당면 근로상태 관련 정보는 정책의 기획과 평가에서 필수
 - 빈곤정책은 현금 급여 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 제반 급여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의료급여 등 제 급여 정보도 필요
- 주제영역- 신청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신청관련 정보를 포함. 해당 정보를 통해 수급 신청자의 인적속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수급자 정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청과 탈락 등 다양한 연구가 가능
- 주제영역- 수급자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
 - 수급자의 정보는 수급자격과 서비스 제공 현황, 그 결정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격을 가진 대상자와 실제 서비스제공 수급자의 비교가 가능
 - 주제영역- 수급자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은 복지제공주체의 인구학적 정보를 기본으로 포함하며, ①각종 소득·재산금액과 소득인정액과 관련된 복지제공주체의 소득산정현황, ②복지제공주체의 수급자격 현황 및 결정기준, ③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소득산정현황, ④실제서비스 수급자의 현황과 결정기준 등과 같은 수급자 관련 정보는 소득보장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판단

- 지급 정보들 중에서 ①급여의 공제내역과 금액 ② 복지제공주체에의 지급 결정기준, ③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지급기준, ④통합수혜서비스지원 등과 같은 정보는 그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
- 주제영역- 사후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서 ①복지제공주체에 대한 사후관리 결정기준, ② 사후관리의 현황, ③ 이중수급자 현황 등의 정보는 소득보장제도의 평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
- 긴급복지 정보는 대상자의 위기상황과 관련된 기본 정보는 물론, 긴급복지의 신고에서부터 지원하기까지의 각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공
 - 주제영역- 긴급복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서 ①긴급복지신고현황, ②서비스제공 결정기준과 결정현황, ③지원내역과 불가내역, ④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등은 긴급복지 지원 및 과정에 대한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판단
 - 위에서 제시한 정보 외 선택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보를 추천하는 한편 부가 정보 중 월별 정보를 선정하기도 함.

3.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정보 수요 전망

- 필수통계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음.
 -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로서 해당 가구수, 가구원 수, 연령, 성별에 대한 정보를 수급자 종류별로 구분하고 지역/권역별로 제공
 - 수급자 특성과 관련된 필수통계자료로서 수급자 판정과 관련된 장애 및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①장애인의 성별/등급별 특성, ②비장애 수급자의 수급 종류, 교육수준, 취업상태 및 취업훈련, ③근로능력판정 유형, ④조건부수급자 사유 등의 통계정보를 포함
 -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가구에 대한 필수통계자료로서, 수급가구의 가구구성, 가구유형, 주거유형 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통계자료를 포함. 특례수급

정보도 필요. 지출된 급여액과 해당 가구 수를 급여 종류별로 제공

-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재산과 관련된 필수통계자료로서, ①소득인정액, ② 각 유형별 소득, ③ 재산, ④ 자동차, ⑤부채상황 등의 정보를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제공
-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필수통계자료로서, 부양의무자 존재 유무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도 필수
- 수급자 유형별 기초생활보장 탈피 원인과 자활사업 대상자와 관련된 필수 통계자료로서 자활사업 대상자와 기초소득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보를 추천. ①지원유형, ②수급유형, ③업종, ④ 성, ⑤연령별 자활참여 정보도 필수

4. 적정 공유주기 등 고려점

- 적정 공유주기를 해당 정보의 특성에 따라 분기 단위와 년 단위로 상정
 - 신청자 및 수급자의 인구학적 정보들과 같이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정보는 연 단위로 공유되는 것이 적절
 - 소득이나 재산, 부채 관련 정보와 고용특성 관련 정보는 변동성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분기단위로 갱신하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
 - 분기단위, 혹은 연 단위의 공유주기는 자료공유 방식과 연계하여 결정할 수도 있음
- 자료의 구성과 관련하여 원자료의 각 주제영역과 주제영역 내에서 '복지주체 ID', '신청ID', '결정ID'등 대상 인식용 자료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마이크로데이터에서는 이를 통합 혹은 정리할 필요가 있음.

제2절 근로 및 자활분야 정보 수요 분석

1. 연구 동향과 정보 수요 분석

- 자활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급자 지위를 벗어나거나 빈곤을 탈피하도록 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첫째, 자활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연구 즉, 누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가를 살펴보는 연구
 - 둘째, 자활사업의 관리와 운영 과정에 관한 연구. 이 부분은 다시 사업운영의 절차적 합리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와 운영조직과 서비스제공자의 특징을 살피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음.
 - 셋째, 보다 직접적으로 자활사업의 효과성, 즉 참여자의 탈수급 확률이나 탈빈곤 확률을 측정하는 연구.
- 일차적으로는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필요
 - 조건부과를 제외하거나 조건제시를 유예하게 되는 요건
 - 현재 소득활동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그 외 개인과 가구의 사정 상 당장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일시적인 질병과 부상 여부, 학업 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근거로 활용된 모든 정보
-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 개인의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혼인상태, 건강상태 등이 기본적인 정보
 - 취업잠재력과 인적자본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과거의 수급경험이나 근로경력, 교육훈련 실태도 중요
- 자활사업 참여자가 속한 가구의 특징과 생활상
 - 가구주의 연령이나 성별, 가구원 수, 가구형태 등이 기본적인 정보. 자녀의

수와 연령, 성인의 수, 소득활동자의 수 등과 가구주의 특성, 가구 내 요보호가구원, 가구의 소득과 자산 및 부채 등도 주요

- 자활기관의 정보와 참여자의 지원 내용도 주요 정보

2. 원시자료 구성을 위한 수요 정보

- 자활사업 대상자 판정 결과와 이 과정에서 근거로 삼은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
 - 조건부 수급자/일반수급자 구분 정보, 조건부과 제외자/조건제시 유예자 구분 사유 등 정보 필요
- 자활사업 대상자 또는 참여자의 개인 특성을 드러내는 정보.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과거 취업이력과 직업훈련 관련 정보를 비롯한 인적자본 변수
- 대상자 또는 참여자의 가구 특성에 대한 정보. 가구의 소득수준과 자산수준, 가구원의 경제활동참여 상태
 - 양육이나 돌봄, 그리고 교육을 필요로 하는 가구원에 관한 정보
- 어떤 기관을 통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기관관련 정보
- 참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 자활서비스의 결과에 해당하는 정보

3.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한 정보의 수요 전망

- 자활사업의 내용과 참여자, 효과성에 대한 정보가 필수
- 다양한 정책자료와 보도자료에 등장하는 정보들 중에서는 프로그램별 참여자와 예산, 탈수급인원 등이 중요하게 취급됨
- 기존 정형통계 분류체계를 좀 더 다양하게 결합하여 표로 제시할 수 있는 시스

템을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임.

- 아래의 분류체계별로 해당자의 수와 비율, 그리고 지원 금액을 손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임.
 - 수급유형별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기타), 지원유형별(자활근로(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등), 희망리본, 지역자활 등), 업종별, 자활기관별, 종료사유별, 성별, 연령별

4. 정보의 구성방식과 내용 등 제안

- 자활사업 참여현황은 월별로, 대상자 개인 자료는 참여 기간별 관리가 적절, 가구데이터는 수급을 기준으로 연간 갱신과 제공이 적절할 수 있음.

제3절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분야 정보 수요 분석

1. 연구동향과 정보수요분석

- 의료급여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진료비 지출이나 의료이용 관련 적정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다수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보장성과 관련된 내용과 의료급여 대상자 이외에 건강보험내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연구는 의료이용 관련 연구,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태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의료이용과 관련된 주상병코드, 부상병코드,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방문일수, 입원일수, 진료일수, 입내원 구분코드 등을 활용. 기본적인 자격정보는 세대ID, 증번호, 구성원 ID, 구성원 성·연령, 자격구분코드, 장애여부, 보장기관코드, 읍면동코드, 종별구분, 유형코드, 자격취득일, 자격취득사유, 자

격상실일, 자격상실사유 등임.

- 의료이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여부, 만성질환여부,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취업여부, 빈곤여부, 단독가구 여부, 기초보장 수급여부, 의료보장유형, 건강검진 여부, 외래진료 여부, 입원여부, 생활비, 의료비 과부담여부, 주거지역 등의 변수 들임.
-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의료인력 등임.

○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관련된 정보로 신규수급자 상담률, 장기입원 기관관리 실적, 사례관리 종결실적, 외래사례관리실적, 장기입원자 수행실적, 장기입원자 퇴원실적 등이 주요.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중 원시자료 수요 전망

- 공통영역에서는 근로무능력 사유, 소득재산보유, 근로능력판정 사유, 장애유형코드, 보장구분, 주거급여 판정코드, 건강상태, 결혼상태 등이 중요한 변수로 판단
- 주체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ID와 성, 연령, 결혼상태, 직업관련정보, 장애관련 정보, 의료급여 정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추천
- 수급자 관련 신청인, 신청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ID와 서비스 급여내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신청 관련인과 관련된 특성 변수
- 소득산정 관련 소득 자료, 재산관련 자료, 자동차 및 부채 등에 대한 정보와 의료급여 종별 변경구분이나 장애인 보장구 등의 변수도 주요
-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진료비지급, 요양비지급, 보장구급여 등 정보 필요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 수요 전망

- 의료급여 통계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현장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형통계 중에서 의료급여와 관련된 복지대상자 통계, 기초생활보장 관련 통계, 장애인복지, 시설/법인 그리고 자활과 관련된 통계가 필요.
 - 복지대상자와 관련된 통계 중에서는 복지대상자들의 사업별 수급자수, 조사대상자 수 등의 정보
 - 기초생활보장 정보는 의료급여 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필수적인 통계로 판단됨. 기본적으로 수급자 통계와 수급자 특성, 수급가구 특성, 소득 재산 정보 그리고 정기통계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서 가장 중요한 통계들로 판단
 - 장애인은 의료욕구가 많은 계층으로 등록정보 등 필요
 - 사회복지시설 현황, 입소자 상세현황, 생계급여 신청 현황 등의 정보가 의료급여 분야에서도 필요
 -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중 근로능력 유무 등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된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등에 대한 통계는 매우 유용
 - 의료급여와 관련된 통계는 현재 생성하고 있는 정형통계가 모두 필요

4. 적정 공유주기 등 고려점

-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볼 때, 자료의 적정 주기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1년이나 반기 등 비교적 긴 기간도 무방할 것임.
 - 그러나 질환의 발생과 이에 대한 지원 등으로 연구 내용의 초점이 변화되면 좀 더 갱신 주기가 짧아져야 할 가능성이 있음.
-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에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현황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제도 수급/진출입도 유의미한 정보가 되므로 종단 자료의 필요성도 작지 않음.

- 의료보장 연구에서 자료의 수요를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가 필요한 것은 타 정보원간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정보 간 결합을 추진하는 것임.
 -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는 자료 간 결합이 갖는 강점이 있음.

제4장 보유정보 수요분석2: 취약인구집단 지원정책 영역

제1절 아동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1. 연구 동향과 주요 정보

- 요보호아동 발생과 보호,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관련 연구, 입양,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주요 연구영역이 될 수 있음.
-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하여 요보호 아동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성인의 자녀에 대해 특별한 집중과 관심을 가지고 추적적으로 자료를 구축할 필요
- 최근에 와서 보육 정책은 초저출산 현상과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성이 강조
- 무상 보육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제기되고 있는 이슈인 보육 서비스 종일제와 반일제 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제공이 필요
- 보육 시설 이용 혹은 양육 수당 수급 여부를 장애아 부모와 한부모 등 취약 부모의 특성별로 파악할 필요
 - 보육 서비스 혹은 양육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들이 어떠한 사회복지급여 혹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받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도 필요
 - 한부모 관련 연구에서 해당 가구와 가구가 지원받는 급여에 대한 관심이 주요

2. 원시자료 구성을 위한 수요 전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다면 아동이 처음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

하는 시점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어 보육 서비스 이용 행태를 패널로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음.

- 아동의 성과는 건강 및 학업 수행 능력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건강보험자료 혹은 교육데이터 베이스와 연계하여 아동 성과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사회보장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 자료와 함께 부모의 취업 여부, 복지 수급에 대한 정보를 함께 시계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자금 대여에 대해서도 복지자금 대여 건수, 지원 금액 현황 제공 필요하며, 대여 받은 금액의 분할 상환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도 필요
 - 한편, 시설 유형별로 보호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수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 자녀 연령 및 자녀 수 등 가족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제공도 필요. 또한 월별 단위로 시설 입소 혹은 퇴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 또한 권역별 센터를 통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한부모 현황에 대한 정보도 제공 필요
- 한부모 가족은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한부모들이 지급받고 있는 기타 복지 급여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

3. 보유 정보 중 통계자료 수요 전망

- 요보호 아동과 관련하여 원가정으로 복귀된 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의 소득 수준, 부모의 취업 여부, 사회보장 수급 여부 (수급자 혹은 차상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이 적합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
- 퇴소 아동 및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므로 퇴소

아동들이 사회서비스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지원 등 이들이 복지 수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에 파악도 필요

-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소년소녀 가정의 경우 후견인 지정이나 위탁가정 등 자료도 필요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보건복지통계연보는 지원 개소 및 지원 단가 등 센터 현황 정보와 함께 학령별 이용 아동 수, 경제상황별 이용 아동 수 정보

4. 정보 공유에서 정보 공유 주기와 규모에 대한 논의

○ 일반 아동 복지와 관련하여, 복지정보통계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정보는 분석 샘플 수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요보호 아동의 발생과 보호 조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며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정보 공유 주기를 삼는 것이 무방

○ 아동관련 자료는 패널로 구성하도록 중장기 계획이 주요

○ 한부모 복지 수급 기간에 한정하지 말고 한부모의 생애 주기에 걸친 장기간의 자료 구축이 필요. 전수가 필요한 정보라 할 수 있음.

제2절 노인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1. 연구동향과 정보 수요

○ 노인에 대한 관점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음.

○ 향후 빈곤사회보장제도·노인의 경제적 보장의 측면에 대한 관심과 고령사회로의 이행을 예비하는 거시적 구조환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

-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차별, 자원봉사 및 취업관련, 학대와 관련된 논문에 비하여 노인의 사회경제적 기여에 관한 고찰 및 노인의 정치적 참여 실태 및 활성화 전략마련 등과 같은 주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노인의 삶을 다양하게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 지역, 성, 연령, 거주형태를 축으로 다양성 접근 하는 연구 다수
-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체계 개발과 통계 제시를 통하여 사회보고의 기능을 수행한 정경희 외(2012d)는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개별지표 121개와 인구사회적 배경관련 25개의 총 146개의 개별지표가 제시된 바 있음.
 - 인구사회학적 측면, 사회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 경제상태 등 노인의 전반적 제 측면에 대한 정보가 주요
- 노인복지정책 동향을 보면 사전 예방적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
 - 건강, 소득, 사회참여(일거리), 주거·교통 분야를 집중 보완하는 경향

2. 원시자료 구성을 위한 수요 전망

- 성, 결혼상태, 학력, 가구형태 및 가구규모에 대한 정보 수요는 매우 높음.
- 생활을 대변하는 소득과 의료급여 등 관련 정보도 주요
- 신청 영역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성별과 연령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 지원 내용 등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 기초노령연금제도 수급여부와 급여액도 주요 정보로 부상
- 수급자 영역에서 기초보장 관련 자격, 급여 등 정보도 노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주요
 - 지급에서는 학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부양의무자 관련 정보가 중요
- 시설 영역에서 복지시설의 수입, 지출 등은 복지시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그리고 입소자 규모, 종사자 수 등 정보도 주요
- 바우처사업이 적지 않으므로 노인 대상 바우처 사업의 정보도 필요. 노인의 제 특성별 신청현황과 판정결과 등 중요
 - 바우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제공금액, 본인부담금액, 판정결과 및 판정결과

사유내용에 대한 정보를 필요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정보 수요 전망

- 노인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각종 지원의 수급자격과 급여 정보가 통계생산 정보의 핵심이 될 것
- 노인의 경우 의료급여도 포함되어야 함. 그리고 복지소외계층의 발굴과 관련 발굴경로 등도 소외된 노인복지에 주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노인관련 정보와 수급자의 건강 등에 대한 정보도 주요.
- 노인수급자의 사례관리 현황도 가구 유형 별 집계등 유용할 것으로 전망

제3절 장애인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1. 연구동향과 주요 정보

-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관련 연구의 주제는 빈곤과 소득보장, 고용, 사회서비스 등으로 다양.
- 빈곤과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가구소득, 빈곤 지위(빈곤 여부), 빈곤 상태의 변화와 소득이동, 빈곤탈출확률, 삶의 수준 등이 많이 사용되는 종속변수이며,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종류 등 장애 관련 요인, 취업여부 등 경제적 요인이 고려됨.
- 고용 분야 연구에서는 취업여부, 취업형태, 경제활동유형, 임금(근로소득), 고용유지기간(직업유지), 직무만족도 등이 종속변수로 고려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 관련 요인, 취업 관련 요인, 정책으로 직업훈련 등의 직업재활서비스, 직업훈련기간, 직업훈련내용 등이 고려됨.
-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분석과 사회서비스 공급자 분석이 공히 진행되어 왔음.

2. 원시자료 구성을 위한 수요 전망

- 공통 영역 중 지역, 성별, 결혼상태,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중요한 통제 변수로 사용되는 정보와 장애유형, 장애등급, 건강상태 등은 중요한 장애 관련 정보, 그리고 근로무능력판정, 근로무능력 사유, 취업상태유형, 직종 등은 기초생활보장 및 고용에서 중요한 정보
- 신청 영역에서는 서비스 지원내용이 중요한 정보가, 그리고 수급자 영역에서는 소득 유형 중 총소득, 근로소득, 이 밖에 소득인정액 관련 정보 필요
- 지급 영역에서 장애인연금대상여부, 국민연금수급여부, 의료급여종별, 장애인 보장구분이 중요한 정보
- 시설 영역에서 복지시설의 수입, 지출, 자산 등은 복지시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장애인 영역에서는 장애인 진단에서 장애유형, 장애등급, 선천성 및 후천성 장애사유, 장애발생연령, 등록일자는 중요한 장애 관련 정보가 필요하고 이 밖에 재활보조기구에서 신청 재활보조기구, 내구연한, 보조기구 품목 구입금액 등은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욕구 및 예산 관련한 중요한 정보가 필요
- 바우처 영역에서 제공금액, 본인부담금액, 판정결과, 판정결과 사유내용 등은 서비스 급여와 관련한 주요 정보도 필요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정보 수요 전망

-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장애인 연령별 현황, 장애인 등급별 현황, 장애인 수급자 직업 현황,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유형별 현황 등이 중요한 정보
- 장애인복지 분야의 장애인 등급별, 연령별, 유형별 등록 현황, 전국 장애인(유형, 등급) 현황, 전국 연령별 장애인(등급) 현황, 전국 연령별 장애인(유형) 현황, 시군구 연령별 장애인(등급) 현황, 시군구 연령별 장애인(유형) 현황은 매우 수요가 많은 정보

-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및 지급실적, 장애인연금 장애유형별 현황,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 현황(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인 현황(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수요가 많은 정보
- 시설 및 법인 정보 중 사회복지시설 총괄현황, 입소자 상세현황, 종사자 현황, 시설유형별 시설 생계급여 신청 현황, 시설유형별 운영보조금 신청 현황 등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 상담사례 및 통합업무 중 보장별(자격별) 월별 수급자 현황, 보장별(자격별) 보장탈피 원인별 현황도 수요가 많은 정보

4. 정보 공유에서 정보 공유 주기와 규모에 대한 논의

- 정보의 제공 방식으로 횡단자료보다는 종단자료로 제공할 때 더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
- 정보 공유의 주기는 변수에 따라 정보의 주기가 다를 수 있음.
 - 비정형통계 중 장애 관련 정보는 대개 1년 1회 단위로 제공하면 충분. 장애 유형 등은 3년 정도의 주기가 적절
 - 단, 취업상태유형, 직종 등은 고용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월 주기가 적절
 - 정형통계는 대부분의 정보는 1년 주기가 적절하며 일부 정보는 월 주기가 적절
- 정보의 필요 사례 수
 - 장애인 분야의 자료 분석은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집단 구분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15개 장애유형과 6개 장애등급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에 최대 90개 집단 구분이 가능함.
 - 이를 모두 고려하지 않더라도 15개 장애유형과 중증과 경중의 2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30개 집단 구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각 집단별로 필요로 하는 최소의 사례수는 30

제5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유정보 수요분석 종합

제1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 활용 현황 분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온라인 이용자의 이용현황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DW 중 기존 사용자들의 온라인 이용현황을 주로 활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집계
- 이용이 본격화되었던 2012년과 2013년 이용현황을 분석
 - 2012년 하반기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음.
 - 이용 빈도가 높았던 정보를 중심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차상위수급자 관련 정보, 장애인 등급 관련 정보, 기초노령연금 관련 정보, 자활사업과 영유아지원에 대한 정보도 수요가 높았음.
 - 각 정책영역 수급자 통계를 가장 많이 활용되었음.

2.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DW 잠재 이용자의 수요

- 범정부로 DW 활용을 확대할 경우, 잠재 이용자의 수요는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하나는 잠재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7개 기관 9명 응답)
 -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체들이 정보개발원으로 정보를 요청한 기록
-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대체로 통계 생산의 필요성은 인정. 이용 빈도는 개인 차가 크지만 적어도 1개월 1회 이상의 이용 빈도를 보였음
 - 기존의 통계 활용은 통계청이나 관련 조직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고 현황 자료 보고서도 이용

- 이용 내용은 주로 수급이력 정보의 파악이 대부분
- 조직의 정책 영역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활용하였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역시 공통적인 관심 정보가 되었음
- 기존 통계 이용에서 불만은 필요변수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음.
- 개선 요청사항 중에는 여러 조직의 연계된 정보가 통계로 집계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음

○ 「외부요청통계 처리정보 제공대장」 분석결과

- 「외부요청통계 처리정보 제공대장」은 정보개발원으로 정보를 요청한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기록해 둔 자료.
 - 2013년 기록에 대한 분석. 2013년은 최근의 정책 변화 및 수요 변화를 반영한 최종의 자료임
- 정보의 외부요청통계 처리 정보 중 2013년 약 750여건 대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 간 정보 교환으로 구체적인 개인수준의 수급 사실을 확인하는 정보요청이 다수. 부정수급확인을 위한 개인명단 등 추출도 적지 않음.
 - 요청된 정보를 정책별로 보자면 단일 정보로는 장애인등록에 대한 통계 요청이 가장 많음.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정보 요청도 가장 빈번. 그리고 양육수당에 대한 정보 요청도 다수.
 - 돌봄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등 서비스 수급에 대한 정보 요청도 적지 않음

제2절 정보 수요 분석 결과 종합

1. 원시자료의 구성을 위한 정보 수요 분석결과

□ 원시자료의 구성

- 원시자료 구성을 위한 정보수요 분석은 연구의 동향과 정책적 배경을 고려한 선택이자 해당 정책영역의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선택
- 전체적인 목록의 합은 1,300개 정보(부록 1 참조)를 넘어서고 있음.

- 각 정책영역의 정보를 서로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데 해당 영역의 연구를 진행하자면 인접한 관련 영역의 정보를 공히 필요로 하기 때문임.
- 원시자료 구성에서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유 정보가 구조화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유 정보는 여러 개의 정보 셋으로 구성. 복지주체로서의 개인 정보 중 성별, 신청에서의 민원인 초기 상담 정보, 조사의 가구원, 급여정보의 개인정보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자료 구성의 애로점 중 하나로 지적됨.
- 정보수요 추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유는 정보에 대한 설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임.
 - 운영계에서 생성된 정보를 축적하였기 때문. 추측컨대 운영계에서 참고하는 개별 정책의 지침이 정보의 설명서 역할을 할 것. 정보의 제공에서 정보의 설명이 마련되는 것이 첫 출발이 될 것임.
- 각 정보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원시자료의 경우 그 수요 정보의 폭이 매우 넓어서 해당 정보의 충실도와 신뢰도를 확인하는 작업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됨.
 - 충실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각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의 공동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할 것임.

□ 원시자료의 주기와 크기

- 정보 제공의 적정 주기는 정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상이함.
 - 대부분의 복지정책에 대한 신청과 적격성 심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이후의 업무처리과정 또한 상시적으로 진행됨.
 - 이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정보들은 일 단위로 갱신됨. 하지만 정보의 공유 또한 일상적으로 추가, 갱신될 수는 없음.

- 정보의 제공 주기를 크게 구분하면 월, 분기와 년 단위가 될 것임.
 - 신청자 및 수급자의 인구학적 정보들과 같이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정보는 연 단위로 갱신, 제공
 - 소득이나 재산, 부채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므로 분기단위가 적절. 반면 고용 관련 정보는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월 단위 갱신과 제공이 바람직할 것임.
- 자료의 형태는 종단과 횡단 모두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상이할 것임.
 - 표본자료의 구성에서 종단자료를 구성해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 종단자료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공 행정자료의 큰 강점임. 따라서 종단자료의 제공 여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 종단자료를 제공하자면 사전에 각 정보들이 어느 단계의 기준 시점으로 구분가능하고 누적이 가능한지, 종단의 연결은 어느 단위(개인, 가구 등)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등 매우 정교한 설계와 사전 실험이 필요함.
 - 사전 실험한 자료를 기초로 이용자에게 종단자료의 구성이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종단화가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 등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원시자료 구성 시 자료의 크기는 요청된 원시자료의 내용, 분석 방법에 따라 상이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연구자의 요청에 따르게 될 것임.
 -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표본수를 고려하면 가능한 수준에서 큰 표본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그 이유는 분석의 구성부분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수준의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구성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보호도 표본의 크기가 큰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임.
 - 원시자료를 원자료 전체표본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쉬운 선택이지만 분석에서 자료의 크기가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일부 표본으로 한정하여 자료의 크기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자료 활용의 안정성을 고려 원칙을 두고 권고하는 수준에서 제공 자료의 크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분석에서 고려되는 집단 구분의 수를 참고로 하여 각 집단별로 필요로 하는 최소의 사례수는 30으로 하한을 둘 수 있음.
- 가능한 지역단위로 한정하여도 약 250개 기초자치단체를 가정할 수 있는데 이 단위로 유효한 표본의 수만 고려하여도 약 10만개의 표본이 필요함.

□ 표본의 크기와 관련된 예시로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원시자료 이용자에게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제공하고자 한다면, 자료 추출기관은 적정표본을 결정하기 위해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이용목적), 모수 추정방법(추출 방법), 모수 추정량의 정도(precision), 신뢰수준(confidence level)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경우, 원시자료 이용자는 주로 복지수급자 또는 급여지급액 특성, 수급이력 등과 관련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요청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
- 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임의추출로 모평균 또는 모비율을 추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정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음.
- 실제 표본을 추출할 경우에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표본 추출방법을 선정해야하므로 적정 표본크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용자 혹은 자료추출 기관은 표본 추출 목적, 추출방법(단순임의추출, 층화추출, 계통추출, 집락추출 등), 조사에 소요되는 인원, 비용, 시간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표본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통계생산을 위한 정보 수요 분석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 중 통계생산을 지원하는 데이터마트는 정책

영역별 별도의 마트로 구성하기 보다는 하나의 마트에 필요한 정보들이 공히 포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유 정보 중 데이터마트에 포괄할 정보로 선정한 근거들은 기존의 연구경향과 정책적 수요였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DW에서 비정형통계와 정형통계 중 정형통계를 중심으로 정보를 검토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는 비정형통계, 정형통계, 정기통계로 구분이 가능한데 자료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하자면 정형통계가 우위에 있거나 포괄성에서 보자면 비정형통계가 우위에 있음.

- 내부적으로 정기통계도 구분이 가능한데 정기통계는 정형통계 중 이미 현황 자료의 생산 등으로 그 충실도와 신뢰도가 검토된 자료군임.

- 결과적으로 정보의 안정성이나 신뢰도를 기준으로 하면 정기통계, 정형통계, 비정형통계 순이고 정보의 포괄성을 기준으로 하자면 비정형통계, 정형통계, 정기통계 순으로 정보를 구분할 수 있음.

- 정기통계만으로 한정하게 되면 안정성은 높지만 그 포괄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일 위험이 있음. 정형통계 중 보유정보를 선정하는 것을 선택함.

○ 정형통계 중 각 정책영역의 관심도를 고려할 때 통계생산에서 그 필요성이 어느 수준인지를 판단함.

- 정책연구분야 별 선정한 결과를 합산한 것으로 '중요도 평가'의 점수가 높을수록 통계생산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제6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제1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활용 현황 및 개선점

○ 현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원시자료 이용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기초로 한 통계자료 생산과 제공은 상대적으로 활성화

- 현재 DW 사용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로 등록된 전 사용자로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시군구 공무원 중 이 시스템의 사용자들로 국한되어 있음.
- 온라인 DW이용자는 시군구가 전체 이용 중 약 59%로 가장 많고 읍면동이 26%정도로 조회가 빈번한 이용자 중 하나임.

○ 복지부가 약 4.6%정도에 이르고 있음.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 온라인 이용은 저소한 수준임.

- 중앙부처의 경우 활용이 저조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지급여권리과, 자립지원과의 이용빈도가 높았음. 여성가족부의 경우 중앙정부 이용자 중 이용 빈도가 높음.
- 중앙부처의 경우 정보개발원으로 집계표 협조를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전체적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생산의 필요성이 높은 부서들의 접근이 활발함.
- 기초보장과의 이용도 높지만 이 과의 경우는 별도의 채널로 통계집계를 지원받고 있어서 이용빈도가 높은 부서에서 제외됨.
- 정보개발원으로 통계자료를 위탁한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전 이용 중 58%, 감사원이 21%, 외부기관이 14%, 그리고 국회가 7%임.
-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정보의 경우 실제 보건복지부의 요청과 보건복지부로 자료 협조 요청이 온 외부 기관의 요청을 구분하지 못함.

○ 지방정부 공무원의 온라인 DW 이용이 활발한데, 각종 보고의 필요성에서 초래된 이용임.

- 정보개발원으로 자주 발생하는 통계생산의 요구를 모두 의뢰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이용 시점도 보고의 시점과 맞물려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지방정부에서 온라인 DW를 자주 사용하는 부서는 희망복지지원단, 주민 생활지원, 복지정책, 사회복지과 등임.
- 이용 필요성이 이용 빈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DW이용자 인터뷰 자료와 현장방문 의견조사 결과

- DW이용자 중 시도, 시군구 이용자의 경우는 운영계 자료와 DW의 자료 특성을 혼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 이용 상 문제로 지적된 것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정확성과 신뢰도, 속도와 난이도임.

- 새로운 정보의 보고시점에서 늦어 특정 시점의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얻기 어렵다고 지적. DW는 운영계와 달리 다소의 시간을 두어 갱신되는 점을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형통계와 비정형통계가 수치 차이가 나기도 하여 신뢰도의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음. 일부 정보의 경우 정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시점의 차이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판단됨.
- 정보 검색에서 난이도도 문제로 지적됨.
 - 비정형통계는 더 어려워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고, 이 밖에 사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례도 적지 않음.
 - 이용자가 교체되면 DW에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 소요 및 통계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함.
 - 조건검색이 너무 세분되어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함.
- 선택적 조건화 요청이 비교적 자주 문제로 언급됨.
 - 예를 들어 읍면동 단위 집계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필요한 읍면동의 해당 사항만 집계가 가능하도록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속도가 느려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었음
 - 중앙부처의 경우 속도가 늦어서 정보개발원에 요청하기도 한다고 함.

- 속도를 높이는 개선은 지금도 진행 중임.
- DW에서 얻은 정보를 재가공하는데 시간 소요가 있어 불편하다고 지적됨.

□ 잠재적 DW이용자의 의견 중 참고할 사항

- 범정부 잠재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 통계자료의 제공 등에서 고려할만한 의견으로는
 -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정보구성, 정보에 대한 설명과 경로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함.
- 이용 확대에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영역으로는 사회정책 민간수행기관을 포함하여 공단 등을 추천함.

제2절 공공데이터 공개정책 및 사례

1.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

가. 미국과 영국

- 미국은 2009년 1월, '투명하고 열린 정부'라는 국정운영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개방정부정책(Open Government Initiative)'를 마련
 - 2013년 5월에는 정부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의 공개를 골자로 하는 '자료개방정책(Open Data policy)'을 발표하면서 모든 공공 데이터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민간에 개방할 것을 의무화함.
 - 이용자가 개방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방정보의 강점, 약점, 분석 상의 제약, 보안 요건, 처리 방법 등의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함.
- 영국은 2005년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을 제정하였고, 2007년 6월 '정보의 힘(Power of Information)' 보고서를 근간으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
 - 2010년에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data.gov.uk)를 구축하였으며, 2012년 3

월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재이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를 설치함.

- 2012년 6월, 내각사무처는 데이터 접근성 강화 및 향후 개방 데이터 목록 등에 관한 '오픈 데이터 백서(Open Data Withe Paper)'를 발표. 이에는 17개 주요부처가 오픈데이터 전략을 마련하고 의료, 교육, 세금, 고용, 기상 데이터 등을 '1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이 포함됨.
- 각 부처의 공개 데이터는 공유 플랫폼인 data.gov.uk를 통해 민간에 개방되고 있으며 2013년 12월 기준으로 13,188개에 달함.

나. 우리나라

- 2010년 3월 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을 기점으로 같은 해 6월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정보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 2012년 6월부터 중앙행정기관 8곳과 지방자치단체 2곳으로 구성된 공공정보 개방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정보 개방 활성화를 도모함.
- 같은 해 7월 관련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고 국회 의결을 거쳐 2013년 10월부터 시행함.
-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본원칙으로 공공데이터 이용권의 보편성, 접근과 이용의 평등의 원칙, 이용저해행위 금지, 이용자의 영리·비영리적 활용 허용, 국가의 안전보장 및 타인의 권리 우선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함.
- 공공데이터 추진체계는 안전행정부가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정책총괄을 맡아 제공목록 공표, 운영실태 평가, 기본계획 수립, 제공기반 조성을 담당함.
 - 위로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어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 추진사항 점검·평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아래로는 공공데

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2. 공공데이터 제공 사례

가. 통계청

-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 통계청모바일앱, e-나라지표, 통계지리정보, 통계분류체계, 마이크로데이터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함.
 - 국가통계포털은 이용자가 국가승인통계를 원스톱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 e-나라지표는 국정에 관한 주요통계지표를 알기 쉽게 분석 자료와 함께 제공함.
 - 통계지리정보는 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융합하여 지도처럼 재구성하여 한눈에 통계를 서비스함.
 - 통계정보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원시자료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함.
-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해 통계법시행령 및 통계청통계자료제공 규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구성하여 통계자료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함.
 - 통계자료제공심의회는 위원장 1명, 위원 14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통계조사별 자료제공범위 설정, 통계 및 자료이용 목적의 적합여부, 자료제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마이크로데이터의 관리는 통계청이 하며, 제공은 통계청과 한국통계진흥원이 함께 수행함.
 - 통계청은 국가기관, 지자체, MOU체결기관, 자료교환 기관 등에 대해 제공하며,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한국통계진흥원이 제공함.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통계청은 통계표준용어, 통계용어지표서비스를 통

해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통계학적 개념, 통계용어 및 통계청 공표 주요 통계지표 등을 정리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함.

- 용어 뿐만 아니라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통계설명DB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검색 조회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함.
- 통계설명자료에는 통계 작성 대상 및 단위, 시점, 이력 등의 통계개요, 조사방법론, 공표방법, 범위, 공표주기 등의 자료제공 정보, 이용 시 유의점이 수록되어 있음.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정보 DB를 활용한 통계생산 지원과 원자료 지원을 하여왔음.
- 통계집계표 작성의 역사가 매우 긴 조직으로서 원자료 제공은 2009년부터 시작하였음.
- 「정책 및 학술 연구지원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연구자와 부처, 정책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지원함.

○ DW 요청통계를 생산 제공해주기도 함.

- 통계표 작성 대행은 1년에 1000건 이상이며 공식적으로 790건/연 정도임.
-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에 요청하여 통계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함.
- 직원 중 DW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많으며 약 1/100의 직원이 자격증(분석사 자격증)을 소지함.
- 통계연보도 총 6종이 생산중임.

○ 연구자 연구를 위한 원시자료 지원

- 연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술연구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용된 경우 자료를 구성하여 제공하되, 현재까지는 공단의 지정된 장소, 지정된 컴퓨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는 공단에서 검토 후 연구자에게 전송하는 방

식을 유지하여 왔음.

- 담당자는 보안 서약서를 연구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실비를 받고 자료를 지원하는 상황임.
- 원거리 이용자는 방문하여 분석하는 방식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 하나의 대안으로 코호트 표본자료를 구성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마련 중임.
 - 해당 DB를 기반으로 표본설계를 하고 일종의 코호트 표본자료를 구성하여 자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임.
 - 현재는 일차 준비된 표본자료에 대한 실험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 표본 DB로 해결이 어려운 연구 설계의 경우 별도의 지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W

- 심사평가원의 DW는 국민의 진료정보, 의약품 유통정보 등을 통합,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국가정보 통계를 산출하고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임.
- 2003년부터 DW시스템을 시작하여 선도적인 정보공유를 하여온 사례
- 보건의료정보분석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DW의 이용활성화 방안에 적극적 검토를 시도함.
- 특정 요양기관, 업무, 기간, 상병 별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여 정보를 재구성. 자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 최근 5년 전국민 진료비 심사, 평가 정보 (250TB)
 - 의약품 유통정보 (생산, 수입, 공급, 구입, 사용)
 - 전국 모든 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정보
 - 급여 기준정보 (약가, 수가, 재료대 등)
-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DW포털 등을 통한 사용자 분석의 환경을 제공하여 왔음.

- 연간 DW 사용자는 12년 기준 893명, 사용회수는 670,637건임.
- 정부 뿐 아니라 학술기관이나 대학에서 임상분석, 의료비용, 그리고 의약품 소비 등 연구에 활용함.
- 온라인가상 분석실을 운영하여 연구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 중임.
-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을 두어 이를 기준으로 활용함.

□ 합의

- 정보공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심의 등 관련 논의를 담당할 조직의 구성도 필요함.
- 단기에 접근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보공개는 쉽지 않음.
- 중기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며 그 준비에는 정보의 구성과 공유방식의 결정, 그리고 공유를 위한 인프라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함.

제3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활용 제고 방안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범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운영계 시스템에서 생성된 원자료로부터 입력오류 등을 제거하여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제한 자료를 의미
-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구분 및 제공형태에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

2. 제공원칙

- 공공데이터 개방의 원칙은 국가의 안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저해하는 등 상식적으로 비공개가 납득되는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 공공데이터의 이용은 제한이 없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은 궁극적으로 내·외부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보 제공 원칙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이용의 보편성
- 둘째, 접근 및 이용의 용이성
 -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편의대로 정보제공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마련함.
 -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가 이해할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함.
 - 활용이 가능한 공개된 포맷(정보공개법에서는 XLS, HWP, open API 권고)으로 제공함
- 셋째, 제공정보의 표준화 및 일관성을 유지
- 넷째, 제공정보의 품질을 보장
-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 이용자의 수요 관리와 분석 필요

3. 정보제공 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는 궁극적으로 이용자가 접근이 편리하고 외부 정보와 연계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 외부사용자에 비해 개인정보의 필요도가 높은 내부사용자에게는 접근매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업무포털로 하여 시스템 운영 DB 및 DW와 즉시 연계하여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함.
- 외부사용자는 정보제공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하여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 지정된 이용 장소를 이용하는 방법, 위탁처리 방법, 원격접근 방법 중에 선택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함.

- 자료원은 운영 시스템과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필요한 행정자료 및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사업별, 수급자별로 가공된 맞춤형 DW를 별도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함.
 -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 원시자료 및 통계의 제공 뿐 만아니라 플랫폼 내에서 자료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시스템을 구비하여 제공.
 - 궁극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플랫폼과 공공데이터포털을 연계하여 원시자료 및 통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를 고려하여 준비함.

가. 원시자료의 제공

- 이용자가 원시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제공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제공할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메타데이터를 관리
 - 외부 자료와의 연계 및 일관성 있는 원시자료 생성을 위해 제공 형태, 제공 기술, 분류체계 등의 원시자료 생성에 필요한 표준안을 마련
 - 표준화된 원시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 관리
- 둘째, 제공 자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
 - 데이터 관리 포털은 표준데이터 관리, 모델 및 구조관리,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 활용 성과관리 등의 기능을 포함.
- 셋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시자료의 제공은 점진적으로 확대
 -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공유 가능한 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시간투입이 필요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형적 자원의 투입도 필요
 - 원시자료의 공개 수준을 분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는 초기에는 복지사업별 수급현황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다음으로 수급자 및 수급가구 중심으로 수급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
 - 원시자료의 구성측면에서

- 초기에는 내·외부이용자가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핵심항목으로 데이터 셋을 구성한다면 점진적으로 외부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조항목들로 구성된 데이터 셋을 구축하여 유연한 정보자원을 구성하여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례와 같이 주요 관심주제를 중심으로 표본DB를 구축하여 누구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
- 정보 공개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점진적 개방이 필요함.
 - 초기에는 자원의 제약으로 다소 소극적인 방식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요청하고 관리기관으로부터 이용을 득한 후 분석결과를 제공받는 형태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
 - 점차적으로 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원하는 자료의 분석결과를 제공받는 방법, 원격접속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자료를 내려받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데이터 취득 방법을 다양화하여 이용자 편의대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임.

나. 통계의 제공

-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DM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수행을 고려해야 함.
- 첫째, 통계 활용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현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통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통계시스템 기능을 학습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어떤 의미로 통계가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전달도 필요. 통계시스템 기능 위주의 교육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출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부가될 필요가 있음.

- 내부사용자에게는 보완된 교육으로 통계의 오용 및 잘못된 해석을 방지할 수 있고 외부사용자에게는 통계설명서를 제공하여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둘째 통계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 정부부처, 연구소, 기업체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 이용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이를 다시 이용자에게 공유하면 통계 활용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우수 통계활용 사례를 다시 통계교육을 통해 환류하여 통계정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통계 이력 및 수요관리체계를 구축

-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통계 활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 중임.
- 통계의 생성, 변경이력을 관리하는 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청사항을 복지광장을 통해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통계개선 및 개발 요구를 요청하는 전문 창구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 향후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요구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 볼 때 통계 수요를 접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 또한 관심도가 높은 사용자일수록 명확한 통계수요를 제시하므로 통계활용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이용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계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도 개발되어야 함.

○ 넷째, 외부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화한 정보제공이 필요

- 단편적인 복지사업별 통계에서 탈피하여 범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매시업(mashup)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특화된 통계를 발굴·제공하도록 함.
- 통계표와 함께 시각화된 도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4. 제공절차

-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가이드라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제공대상
 - 이용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공공데이터포털 접속신청(성명 등 제공내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입력) → 다운로드 및 이용
 - 오프라인 제공대상
 - 이용자 → 해당 공공기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공공데이터 수령 및 이용
 - 제공대상 외
 - 신청서 접수)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검토) 10일 이내에 제공기관이 제공여부 검토 및 결정 → (통보) 제공결정 여부 통보
- 정보 제공은 최소한의 절차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방침이며 제공 대상 외의 수요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는 통계와 원시자료로 설정한 바 있으며 제공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통계와 지정된 장소에서 원시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표본 DB, 원격접근, 위탁처리 방식을 제안하였음.
- 제공범위가 기 확정된 통계 및 원시자료(표본 DB)는 국가의 기본방침을 준용하여 공개 포털을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및 이용제한 없이 사용가능 하도록 함.
 - 다만 통계포털에서 제공되지 않는 통계는 원시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제공함.
- 그 외의 범위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 제공여부 검토, 정보제공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함.
- 또한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산정범위

내에서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

제7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 제공을 위한 과제

제1절 보유 정보 제공 방향과 단계의 구성

1. 보유 정보 제공의 방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향하는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
 - 이미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 분류에 복지영역의 주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보의 제공은 피하기 어렵고 피할 이유도 없는 주어진 과정임.
 -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와 제공자,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 국민이 그 효과를 높게 누리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첫 번째 지향점은 정보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는 매우 유용한 연구자료이자 정책자료임. 동 자료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함.
 - 만약 모든 책임과 과제를 해당 부서 등으로만 미루어둔다면 자료의 제공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며, 필요한 많은 자원의 마련조차 쉽지 않을 것임.
 -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관련된 연구자 차원에서 협력하고 추진할 일임.
- 둘째, 공공행정자료의 강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정보의 제공을 준비함.
 - 공공행정자료는 그 표본 크기가 커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고 종단연구가 가능한 자료임.
 - 이러한 장점을 살려 종단 연구 자료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집단과 지역연구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료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타인의 권리 보장이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2013년 9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배포하였음.
- 이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유하여야 함.
 -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제거, 범주화, 마스킹 등의 다양한 전략과 활용이 필요
- 안전행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기술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단」을 구성하고 비식별화 기법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적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연구에 임하는 연구자 윤리를 정하고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윤리를 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임.
- 원시자료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유지하여 분석만 가능하도록 하거나 또는 DW와 DM을 분리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긍정적인 것임.

2. 보유 정보 제공의 단계 구성

- 중기 이상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제공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정보 제공도 소극적인 방식에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안정적인 적은 범위 정보에서 보다 광범위한 정보로 제공을 확대시켜가야 할 것임.
- 앞으로 몇 년간 진행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음.

○ 첫째, 정보의 형태와 내용 별로 제공의 수준을 구분

- 정보 개방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의미. 공유는 제공자와 이용자가 확인이 되는 제공방식. 초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는 개방보다

공유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

- 원시자료는 공유로, 통계는 개방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는 개방으로 민감정보는 공유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음.

○ 둘째, 제공할 정보를 정하고 정보의 수요를 감안하여 제공의 단계를 구분. 그리고 제공할 정보 군에 대하여 검토 작업을 시행

- 약 3년 정도의 계획으로 제공할 정보를 구분하여 두로 이를 검토하며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현재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가 적절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보의 구분과 검토는 정보에 대한 정의서의 마련도 병행하여야 할 것임.
- 통계청의 '필요 통계설명'과 같이 이용자의 정보 이해를 도울 다양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함.

○ 셋째, 정보의 제공방법에 대하여 단계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지정된 공간에서의 제공에서 시작하여 온라인 이용으로 이어지는 제공방법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단계별 추진 일정이 마련되어야 함.

○ 넷째, 관련 자료원간의 연결 계획도 필요함.

-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 중 의료 보장과 관련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의 정보와 연결되었을 때 그 유용성이 배가됨.
- 정보를 관리하는 조직이 상이하고 또 정보의 형태와 구성이 상이하여 정보 간 연결은 조직 간 협력 구조를 갖추고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함.

□ 원시자료 제공의 단계 구성

○ 원시자료의 제공은 그 방식에서 단계적인 기획을 할 수 있음.

- 단계의 구분은 정보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각종 준비에 필요한 시간소요를 감안한 것임.

○ 초기에는 원시자료에 대한 신청을 시작으로 자료원에서 자료를 구성하고 제공

하는 방식임.

- 당연히 신청 이후 연구계획서를 검토하고 허가를 하는 과정, 연구자의 서약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자료를 반출하는 방식임.
- 이 방식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초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센터를 운영하여 결과물을 다운로드 하는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Micro Data Access Center; 이하 MDAS) 방식을 활용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는 인가된 마이크로데이터를 열람·분석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활용한 자료공유방식
 - 보안조치가 취해진 독립된 전산환경에서 이용자가 직접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
 - MDAC의 이용절차는 ①이용신청서 접수(이용자) →②연구계획서 검토 및 허가(제공자) →③이용자료 생성(제공자) →④이용센터 작업 및 결과물 반출 요청(이용자) →⑤결과물 검토 후 반출승인(제공자) →⑥MDSS에 결과물 파일 업로드 및 이용료 확인(제공자) →⑦MDSS에서 비용결제 후 결과물 파일 다운로드(이용자)의 순서와 같음.

○ 중기에는 신청에 기반을 두어 원시자료를 구성하고 제공하는 것은 초기와 유사하지만 원시자료 제공을 위한 자료원을 구성해두는 방식임.

- 수요분석을 기초로 수요가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사전 신뢰도와 충실도를 검토하여 해당 정보로 원시자료 구성을 위한 후보 정보의 원천을 구성하여 됨.
- 이러한 방식은 자료 신청 이후 제공시간을 단축하고 제공하는 원시자료의 안정성을 높이는 강점이 있음.
- 이 방식은 원격접근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RAS)로 원시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원격접근서비스는 인가받은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 이용자의 PC는 원격단말 역할만 담당하며,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서버

가 제공하는 통계프로그램으로 작업을 수행함.

- RAS이용은 ①이용신청서 접수(이용자) → ②연구계획서 검토 및 허가(제공자) → ③이용료 확인 및 이용자료 생성(제공자) → ④원격접근시스템 이용(이용자) → ⑤결과물 반출 요청(이용자) → ⑥결과물 검토 후 반출승인(제공자) → ⑦MDSS에 결과물 파일 업로드(제공자) → ⑧MDSS에서 비용결제 후 결과물 파일 다운로드(이용자)의 순서로 이루어짐.

○ 장기로 확장하여 보자면 원시자료의 제공은 가장 수요가 높은 정보로 원시자료를 마련해두고 정보의 안정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식을 지향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통계청의 각종 자료의 제공방식과 유사하게 원시자료를 구성하고 제공하는 것임.
- 당연 원시자료의 구성에서는 비식별화와 신뢰도, 충실도에 대한 검토가 필수임.
- 미리 준비된 원시자료의 제공에서는 쇼핑물과 같은 제공방식도 추진할 수 있음.
- 쇼핑물은 개인 식별 데이터를 제거한 마이크로데이터를 미리 CD로 제작하여 판매, 또는 필요한 자료만 주문받아 CD로 제작, 판매하는 방식임.

제2절 보유 정보 제공을 위한 과제의 정리

○ 첫째,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고 확보하여야 함.

-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많은 업무의 증가를 의미. 따라서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이 필수
- 적정 수준의 조직 구성과 인력의 배치, 물적 자원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정보의 제공기반이 마련될 것임.
- 심지어 초기에는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자들이 활용하도록 공간도 제공하여야 할 것임.

- 둘째, 필요한 지침과 위원회 등의 조직구성과 운영을 준비하여야 함.
 -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공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지침을 필요로 함.
 -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관련 이슈를 검토할 심의위원회 등 필요 조직의 구성을 준비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경우 포괄하는 정보의 내용이 방대하여 이러한 심의 조직의 구성은 누구로 할 것인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숙고가 필요함.
 - 정보의 제공은 단순히 기술적인 과정으로 치부되기 어렵고 해당정보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조직의 구성과 위치 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
 - 덧붙인다면 지침과 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실험적용 기간을 두어 정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공유 정보 중 수요도가 높은 정보로 제공이 예상되는 정보에 대한 검증 작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함.
 - 이 정보들은 기술적 검증 외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데 관여된 정책부서의 협조를 구하여 내용상의 검증도 병행되어야 함.
 - 즉, 단순하게 정보의 결측치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이상치의 발견과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의 요구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들을 우선 대상으로 검증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해두어야 할 것임.
 - 원시자료를 구성할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의 구성 셋을 넘어서는 검증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이 검증은 논리적 검증으로 관련 연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기대효과

제3절 연구의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정보를 공개하고 그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자료원을 기반으로 구성된 정보의 창고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17개 부처의 약 300개 복지사업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연계하여 업무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 지원하고 복지사업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사회복지 정책의 신청과 조사관련 정보, 소득재산정보, 부적정 수급 정보, 급여지급정보, 서비스 이력 정보 등, 동 시스템이 관리하는 정보의 양은 방대하며 매우 중요한 내용의 것이다.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¹⁾이 개통된 이후 축적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복지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보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보유 처리하고 있으나, 그 보유 정보의 활용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와 같은 공공행정자료는 정책의 개발과 평가, 그리고 기획을 위한 각종 연구에서 강한 이점을 가진다. 외국에서도 그 강점으로 인하여 공공행정자료의 활용에 주목하여왔다. 미국의 경우도 1980년 대 초 이후 거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제공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데 전산화된 정보와 보고체계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최근 전반적 경향을 볼 때, 공공 행정자료는 최근 가치가 있는 정보원이 되었다.

매이피드와 그 동료들(Mairead, Robert & Lee, 1998: 2-4)은 그들의 연구에서 공공행정자료의 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바 있다. 그 이점을 보면 첫째, 공공행정자료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체 인구에 대한 자료를 갖추게 되어 표본자료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 표본의 편이 등이 없고 정확성이 높다. 그리고 자료의 크기가 커서 발생빈도가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과거 행복 e음 또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낮은 문제나 연구하기 어려운 집단에 대하여 연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작은 지역단위의 분석도 가능해진다. 설문조사로 희귀 문제나 작은 집단, 그리고 지역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려면 그 비용이 너무 높아 쉽지 않다. 둘째, 공공행정자료로는 종단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종단연구를 위한 패널 자료의 생산에서 자주 경험하는 표본의 상실문제도 그리 심각하지 않다. 셋째, 자료의 정확성이 높다. 설문조사 자료와 달리 회기의 문제가 거의 없는 정확한 자료이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한 편익(social desirability bias)라는 문제가 심하지 않은 자료라는 특징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얻은 정보임으로 자료의 신뢰도가 높다. 물론 행정자료의 단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조지와 이봉주(George, Lee, :199)는 그들의 연구에서 공공행정자료의 단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공행정자료의 단점을 보면 우선 수급기간의 정보만 수집한 한계를 지닌다는 점이다. 제도의 수급 이후 정보가 없어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둘째, 통제변수 등 필요한 변수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정보수집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질에 대하여 확인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 사실 마지막 단점을 거의 모든 자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이기도 하다.

공공행정자료도 일부 단점을 가지지만 그 단점보다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러한 공공행정자료를 활용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그 활용에서 단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자료의 활용을 보완해가기도 한다. 미국의 공공행정자료의 활용 사례를 간략하게 예시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일리노이(Illinois)주의 일리노이가족연구(Illinois Families Study: IFS)도 공동행정자료의 대표적 활용사례이다(Lee, Kristen, Dan, 2004).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welfare reform)이 복지수급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 수급자들의 근로 변화 등 TANF의 궁극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1899명의 TANF 수급자가 1998년 일리노이주 복지 사례들 중에서 표본으로 추출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이 진행되었다. IFS설문 자료는 일리노이주 인간서비스부(Illinoi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와 고용보장부(Illinois Department of Employment Security)의 행정자료와 연결되어졌다. 이 자료간 연결은 수급자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설문대상 수급자 중 93%가 그들의 행정자료와 그 가정의 아동설문을 연결할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일리노이주의 아동서비스에 대

한 자료통합(Integrated Database on Children's Services in Illinois: IDB)이다 (Lee, Lucy, 2006). 동 자료는 종단 자료로 아동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에서부터 모아진 행정자료로 구성되었다. 상기연구는 일리노이주 인간서비스부(Illinoi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의료급여(Medicaid) 수급, 식품권(Food Stamp) 수급에 대한 자료 등으로부터도 얻어진 정보들로 재구성되었다.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각기 다른 자료들은 공통의 신분확인정보(ID)가 없으므로 확률의존자료병합(probabilistic record matching) 방식으로 개인의 서비스 기록을 연결하였다. 수집이 가능한 확인정보들 여러 개에 근거하여 사례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번호와 같은 신분확인정보가 없는 미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이해된다. 요는 공공행정자료는 그 자체로 그리고 또는 설문조사와 연결되어서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뿐 아니라 여러 공공행정자료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자료로 연구에 활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자면 각종 급여의 수급 현황 등 보유 정보가 연구기관 등 외부에 제공되지 않아 정책 효과분석 등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DW²⁾를 구축하여 통계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일부 업무관련자 외에는 접근이 차단되어 외부에서 통계적 활용이 곤란하였다. 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기반으로 연구를 위한 원시자료의 제공도 그 사례가 매우 적었고, 통계생산을 위한 자료의 활용도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정보통계시스템(이하 DW)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별도의 저장 공간에 구축하고 정형 및 비정형 통계분석 환경을 제공하여 실무자의 다양한 통계요구에 대응하여 그 통계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뿐 아니라 정책 등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분석시스템으로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아직 그 역사가 짧을 탓도 없지 않으나 현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정책실무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 사용 가능한 정책실무자도 중앙정부 서너 부처의 실무자 수십명과 지자체 일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소속 행정 동의 자료만 조회가 가능하고 기타 자료에 대해서만 전국 자료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연구 활용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

2) DW는 data warehouse의 줄임말로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분석을 펼칠 수 있는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료의 활용이라고 하겠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구축된 자료는 복지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연구와 통계생산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공유·공개,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정책기조에 따라 민간에 대한 정보공개 및 공유를 강화하여 정책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도록 하고, 다양한 연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DW 개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통계, 재정추계 등 업무 신설로 다양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에 대한 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정보 중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정보의 제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일정 수준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검토하여야 하는 이슈도 방대하고 정보에 대한 분석과 재분석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제공을 위한 인프라의 마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료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단기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는 없지만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제공을 위한 준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기대효과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부분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포함하여 연구의 개요를 소개하는 서론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소개하는 절로 구성된다. 두 번째 부분은 본론의 첫 부분으로 주요 정책영역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 중 무엇이 제공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정보인가를 검토하는 절들로 구성된다. 정책 영역별로 정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제공 정보를 제안하고 있는데 제공을 우선 고려하는 정보는 원시자료와 통계자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에 대한 수요 파악은 연구 및 정책 수요를 고려할 때 생산해야 할 정보의 유형 및 세부 정보항목을 도출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의 동향에 대한 분석과 해당 분야 연구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 정책영역별로 기존의 연구 방법을

고려하여, 제공 정보의 적절한 구성 방식이나 주기 등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연구에서는 종단자료 구성의 필수적인지, 또는 월간 자료의 수요가 높은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책영역별로 통계자료의 수요도 검토되었는데 연구기관의 수요나 해당 분야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수요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계자료의 영역을 검토하였다. 각 정책영역별로 정보수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이를 종합하여 정보 수요에 대한 논의를 집약하였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제공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정보의 충실성 수준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의 정보 이용 빈도가 활용현황 등을 참조하여 정보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보의 구성과 외부 공유 방안을 마련하였다. 보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세트의 구축방안을 포함하여 제공의 원칙과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한편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 정보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의 연구를 위하여 공유할 원자료 구성과 DW 구성안도 논의하였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숙고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정보 공개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였다.

정보를 제공하고 그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들도 검토하였다. 정보의 제공 경험이 앞서 있는 조직의 경험을 참고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안정성이 유지되는 방안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DM의 기존 이용자와 이후 잠재 이용자들의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과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과 과제를 다룬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정책 설계에 필요한 통계 생산 및 원시자료의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정책의 합리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정책은 그 기획 단계를 비롯하여 운영과정의 합리화,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全) 단계에서 기초 자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

보 활용은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정보 이용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독점이나 통제는 상호 신뢰를 유지하고 높이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공공의 정보를 활용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보의 상호 접근과 대조 등이 보다 용이해지면 정책에 대한 신뢰와 더 나아가 공공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보 공개를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향후 제공과정에서 기초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제공과 관련된 후속 연구 및 제반 준비과정에서 본 연구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공공행정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검토 내용들이 향후 정보제공 과정의 이슈의 해답을 찾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검토, 문헌자료의 수집과 분석, 연구자 의견조사, 그리고 관계자 FGI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하여 사회복지 각 정책연구분야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동향 분석은 활용한 정보 뿐 아니라 연구방법 등을 포괄하는 것이 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등 시스템 구축 관련 선행연구 및 지식정보 발굴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국 내외 공공행정자료의 제공과 활용 사례에 대한 문헌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성과 활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동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 항목, 정보의 안정성 수준, 정보 이용 현황 등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 제공 안을 마련하는데 반영하였다. 대부분의 정보가 사례수가 많지 않거나 응답자의 수가 많지 않아서 내용분석을 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소규모의 조사도 진행되었다.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외 확대 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욕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른 하나의 조사는 각 정책연구분야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연구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의견조사이다. 두 가지 조사 모두 그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역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하였다. 전자는 응답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후자의 경우 해당 조사가 넓은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방대한 자료에 대하여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제한된 대상에게 긴밀한 검토를 요청한 조사였다. 동 조사의 결과는 각 정책영역 정보 수요 분석에 반영하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는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FGI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의견은 정보 수요에 대한 파악 뿐 아니라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향후 정보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DW 이용자 대상으로 FGI 실시하여 현재 사용의 애로점과 개선 희망사항 등에 대하여 파악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주요 조직을 방문 공공행정자료의 제공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법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요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요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 개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정보는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정보통계 시스템인 행복e음 DW, 보육정책 DW,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실적통계자동화시스템, 그리고 전자바우처통계시스템이다. 이를 통칭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명하여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보들이 포괄하는 정책 영역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아동·청소년, 기초노령, 보육, 의료급여 등 14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는 각 정책영역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에 의하여 구하여진 자료들이다.

<표2-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요 정책 영역

사업구분	산출통계 종류	사업구분	산출통계 종류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 아동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
	수급가구		청소년증 발급
	급여액		영유아보육료
	소득, 재산	6. 보육	양육수당
	부양의무자		유아학비
신청탈락 가구	7.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수급	
2. 장애인복지	등록장애인	8. 결혼중개업	업체수
	장애인연금 수급		종업원
	장애수당수급	9. 시설/법인	사회복지시설
	장애아동수급		시설종사자
장애인자녀교육비수급	시설입소자		
3. 의료급여	수급자	10.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사례관리대상		수급자
4. 의사상자	신청자	11. 사후관리	복지사각지대
	인정자		사망의심자

사업구분	산출통계 종류	사업구분	산출통계 종류
5. 아동청소년	요보호아동	12. 자활사업	대상자
	소년소녀가정아동		참여자
	장애입양아동		자활급여
	국내입양아동	13. 상담사례	제공계획수립
	가정위탁보호아동	14. 통합업무	신청자
	지역아동센터		급여지급
	시설보호(퇴소)아동		보장탈피
환수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요 정보 구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는 방대한 종류와 양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박선미(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전 단계의 자료인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DB를 분석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중분류 항목은 공통, 주체, 신청, 조사결정, 소득재산, 수급자, 지급, 사후관리, 시설, 자활지원, 긴급복지지원, 상담사례, 장애인, 아동, 바우처, 결혼중개업, 정부양곡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2-2〉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복지정보통계시스템 통계자료원(DB분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 설명
복지 통합	주체	복지주체	복지주체로서 개인, 가구, 단체, 시설에 대한 기본 정보
		계좌정보	복지주체의 계좌정보, 계좌변경이력
		관계정보	기준이 되는 복지주체와 그와 연관된 주체간의 관계정보
		주체자격	자격취득정보, 자격상태이력, 자격변경이력
		전출입정보	복지주체의 전출입정보, 전출입처리상태정보
	서비스	주체정보연계	복지주체에 대한 공적자료, 가족관계변동, 교정시설, 군복무, 출입국적제, 특별거소선제공, 한국전력수급대상자, 국세청기초수급자, 한국전력수급자 연계정보
		서비스정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제공주체, 수혜대상, 지원유형, 지급대상, 서비스분류 등)
		서비스자격	기초생활수급, 저소득노인,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가족 등 복지서비스를 수혜 받는 복지주체가 가져야 할 자격조건
		기준정보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기준정보 내용(부양의무자판정, 차량가액비용, 재산환산율, 소득재산항목요율, 시가표준액보정율, 복지대상자선정기준 등)
	서비스	기준관리	기준정보에 대한 규칙항목, 기준 값, 계산규칙 등 기준관리정보
수혜서비스		복지주체가 서비스를 신청하여 수혜 받는 서비스 목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 설명
대분류	수혜이력	지원내역	복지서비스를 복지대상자에게 지원한 이력정보
		지원수단	수혜서비스에 대한 지원수단(카드, 표지판, 증) 정보
		수혜이력연계	타 기관에서 수신한 보육수혜서비스, 교과부수혜서비스, 보건수혜서비스, 아동노인수혜서비스 지원내역 연계정보
	소득재산	소득재산목록	복지 주체별 소득, 재산 목록
		소득재산정보연계	타 기관의 공적자료, 금융재산정보 등 소득재산관련 연계정보
		소득재산확인조사	개인별 소득재산 변동관리, 가구별 소득재산 변동대상 정보
	신청	복지상담	민원인 초기상담 정보, 초기상담 시뮬레이션, 신청가능 자격 및 서비스 목록
		신청서식	서비스안내, 신청자격 및 서비스 정보, 신청서 서식정보, 구비서류 목록, 민원관리정보
		복지신청	자격 및 서비스 신청내역, 행정처리 신청 정보
		신청정보연계	보육료 지원 및 카드신청, 카드신청결과, 카드발급여부, 유아 학비 신청 및 기각정보 등 복지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타 기관 연계정보
	조사	조사대상자	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족 관련 정보
		조사관리	조사계획, 조사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
		결정정보	조사를 통한 자격 및 서비스 결정정보
		조사대상자정보연계	복지대상자에 대한 타 기관과의 송수신 연계정보
	급여	급여정보	급여생성기준, 주체별 예상급여, 급여마감 정보
		상계공제	오류 등에 의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의 소급정보, 급여지급액에서 제한 금액 정보 (상계 : 과외지급급여, 공제 : 주거공제/입원공제/양곡공제)
		급여정보연계	급여생성 및 지급과 관련한 타 기관 연계정보(장기입원자정보, 개인별입원일수, 지방재정시스템 정보)
		급여지급	급여서비스 별 급여지급명세, 지급이력정보
	사후관리	기본정보	사후관리대상 사업 및 서비스 기준정보, 관련법 정보
대상자추출		사후관리대상자정보, 사후관리 추출기준, 사후관리 추출결과	
환수관리		환수대상자정보, 환수처리정보, 법적조치내역	
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양곡지원	차상위양곡지원내역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신청내역
		복지자금대여	복지자금대여신청내역, 복지자금대여카드 및 카드이력정보, 복지자금대여상황내역 및 상환내역이력정보
	자활지원	자활대상자	자활지원계획, 자활지원의뢰정보, 자활사업결정정보, 자활참여이행상태, 자활일반인참여자정보
		자활기관	자활실시기관현황, 자활기관사업, 자활인건비, 자활사업단수익금, 자활공동체임금 정보
		자활정보연계	노동부(고용지원센터) 위탁 자활의뢰정보 및 자활참여이행상태정보, 민간 자활기관에 위탁된 자활사업정보 및 자활참여이행상태정보
		자활보고통계	자활사업대상자현황, 자활사업참여현황, 자활성공자현황, 자활근로사업단현황, 자활공동체현황 등 보고통계정보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대상자	긴급복지지원신청정보, 현장조사정보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결정내역, 긴급복지지원내역, 사후조사 및 적정성심사 정보

6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 설명
기초노령연금	관리	관리	
		타지원정보연계	긴급지원전 타지원 수혜확인정보, 긴급지원후 사후조사 및 적정성심사에서 타지원으로 연계한 내역
	서식정보연계	서식정보연계	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에서 수신한 기초노령연금신청서, 미지급연금지급청구서, 수급권상실신고서, 이의신청서, 변경신청서 정보
		자산정보연계	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에 송신할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사항, 증여재산, 금융재산 정보
		신청지급정보연계	기초노령가관정보, 월별지급내역, 지급계좌정보, 소급정보
		사후관리정보연계	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에서 수신한 확인대상자, 공적자료변경, 개인정보변동, 인적사항변동, 소득재산변동, 재소자변동, 부당이득환수 정보
	의료급여	의료급여자격	의료급여수급권자정보, 의료급여서비스이력, 의료급여연장승인대상자정보, 의료급여제한정보, 의료급여전산관리번호발급내역, 의료급여증발급정보
		수급권자지원	요양비지급내역, 산소치료처방전내역, 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정보, 출산전진료비지원내역, 장애인보장구지급내역, 장애인보장구유형기준정보
		본인부담완화	본인부담면제자 및 지원내역, 선택병의원정보, 중증진료등록 및 진료내역
		사례관리	사례관리기초조사서, 수행기록지, 자체평가서 정보
		의료급여비용관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신한 상해요인진료비, 사망상실자진료비, 중복청구진료비, 투여기간관리의약품초과사용내역, 시술관리치료재료초과사용내역 정보와 수신된 정보에 대한 처리결과 및 건강보험공단 통보정보
		의료급여기금관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신한 정산진료비, 본인부담금환급금, 입양아동정산진료비, 장애인의료비및대불금, 의료급여수급권확인내역, 의료급여비용지급결과, 부당이득금환수내역 정보와 수신된 정보에 대한 처리결과
	바우처	바우처신청	바우처서비스 및 바우처카드 신청정보, 대상자결정정보
		바우처변경	바우처대상자 등급변경/중지/환급 신청정보, 바우처대상자 원거리교통비 지원금 신청정보, 바우처카드 재발급신청정보
		바우처기준	바우처제공기관정보, 바우처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및 판정등급기준정보
바우처정보연계		바우처대상자정보, 바우처카드정보 등 바우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관리원과의 송수신 연계정보	
노인	노인건강검진	노인건강진단결과 및 관리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자 정보, 등급외자제공서비스내역	
	경로당운영	경로당대상정보, 경로당회원명단, 경로당보조금정보	
	타지원정보연계	타기관의 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드림스타트사업, 수혜자에 대한 송수신연계정보	
보건지원	자산조사요청	보건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산조사요청정보, 건강보험조회내역	
장애인	장애인등록	장애인진단내역, 장애인복지욕구, 중증장애인위탁심사정보	
	복지카드	LPG할인카드 정지/복원신청정보	
	고속도로 할인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차량정보변경신청정보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장애인보조기구정보 및 장애인보조기구분류변경이력, 장애인보조기구교부부대장정보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물 현황 및 통계, 장애인주차구역과태료정보	
	장애인 정보	국민연금공단과의 중증장애인심사 송수신정보, 국세청으로의 중증장애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 설명
아동 청소년	연계		송신정보, 한국도로공사와의 고속도로할인카드 송수신정보, 조폐공사와의 복지카드발급 송수신정보, 읍면동과의 LPG할인카드변경 송수신정보, 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의료비 및 대불금 수신정보
		장애인 보고통계	장애인대상자현황, 장애인복지지원실적, 장애인급여지원실적, 장애인연금수급자현황및분포 등 보고통계정보
	아동 청소년	입양아동	입양아동대상자정보, 입양아동지원정보, 입양수수료관리정보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아동카드정보, 아동카드상당내역, 아동귀가신청정보
		소년소녀가정	후견인등록정보, 후견인 및 후견대상자 연결정보
		아동발달지원 계좌	아동보호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보
		아동급식	아동급식지원 대상자정보, 급식서비스이력 및 서비스관리정보, 급식사업 자정보, 급식사업자지원금지급정보
		청소년증	청소년증신청정보, 조폐공사와의 청소년증 발급신청 송수신 연계정보
		청소년행사	청소년행사계획, 결과 등 행사관리정보
		청소년특별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역정보
아 동 청 소 년 보고통계	소년소녀가정현황,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 입양아동현황, 아동급식현황, 특별지원청소년현황 등 아동청소년지원서비스에 대한 보고통계		
시설 및 법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복지시설에 대한 설 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신고 등 민원신청정보, 복지시설의 각종 현황 에 대한 대장정보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 정관변경허가신청, 합병허가신청, 임원임면보 고등록, 해산신고 등 민원신청정보, 비영리법인의 각종 현황에 대한 대장 정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등 민원신청 정보, 장기요양기관 시설, 차량, 인력 등 각종 현황에 대한 대장정보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시설신청 및 변경신고, 청소년이용권장시설신청 등 민원신청 정보, 청소년시설준착공정보, 청소년시설 각종 현황에 대한 대장정보
		시설종사자	복지시설종사자현황, 종사자입퇴사정보, 종사자호봉승급정보
		시설입소자	복지시설입소이용신청정보, 시설입소자입퇴원내역, 시설입소자 법률지원내역 및 소송지원내역, 시설입소자동반가족정보
		보조금관리	예산서 및 추경예산서정보, 운영보조금신청 및 정산정보, 기능보강보조 금신청 및 정산정보
		시설보고	후원금품보고정보, 결산보고정보
		민간복지 정보 연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수신하는 보조금교부신청, 정산보고, 예산 서, 추경예산서, 결산보고, 시설입소자 및 종사자, 후원금품내역, 기타 시 설 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송신하는 시설사업코드, 시설공지 사항, 시설인허가정보
		민원신청	결혼중개업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업신고, 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정보
결혼 중개업	결혼중개업체	결혼중개업체 및 사무소정보, 변경이력, 법령위반정보	
	결혼중개업종 사자	결혼중개업종사자정보, 종사자교육수료내역	
	결 혼 중 개 업 보고통계	결혼중개업체보증보험가입현황, 지역별업체현황, 법령위반업체 현황	
청소년	서비스관리	청소년한부모서비스지원내역, 서비스제공변동정보	

6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 설명
	한부모	서비스제공기관	청소년한부모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의사상자지원	의사상자신청관리정보, 의사상자등급기준 및 등급내역, 의사상자급여생성정보
	기타 복지 서비스	사할린한인지원	사할린한인대상자등록정보
상담 사례 관리	안내 상담	상담대상자	상담대상자 기본정보, 방문상담대상자 정보
		초기상담	대상자의 개인 요구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초기 상담정보 (상담유형, 접수경로, 가구유형, 상담내역 등)
		통합상담관리	콜센터상담, 주민서비스포털상담, 새올행정복지통합상담, 접수상담에 대한 복지주체별 통합상담정보
		전자매뉴얼	상담업무에 필요한 서비스 안내 매뉴얼 정보
		보건복지콜센터 정보연계	보건복지콜센터의 상담정보 및 서비스 신청이력 송수신 연계 정보
	서비스 연계	서비스연계관리	민생안정, 민간복지를 통한 민간서비스 연계 신청정보 - 민생안정:상담사례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교회, 자선(후원)단체 등으로 구성 - 민간복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지역복지관(민간시설)으로 구성
		서비스자원	개인, 후견업체, 종교단체, 복지시설 등 서비스 자원, 자원별 제공서비스 정보
		공공보건 서비스이력	공공보건정보시스템에서 수신하는 방문보건서비스 지원 내역
		사회복지시설 정보연계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제공가능 서비스 목록 등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의 송수신 연계 정보
	사례관리 업무지원	사례관리대상자	사례관리대상자 정보, 상태이력
		욕구조사신청	대상자 가족관계 및 구성원 이력, 대상자 주거사항, 욕구영역별 주요 문제 및 원인, 대상자 사정 정보, 사례관리회의 정보
		서비스제공계획	장단기 서비스제공 성과목표, 서비스 제공계획 정보
		서비스점검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대상자에 대한 점검 정보
		종결심사	서비스 종결 처리 정보
	사례관리 지식 지원	사례관리지식 키워드관리	사례관리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지식 정보, 지식분류 정보
		개인지식관리	사용자별 지식 북마크 정보, 상담사례전문가 북마크 정보
		사용자	회원정보, 접근권한 설정 정보
	사례관리 협업 지원	게시판관리	자유게시판, 자료실, Q&A, 커뮤니티, 토론방 등 게시판 설정 정보
		게시물정보	게시판별로 등록된 게시물 정보
		상담사례관리 전문가	지식유형별 상담사례관리 전문가 선정 정보
		설문관리	설문지 문항, 설문결과 정보
		쪽지관리	쪽지 사용자 그룹, 쪽지 송수신 정보

자료 : 박선미(2010),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데이터 현황 조사분석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마켓(Data Market)의 구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DB정보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데이터마켓(Data Market: DM)은 정보의 이용방식에 따라 정형통계, 비정형통계로 구분된다. 정형통계 중 일부는 정기통계로서 기존 현황자료 등에서 정제된 상태로 집계되었던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정보원으로 하는 통계자료 중 가장 신뢰도와 충실도가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M의 시기별 정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2-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M의 보유 정보 구성

날짜	합계	정형통계	비정형통계	조건 검색 (사업)	법정부 제공 통계	비고
2012-6-14	352	185	113	11	-	사후관리현황조회 미개발
2012-7-14	365	185	113	11	-	사후관리현황조회 일부 개발
2012-7-31	376	187	122	11	-	기초생활통계연보 8종 등 추가
2012-8-31	378	187	123	11	-	비정형, 중앙현장조사 각 1종 추가
2012-9-30	381	187	126	11	-	비정형 3종 추가
2012-10-31	381	187	126	11	-	변동없음
2012-11-31	386	192	126	11	-	정형통계 시설/법인 관련 5종 추가
2013-1-7	396	200	121	11	-	정형통계신규9종,삭제1종 비정형통계신규1종,삭제6종 사후관리현황조회신규7종
2013-1-31	396	199	121	11	-	정형통계기초생활보장1종삭제 중앙현장조사1종추가
2013-2-27	400	201	123	11	-	정형통계보육2종추가, 비정형통계기초생활보장2종추가
2013-3-28	395	199	120	11	-	정형통계1종추가,3종삭제 비정형통계3종삭제
2013-4-29	401	202	120	11	-	정형통계6종추가,3종삭제, 사후관리현황조회3종추가
2013-5-29	401	209	120	11	155	'모니터링코너-사후관리현황조회'의 복지사각지대 7종의 보고서를 '정형통계-17.사후관리'로 매뉴경로 수정 법정부제공통계목록추가
2013-6-28	400	208	120	11	154	정형통계 1종 삭제(법정부 제공 통계)

날짜	합계	정형 통계	비정형 통계	조건 검색 (사업)	법정부 제공 통계	비고
2013-8-5	405	207	120	11	153	정형통계 신규 1종, 삭제 2종(법정부 제공 통계), 중앙현장조사 6종 추가
2013-9-3	410	208	122	11	153	정형통계 신규 3종, 비정형통계 2종 추가
2013-10-8	413	210	123	11	153	정형통계 신규 2종, 비정형통계 1종 추가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Data Warehouse)의 이용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Data Warehouse) 사용자는 과거 ‘행복e음’의 사용자로 등록된 자로서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시군구 공무원이다. 이중 시도, 시군구 공무원이 다수이며, 이에 반해 중앙부처 이용자는 전체 31명 수준으로 한정된 상태이다. 중앙부처 이용자 중 보건복지부 소속 사용자는 27개과에 소속되어 있다.

온라인 DW 이용자는 전체 이용 중 시군구가 약 59%로 가장 많고, 읍면동도 조희가 빈번한 이용자 그룹 중 하나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정보를 사용자가 바로 활용하는 것 외에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자료를 재구성하여 집계나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전체 이용자 중 58%로 자료를 요청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감사원이 21%, 외부기관이 14%, 그리고 국회가 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자료요청이 온 경우 그것이 실제 보건복지부의 요청인지 외부기관에서 보건복지부로 자료 협조 요청이 온 것을 다시 요청한 것인지가 완벽히 구분되지 못하였기에 해당 수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다소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야 한다.



제3장 보유정보 수요분석1: 기초보장 및 근로지원정책 영역

제1절 기초보장 분야 정보수요 분석

제2절 근로 및 자활 분야 정보수요 분석

제3절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분야 정보수요 분석

3

보유정보 수요분석1: << 기초보장 및 근로지원정책 영역

제1절 기초보장 분야 정보수요 분석

1. 연구의 동향과 정보 수요 분석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구성과 가족구조의 변화는 빈곤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구의 규모를 확대시켰고,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근로빈곤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사회현상을 동반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와 빈곤계층의 급격한 증가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되었고, 이는 4대 사회보험의 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같은 소득보장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보험화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과 같은 소득보장제도의 정책적 변화 또한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배경이 되었다.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듯 빈곤 연구의 양적 규모 또한 확대되어, 한 연구의 조사결과(이현주 외 2006)에 따르면 2000년대 발표된 논문의 총량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빈곤연구의 주된 흐름은 i)빈곤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연구 ii)빈곤의 실태와 양상에 관한 연구 iii)빈곤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교성·노혜진, 2011). 빈곤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연구들은 빈곤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소개하거나 신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빈곤현상을 정의하고 그에 기초하여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빈곤의 실태와 양상에 관한 연구들은 빈곤층의 규모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연구나 여성, 노인, 아동, 근로빈곤층 등과 같은 특정인구집단별로 빈곤실태를 분석하는 연구, 빈곤의 원인과 진입 및 탈퇴를 정태적,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소득보장제도의 분배효과나 노동공급효과를 다양한 성과측정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해보는 방

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처럼 빈곤연구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증가한 데에는 빈곤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빈곤정책의 확대가 일차적인 배경이겠지만,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적 자료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빈곤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구와 개인들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소득과 지출, 욕구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소득 변화나 노동시장 지위 변화 등에 관한 동태적인 정보의 산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양한 패널자료들이 여러 기관들에서 산출되기 시작하면서, 빈곤연구는 수량적 증가와는 다른 차원에서 연구주제와 방식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것은 빈곤정책 각각에 설정된 목표가 적정 수준에서 잘 달성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그간 확대되어 온 빈곤연구의 주요한 영역을 구성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제도의 도입기와는 다른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단순화해서 표현한다면 제도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속적 투입이 정당한가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빈곤정책으로 기능해온 소득보장제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소득보장의 기본원칙, 혹은 평가의 핵심적 요소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데,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의 충분성, 소득보장의 대상자들 사이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 등이 그러한 요소로서 자주 언급되어 왔다(변재관 외, 1999). 우리나라에서 소득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핵심적 제도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이러한 기본원칙, 혹은 평가의 핵심적 요소들은 최저생활보장원리와 자활조성 원리, 급여와 관련된 원칙으로서의 보충성과 개별성의 원리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1999년 제정된 이래,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되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상당한 규모의 연구를 통해서도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다. 몇 가지의 쟁점을 예시적으로 소개해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는 사각지대의 문제이다. 사각지대의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 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포괄하는데, 이러한 쟁점들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주지하듯이 공공부조의 수급자격은 해당 가구가 가지고 있는 욕구(need)의 크기와 해당 가구가 보유하

고 있는 자원(resource)의 양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해당 가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최저생계비에 기초하여 측정된다면,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구성된 수급자 선정기준을 통해 구체화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인정액 기준은 상당히 복잡하고 세밀한 정보를 통해 산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베이 자료를 통해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홍경준 외(2004)와 허선 외(2009)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구성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각 2003년 1분기의 복지DB 자료와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2006)를 분석했으나,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보의 부재를 한계로 제시한 바 있다. 수급자 선정의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인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쟁점 또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논의되었지만(이현주 외, 2005; 김미곤외,2007; 석재은·유은주, 2007; 김미곤,2009; 박능후, 2010; 이승호·구인회, 2010), 역시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복잡하고 세밀한 정보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을 가진 대상자와 관련된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홍경준, 2002; 구인회, 2005; 김미곤, 2009)에서도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한 제도의 성과 평가를 향후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소득보장제도의 평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부족한 정보와 불충분한 자료에 기인한 분석결과의 적절성 문제가 연구의 한계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거나 단편적인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으며, 근로능력 유무와 판정, 자활사업과 관련된 연구들 역시 일관되게 양질의 자료 확보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 및 가구의 속성을 포함한 정보는 물론, 소득보장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와 그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절실한 이유이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중 원시자료 구성을 위한 수요 전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망라하는 정보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다. 다음에서는 해당분야의 연구와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를 연구진의 판단과 외부 전문가 2인

의 의견을 통합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우선 필수정보 자료는 정보의 중요도가 높아 기초보장 및 소득보장 분야의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정보들을 선정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선택정보 자료는 기초보장 및 소득보장 분야의 연구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보다 풍부한 연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공 가능한 정보들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부가정보 자료는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도는 낮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만이 구축하고 있는 독자적인 정보들을 포함하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는 주제영역-테이블명(entity)-항목명(attribute)의 위계적 구조로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위계적 구조를 반영하여 필요한 정보자료들을 나열하였다.

가. 필수정보 자료

1) 주제

주제영역-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서 ①복지제공주체에 대한 대-중-소분류 코드와 ②출생,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정보, ③가구구성 및 세대구분, 자녀수와 같은 가구정보, ④근로능력, 취업상태, 직종 등과 같은 노동시장 관련 정보, ⑤수급자 구분 코드와 의료급여 관련 코드와 같은 제도 수급관련 정보는 기초보장 및 소득보장 분야의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표3-1〉 주제영역-주체의 필수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복지주체	복지주체ID	
	복지주체대분류코드	
	복지주체중분류코드	
	복지주체소분류코드	
	복지주체식별번호	
	복지주체식별일련번호	
	출생일자	
	건강상태코드	
	복지주체	성별코드
		결혼상태코드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근로능력유무
	근로능력점수
	근로무능력사유코드
	취업상태유형코드
	직종코드
	수급자구분코드
	학력코드
	재학구분코드
	연령
	장애인여부
	종합장애등급호
	의료급여종별코드
	의료급여대상자구분코드
	가구주주체ID
	가구구성코드
	세대구분코드
	가구구성원수
	자녀수
배우자	복지주체ID
	배우자복지주체ID
	주주체와관계코드
	성별코드
	연령
복지주체주소	법정동코드

2) 신청

주제영역- 신청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신청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해당 정보를 통해 수급 신청자의 인적속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수급자 정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 주제영역-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서 ①복지제공주체에 대한 대-중-소분류 코드와 ②출생,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정보, ③가구구성 및 세대구분, 자녀수와 같은 가구정보, ④신청구분코드, 신청사유코드 등과 같은 신청 관련 정보는 이러한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표3-2〉 주제영역-신청의 필수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복지주체ID
	복지주체대분류코드
	복지주체중분류코드
	복지주체소분류코드
	성별코드
	연령
D_신청_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배우자주체ID
	신청일자
	신청보장구분코드
D_신청_신청현황	가구구분코드
	신청ID
	신청일자
	관리행정지역코드
	자치단체구분코드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신청구분코드
	신청사유코드
	신청ID
	신청보장구분코드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구분코드
	신청ID
	신청보장구분코드
	신청일자
신청건수	

3) 수급자

주제영역- 수급자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수급자의 정보는 수급자격과 서비스 제공 현황, 그 결정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격을 가진 대상자와 실제서비스제공 수급자의 비교가 가능하다. 주제영역- 수급자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은 복지제공주체의 인구학적 정보를 기본으로 포함하며, ①각종 소득·재산금액과 소득인정액과 관련된 복지제공주체의 소득산정현황, ② 복지제공주

체의 수급자격 현황 및 결정기준, ③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소득산정현황, ④실제서비스 수급자의 현황과 결정기준 등과 같은 수급자 관련 정보는 소득보장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표3-3〉 주제영역-수급자의 필수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소득산정ID
	복지주체ID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일반재산금액
	금융재산금액
	자동차금액
	부채금액
	소득인정금액
주체자격현황	자격ID
	복지주체ID
	결정ID
	신청ID
	조사ID
	소득산정ID
	관리행정지역코드
	보장기간코드
	장애인보장구분코드
	의료급여종별변경구분코드
	자격상태코드
	자격수
	보장가구원수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결정ID
	자치단체구분코드
	가구구분코드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연령
	성별코드
	결혼상태코드

7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복지주체대분류코드

<표3-3> 주제영역-수급자의 필수정보 목록; 계속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복지주체중분류코드
	복지주체소분류코드
	가구구성코드
	세대구분코드
	수급자구분코드
	의료급여종별코드
	개인근로능력유무
	학력코드
	취업상태유형코드
	건강상태코드
	부양의무자존재유무
	부양능력판정코드
	장애인여부
	배우자주체ID
	가구주주체ID
	기준가구주체ID
	가구구성원수
자녀수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소득산정ID
	복지주체ID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일반재산금액
	금융재산금액
	자동차금액
	부채금액
소득인정금액	
서비스수급자현황	수혜서비스ID
	복지주체ID
	소득산정ID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관리행정지역코드 장애인보장구분코드 수혜서비스시작일자 수혜서비스종료일자 수혜서비스상태코드 지급주기코드 서비스결정자격ID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결정ID 자치단체구분코드 가구구분코드 연령 성별코드 결혼상태코드 복지주체대분류코드 복지주체중분류코드 복지주체소분류코드 가구구성코드 세대구분코드 수급자구분코드 의료급여종별코드 개인근로능력유무 학력코드 취업상태유형코드 건강상태코드 부양의무자존재유무 부양능력판정코드 장애인여부 가구구성원수 자녀수

4) 지급

주제영역- 지급은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서비스 지급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해당 정보를 통해 수혜서비스의 종류와 대상, 금액은 물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과 그 기준까지 파악할 수 있어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주제영역- 지급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서 ①급여의 공제내역과 금액 ② 복지제공주체에의 지급 결정기준, ③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에의 지급기준, ④ 통합수혜서비스지원 등과 같은 정보는 그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표3-4〉 주제영역-지급의 필수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BF_공제내역	상계공제ID
	기준년월
	복지주체ID
	처리금액
	급여지급ID
	수혜주체ID
	지급행정지역코드
	지급금액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결정ID
	가구구성원수
	수급자구분코드
	가구구분코드
	세대구분코드
	연령
	성별코드
	개인근로능력유무
	장애인여부
	배우자주체ID
	가구주주체ID
	기준가구주체ID
	차상위계층여부
	신청사유코드
	의료급여종별코드
	의료급여종별사유코드
자치단체구분코드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복지주체대분류코드 복지주체중분류코드 복지주체소분류코드 가구구성코드 학력코드 취업상태유형코드 건강상태코드 부양의무자존재유무 부양능력판정코드 부양능력판정사유코드 자녀수
D_지급_급여지급	급여지급ID
D_지급_서비스수급자현황	수혜서비스ID 보장기간코드 장애인보장구분코드 수혜가구주체ID 수혜가구원여부 보장가구원수
D_지급_소득산정현황	소득산정ID 복지주체ID
D_지급_자격서비스결정현황	결정ID 자격서비스결정코드 자격서비스결정사유코드
BF_공제내역	상계공제ID
D_지급_행정지역코드	행정지역코드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기준년월 복지주체ID 서비스ID 관리행정지역코드 지급행정지역코드 결정ID 소득산정ID 수급자상태구분코드 미지급여부 당월수급자수 당월보장가구원수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당월지급금액
	당월지급건수
	수혜서비스ID
	기준년월
	서비스ID
	관리행정지역코드
	지급행정지역코드
	수혜주체ID
	지원유형코드
	신청ID
	급여생성금액
	수혜지원값
	지급금액
	지급건수

5) 사후관리

주제영역- 사후관리는 기초보장제도 서비스제공 이후의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주로 복지대상주체의 가구특성과 함께,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영역- 사후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서 ① 복지제공주체에 대한 사후관리 결정기준, ② 사후관리의 현황, ③ 이중수급자 현황 등의 정보는 소득보장제도의 평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표3-5〉 주제영역-사후관리의 필수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D_사후관리_결정기준복지주체	결정ID
	복지주체대분류코드
	복지주체중분류코드
	복지주체소분류코드
	배우자수급여부
	가구구분코드
	수급자구분코드
	차상위계층여부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D_사후관리_결정기준복지주체	부양의무자존재유무 부양능력판정코드 성별코드
사후관리현황	대상자주체ID 사후관리대상유형코드 사후관리처리결과코드
이중수급자현황	수혜주체ID 수혜서비스ID 복지주체대분류코드 복지주체중분류코드 복지주체소분류코드 배우자수급여부 가구구성코드 수급자구분코드 지급액

6) 긴급복지

주제영역- 긴급복지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긴급복지 대상자의 위기상황과 관련된 기본 정보는 물론, 긴급복지의 신고에서부터 지원하기까지의 각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주제영역- 긴급복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서 ①긴급복지신고현황, ② 서비스제공 결정기준과 결정현황, ③ 지원내역과 불가내역, ④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등은 긴급복지 지원 및 과정에 대한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표3-6〉 주제영역-긴급복지의 필수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D_긴급복지_긴급복지신고현황	신청ID 신고일자 관리행정지역코드 주요위기사유코드 증지여부

8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데이터명(entity)	항목명(attribute)
	주대상자주체ID 성별코드 연령
D_긴급복지_자격서비스결정현황	결정ID 관리행정지원코드 대상자주체ID 판정대상가구ID 결정서비스ID 사업구분코드 보장가구원수 소득산정ID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수혜서비스ID 관리행정지역코드 수혜주체ID 서비스ID 지원유형코드 지원일자 지원종료일자 보장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급여생성금액 수혜지원값 지급금액
D_신청_신청현황	신청ID 신청일자 신청구분코드 신청사유코드 자치단체구분코드
결정기준긴급복지신고현황	신청ID 주대상자주체ID 주요위기사유코드 보장가구원수 기초생활수급자여부 긴급복지결정구분코드
긴급복지지원내역현황	수혜서비스ID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긴급복지지원내역현황	지원회차수
	신청ID
	수혜주체ID
	서비스ID
	지원일자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지원유형코드
	지원건수
긴급복지지원불가내역현황	신청ID
	지원불가사유코드
	불가사유내용

나. 선택정보 자료

1) 주체

주제영역- 주체와 관련된 선택정보는 복지제공주체에 대한 필수정보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중 ①복지제공주체의 시작/종료와 사유코드, ②외국인여부, ③구체적인 장애유형과 등급, ④위탁 아동/가정의 유형, ⑤주거유형과 건축상태 등과 같은 정보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 활동에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3-7〉 주제영역-주체의 선택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복지주체	주체시작일자
	주체종료일자
	주체종료사유코드
	거주시작일자
	외국인여부
	주장애유형코드
	주장애등급
	부장애유형코드
	부장애등급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복지주체	위탁가정유형코드
	위탁아동유형코드
	아동발생원인코드
	주거유형코드
	건축상태코드

2) 신청

주제영역- 신청에서의 선택정보는 서비스급여내용과 보장가구원에 대한 신청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서비스급여내용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통해, 개별 복지제공주체의 욕구를 상세히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판단된다.

〈표3-8〉 주제영역-신청의 선택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주체시작일자
	주체종료일자
	주체종료사유코드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외국인여부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특별지원청소년연장지원여부
	특별지원청소년연장지원년도
	정부양곡신청수량코드
	타법의료급여구분코드
	경로연금대상여부
	기초노령배우자구분코드
	기초수급자신청료면제신청여부
	기초수급자전기요금할인신청여부
	기초수급자전화요금할인신청여부
장애인연금배우자동시신청여부	
서비스급여신청보장가구원현황	신청ID
	신청자수

3) 수급자

주제영역- 수급자와 관련된 선택정보는, ‘복지제공주체의 자격’과 ‘실제 서비스수급’이라는 두 영역에서 복지제공주체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중 ①소득산정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②복지제공주체의 결정기준과 같은 정보는 구체적인 연구에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라 판단된다.

〈표3-9〉 주제영역-수급자의 선택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추정소득금액
	일반재산환산금액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금융재산환산금액
	승용차환산금액
	소득평가금액
	재산소득환산금액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총소득금액
	총재산금액
	총공제금액
	총부채금액
서비스수급자현황	수급자수
	보장가구원수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주거유형코드
	건축상태코드
	특례유형코드
	외국인여부
	장애인연금대상여부
	국민연금수급여부
	배우자신청여부
	배우자수급여부
신청사유코드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금융재산환산금액
	승용차환산금액
	소득평가금액
	재산소득환산금액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총소득금액 총재산금액 총공제금액 총부채금액
서비스수급자현황	수급자수 보장가구원수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주거유형코드 건축상태코드 특례유형코드 외국인여부 장애인연금대상여부 국민연금수급여부 배우자신청여부 배우자수급여부 신청사유코드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공제전소득인정금액

4) 지급

주제영역- 지급과 관련된 선택정보는 서비스 지원 및 지급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이 중 ①지급대상과 상태, ②세부적인 지급결정 기준, ③지급제외 사유, ④통합수혜서비스의 상세 제공내용 등의 정보 등은 심층적인 연구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이라 판단된다.

〈표3-10〉 주제영역-지급의 선택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BF_급여지급	지급상태코드 지급대상코드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주거유형코드 외국인여부 장애인연금대상여부 국민연금수급여부 배우자신청여부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배우자수급여부 건축상태코드 특례유형코드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지급제외사유코드 지급제외기타사유내용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서비스지원수단ID 제공상세내용 제공주체구분코드 제공서비스ID 통합급여항목구분코드 지급여부

5) 사후관리/긴급복지

주제영역- 사후관리/긴급복지와 관련된 선택정보는, 외국인여부와 함께 통합수혜 서비스지원의 교육비대상 시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표3-11〉 주제영역-사후관리/긴급복지의 선택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D_사후관리_결정기준복지주체	외국인여부
D_긴급복지_긴급복지신고현황	외국인여부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교육비대상년도 교육비대상분기

다. 부가정보 자료

1) 주체

주제영역- 주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정보는 복지제공주체에 대한 월별정보를 제공한다. 부가정보가 제공하는 월별정보는 복지정보시스템만의 독자적인 정보 중 하나로, 기초소득보장 연구를 정치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주제영역-주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①복지제공주체에 대한 출생,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정보, ②가구구성 및 세대구분, 자녀수와 같은 가구정보, ③근로능력, 취업상태, 직종 등과 같은 노동시장 관련 정보, ④수급자 구분 코드와 의료급여 관련 코드, ⑤배우자의 인구학적 정보 등을 포함한다.

〈표3-12〉 주제영역-주체의 부가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월별복지주체	기준년월
	연령
	건강상태코드
	성별코드
	근로능력유무
	근로능력점수
	근로무능력사유코드
	취업상태유형코드
	직종코드
	수급자구분코드
	외국인여부
	장애인여부
	종합장애등급
	주장애유형코드
	주장애등급
	부장애유형코드
	부장애등급
	의료급여종별코드
	의료급여대상자구분코드
	위탁가정유형코드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월별복지주체	위탁아동유형코드
	아동발생원인코드
	가구구성코드
	세대구분코드
	주거유형코드
	건축상태코드
	가구구성원수
	자녀수
월별복지주체주소	법정동코드
월별배우자	복지주체ID
	배우자복지주체ID
	주주체와관계코드
	성별코드
	연령
월별복지주체	학력코드

2) 신청

주제영역-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정보는 기초노령 미지급연금청구신청 관련 정보와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기초보장 대상가구의 가구원특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중 신청보장가구원현황 정보는 누적신청횟수를 비롯해 각종 기초보장 및 소득보장과 관련된 가구원의 정보를 담고 있어, 수급대상 가구의 욕구분석에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표3-13〉 주제영역-신청의 부가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기초노령미지급연금청구신청현황	신청ID
	수급자주체ID
	미지급개월수
	미지급총금액
	미지급연금청구건수
	미지급연금청구금액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신청보장가구원현황	신청ID
	신청관련주체ID
	누적신청횟수
	세대주외관계코드
	가구주외관계코드
	기초생활보장가구여부
	한부모가족가구여부
	기초노령연금가구여부
	보육가구여부
	특별청소년가구여부
	긴급복지가구여부
	바우처가구여부
	의료급여가구여부
	타법의료급여가구여부
	장애인연금가구여부
	차상위장애인가구여부

3) 수급자

주제영역- 수급자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정보는, 복지수급자격 및 서비스 실수혜자에 대한 월별복지주체와 서비스 결정현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①각종 장애등급 코드, ②의료급여종별코드 및 대상자구분코드, ③위탁가정/위탁아동 유형코드, ④서비스결정사유와 그 일자에 대한 정보 등은 수급자 관련 연구가 충실히 수행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표3-14〉 주제영역-수급자의 부가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복지주체ID
	기준년월
	장애인여부
	종합장애등급
	주장애유형코드
	주장애등급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부장애유형코드 부장애등급 의료급여종별코드 의료급여대상자구분코드 위탁가정유형코드 위탁아동유형코드 아동발생원인코드
D_수급자[자격]_자격서비스결정현황	결정ID 자격서비스결정코드 자격서비스결정사유코드 결정일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복지주체	복지주체ID 장애인여부 종합장애등급 주장애유형코드 주장애등급 부장애유형코드 부장애등급 의료급여종별코드 의료급여대상자구분코드 위탁가정유형코드 위탁아동유형코드 아동발생원인코드
D_수급자[서비스]_자격서비스결정현황	결정ID 자격서비스결정코드 자격서비스결정사유코드 결정일자

4) 지급

주제영역- 지급은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서비스 지급관련 부가적인 정보와 월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중 ①교육비지원관련 지원금액과 해당교육기관 ②월별미지급급여의 현황, ③지급된 복지제공주체에 대한 월별정보 등은 기초보장 및 소득보장의 세부연구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표3-15〉 주제영역-지급의 부가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BF_교육비지원상세	수혜서비스ID
	서비스ID
	교육기관코드
	지급금액
	관리행정지역코드
BF_월별미지급급여현황	기준년월
	복지주체ID
	관리행정지역코드
	미지급연금청구금액
D_지급_월별복지주체	복지주체ID
	종합장애등급
	주장애유형코드
	주장애등급
	부장애유형코드
	부장애등급
	의료급여종별사유코드
	의료급여대상자구분코드
	위탁가정유형코드
	위탁아동유형코드
	아동발생원인코드
D_지급_월별서비스	기준년월
	서비스ID
	사업구분코드
D_지급_월별자격	기준년월
	자격ID

5) 사후관리

주제영역- 사후관리의 부가정보에서는 사망자현황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현황의 정보를 포함한다. 사망자와 관련해서는 ①연금지급여부, ② 사망자지급개월수 등의 정보가, 환수현황에서는 ③환수금액, ④부당이득개월수 등의 정보가 다양한 연구에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표3-16〉 주제영역-사후관리의 부가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사망자현황	연금지급여부
	관리행정지역코드
	사망자지급개월수
환수현황	수급자주체ID
	수혜서비스ID
	환수업무구분코드
	환수대상합계금액
	부당이득개월수

6) 긴급복지

주제영역- 긴급복지의 부가적인 정보는 ①신청시점의 복지제공대상의 인구학적 정보, ②긴급복지 사후의 소득재산조사 현황, ③긴급복지에 대한 환수현황 일자와 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표3-17〉 주제영역-긴급복지의 부가정보 목록

테이블명(entity)	항목명(attribute)
긴급복지사후조사소득재산현황	신청ID
	사후조사차수
	소득재산세분류코드
	소득재산ID
	복지주체ID
	소득재산금액
	소득재산반영내역
긴급복지환수현황	수혜서비스ID
	신청ID
	납부일자
	환수금액

3.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정보 수요 전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광대한 원자료와 더불어 기초보장 및 소득보장 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통계자료 또한 제공한다. 이런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정보는 소득보장 및 빈곤 정책에 대한 제반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제반 특성과 함께 근로능력 유무,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전국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 각 지자체단체가 실시하는 소득보장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도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계목록을 그 중요도에 따라 필수통계 목록과 선택통계 목록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필수통계목록은 통계자료의 중요도가 높아 기초보장 및 소득보장 분야의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통계자료로, 선택통계목록은 필수통계의 세부 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통계자료로 구성하였다. 이하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위계적 구조에 따라 항목별로 목록을 나열하였다.

가. 필수통계 목록

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통계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로서 해당 가구수, 가구원 수, 연령, 성별에 대한 정보를 수급자 종류별로 구분하고 지역/권역별로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분포와 규모에 대해 특성별 파악이 가능하다.

〈표3-1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통계의 필수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수급자통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별 총괄현황
수급자통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수 현황
수급자통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현황
수급자통계	기초생활보장 연령별, 수급자 구분별, 성별 현황

2)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특성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특성과 관련된 필수통계자료로서 수급자 판정과 관련된 장애 및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①장애인의 성별/등급별 특성, ②비장애 수급자의 수급 종류, 교육수준, 취업상태 및 취업훈련, ③근로능력판정 유형, ④ 조진부수급자 사유 등의 통계정보를 포함한다.

〈표3-1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성의 필수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수급자특성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장애인 연령별 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장애인등급별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상태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별, 교육수준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상태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훈련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유형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조진부수급자 사유별 현황

3) 기초생활보장 - 수급가구 특성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가구에 대한 필수통계자료로서, 수급가구의 가구구성, 가구유형, 주거유형 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또한 특례기준에 의한 수급가구의 유형에 대한 정보 역시 상세하게 제공한다.

〈표3-20〉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특성의 필수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특례기준별 현황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 가구구성별 현황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 가구유형별 현황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주거유형별 현황

4) 기초생활보장 - 급여통계

기초생활보장의 급여지급과 관련된 필수통계자료로서, 지출된 급여액과 해당 가구수를 급여 종류별로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의 현황을 월별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표3-21〉 기초생활보장- 급여통계의 필수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급여통계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별 급여지급 현황

5) 기초생활보장 - 소득재산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재산과 관련된 필수통계자료로서, ①소득인정액, ② 각 유형별 소득, ③ 재산, ④ 자동차, ⑤부채상황 등의 정보를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제공하여, 각종 정책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표3-22〉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의 필수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소득재산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및 소득, 재산가액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부채종류별 현황

6)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필수통계자료로서, 부양의무자 존재 유무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유형별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존재함에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의 파악에 용이하여, 부양의무자 관련 정책 개선에 활용될 중요한 통계자료로 판단된다.

〈표3-23〉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필수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유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별 현황

7) 기초생활보장 - 신청/탈락 통계

기초생활보장의 신청 및 탈락과 관련된 필수통계자료로서, 수급자 유형별 기초생활보장 탈피 원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근로빈곤을 포함한 빈곤정책 개선에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3-24〉 기초생활보장- 신청, 탈락 통계의 필수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신청, 탈락 통계	기초생활보장 수급 종류별 보장탈피 원인별 현황

8) 기초생활보장 -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의 급여와 관련된 필수통계자료로서, 각 급여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기초생활보장의 가구 특성별 현황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표3-25〉 기초생활보장- 정기통계의 필수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집행실적 현황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행실적 현황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집행실적 현황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집행실적 현황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집행실적 현황
	기초생활보장 가구원수별, 연령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가구원수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연령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보장탈피자 현황
	기초생활보장 보장탈피자 월별추이

9) 자활사업 -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와 관련된 필수통계자료로서, 자활사업 대상자와 기초소득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①조건부수급자, ②조건부과제외자, ③

조건제시유예자, ④자활특례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3-26〉 자활사업- 대상자의 필수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자활사업 대상자 조건부과제외사유별 현황
	자활사업 대상자 조건제시 유예사유별 현황

10) 자활사업 - 참여자

자활사업의 참여자와 관련된 필수통계자료로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자의 통계정보를 ①지원유형, ②수급유형, ③업종, ④ 성, ⑤연령별로 비교하여 제시한다.

〈표3-27〉 자활사업- 참여자의 필수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참여자	자활사업 참여자 수급유형별,지원유형별 현황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유형별,수급유형별,성별 연령별 현황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유형별,업종별,성별, 연령별 현황
	자활사업 참여자 업종별,수급유형별,성별,연령별 현황
	자활사업 참여자 종료사유별,수급유형별,성별,연령별 현황

11) 자활사업 - 급여

자활사업의 급여와 관련된 필수통계자료로서,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수 및 지급금액의 통계정보를 성별과 지원유형별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표3-28〉 자활사업- 급여의 필수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급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수 및 자활급여 지급 현황

나. 선택통계 목록

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특성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에 대한 부가적인 통계자료로서, 직업유무와 함께 각종소득에서 파악된 직업현황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표3-2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성의 선택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수급자특성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직업현황

2) 기초생활보장 - 수급가구 특성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가구에 대한 부가적인 통계자료로서, 수급가구 유형별 주택의 건축상태와 차량소유현황, 직업유무와 함께 각종소득에서 파악된 직업현황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표3-30〉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특성의 선택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종류별 건축상태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소유 용도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장애인 포함 가구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이행급여특례 실적 현황

3) 기초생활보장 - 급여통계

기초생활보장의 급여지급에 대한 부가적인 통계자료로서, 자녀학비에 대한 통계정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자녀학비 지급금액을 공립/사립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표3-31〉 기초생활보장- 급여통계의 선택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급여통계	기초생활보장 고등학교 자녀학비 실적 현황

4) 기초생활보장 - 소득재산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가적인 통계자료로서, ①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공제유형, ② 부채인정가구수 및 비율, 부채별 현황 등에 대한 통계정보를 포함한다.

〈표3-32〉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의 선택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소득재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소득공제유형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부채별 현황(부양의무자 포함)

5)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가적인 통계자료로서, 각종 기준에 따른 부양의무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표3-33〉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선택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 현황 II

6) 기초생활보장 - 신청/탈락 통계

기초생활보장의 신청 및 탈락에 대한 부가적인 통계자료로서, ①월별 수급자 신청과 선정, ②탈락 가구의 재산과 부채, ③근로능력 판정결과 및 진단서 제출현황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표3-34〉 기초생활보장- 신청, 탈락 통계의 선택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신청, 탈락 통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및 선정 현황(당월) 기초생활보장 탈락 가구의 순재산 현황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근로능력판정용 진단서 제출현황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결과 현황 월별신규신청자의 선정 및 부적합 현황

7) 기초생활보장 -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의 정기통계에 대한 부가적인 통계자료로서, 가구원수별로 ①생계급여 가구수 및 급여금액, ②주거급여 가구수 및 급여금액, ③소득인정액 등의 통계정보를 포함한다.

〈표3-35〉 기초생활보장- 정기통계의 선택통계 목록

중분류	보고서명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및 급여비 현황

4. 적정 공유주기 등 고려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업무처리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청주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1조 제1항)와 직권주의(동법 제 21조 제 2항)의 원칙에 따라 급여 신청이 발생하고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급여의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급여가 실시되고 수급자의 관리가 행해진다. 본 장에서 살펴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초보장 및 소득보장 관련 정보들이 주제영역에 따라 주체, 신청, 수급자, 지급, 사후관리 등으로 구분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러한 업무처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런데 급여의 신청이 특별한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신청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이후의 업무 처리과정 또한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기초보장 및 소득보장 관련 정보들은 일 단위로 새로운 정보들이 생성된다는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가 일상적으로 추가, 갱신된다 할지라도 해당 정보의 공유 또한 일상적으로 추가, 갱신될 수는 없다.

본 글에서는 적정 공유주기를 해당 정보의 특성에 따라 분기 단위와 년 단위로 상정한다. 신청자 및 수급자의 인구학적 정보들과 같이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정보는 연 단위로 공유되는 것이 적절하다. 소득이나 재산, 부채 관련 정보와 고용특성 관련 정보는 변동성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분기단위로 갱신하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기단위, 혹은 연 단위의 공유주기는 자료공유 방식과 연계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자료의 구성과 관련하여 원자료의 각 주제영역과 주제영역 내에서 '복지주체ID', '신청ID', '결정ID' 등 대상인식용 자료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마이크로데이터에서는 이를 통합 혹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근로 및 자활 분야 정보수요 분석

1. 연구 동향과 정보 수요 분석

'자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층에 해당하는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그러므로 자활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급자 지위를 벗어나거나 빈곤을 탈피하도록 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자활 관련 정보는 빈곤층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자활 관련 연구들은 크게 보면 모두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연구주제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하위범주화 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자활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연구 즉, 누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둘째, 자활사업의 관리와 운영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부분은 다시 사업운영의 절차적 합리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와 운영조직과 서비스제공자의 특징을 살피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보다 직접적으로 자활사업의 효과성, 즉 참여자의 탈수급 확률이나 탈빈곤 확률을 측정하는 연구이다. 물론 하나의 연구가 위의 주제들을 망라하여 다루는 경우가 많고, 이에 근거하여 제도개

선을 제안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연구들이 많으나, 주제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위의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 범주의 연구주제가 각각 어떤 정보를 분석자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자.

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다루는 연구³⁾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은 자활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이전 초기상태에 대한 판단은 서비스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자활관련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다루어지는 주제가 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활용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결정하는 조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루어진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되므로, 일차적으로는 각 참여자가 이 중에 어떤 범주로 분류되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 주요 타겟집단인 조건부수급자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가 중요할 수 있다. 대상자의 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자활사업의 정당성 논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는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조건부과를 제외하거나 조건제시를 유예하게 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게 되는데, 이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소득활동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그 외 개인과 가구의 사정 상 당장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일시적인 질병과 부상 여부, 학업 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근거로 활용된 모든 정보들이 망라되어야 한다.

둘째, 참여대상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정보가 아닐지라도,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다루어진다. 이것은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대

3) 여기 해당하는 연구 사례로 김안나 외(2006), 이태진 외(2008, 2012), 노대명 외(2004, 2006) 등이 있음.

한 판단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다. 개인의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혼인상태, 건강상태 등이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나아가 취업잠재력과 인적자본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적극 활용되어 분석되기도 한다. 과거의 수급 경험이나 근로경력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정보이다. 교육훈련 실태도 유용하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가 속한 가구의 특징과 생활상은 탈빈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된다. 가구의 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연령이나 성별, 가구원 수, 가구 형태 등이 기본적인 정보이다. 자녀의 수와 연령, 성인의 수, 소득활동자의 수 등이 일차적일 것이며, 가구주의 특성도 흔히 분석에서 고려되는 요인이다. 그밖에 가구 내에서 자녀의 양육이나 환자의 간병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진다면 누가 담당하며, 비용은 얼마나 들고, 사회적 도움을 받는 것은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이는 자활사업 참여여부와 이후 탈빈곤에 대한 평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가구의 소득과 자산, 부채 등과 관련된 정보도 자활서비스 제공의 초기 시점에서 측정되어야 이후 서비스 자체의 효과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래 <표 3-36>은 김정원 외(2013)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에 포함시킨 내용이다. 이 표는 참여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연구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를 비교적 폭넓게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서는 알 수 없고 반드시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면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런 변수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들을 연구자용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3-36>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설문 문항

조사영역	조사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현황	수급경험, 수급형태, 연간 수급개월수 및 급여액, 탈수급 이후 필요한 급여 종류
자활사업 참여현황	자활사업 참여시기, 자활사업 참여 업종,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일자리 평가, 사업단 이동, 부가노동 여부, 자활사업 불참여부(건강문제), 자활사업 참여시 어려움, 사업단 지속적 참여의사
근로 경험	과거의 직업 경험(기간,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업종, 직종, 월평균소득, 실직사유)

조사영역	조사내용
가구 인적사항 및 소득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학력수준, 가족과 동거여부, 경제활동상태, 장애등록여부, 만성질환여부, 재산소득, 사회보험수급, 개인연금, 사적지원금, 사적물품지원,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농사여부 및 규모
가구 소비/저축 및 자산/부채	생활비, 저축,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금융자산, 부채
주거환경	주택유형, 주택소유, 주거위치, 방 개수, 주택면적, 주거기간, 거주동기, 지속적 거주 의사, 거주지역 평가
건강 및 가족관계	의료보장형태, 건강검진,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횟수, 음주량, 알콜중독, 우울감, 자아 존중감, 가족관계, 의료서비스 이용
자립의지	일에 대한 태도, 탈수급시 생각, 경제적 상황 전망, 구직활동여부, 희망고용형태/임금, 구직시 어려움
사회적 자본	사회적지지, 사회관계망

출처: 김정원 외(2013)

나. 자활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연구⁴⁾

자활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련된 연구에는 자활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연구, 참여자 관리와 제재조치에 관한 연구, 서비스 제공단위 및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첫째, 자활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부부처 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구분하여 소개하기도 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다시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희망리본프로젝트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소개하는 내용은 프로그램별 사업효과성 연구에서도 등장하지만, 단순히 자활사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변천의 과정을 소개하는 목적으로만으로도 이용된다. 둘째,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자의 중도이탈이 중요한 평가지표의 하나가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부문에서는 참여자의 성실참여 여부와 이들에 대한 관리방법이 연구관심이 되기도 한다. 셋째, 서비스 제공단위별로 역할을 진단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성과에 관한 연구, 그리고 자활센터 종사자의 실태와 이들의 의식에 따른 성과의 차이 등에 관한 연구가 지역자활

4) 이에 해당하는 연구사례로...손능수 허만용(2006), 신원식-김민주(2010), 이인재-김성우(2012), 이영범-남승연(2013), 이인재(2010), 김안나 외(2006), 이태진 외(2008, 2012), 김정원(2010, 2011), 김정원이문국-전세나(2011), 김정원이문국-이선민-전세나(2010), 김정원-전세나-김정자-조성은-백하영-김경휘(2013), 김정자(2012), 김병인(2013), 노대명 외(2004, 2006)

센터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활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자활프로그램 또는 사업주체를 단위로 하는 정보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프로그램 또는 사업주체별로 투입되는 자원의 종류와 양, 그리고 참여자들의 평균적인 특성, 그리고 참여의 지속성과 그밖에 사업의 성과를 드러내는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된다.

다.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 연구⁵⁾

자활사업 참여가 참여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영역과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좁게는 얼마나 탈수급이나 탈빈곤에 성공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에서부터 시작하여, 넓게는 자존감이나 건강,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까지 이 범주에 들어온다.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 연구는 위에 언급한 참여자 특성과 자활사업 운영 방식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주로 분석되는 경향이다. 사업의 효과성은 프로그램의 종류나 기관운영방식, 참여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는 연구가 많았다.

노대명(2008)의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성공을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그리고 특례전환자, 타가구원의 취·창업을 포함하여 탈수급한 경우 등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노대명(2010)에서는 자활프로그램별로 취업률과 탈수급률을 비교분석하였다. 백학영 외(2011)의 자활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관 운영과 관련된 지표들, 즉 기관운영비와 전담직원의 규모와 교육훈련 등을 투입지표로 보고, 사례관리와 참여자 교육, 취업알선 활동 등을 활동으로 정의하여 측정하였으며, 자활사업의 매출과 취업·창업을 산출로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자활성공 정도는 탈수급율과 취·창업자 수, 그리고 특정 기간 이후까지 취·창업을 유지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성과평가의 틀을 참고로 활용하면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정보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이에 해당하는 연구사례로 노대명(2008, 2010), 노대명 외(2010), 백학영 외(2011), 남승연(2013), 고경환 외(2009), 노대명 외(2006, 2004), 이태진 외(2008, 2012)

2. 원시자료 구성을 위한 수요 정보

가. 정보 수요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다루어진 연구들과 향후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연구들의 전망을 고려할 때, 원시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들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주제에 부응하여야 한다. 첫째, 저소득층, 그 중에서도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하여 어떤 활성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활성화 조치가 얼마나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개인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와 활성화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기관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를 다시 몇 가지 하위 범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대상자를 판정 결과와 이 과정에서 근거로 삼은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들이 원시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건부 수급자인지 일반수급자인지, 조건부과 제외자나, 조건제시 유예자라면 어떤 사유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둘째, 자활사업 대상자 또는 참여자의 개인 특성을 드러내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성별이나 연령, 학력, 거주지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 뿐 아니라 과거 취업이력과 직업훈련 관련 정보를 비롯한 인적 자원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대상자 또는 참여자의 가구 특성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가구의 소득수준과 자산수준, 가구원의 경제활동참여 양상은 기본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며, 여기에 추가하여 양육이나 돌봄, 그리고 교육을 필요로 하는 가구원에 관한 정보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어떤 기관을 통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기관관련 정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된다. 다섯째, 참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원 유형과 참여한 일자리의 업종 등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활서비스의 결과에 해당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알려져야 하는데, 이 때 현재진행중인 경우와 완료된 경우를 구별하여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활사업 참여 종료 여부 뿐 아니라 탈수급 여부, 그리고 그 사유까지 정확하게

알려져야 한다.

나. 세부 항목

1) 자활사업 참여현황

자활사업 참여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시자료에는 복지주체의 ID별로 <표 3-37>와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3-37> 자활사업 참여현황 데이터(월별) 세부 항목 제안

중요도별	주요 내용
핵심 정보	기준년월, 복지주체ID 성, 연령, 자활대상자 구분코드, 관리행정지역코드 수급자구분, 자격, 자활기관, 자활사업단, 자활위탁구분, 지원유형, 사업종류, 자활이행상태, 종료사유, 근무일수, 자활소득금액, 실비지급금액, 전체지급금액, 인건비, 일별수당, 월별수당
확대 정보	자활참여소득에 대한 공제, 수익금구분코드, 국민연금액, 건강보험액, 고용보험액, 급여중기액, 산재보험액, 전담관리자수당, 장기요양보험금액, 실제근무일수, 자활공동체
참고 정보	-

2) 개인 정보

자활사업 대상자 및 참여자 개인별 데이터는 <표 3-38>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3-38> 자활사업 대상자 및 참여자 개인 데이터의 세부 항목 제안

중요도별	주요 내용
핵심 정보	주체ID, 가구ID, 출생년월, 건강상태, 근로능력유무, 근로무능력사유, 수급자구분코드, 학력
확대 정보	결혼상태, 근로능력점수, 취업상태, 직종, 재학여부, 장애인여부, 종합장애등급, 주장애유형, 배우자ID, 행정구역
참고 정보	-

3) 가구 정보

가구 데이터 자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속한 가구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의 크기 문제를 고려하여 각 사업 참여자가 속한 가구정보를 각각 분리하여 여러 개의 가구 데이터세트를 만들어도 괜찮겠지만 가능하면 그 형식과 정보의 내용은 통일할 것을 제안한다.

〈표3-39〉 가구 데이터의 세부 항목 제안

중요도별	주요 내용
핵심 정보	가구유형, 가구원수, 가구주 주요특성, 연령대별 자녀수, 세대구분, 주거유형, 수급자격 관련 정보 중에서 소득산정현황(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재산현황(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공제금액, 재산의 소득환산금액, 부양의무자 존재유무, 부양능력판정, 부양능력판정사유, 차상위계층여부
확대 정보	-
참고 정보	-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보유 정보 중 자활 및 근로 지원 정책 영역에서 연구를 위한 원시자료를 구성할 때, 그 수요가 예상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기존 연구 동향과 연구자의 의견을 고려할 때 정보 중 그 수요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 정보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아래 표에서 우선순위로 표시된 것은 1이 원시자료 구성 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 2는 원시자료 구성에서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자료의 확대 구성에서 포괄되었으면 하는 수준의 추천 정보이다.

〈표3-40〉 자활 및 근로 지원정책 영역 연구의 정보 수요 분석결과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우선순위
01.주체	복지주체	복지주체ID	1
		복지주체대분류코드	2
		복지주체중분류코드	2
		복지주체소분류코드	2
01.주체	복지주체	복지주체식별번호	1

1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우선순위
		복지주체식별일련번호	1
		기준가구주체ID	1
		소재행정지역코드	1
		주체시작일자	2
		주체종료일자	2
		주체종료사유코드	2
		출생일자	2
		주민등록기준출생일자	1
		건강상태코드	1
		성별코드	1
		결혼상태코드	2
		근로능력유무	1
		근로능력점수	1
		근로무능력사유코드	1
		근로능력판정일자	1
		취업상태유형코드	1
		직종코드	2
		수급자구분코드	1
		학력코드	1
		재학구분코드	2
		배우자주체ID	1
		장애인여부	2
		종합장애등급	2
		주장애유형코드	2
		가구주주체ID	1
		가구구성코드	1
		세대구분코드	1
		주거유형코드	1
		가구구성원수	1
		자녀수	2
	월별복지주체	복지주체대분류코드	1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소득산정ID	3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복지주체ID	3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소득산정단위코드	3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근로소득금액	3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사업소득금액	3

제3장 보유정보 수요분석1: 기초보장 및 근로지원정책 영역113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우선순위
		재산소득금액	3
		기타소득금액	3
		추정소득금액	3
		일반재산금액	3
		금융재산금액	3
		자동차금액	3
		소득공제금액	3
		일반재산공제금액	3
		금융재산공제금액	3
		부채금액	3
		일반재산환산금액	3
		금융재산환산금액	3
		승용차환산금액	3
		소득평가금액	3
		재산소득환산금액	3
		소득인정금액	3
		공제전소득인정금액	3
		총소득금액	3
		총재산금액	3
		총공제금액	3
		총부채금액	3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복지주체ID	3
		기준년월	3
		장애인여부	3
		종합장애등급	3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결정ID	3
		자치단체구분코드	3
		가구구분코드	3
		연령	3
		성별코드	3
		가구구성코드	3
		세대구분코드	3
		수급자구분코드	3
		특례유형코드	3
		개인근로능력유무	3
		근로능력판정사유코드	3

1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우선순위
		학력코드	3
		취업상태유형코드	3
		건강상태코드	3
		부양의무자존재유무	3
		부양능력판정코드	3
		부양능력판정사유코드	3
06.지급	BF_급여지급	급여지급ID	1
		계좌식별번호	1
수혜주체ID		1	
지급행정지역코드		1	
지급일자		1	
지급금액		1	
최종적재일시		1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결정ID
		가구구성원수	1
		수급자구분코드	1
		가구구분코드	1
		세대구분코드	1
		연령	1
		성별코드	1
		출생일자	1
		주민등록기준출생일자	1
		주거유형코드	1
		개인근로능력유무	1
		장애인여부	1
		외국인여부	1
		배우자수급여부	1
		배우자주체ID	1
		가구주주체ID	1
		기준가구주체ID	1
		차상위계층여부	1
		가구구성코드	1
		특례유형코드	1
		학력코드	1

제3장 보유정보 수요분석1: 기초보장 및 근로지원정책 영역115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우선순위
		취업상태유형코드	1
		건강상태코드	1
		부양의무자존재유무	1
		부양능력판정코드	1
		부양능력판정사유코드	1
		자녀수	1
	D_지급_급여지급	급여지급ID	1
	D_지급_서비스수급자현황	기준년월	1
		수혜서비스ID	1
		보장기간코드	1
	D_지급_소득산정현황	소득산정ID	1
		복지주체ID	1
		신청ID	1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자활참여년월	1
		복지주체ID	1
		성별코드	1
		연령	1
		수급자구분	1
		자격	1
		관리행정지역	1
		자활기관주체ID	1
		자활사업단주체ID	1
		자활위탁구분코드	1
		자활지원유형코드	1
		자활사업종류코드	1
		자활이행상태코드	1
		자활계획종료사유코드	1
		자활참여소득에대한공제구분코드	2
		자활수익금구분코드	2
		실제근무일수	2
		근무일수	1
		자활공동체여부	1
		국민연금액	2
		건강보험액	2
		고용보험액	2
		급여중지액	2
		산재보험액	2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우선순위
		자활소득금액	1
		실비지급금액	1
		전체지급금액	1
		인건비	1
		일별수당	1
		월별수당	1
		전담관리자수당금액	2
		장기요양보험금액	2
		지급금액	1
		최종적재일시	1
자활대상자현황		기준년월	1
		복지주체ID	1
		관리행정지역코드	1
		성별코드	1
		연령	1
		자격ID	1
		자활대상자구분코드	1
		최종적재일시	1

3.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한 정보의 수요 전망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자활사업, 나아가서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자활사업의 내용과 참여자, 효과성에 대한 통계정보가 적극 활용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책 자료와 보도자료에 등장하는 정보들 중에서는 프로그램별 참여자와 예산, 탈수급인원 등이 중요하게 취급된다.⁶⁾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자활사업 관련 통계자료는 <표 3-41>과 같다.

6) 복지부 홈페이지 이외에 추가적인 사례로 국회예산정책처(2012) 등이 있음.

〈표3-41〉 자활사업 관련 정형통계

지표명	지표내용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자 = 미참여자 + 희망참여자] + [근로능력 있는 자 = 조건부과제외자 + 조건제시유예자 + 조건부수급자(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 자활특례자 + 기타], 차상위계층, 일반인
자활사업 대상자 조건부과제외사유별 현황	양육간병, 대학생, 직업재활참여(장애), 주3일이상 근로자, 자영업자, 입영예정자, 전역자, 교도소출소자, 보장시설퇴소자, 학교졸업/중퇴자, 치료회복중인자, 약물중독자
자활사업 대상자 조건제시 유예사유별 현황	5-6급 장애인, 도서벽지거주자, 질병부상사유자, 북한이탈주민, 영어보육,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사회봉사명령이행자, 외국인수급자, 정신질환 알콜중독 의심자, 집중치료필요자, 계절별 질병악화우려자, 임신부(분만6개월까지), 공익근무요원, 소득활동유지필요자, 직업훈련중인자, 20세이상 중/고/대학생
자활사업 참여자 수급유형별, 지원유형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유형별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인턴형+근로유지형+자활인큐베이팅] + 희망리본프로젝트, 지역자활센터 사업지원, 사회복지시설 자활사업지원,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 수급유형별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기타 • 자활기관별 = 고용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사회복지기관, 기타, 시군구직접시행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유형별, 수급유형별, 성별, 연령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유형별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인턴형+근로유지형+자활인큐베이팅] + 희망리본프로젝트, 지역자활센터 사업지원, 사회복지시설 자활사업지원,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 수급유형별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기타 • 성/연령별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유형별, 업종별, 성별, 연령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 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도시락, 세차, 영농, 택배, 세탁, 음식, 장애통합, 산모도우미, 환경정비, 기타
자활사업 참여자 업종별, 수급유형별, 성별, 연령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 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도시락, 세차, 영농, 택배, 세탁, 음식, 장애통합, 산모도우미, 환경정비, 기타 • 수급유형별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기타
자활사업 참여자 종료사유별, 수급유형별, 성별, 연령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료사유별 = 기초수급유지 = [취업 + 창업], 탈수급 = [취업 + 가족취업 + 기타], 자활사업종료, 근로능력상실, 기타기관성공자-취창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및 자활급여 지급 현황	지원유형별 급여액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자활사업 관련 정형통계는 이미 핵심적인 분류체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자활사업 대상자의 현황과 참여여부, 비참여사유 등이 이미 포괄되어 있고, 수급유형, 지원유형과 업종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고, 자활사업의 종료 사유도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분류체계가 더 필요하다기 보다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좀 더 다양하게 결합하여 표로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제시한 분류체계별로 해당자의 수와 비율, 그리고 지원 금액을 손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수급유형별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기타)
- 지원유형별 (자활근로(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희망리본, 지역자활..)
- 업종별
- 자활기관별
- 종료사유별
- 성별
- 연령별

4. 정보의 구성방식과 주기 등 제안

정보의 구성은 3개의 데이터세트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표 3-42). 첫째는 서비스 수급현황 데이터로서, 행정일선에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 데이터세트는 월별로 구성하여,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는데 이용하는 한편, 이 정보를 이용하여 참여 기간을 계산하면 자활사업의 효과평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정보가 된다. 자활사업 대상자와 참여자 개인이 매 월 별로 어떤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상세하게 기록한 데이터베이스이며, 특정 달에 참여가 종료되었다면 그 사유를 적시한다.

두 번째 데이터 세트는 개인별로 관련정보를 망라하여 정리한 데이터이다. 자활사업 참여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수집된 정보와 지급하는 시점에서 수집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인적자본 변수를 포괄한다. 참여기간(spell)

별로 1회 제공한다. 즉, 자활사업 참여를 종료한 후 다시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자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인 업데이트는 없는 것으로 한다.

세 번째 데이터 세트는 가구정보를 망라한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자활사업 참여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전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를 결합하여 가구별 필요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제의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원의 구성, 그리고 가구원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들은 연단위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표3-42〉 데이터 구성 방식, 주기 및 주요 내용 요약

데이터 명	주기 및 주요내용
자활사업 참여현황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 월별 • 주요내용: 수급유형, 급여액, 지원유형, 업종, 자활기관, 성 및 연령 자활참여 종료된 달의 경우: 종료사유
자활사업 대상자 개인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참여기간(spell)별 1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초기 시점의 상태변수) • 주요내용: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적자본변수, 과거 이력 등
가구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 연간 (1년 중 특정한 기준 시점에서 가구의 특성 측정) • 주요내용: 가구소득, 가구원 수 및 ID, 가구원의 소득활동 및 기타 상태 등

제3절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분야 정보수요 분석

1. 연구동향과 정보수요분석

의료급여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진료비 지출이나 의료이용과 관련 적정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보장성과 관련된 내용과 의료급여 대상자 이외에 건강보험내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범위를 측정하는 연구 등이었다. 그 중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연구은 의료이용 관련 연구,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태,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의료이용 관련 연구

의료급여제도 연구 중 의료이용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권리의식과 더불어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이 많았다. 특히 2002년 약 2조 정도의 예산을 쓰던 것이 2006년에 약 4조로 두배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원인과 대안 마련하는 연구들이었다. 최근에도 의료급여 운영 상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의료이용 등에 대한 실태 등의 연구 등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들로는 신영석 외(2004) 의료급여환자 의료지출실태 및 급여개선 방안, 지영건 외(2006)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방안, 김의숙 외(2006) 의료급여 장기이용환자의 의료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그리고 최근에는 신현웅(2010년)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친 영향, 신현웅(2011)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실태분석, 신현웅(2012) 의료급여 공급자 의료급여 공급자 진료행태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의 연구들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Data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사용된 변수로는 의료이용과 관련된 주상병코드, 부상병코드,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방문일수, 입원일수, 진료일수, 입내원 구분코드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위해 기본적인 자격정보는 세대ID, 증번호, 구성원 ID, 구성원 성·연령, 자격구분코드, 장애여부, 보장기관코드, 읍면동코드, 종별구분, 유형코드, 자격취득일, 자격취득사유, 자격상실일, 자격상실사유 등이었다.

그리고 의료이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 들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여부, 만성질환여부,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취업여부, 빈곤여부, 단독가구 여부, 기초보장 수급여부, 의료보장유형, 건강검진 여부, 외래진료 여부, 입원여부, 생활비, 의료비 과부담여부, 주거지역 등의 변수들이었다.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 지역별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수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의료인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16개 지역별 의료기관수나 의사수 등의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의 정보를 통해 수집되었다.

〈표3-43〉 의료이용 관련 연구 등에 사용된 변수 들 예시

자격관련변수												
세대ID 증번호	구성원 I.D. 주민번호	구성원 연령	자격구 분코드	장애 여부	보장기 관코드	읍면동 코드	종별 구분	유형 코드	자격 취득일	자격취 득사유	자격 상실일	자격상 실사유
의료이용 관련변수												
구성원 I.D. 주민번호	입내원 구분코드	요양기관 코드	주상병 코드	부상병코 드	지급 총진료비	지급 급여비	내원 일수	진료일수	진료 개시일			
의료이용에 영향을 준 요소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여부	만성질환	여부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취업여부	빈곤여부			
단독가구 여부	기초보장 수급여부	의료보장 유형	건강검진 여부	외래진료여 부	입원여부	생활비	의료비 과부담여부	주거지역				

나.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 관련 연구 중에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관련된 연구 들이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대상자 들의 건강한 의료이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의료급여 예산의 절감 등의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하였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대부분의 보건의료분야에서 사례관리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같이 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 절감이 도입 목적이다. 매년 10% 이상을 상회하는 의료급여 비용의 가파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만족도나 건강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 약 27%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이며,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장애인 가구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은 학력수준을 비롯한 건강상태, 자기건강관리 능력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⁷⁾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며,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이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취지인 것이다.

7) 김익숙 등. 의료급여 장기이용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2006)

2003년에 의료급여사례관리요원(현재는 의료급여관리사)이라는 이름으로 채용된 28명의 인력에 의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현재 232개 지자체에 약 450여명의 의료급여관리사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이에 대한 효과라든지 의료급여 사례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매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관련된 정보 들에 대해서도 행복 e음 등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신영석(2005)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효과분석 연구에서는 사례관리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 들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ID, 대상자 분류코드, 신규등록 여부, 전화상담 건수, 방문상담 건수, 자원연계건수, 서신상담 건수 등 실질적인 사례 관리와 관련된 변수 들을 활용하였으며, 사례관리를 받은 사람들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 분석을 위해서는 표1에 제시된 의료이용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최근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관련하여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들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행복 e 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장기관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하는 정보로는 수급권자 진료비, 급여일수, 신규수급자 상담률, 장기입원 기관관리 실적, 사례관리 종결실적, 외래사례관리실적, 장기입원자 수행 실적, 장기원자 퇴원실적 등(표 2참조)이며 이중에서 행복 e 음에서 얻는 자료는 신규수급자 상담률, 장기입원 기관관리 실적, 사례관리 종결실적, 외래사례관리실적, 장기입원자 수행실적, 장기원자 퇴원실적 등이다.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자 평가지표와 기초자료 수집을 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3-44>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자 평가지표 예시

성과지표	평가기준	기초자료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 급여일수	◆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 급여일수 실적 ※ 기준 - 심사결정지급기준, 총 진료비, 진료실입원	건강보험공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 시군구</th> <th colspan="2">진료비 순위</th> <th colspan="2">급여일수 순위</th> <th rowspan="2"> $(A \times 0.25) +$ $(B \times 0.25) +$ $(C \times 0.25) +$ $(D \times 0.25)$ </th> </tr> <tr> <th>전년대비 증감률(A)</th> <th>1인당 진료비(B)</th> <th>전년대비 증감률(C)</th> <th>1인당 급여일수(D)</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시군구	진료비 순위		급여일수 순위		$(A \times 0.25) +$ $(B \times 0.25) +$ $(C \times 0.25) +$ $(D \times 0.25)$	전년대비 증감률(A)	1인당 진료비(B)	전년대비 증감률(C)	1인당 급여일수(D)				
구분 시군구	진료비 순위			급여일수 순위		$(A \times 0.25) +$ $(B \times 0.25) +$ $(C \times 0.25) +$ $(D \times 0.25)$										
	전년대비 증감률(A)	1인당 진료비(B)	전년대비 증감률(C)	1인당 급여일수(D)												
신규수급자 의료이용	◆ 신규수급자 관리율 - $\{(종결자 수 / 200명) \times 100\} / \text{관리사수(배치현원)}$	행복 e음 보장기관														

성과지표	평가기준	기초자료																						
안내 및 상담률																								
장기입원 간담회 개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입원 기관관리 실적 - 관할 의료기관 및 시설대상 간담회(교육) 실시 여부 	보장기관																						
인원 및 수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관리 종결실적(고위험군 + 장기입원자) - 지역유형을 고려한 목표량 대비 달성률 평가 - 군별 최소기준인원 준수 	행복 e음 보장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사례관리 수행실적 - 고위험군 일반종결자에 대한 수행률 평가 - 수행방법 별 가중치 부여 : 방문(80%) + 전화(20%) 	행복 e음																						
장기입원 관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입원자 수행실적 - 일반·초기 종결자에 대한 수행률 평가 - 수행방법 별 가중치 부여 : 방문(80%) + 전화(20%) 	행복 e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입원자 퇴원실적 - 목표관리인원수 대비 퇴원을 평가 	행복 e음 보장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입원사례관리 심사연계 실적 - 사례관리 지역유형 별 의뢰 횟수 또는 인원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보장기관 심사평가원																						
의료이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종결자 전년대비 의료이용 증감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 관리사명</th> <th colspan="3">고위험군 1인당 평균 진료비</th> <th colspan="3">고위험군 1인당 평균 급여일수</th> <th rowspan="2">(A×0.5) + (B×0.5)</th> </tr> <tr> <th>12년</th> <th>13년</th> <th>증감률(A)</th> <th>12년</th> <th>13년</th> <th>증감률(B)</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관리사명	고위험군 1인당 평균 진료비			고위험군 1인당 평균 급여일수			(A×0.5) + (B×0.5)	12년	13년	증감률(A)	12년	13년	증감률(B)									건강보험공단
구분 관리사명	고위험군 1인당 평균 진료비			고위험군 1인당 평균 급여일수			(A×0.5) + (B×0.5)																	
	12년	13년	증감률(A)	12년	13년	증감률(B)																		
집중관리군 관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관리군 종결실적(인원수) - 목표인원수 대비 달성률 평가 	보장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관리군 전년대비 의료이용 증감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 관리사명</th> <th colspan="3">집중관리군 1인당 평균 진료비</th> <th colspan="3">집중관리군 1인당 평균 급여일수</th> <th rowspan="2">(A×0.5) + (B×0.5)</th> </tr> <tr> <th>12년</th> <th>13년</th> <th>증감률(A)</th> <th>12년</th> <th>13년</th> <th>증감률(B)</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관리사명	집중관리군 1인당 평균 진료비			집중관리군 1인당 평균 급여일수			(A×0.5) + (B×0.5)	12년	13년	증감률(A)	12년	13년	증감률(B)									건강보험공단
구분 관리사명	집중관리군 1인당 평균 진료비			집중관리군 1인당 평균 급여일수			(A×0.5) + (B×0.5)																	
	12년	13년	증감률(A)	12년	13년	증감률(B)																		
부정청구기관 및 부정수급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구기관 및 부정수급자 신고(처리) 실적 	보장기관																						
경력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 별 가점 부여 	복지부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중 원시자료 수요 전망

가. 연구 수요 전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수요전망은 기존 의료급여제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대상자 선정, 사례관리 등 다양한 분야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들은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국민기초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보와 의료급여와 관련된 의료비 지출현황, 사례관리 정보 등 의료급여의 직접적인 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공통, 주체, 신청, 수급자, 그리고 의료급여 관련 정보로 구분하여 연구 수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공통 영역

공통영역에서는 근로무능력 사유, 소득재산보유, 근로능력판정 사유, 장애유형코드, 보장구분, 주거급여 판정코드, 건강상태, 결혼상태 등이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특히 의료급여와 관련하여는 최근 맞춤형 복지체제로 개선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의료욕구가 있는 계층 여부를 근로능력여부로 판단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어 근로무능력 사유와 근로능력 판정 사유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분위의 경우도 의료급여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이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의료급여와 관련된 내용 중 의료이용과 관련된 연구 들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료이용과는 건강상태가 관련이 깊어 건강상태 변수도 중요하다. 그리고 분석의 설명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장애여부, 결혼상태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5〉 공통 영역의 주요 의료급여정보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0.공통	D_근로무능력 사유코드	근로무능력 사유코드
	D_상위서비스	제공주체 구분코드
	D_소득재산보유구분코드	소득재산보유구분코드
	D_제공주체 구분코드	제공주체 구분코드
	D_근로능력판정 사유코드	근로능력판정 사유코드
	D_가구 구분코드	가구 구분코드
	D_신청 보장구분코드	신청 보장구분코드
	D_장애유형코드	장애유형코드
00.공통	D_종합장애등급코드	종합장애등급코드
	D_수급권상실 사유코드	수급권상실 사유코드
	D_보장구분코드	보장구분코드
	D_소득분위 코드	소득분위 코드
	D_주거급여판정 코드	주거급여판정 코드
	D_의료급여종별 코드	의료급여종별 코드
	D_건강상태코드	건강상태코드
	D_결혼상태코드	결혼상태코드

2) 주체 영역

주체관련 영역에서는 의료급여 연구수요와 관련해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요인과 관련된 건강상태, 경제사회학적인 변수, 그리고 인구학적인 특성 관련된 변수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 관련 변수는 건강상태라는 변수가 필요하며, 경제사회학적 변수들로는 취업상태, 직종코드, 학력, 결혼, 종교 등의 변수가 필요하다. 인구학적인 특성은 성, 연령 뿐만아니라 장애인여부, 외국인여부, 근로능력여부 등의 변수가 필요하다.

의료이용이 이외에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연구나 사례관리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급자 자격, 의료급여 대상자 종별구분, 근로능력여부, 가구원수, 자녀수, 장애인 관련 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지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ID, 가구주 주체 ID 등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46〉 주체 영역의 주요 의료급여정보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1.주체	복지주체	복지주체ID
		복지주체대분류코드
		복지주체식별번호
		출생일자
		주민등록기준출생일자
		건강상태코드
		성별코드
		결혼상태코드
		종교코드
		근로능력유무
		근로능력접수
		근로무능력사유코드
		근로능력판정일자
		취업상태유형코드
		직종코드
		수급자구분코드
		학력코드
		외국인여부
		연령
		장애인여부
		종합장애등급
		종합장애등급호
		주장애유형코드
		주장애등급
		부장애유형코드
		부장애등급
		의료급여종별코드
		의료급여대상자구분코드
		가구주주체ID
		가구구성코드
		세대구분코드
		주거유형코드
		가구구성원수
자녀수		

3) 신청영역

의료급여 연구수요와 관련하여 신청영역에서는 크게 신청 복지추체, 서비스급여내용, 신청관련인 현황, 신청보장자구원 현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복지추체, 신청인, 신청가구 등을 식별 할 수 있는 ID 등은 연구에 필수적인 사항이며, 복지추체나 보장가구의 경우는 기본적인 성, 연령과 외국인 여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영역에서도 신청관련인 현황과 신청보장가구현황이 매우 중요한 테이블로 판단된다. 신청관련인 현황은 주제영역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종류, 장애유형, 중증장애여부, 보행장애여부 등 장애관련 변수들과 건강상태, 질병코드, 질병기타내용 등 건강관련 변수 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력, 직종, 종교, 취업유형 등 경제 사회적 요인변수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보장가구의 특성은 신청가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대상가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수로 기초생활보장가구여부, 한부모가족가구여부, 기초노령연금가구여부, 보육가구여부, 특별청소년가구여부, 긴급복지가구여부, 바우처가구여부, 의료급여가구여부, 타법의료급여가구여부, 장애인연금가구여부, 차상위장애인가구여부 등이 필요하다.

〈표 3-47〉 신청 영역의 주요 의료급여정보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2.신청	D_신청_복지추체[신청시점]	복지추체ID 복지추체대분류코드 성별코드 외국인여부 연령
	D_신청_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신청ID 보장구분지원내역일련번호 신청일자 신청보장구분코드 지원내용구분코드 가구구분코드
	D_신청_신청관련인현황	신청ID 신청관련추체ID
	D_신청_신청보장가구원현황	신청ID 신청관련추체ID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D_신청_신청현황		연령
		성별코드
		외국인여부
신청관련인현황		신청ID
		신청일자
		관리행정지역코드
신청보장가구원현황		신청시군구행정지역코드
		주장에등급코드
		장애종류코드
		장애유형코드
		중증장애여부
		보행장애여부
		의료급여종별코드
		상이등록자등급코드
		상이등록자여부
		독거장애인여부
		건강상태코드
		질병코드
		질병기타내용
		학력코드
		직종코드
		종교코드
		취업유형코드
		근로능력유무코드
		근로능력없음사유코드
		근로능력없음사유내용
		기초생활보장가구여부
한부모가족가구여부		
기초노령연금가구여부		
보육가구여부		
특별청소년가구여부		
긴급복지가구여부		
바우처가구여부		
의료급여가구여부		
타법의료급여가구여부		
장애인연금가구여부		
차상위장애인가구여부		

4) 수급자 영역

의료급여 관련연구에서 수급자 영역의 변수들이 매우 중요한 변수들이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각종 소득 자료, 재산관련 자료, 자동차 및 부채 등 수급자의 소득산정현황 자료가 필수적이다. 특히 의료급여 연구에서도 대상자

선정과 관련 소득, 재산, 부채 등이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소득금액 중에서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등 자세한 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방식에서 소득별 반영 비율이 달라 구체적인 소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의 경우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요소로 활용되고 있어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금액 등 자세한 자산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들은 대상자 선정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의료이용과 관련된 특성 분석에서도 유용한 자료 들로 많은 의료급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각종 소득자료와 재산 등의 정보는 매우 유용하다. 소득 산정이외에는 주체 자격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종별 변경구분이나 장애인 보장구 등의 변수들도 필요하다.

〈표 3-48〉 수급자 영역의 주요 의료급여정보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소득산정ID
		복지주체ID
		소득산정단위코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추정소득금액
		일반재산금액
		금융재산금액
		자동차금액
		소득공제금액
		일반재산공제금액
		금융재산공제금액
		부채금액
		일반재산환산금액
		금융재산환산금액
		승용차환산금액
		소득평가금액
		재산소득환산금액
소득인정금액		
공제전소득인정금액		
총소득금액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총재산금액
		총공제금액
		총부채금액
		자격ID
		복지주체ID
		보장기간코드
		장애인보장구분코드
		의료급여종별변경구분코드
		자격취득일자
		최초자격취득일자
		자격상태코드
		보장가구원수

5) 의료급여 영역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영역은 당연히 의료급여 관련 연구수요에 꼭 필요한 변수들이다. 의료급여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료비 지급내역과 관련된 정보는 필수적이며, 추가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지급되는 보장구와 관련된 내역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요양비지급내역은 선행연구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급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해서는 의료비용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상병코드, 요양비 진료구분코드, 요양비지급액, 진료기간 일수 등 의료이용 관련 자료 등 요양비지급내역 현황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보장구급여지급내역 등 필요한 변수 들은 다음 표에서와 같은 항목들이다.

〈표 3-49〉 수급자 영역의 주요 의료급여정보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19.의료급여	BF_보장구급여지급내역현황	보장구분류코드
		기준년월
		보장구유형코드
		보장구구분코드
		의료급여종별코드
		보장구용도내용
		보장구구입가격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19.의료급여	BF_요양비지급내역현황	주장애유형코드
		본인부담금액
		의료급여지급금액
		관리행정지역코드
		상병코드
		의료급여종별코드
		요양비진료구분코드
		의료급여자격상태코드
		요양비지급액
		진료기간일수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 수요 전망

의료급여 분야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정형통계)는 기타 국민기초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의 비교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수요는 연구를 하는 연구원 이외에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현장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관련 공무원 그리고 정책결정을 하는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원시자료를 분석하지 않아도 정형화된 통계로 제시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제도의 제도 전반의 기본적인 상황이나 연도별 변화 등을 파악하여 제도운영에 빠르게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형통계 중에서 의료급여와 관련된 복지대상자 통계, 기초생활보장 관련 통계, 장애인복지, 시설/법인 그리고 자활과 관련된 통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는 의료급여 직접 관련있는 의료급여 관련 통계의 수요 전망을 하고자 한다.

가. 복지대상자

복지대상자와 관련된 통계 중에서는 복지대상자 보장사업별로 총괄현황에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의료급여, 자활지원, 노인 복지 등 13가지 사업의 대상자 규모를 총괄해서 살펴볼 수 있어 보장사업별로 전체적인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판단된다. 또한 보장사업별 대상자 규모를 보장기관인 시군구별로 자세하게 제시된 현황자료도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별 대상자수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대상 사업별 현황(중복허용, 중복제외)의 경우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과 유사한 결과 표이지만 중복허용한 대상자수와 중복을 제외한 대상자수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의료급여 분야에 있어서도 의료욕구를 반영한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연구 등에서 대상자들의 분포를 개괄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판단된다.

〈표 3-50〉 복지대상자 영역의 통계자료

대분류	중분류	보고서명
복지대상자	보장별	복지대상자 보장별(자격별) 총괄현황
		복지대상자 보장별(자격별) 상세현황(시군구별)
	사업별	복지대상자 사업별 현황(중복허용)
		복지대상자 사업별 현황(중복제외)

나.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정보는 수급자통계, 수급자특성, 수급가구특성, 급여통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신청·탈락 통계, 정기통계 등의 정보 들은 의료급여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필수적인 통계로 판단된다. 수급자 통계의 경우 기본적인 시도별 수급자 수를 일반, 조건부, 시설, 특례수급 등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다시 가구원수와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자 특성에서도 수급자의 취업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로능력 판정,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형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수급자 특성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득, 재산, 부태 등에 대한 현황 자료와 부양의무자의 현황, 신청 탈락통계도 유용한 정보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각 급여별 집행실적에 대한 정기 통계를 통해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형통계로 판단된다.

〈표 3-51〉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통계자료

대분류	중분류	보고서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통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별 총괄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연령별, 수급자 구분별, 성별 현황
	수급자특성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장애인 연령별 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장애인등급별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상태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별, 교육수준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상태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유형별 현황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사유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특례기준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 가구구성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 가구유형별 현황	
급여통계	소득재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주거유형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소유 용도별 현황
급여통계	소득재산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별 급여지급 현황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및 소득, 재산가액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소득공제유형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부채종류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부채별 현황(부양의무자 포함)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유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 현황 II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별 현황
신청, 탈락 통계	신청, 탈락 통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및 선정 현황(당월)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결과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 종류별 보장탈피 원인별 현황
		월별신규신청자의 선정 및 부적합 현황
정기통계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집행실적 현황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행실적 현황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집행실적 현황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집행실적 현황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집행실적 현황
		기초생활보장 가구원수별, 연령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가구원수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연령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및 급여비 현황
		기초생활보장 보장탈피자 현황
		기초생활보장 보장탈피자 월별추이

다. 장애인 복지

의료급여 제도 운영 및 관련 연구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통계는 장애인들의 의료이용 실적이나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 측면 등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의료급여에서 장애인은 의료욕구가 많은 계층으로 의료급여 보장대상자 선정에서 우선순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통계는 장애인의 규모 등은 장애인 진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한 통계로 판단된다.

〈표 3-52〉 장애인복지 영역의 통계자료

대분류	중분류	보고서명
장애인복지	장애인등록	장애인 유형별, 등급별 등록 현황 장애인 연령별, 등급별 등록 현황
	정기통계	전국 연령별 장애인(등급) 현황 16개 시도 연령별 장애인(등급) 현황 전국 연령별 장애인(유형) 현황 장애유형에 대한 16개시도 장애인(등급)현황

라. 시설/법인

의료급여 제도 운영과 관련 연구에 있어서 일반 수급자와 복지시설 수급자 간의 의료이용의 차이 그리고 시설수급자 들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황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시설법인과 관련된 통계는 사회복지시설 현황, 입소자 상세현황, 생계급여 신청 현황 등의 정보 등이 의료급여 분야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설/법인에서의 생계급여 신청 현황 등의 생계급여 지급 수준에 따른 의료급여 보장성과의 관계설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로 판단된다.

〈표 3-53〉 시설/법인 영역의 통계자료

대분류	중분류	보고서명
시설/법인	시설/법인	사회복지시설 총괄현황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상세현황
	급여	시설유형별 시설 생계급여 신청 현황 지역별 시설 생계급여 신청 현황 시설 생계급여 신청 현황(유형별 상세)

마. 자활

자활 관련된 정보는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중 근로능력 유무 등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된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등에 대한 통계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성별, 연령별 현황은 의료급여 대상자 규모 추정 등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4〉 자활 영역의 통계자료

대분류	중분류	보고서명
자활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자활사업 대상자 조건부과제외사유별 현황
		자활사업 대상자 조건제시 유예사유별 현황
참여자	참여자	자활사업 참여자 수급유형별, 지원유형별 현황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유형별, 수급유형별, 성별, 연령별 현황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유형별, 업종별, 성별, 연령별 현황
		자활사업 참여자 업종별, 수급유형별, 성별, 연령별 현황
		자활사업 참여자 종료사유별, 수급유형별, 성별, 연령별 현황
급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수 및 자활급여 지급 현황	

바. 의료급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서 의료급여 관련 정보는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수, 종결자수, 수행건수, 사전·사후 점수 변화 등의 통계 들은 지자체별 사례관리 실적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관리사별로 사례관리 실적이나 최근 의료급여제도에서 시작한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적 등을 지자체 평가에 활용되는 것을 넘어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적정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설계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부터 시작한 의료급여사례관리와 관련된 정보 등이 최근 전산화 하여 관리됨으로써 관리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나 의료급여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이다. 따라서 의료급여와 관련된 통계는 현재 생성하고 있는 정형통계가 모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5〉 의료급여 영역의 통계자료

대분류	중분류	보고서명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현황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및 재산 보유 현황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현황
	정기통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수 현황 의료급여 사례관리 종결자수 현황 의료급여 사례관리 중도종결 사유별 현황 의료급여 사례관리 수행건수 현황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전·사후 접수 변화 현황 의료급여 관리사별 사례관리 대상자수 현황 의료급여 관리사별 사례관리 종결자수 현황 의료급여 관리사별 사례관리 수행실적 현황 장기입원 사례관리 종결자수 현황 장기입원 사례관리 중도종결 사유별 현황 장기입원 사례관리 관리사별 사례관리 종결자수 현황 장기입원 관외기관 사례관리 실적 현황 장기입원 사례관리 자원연계 현황

4. 적정 공유주기 등 고려점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볼 때, 자료의 적정 주기는 의료급여 지자체 평가나 급여 실적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여 1년이나 반기 등 비교적 긴 기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관련 연구 수행에 있어서는 의료이용의 계절적 요인, 월별 질환 발생의 변화 등의 분석 등이 필요할 경우 정보 공유주기가 분기 또는 월별 주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갱신주기는 연구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한편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에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현황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제도 수급으로 진출입도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단 자료의 필요성도 작지 않다.

의료보장 연구에서 자료의 수요를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가 필요한 것을 정보원간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정보가 결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진료 내용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도 역시 자료 간 결합이 갖는 강점이 있다. 따

라서 단기에는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유관 정보간 결함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관련 조직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협력과정에서 비식별화를 유지하면서 정보간 연결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제4장 보유정보 수요분석2: 취약인구집단 지원정책 영역

- 제1절 아동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 제2절 노인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 제3절 장애인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4

보유정보 수요분석2: << 취약인구집단 지원정책 영역

제1절 아동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1. 연구의 동향과 정보 수요 분석

가. 아동 복지

아동 정책은 1961년 「아동복지법」제정과 함께 출범하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구호적 성격의 복지 제공 중심에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강화되었다.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대책과 함께 아동의 인권과 권리,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 안전 등 보편적인 아동 정책의 추진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2012년 8월 아동의 인권 증진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아동종합기본계획,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를 강화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분야사업안내(2013)」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과 보호자와의 상담·지도를 통해 보호자 가정에 복귀, 연고자 가정에서의 대리 양육,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 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 복지 시설 생활 아동과 가정 위탁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 보호가 종료된다. 시설을 퇴소하고 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는 취업 등을 통한 경제력 확보, 자립 의지 및 자립 기술 강화, 전문가 상담 및 사례 관리 제공, 지역 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요보호 아동이 발생한 경

우 우선적으로 친가정 복귀 혹은 가정 내 양육을 먼저 고려하지만 어려운 경우 국내 입양을 추진하고 국내 입양이 어려운 경우 국외 입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어서 가정 위탁이나 시설보호 등에 비해 외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다. 따라서 제도 폐지 및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의 신규 지정을 금지하고 가정 위탁 등 적절한 보호 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아동 센터는 지역 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기능의 강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드림 스타트는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 빈곤 대물림 방지, 빈곤 세습 고리 단절, 인적 자본 축적, 사회 통합 실현 및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급식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발달계좌는 빈곤 대물림 예방 및 저소득 아동의 자립 의지 함양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국내 현황과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와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표4-1〉 아동 분야 주요 정책 내용 및 관련 정부 통계 자료

구분	주요 정책 내용 ¹⁾	관련 정부 통계 자료 ²⁾
요보호 아동 발생 및 보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 아동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 가정 복귀, 대리 양육, 가정위탁, 시설 보호, 입양을 추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 아동 발생 수 • 요보호 아동 발생 유형 및 보호 내용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및 가정 위탁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보호가 종료됨 •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취업 등을 위한 경제력 확보, 자립의지 및 자립 기술 함양, 전문가 상담과 사례 관리, 지역 사회자원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현황 • 아동 공동 생활 가정 현황 • 연도별 자립지원 대상 아동 현황: 보호 종료 및 퇴소 아동수
가정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취업 등을 위한 경제력 확보, 자립의지 및 자립 기술 함양, 전문가 상담과 사례 관리, 지역 사회자원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 보호 현황
입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먼저 고려하고 귀가조치가 어려운 경우 국내 입양 추진하고 국내 입양이 어려운 경우 국외 입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입양 현황(국내/국외)
소년소녀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어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 등에 비해 외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임 • 제도 폐지 및 전환을 추진 중이며 신규 지정을 금지하고 가정 위탁 등 적절한 보호 체계로 변경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 소년 가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별/주거형태별/발생유형별 현황

구분	주요 정책 내용 ¹⁾	관련 정부 통계 자료 ²⁾
지역 아동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 기능의 강화, 아동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개소 및 지원 단가 연령별 · 경제 상황별 이용 아동 현황

주) 1. 2012년 보건복지백서, 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의 주요 내용임
 2. 2012년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주요 내용임

아동과 관련한 대표적인 국내 조사 자료로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1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 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 안전, 아동 학대 등 아동의 종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와 필요성 하에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동 조사는 중장기적 아동·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복지 상태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복지 상태를 연령별·계층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러한 지표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0~18세 아동·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총 6,923 가구(일반 가구 4,154가구, 저소득가구 2,769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 9~10월 (2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기초 조사 분석에서는 아동의 사회경제적 환경, 가족 생활 및 가정 환경, 인지 및 언어, 사회성 및 정서, 건강 및 안전 그리고 활동 및 진로 영역으로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심층 전문 조사는 전체 표본 중 870가구(일반가구 506가구, 저소득가구 364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발달 검사 결과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운동 발달) 및 가정 환경 검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기초 조사 분석과 심층 전문 분석 모두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 이상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소득 계층별로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과 상태의 격차를 보고하였다. 또한 지역별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거주 아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수행된 연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및 현황 분석은 앞서 제시한 정부 자료인 보건복지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태순 2000; 허남순, 2000; 이배근; 강은화, 2006; 임동호 2008). 따라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실태 자료는 연구 분야에서 요보호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아동 발달 및 아동 성과에 대한 분석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연구들은 추가적인 설문 분석을 하거나(김영인, 2011), 혹은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배태순, 2000)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거나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경향은 2000년대 후반에 와서 더욱 강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연구 경향이 보호 아동의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요보호 아동들이 발달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업이나 심리·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아동 성과 결과를 파악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정부의 아동정책이 실질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지향점인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 그리고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는 데는 현재 정부가 보건복지통계연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황 자료 만을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

아동 분야에서의 최근 대표적인 연구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정정호와 정익중(2012)은 요보호 아동의 “표류(drift)”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양육 시설 및 그룹홈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 중 여러 보호 유형을 경험한 아동 6명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면접 대상 아동들이 원가족을 벗어난 후 경험하는 확대 가족과 시설, 시설과 시설 사이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과정 전체를 분석하였다. 김경민과 정익중(2009)는 위탁 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그들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전국에 소재한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위탁 아동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김예성, 좌현숙, 오승환(2013)은 전국의 소년소녀 가정 아동과 가정 위탁보호 아동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소년소녀가정제도나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성인보호자와의 동거 여부가 심리 정서 적응 및 학교 생활 적응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나. 보육

우리나라 보육 정책은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실시한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을 시작으로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탁아제 도입 등의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정책이 ‘탁아’에서 ‘보육’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보육예산의 증가 및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보육 서비스가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2008년 이후에 들어와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강조되어 저소득층 위주의 보육료 지원이 연도별로 확대되었으며 2013년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이 실시되게 되었다. 2009년 7월부터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아동에 대해 양육 수당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는 0~5세 전체 영아로 확대하였다.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 및 2013년 3월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3~5세 유아에 대한 공통과정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 보육 정책은 초저출산 현상과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보육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부가 미래 세대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 분야로서 인식되고 있다 (보건복지백서, 2012).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를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다양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0~5세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 내실화,” “3~5세 누리 과정 지원 강화,” “보육과 유아교육 제도 정비”를 제시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육 정책의 주요 분야별 정책 현황에 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연도별로 발행하는 보육 통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표4-2〉 보육 분야 주요 정책 내용 및 관련 정부 통계 자료

구분	주요 정책 내용 ¹⁾	관련 정부 통계 자료 ²⁾
보육 비용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0~4세 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 아동 현황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

구분	주요 정책 내용 ¹⁾	관련 정부 통계 자료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다문화 가족 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 수당 지급 대상 현황
보육 서비스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 개선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직장 어린이집 현황
맞춤형 보육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 보육 지원 장애아 보육 지원 시간연장·휴일·방과후 보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전담/장애아전문/장애아통합 - 방과후/시간연장/휴일/24시간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개선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지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교직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수 및 자격 현황 어린이집 보험 가입 현황 평가 인증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 통과유지 어린이집 수
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정보센터 확충 아이사랑카드 제도 및 보육통합정부시스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정보센터 현황

주) 1. 2012년 보건복지백서, 2013년 보육 사업안내의 주요 내용임
 2. 2012년 보육통계의 주요 내용임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 3년 마다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전국 보육실태조사가 2004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2009년에 2차년도 조사, 그리고 2012년 현재까지 3차년도 조사가 수행되었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는 아동과 부모의 다양한 보육·교육 관련 기관 및 서비스의 이용, 비용, 만족도 및 요구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요구 파악 등 보육 공급과 이용, 운영 전반에 걸친 자료를 수집하여 정부가 부모·아동 및 운영자의 입장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비용 효율적인 육아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012년 보육실태조사 가구 대상 조사는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2,528가구에 대해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들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 1,802명, 유아 1,541명의 총 3,343명을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가구 조사표는 가구원 특성, 가구 특성, 자녀 양육, 보육·교육 정책, 아동 보육 및 교육 기초 관련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조사표는 생활시간조사, 기관별 이용 실태, 비공식서비

스 이용실태, 과거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욕구, 육아 관련 의견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집 조사는 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0,605 개소의 어린이집을 모집단으로 하여 샘플로 추출된 4,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어린이집 조사 항목에는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운영, 보육 영유아 현황, 보육교직원 운영실태 및 요구, 보육프로그램 운영, 운영 평가 및 관리, 원장 인적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보육교사조사 항목에서는 보육교사의 근무조건과 처우, 근무 만족도, 보육 정책관련 의견, 누리과정 관련 의견, 보육교사 인적 사항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2,078명을 패널로 구축하고 이들의 양육과 발달 및 성장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해오고 있다. 동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이 출생 이후 성장하면서 어떤 발달 특성을 보이는지, 가정에서의 양육 과정, 기관에서의 형식적·비형식적 육아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아동이 속한 지역 사회와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 정책에 아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이 있다. 해마다 달라지는 아동의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패널 질문 문항과 발달 검사 등에 조금씩 변화를 두고 있다(김은설 외, 2012). 2012년도 제5차 조사의 참여 패널 수는 1,703가구로서 전제 패널 대비 유지율 79.2%를 보이고 있다.

전국 보육실태조사가 국내 영유아 보육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조사의 목적이 정부가 육아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 조사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연구들은 전국적으로 수행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거나 혹은 소규모 샘플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보육 통계 자료는 국내 보육 현황을 전반적으로 고찰을 하는데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백선희, 2000; 박미옥 2010), 이러한 연구에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 선행 연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과 신인철(2011)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생애 초기의 교육 및 보육 경험이 가족 배경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박선옥(2008) 역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6세 이하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보육비 지출실태를 파악하고 가구의 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였다. 김정호(2013)는 고용보험 원자료를 활용하여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자 중 2001~2007년 사이에 출산한 여성 근로자 표본을 이용하여 직장 어린이집의 존재가 여성 근로자의 출산 후 노동 시장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정병오(2007)은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 아동의 보육 실태와 보육 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허선과 박효진(2010)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계층별 보육 시설 이용율과 보육료 지원 제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육 시설 이용 행태를 분석한 반면, 소규모 샘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직접 수행한 연구들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육 행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박지선 외 (2013)은 서울시보육시설 연합회에 등록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포괄적인 보육 서비스 욕구와 어머니의 인구학적 요인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성림 (2011)은 전국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588가구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 사교육 이용 및 지출 규모를 조사하였다. 송경섭(2013)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과 보육 교사 128명을 설문 조사하여 시간 연장 보육 서비스의 실태와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희은 외(2013)은 보육 교사 5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육 교사의 부정적 훈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공감, 보육 교사가 지각한 직장 내 지지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윤선 외 (2013)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세 누리 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 그리고 누리 과정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 한부모 가족

가. 연구 동향과 주요 정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이거나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모자 가족과 부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부자 가족”을 의미한다,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이혼율 증가, 가족 가치관 변화 등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13).

한부모 가족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서비스,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 기관 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한부모 가족 분야 정책 추진 현황과 관련한 자료는 201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와 2012년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표4-3〉 한부모 가족 분야 주요 정책 내용 및 관련 정부 통계 자료

구분	주요 정책 내용 ¹⁾	관련 정부 통계 자료 ²⁾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호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한부모가족 현황, 한부모가족 형성요인별 현황 저소득 한부모 현황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활비, 자립촉진수당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함으로써 생업 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 안정 도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주거환경 개선, 종사자 역량강화 및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과 치료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기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을 보호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 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혼 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자보호 생활 시설 수 및 입퇴소 현황

구분	주요 정책 내용 ¹⁾	관련 정부 통계 자료 ²⁾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충격적 사건을경험한 위기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역량 강화 도모 	

주) 1. 2013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내용

2. 201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2년 보건복지통계연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11년 4월 법령 개정을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의 한부모 가족 2,522 가구를 대상으로 한부모 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동 조사는 아이돌봄, 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양육비, 소득 및 지출, 경제 활동, 건강주거 실태, 생활 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정책 욕구 등에 대해 8개 분야, 18개 항목, 122개 세부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 4. 16).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복지패널, 여성가족패널 등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 소규모 샘플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혹은 한부모 가족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한부모 가족의 표본 수가 너무 적어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를 수행한 연구들은 한부모 관련 기관 혹은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여 한부모 집단을 섭외 받은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일반인 조사를 통해서 한부모 집단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윤정(2008)은 서울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소재한 자활후견기관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에게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의뢰하여 이를 수락한 총 7개 기관에서 한부모 가족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수집한 총 198부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여성 가장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위험 요인 및 보호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인숙(2012)은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부모 여성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부모 여성의 공동체 참여 요인과 사회 자본, 그리고 임파워먼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장혜림(2012)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영유아통합지원사업에 참여한 5개 지역의 한부

모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소득 빈곤가정 한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분석하였다.

한부모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을 보다 심도 깊게 파악하고 이들 가족의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부모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질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층 인터뷰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 사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성미애와 진미정(2009)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26명의 빈곤 한부모 여성을 인터뷰하여 빈곤 한부모 여성들이 부모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일가족 양립 문제와 조건, 양립 전략과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박윤미와 장연집(2009)는 가정 폭력으로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대 여성 한부모 7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여성의 한부모 체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부모를 직접 심층 면접한 사례 외에도 한부모 가정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여 질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도 있었다. 문성희와 이대균(2011)은 한부모 가정의 학부모와 담임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유치원 생활을 중심으로 한부모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황정희와 고은경(2011)은 유아 교사와 한부모 가정 유아 양육자의 소통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부모 가정 유아를 담당할 경험이 있는 공립 유치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중 원시자료 구성을 위한 수요 전망

최근 아동에 대한 연구 동향은 과거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실태와 현황 파악에서 벗어나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아동 성과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의 인권과 권리, 아동 보호 및 아동 안전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를 통하여 아동의 인적 자원을 강화하고 역량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현재 요보호 아동의 발달과 성장 그리고 아동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요보호 아동을 추적 분석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요보호 아동이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시설, 가정 위탁, 입양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정 내 보호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치가 이루어진 과

정을 추적 분석할 수 있는 자료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 정책의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자립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들이 성인으로 성장하여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패널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의 소득 수준, 취업 활동, 사회 복지 수급에 대한 의존도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아동 보호 조치 유형별로 시설 아동, 위탁 가정 아동, 입양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 아동 성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아동의 빈곤이 대물림 되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요보호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 하고 자녀를 낳은 경우 그들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혹은 또 다른 요보호 아동으로 전락하게 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도 필요하다.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하여 요보호 아동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성인의 자녀에 대해 특별한 집중과 관심을 가지고 추적적으로 자료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국 보육실태조사의 원자료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육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기존의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하거나 개별 연구자가 소규모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국 보육실태조사의 공개가 필요하다. 보육실태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석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전국 보육실태조사 자료의 신뢰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보육실태조사는 횡단면 조사이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아동 성과 및 발달 현황에 대해 패널 연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동패널은 2008년도에 출생한 아동 2,078명 만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 분석을 하는데는 충분한 샘플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조사와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조사는 0~5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샘플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혹은 양육 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전체에 대한 샘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패널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다면 아동이 처음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어 보육 서비스 이용 행태를 패널로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아동의 성장 과정을 따라 자료를 구축한다면 보육 서비스 혹은 양육 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동의 성과는 건강 및 학업 수행 능력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건강보험자료 혹은 교육데이터 베이스와 연계하여 아동 성과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육 서비스를 처음으로 받기 시작한 시기, 영아기 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학업 수행 능력 등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오는지 평가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아동 발달에 미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 특히 0~2세 영아 자녀의 부모 직접 돌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 이용 혹은 양육 수당 지원을 통한 부모 직접 돌봄 중 어느 것이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더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 학령기에서의 아동 성과 뿐만 아니라 자료를 보다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경우 아동들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복지 급여 및 복지 서비스에 어느 정도 의존하게 되는가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

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가족 성과에 대한 분석도 요청되고 있다. 보육 서비스 제공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취업 및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보육 시설 이용 혹은 양육 수당 수급 여부에 따라 부모의 취업 행태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분석도 요청되고 있다. 이 외에도 보육 시설 이용과 양육 수당 수급에 따라 가구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구가 복지 수급에서 탈피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 자료와 함께 부모의 취업 여부, 복지 수급에 대한 정보를 함께 시계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부모 지원 분야에서는 한부모의 현황과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그리고 각 연구자들이 수행한 설문 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부모지원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한부모의 자립과 자녀의 건강한 발달 등 정책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 결과는 찾아 보기 힘들다. 이는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패널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부모들의 자립과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을 분석할 수 있는 패널 자료의 구축이 요청된다. 정부로부터 복지 수급을 받고 있는 한부모들이 언제

복지 수급에서 탈피하는지 탈피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복지 수급을 받으면서 변화하게 되는 소득 수준 그리고 근로 활동 여부를 파악하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능동적인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부모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피한 이후에도 경제적인 자립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한부모의 근로 활동 현황과 소득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 한부모는 성인 한부모와 비교하여 성장과정에서 특별한 과업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패널 자료는 이들의 학업 수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성인 한부모와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의 자립과 더불어 한부모 가족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족 관련 복지 수급을 받았던 아동들이 건강과 학업 성적 측면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건강보험 통계와 교육 통계를 연계하여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들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 부모와 마찬가지로 한부모가 되는지 혹은 복지 수급자가 되는지 파악함으로써 “가족 해체의 악순환” 혹은 “빈곤의 악순환”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한부모의 아동들은 취약한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원가정에서 배제되어 요보호 아동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라고 있는지 위탁가정, 시설 혹은 입양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직면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체, 신청, 지급, 시설, 아동 영역에서의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체

주체 부분에서 아동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포함하여야 할 변수로 출생일자, 연령, 건강상태코드, 성별코드, 출생순위, 외국인 여부 등 아동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다.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세대 구분코드, 주거유형코드, 가구구성원 수 등의 변수들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 수급 관련한 변수로서 수급자구분코드, 의료급여종별코드, 위탁가정유형코드, 아동발생원인 코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변수들이다. 아동의 학교 생활과 관련한 변수로서 교육기관코드, 학교분류코드, 재학구분코드도 필

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장애 여부와 관련한 변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소분류코드, 우편번호, 거주시작일시에 대한 변수도 필요하다고 본다.

〈표4-4〉 주체 영역의 주요 아동복지 정보

주체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변수 구분
01. 주체	복지 주체 (월별복지주체)	출생일자	필수
		연령	필수
		건강상태코드	예비
		성별코드	필수
		출생순위	필수
		외국인여부	필수
		세대구분코드	선택
		주거유형코드	선택
		가구구성원수	선택
		수급자구분코드	필수
		의료급여종별코드	선택
		위탁가정유형코드	필수
		아동발생원인코드	필수
		교육기관코드	필수
		학교분류코드	필수
		재학구분코드	필수
		장애인 여부	필수
		종합장애등급	선택
		복지주체주소 (월별복지주체)	주소분류코드
		우편번호	필수
	거주시작일시	필수	

나. 신청

신청 영역과 관련하여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는 신청 시점에서의 아동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한 변수인 주민등록기준출생일자, 연령, 성별코드, 외국인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다.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정보로서 신청일자, 지원내용, 관리행정지역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급여 내용 신청과 관련해서 지원내용구분코드, 특별지원청소년 관련 변수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신청 관련인은 대부분 아동의 보호자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청인과 아동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신청인관계코드, 아동관계코드, 세대주와의 관계코드, 보호자와의관계

코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신청인의 복지 수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복지대상자 여부, 주거유형코드, 현재장애유형코드, 의료급여종별코드, 사회보장번호, 학비지원신청 여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아동의 보호자로서 판단되는 신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학력 코드, 직종코드, 직업명, 취업유형코드, 근로능력유형코드, 임신출산여부, 출산예정일자, 종교코드에 대한 변수도 필요하다. 가구의 입양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입양 일자 및 입양기관주체ID도 필요하다.

아동 관련 복지 서비스 신청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로서 한부모가족가구여부, 보육가구여부, 특별청소년가구여부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복지 지원 신청 여부와 관련한 기초생활보장가구여부, 긴급복지가구여부, 바우처가구여부, 의료급여가구여부, 장애인연금가구여부, 차상위장애인가구여부, 누적신청횟수에 대한 정보도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표4-5〉 신청 영역의 주요 아동복지 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변수 구분
02. 신청	D.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주민등록기준출생일자	필수
		연령	필수
		성별코드	필수
		외국인 여부	필수
	D.신청_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신청일자	필수
		지원내용구분코드	필수
	D.신청_신청현황	관리행정지역코드	필수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지원내용구분코드	필수
		특별지원청소년연장지원여부	필수
		특별지원청소년최초지원연도	선택
	신청관련인현황	특별청소년지원기관명	선택
		신청인관계코드	필수
		아동관계코드	필수
		세대주와의관계코드	필수
		보호자와관계코드	선택
		복지대상자여부	필수
		주거유형코드	선택
		현재장애유형코드	선택
		의료급여종별코드	선택
		사회보장번호	선택
가구원수		선택	
동거여부		선택	
학력코드		필수	
직종코드	필수		
직업명	선택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변수 구분
		취업유형코드	선택
		근로능력유형코드	필수
		학비지원신청여부	필수
		임신출산여부	필수
		출산예정일자	필수
		종교코드	선택
		입양기관주체ID	필수
		입양일자	필수
	신청보장가구원현황	세대주와의관계코드	필수
		가구주와의관계코드	필수
		기초생활보장가구여부	선택
		한부모가족가구여부	필수
		보육가구여부	필수
		특별청소년가구여부	필수
		긴급복지가구여부	선택
		바우처가구여부	선택
		의료급여가구여부	선택
		장애인연금가구여부	선택
		차상위장애인가구여부	선택
		누적신청횟수	선택

다. 지급

서비스 지급 영역에서 필요한 변수로서 전월수급자수, 전월지급액, 당월수급자수, 당월지급건수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당월신규여부, 당월변동구분코드 등 서비스 수급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는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요보호아동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위탁가정유형코드, 위탁아동유형코드, 아동발생원인 코드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4-6〉 지급 영역의 주요 아동복지 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변수 구분
		의료급여대상자구분코드	선택
	D.지급_월별복지주체	위탁가정유형코드	필수
		위탁아동유형코드	필수
		아동발생원인코드	필수
06. 지급		전월수급자수	필수
		전월지급액	필수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당월수급자수	필수
		당월지급건수	필수
		당월신규여부	선택
		급여변동구분코드	선택

라. 시설

시설과 관련된 변수로서 아동 복지 시설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복지시설종류코드, 복지시설유형코드, 시설운영주체ID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변수이다. 시설 입소 현황과 관련한 입소정원수, 입소자수, 종사자수, 생활자수, 이용자수, 입양 인원수에 대한 변수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입소자의 시설 입소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입소일시와 퇴소일시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관련 변수로서 이동전원인원수 및 퇴소인원수는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대부분 한부모 시설 입소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 동반아동유무, 동반아동인원수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시설 생활자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입소자자격구분코드, 퇴소 사유코드, 입소자연령, 직업코드에 대한 변수도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표4-7〉 시설 영역의 주요 아동복지 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변수 구분
06. 시설	BF_복지시설현황	복지시설종류코드	필수
		복지시설유형코드	필수
		시설운영주체ID	필수
		위탁직영구분코드	선택
		국고보조시설여부	선택
		입소정원수	필수
		입소자수	필수
		전원인원수	선택
		퇴소인원수	선택
		위탁인원수	선택
		입양인원수	필수
		아동조치계획내용	예비
		복지시설수	필수
		종사자수	필수
	생활자수	필수	
	이용자수	필수	
	BF_시설생활자현황	입소일시	필수
		입소자자격구분코드	선택
		퇴소일시	필수
		퇴소사유코드	선택
입소자연령		선택	
직업코드		선택	
	동반아동유무	필수	
	동반아동인원수	필수	

마. 아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아동 영역에서 필요한 변수 부문은 급식서비스지원, 위탁아동보호신청, 입양아동, 후견인 지원 관련 영역이다. 급식서비스지원과 관련해서는 취학상태코드, 급식지원여부, 급식대상유형코드, 급식지원사유내용, 급식방법코드와 같은 기본적인 변수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관련한 동거가족유형, 학력코드 그리고 급식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 - 급식제외사유, 방학중급식여부, 급식조사결과코드, 급식종료사유내용 - 등은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급식시설주체ID, 급식방법기타내용, 급식불필요사유코드, 급식불필요사유내용은 예비 변수로서 포함시킬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탁아동보호신청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변수인 아동보호신청유형코드, 위탁가정보호구분코드, 아동거주시설주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위탁가정의 보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위탁가정유형코드, 그리고 위탁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위탁가정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입양 아동과 관련해서는 입양일자와 입양기관주체ID 등 기본적인 변수를 필수 변수로 포함시키고, 아동의 장애유형코드는 선택 변수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견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후견인구분코드, 후견인 유형코드는 필수변수로 포함시키고, 후견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후견인종결여부, 후견시작일자, 후견종료일자는 선택 변수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4-8〉 아동 영역의 주요 아동복지 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변수 구분
18. 아동	BF_급식서비스지원	조사ID	필수
		취학상태코드	필수
		동거가족유형	선택
		학력코드	선택
		급식지원유무	필수
		급식제외사유	선택
		급식대상유형코드	필수
		급식지원사유내용	필수
		급식방법코드	필수
		급식시설주체ID	예비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변수 구분
BF_위탁아동보호신청		급식방법기타내용	예비
		방학중급식여부	선택
		급식조사결과코드	선택
		급식종료사유내용	선택
		급식불필요사유코드	예비
		급식불필요사유내용	예비
		아동보호신청유형코드	필수
		위탁가정보호구분코드	필수
		위탁가정유형코드	선택
		아동거주시설주체	필수
BF_입양아동		위탁가정시작일자	선택
		위탁아동종료일자	선택
		입양일자	필수
		입양기관주체ID	필수
BF_후견인등록		당시장애유형코드	선택
		현재장애유형코드	선택
		후견인구분코드	필수
BF_후견인연결		후견인종결여부	선택
		후견시작일자	선택
		후견종료일자	선택
		후견인유형코드	필수

3.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한 수요 전망

가. 아동 지원

요보호 아동이 발생한 경우 정부는 보호자 가정 복귀, 대리 양육, 가정 보호, 시설 보호, 입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황에 대한 자료는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서 연도별로 제공되고 있다. 요보호 아동은 궁극적으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이루어 졌는지 복귀되었다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가정으로 복귀된 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의 소득 수준, 부모의 취업 여부, 사회보장 수급 여부 (수급자 혹은 차상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이 적합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백서와 보건복지통계연보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공동 생활 가정의 개소수와 보호 인원 아동 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자

립 지원 대상 아동 수를 보호 종료 및 퇴소 아동수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정 위탁 아동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백서와 보건복지통계연보는 가정 위탁 아동의 보호 현황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 가정, 일반 위탁 가정 별로 파악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해서 이러한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적절한 환경에서 잘 양육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복귀한 원가정의 가구 소득 및 부모의 취업 여부 등 가정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 퇴소 아동 그리고 위탁이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는 이들이 경제력을 확보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므로 이들의 취업 활동 및 소득 수준 그리고 취업 및 기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퇴소 아동 및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므로 퇴소 아동들이 사회 서비스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지원 등 이들이 복지 수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에 파악도 필요하다.

입양 아동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백서와 보건복지통계연보는 국내외 입양 아동수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국내 입양 아동이 입양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입양 아동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아동의 병원 이용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양 가정 환경에 대한 정보로서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 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급식 지원 등 전반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년소녀가정 현황은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재학별, 주거형태별, 발생유형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 폐지 및 전환을 추진 중에 있어 신규 지정을 금지하고 가정 위탁 등 적절한 보호 체계로 변경할 것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통계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후견인 지정, 위탁 가정 등 어떠한 보호 체계로 전환되었는가에 대한 자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보건복지통계연보는 지원 개소 및 지원 단가 등 센터 현황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학령별 이용 아동수, 경제상황별 이용 아동 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지역 아동 센터에 다니는 아동에게 어떠한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보장통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이 어떠한 기타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아동 센터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방과후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 부모의 취업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 보육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육 정책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보육 통계 자료도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취업 여성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육 서비스 제공, 양육 수당의 효과성에 대한 제고, 3~5세 누리과정의 내실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부 통계 자료 제공이 요청되고 있다.

무상 보육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제기되고 있는 이슈인 보육 서비스 종일제와 반일제 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시설 보육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아동에게 종일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종일제 보육 서비스 대상과 반일제 보육 서비스 대상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 그리고 근로 시간에 대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부모의 취업 상태 혹은 직종 코드를 사용하여 보육 서비스 이용 부모의 근로 유무에 대한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부모의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정보도 필요로 하고 있는바, 부모의 종일제 혹은 시간제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도 필요하다.

전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 양육 수당을 확대함에 따라 0~2세 저소득층 아동이 가정 내에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소득층 자녀의 경우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 수당을 받아서 값비싼 사교육에 지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 수준별, 부모의 맞벌이 여부 혹은 모의 취업 유무 별로 보육 서비스 이용과 양육 수당 수급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 부모, 한부모, 조손 가정 등 취약 가정의 자녀 들도 가정 내

에서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보육 시설 이용 혹은 양육 수당 수급 여부를 장애아 부모와 한부모 등 취약 부모의 특성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었지만 3~5세 아동에 대해서도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농산어촌 지역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형평성 차원으로 양육 수당을 지급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3~5세 양육 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의 거주지를 기초 지자체 단위로 파악하여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수당 지원이 실제로 보육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부모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취지하에 정부는 보육 서비스 이용과 양육 수당 수급을 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자녀 출생 시점부터 보육 서비스 이용과 양육 수당 수급간의 행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보육 서비스 이용 및 양육 수당 간의 행태에 변화가 있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부모의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장애 유무 등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중복 지원 문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육 서비스 혹은 양육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들이 어떠한 사회복지급여 혹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받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양육 수당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현금 수당 및 육아휴직급여와 중복성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또한 위탁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이 시설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도 위탁모의 아동 양육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면에서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유사 성격의 급여와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 한부모 지원

현재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혹은 보건복지통계연보 자료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과 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 기관 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자료를 통해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동 사업들도 한부모 가족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현황은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내용을 성인 한부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 한부모는 미성년자로서 성인 한부모와는 차별적인 특성과 과업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급여 내용을 별도의 통계 항목으로 선정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급여에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학비, 자립촉진수당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급여 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청소년 한부모 중에서도 10대 청소년 한부모와 20대 청소년 한부모는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지원 현황을 10대 청소년 한부모와 20대 청소년 한부모로 나누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자금 대여에 대해서도 복지자금 대여 건수 그리고 지원 금액 현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여 받은 금액의 분할 상환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도 필요하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 개소수에 대한 정보만 나와 있다. 각 시설 유형별로 보호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수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자녀 연령 및 자녀 수 등 가족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또한 월별 단위로 시설 입소 혹은 퇴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자녀 양육 및 경제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러한 권역별 센터를 통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한부모 현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 가족은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이외에도 한부모들이 지급받고 있는 기타 복지 급여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한부모 지원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경제적 자립이므로 복지 수급에서 언제 탈피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국가적인 서비스와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 지원, 가정 양육 수당, 급식비 지원 제공 등의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라. 정형 통계 수요 목록

앞서 기술한 통계자료 수요 전망에 기초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정형통계에 포함된 아동 복지 관련 통계 자료의 중요도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아동청소년 대부분 영역에서는 요보호 아동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 요보호아동 성별 조치별 현황, 소년소녀가정세대 성별 연령별 현황, 국내입양아동 성별 연령별 현황, 가정위탁 보호아동 유형별 현황, 지역아동센터 시설, 입소자 현황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통계 자료이다. 급여 지원 현황과 관련한 통계로서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실적,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실적, 특별지원청소년 관련 지원 현황, 청소년증 신청 및 발급 현황 통계자료는 선택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보육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현황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료 연령별 지원 대상 현황, 양육수당 지원 대상 현황, 유아학비 지원자격별 책정 가구수, 아동수 현황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통계자료이다. 영유아 보육료 수급 아동의 인구사회적 특성 혹은 가구 특성별 통계 자료인 영유아 보육료 신청 가구의 자녀수별 가구수 현황, 출생순위별 아동수 현황, 가구 구성 유형별 지원 및 탈락자 현황, 지원자격별 책정 아동수 및 가구수 현황 등의 통계치는 선택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영유아 보육료 신규 신청 현황과 관련한 통계치 역시 선택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부모 가족 영역에서는 한부모 지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한부모가족 연령대별 현황,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현황, 한부모가족 급여지급 현황은 필수 통계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보다 세부적인 통계 자료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현황, 아동양육비 연령 구간별 지원 현황, 생활보조금지원 현황, 추가아동양육비 연령별 지원 현황, 고교생학비지원 현황,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현황 통계 자료는 선택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4-9〉 아동복지 영역의 통계자료

대분류	중분류	보고서명	중요도
아동청소년	아동복지	아동청소년 요보호아동 성별 조치별 현황	필수
		아동청소년 소년소녀가정 후견인 지정현황	선택
		아동청소년 소년소녀가정세대 성별 연령별 현황	필수
		아동청소년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실적	선택
		아동청소년 국내입양아동 성별 연령별 현황	필수
		아동청소년 가정위탁 보호아동 유형별 현황	필수
		아동청소년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실적	선택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시설, 입소자 현황	필수
	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 신청자 대비 지원금액 현황	선택
		특별지원청소년 신청자 대비 지원기간 현황	선택
		특별지원청소년 중복지원 현황	선택
		아동청소년 청소년증 신청 및 발급 현황	선택
		아동청소년 청소년증 발급 현황	선택
보육	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료 연령별 지원대상 현황	필수
		영유아보육료 신청가구의 자녀수별 가구수 현황	선택
		영유아보육료 신청가구의 출생순위별 아동수 현황(연령별)	선택
		영유아보육료 가구구성 유형별 지원, 탈락자 현황	선택
		영유아보육료 지원자격별 책정 아동수, 가구수 현황	선택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대상 현황	필수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자격별 책정 가구수, 아동수 현황	필수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규신청 현황	선택
		영유아 보육료 신규신청 현황(일일현황)	선택
한부모가족	수급자통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필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현황	선택
		한부모가족 연령대별 현황	필수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필수
	급여통계	한부모가족 급여지급 현황	필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연령구간별 지원 현황	선택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 지원 현황	선택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연령별 지원현황	선택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현황		선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현황		선택	

4. 정보 공유주기 등 고려점

요보호 아동 발생 수는 2011년 현재 총 7,483명이며 보호 조치 내용별로 보면 시설 보호가 아동 시설 보호 3,108명, 장애아 시설 보호 32명, 공동 생활 가정 612명이며, 가정 보호로서 위탁 보호 2,350명, 입양 1,253명, 소년소녀가정 책정이 128명이다(보건복지통계연보, 2012). 이러한 요보호 아동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요보호 대상 아동은 그 수가 적어서 전국적인 가구 샘플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 따라서 복지정보통계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요보호 아동 전수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복지정보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요보호 아동 전수에 대해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분석 샘플 수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복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설 아동에 대한 정보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요보호 아동의 발생과 보호 조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며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정보 공유 주기를 삼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이 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계 자료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 자료는 전체 보육 시설 이용 아동과 양육 수당 지원 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므로 전체 시설 이용 아동과 양육 수당 수급 아동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료는 연단위로 자료를 구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시설 서비스와 양육 수당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두 종류의 서비스와 급여에 대해서는 0~5세 전체 아동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구축은 전수 자료를 수집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아동의 제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0~5세 각 연령별로 최소 500명의 샘플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부모 가족은 그 수가 많지 않아 등록된 한부모 전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 급여는 월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 지급 건수와 지원 금액은 월별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에 대한 입소 및 퇴소도 월별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족은 복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기간 뿐 만 아니라 이 후의 경제적인 자립과 수급자로 다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부모 복지 수급 기간에 한정하지 말고 한부모의 생애 주기에 걸친 장기간의 자료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부모 가족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부모에 대한 정보를 생애 주기에 걸쳐 구축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노인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1. 연구동향과 정보 수요

가. 연구동향

1) 노인을 보는 관점별 연구동향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노화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의존성의 증대와 그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다. 노인이 경험하는 의존성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 Walker(1982)의 정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Walker(1982)에 따르면 노인이 경험하는 의존성은 생애주기 의존성(life-cycle dependency), 정치적 의존성(political dependency),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y), 구조적 의존성(structural dependency)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화에 따라 이러한 다각적인 의존성이 자동으로 증대된다고 보는 시각을 갖게 되면 노인인구의 증대를 노동력 부족과 질의 저하를 가져오고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게 되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는 위기론으로 이어진다(박경숙, 2003). 한국의 고령화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있는 것으로 지적되고도 있다(최은영·김정석, 2012). 이러한 관점은 우리사회가 노인을 ‘사회문제집단화’하고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노인을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 서비스 수혜자로 규정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권중돈, 2005; 김주현, 2007).

한편 고령화 위기론에 대비하여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하여 고령화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김동일, 2001; 김정석, 2007; 정경희, 2004). 이때 연령통합적인 사회는 연령을 진입장벽으로 이용하지 않고 상이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Reily and Reily, 2000). 연령장벽이 없다고 하는 '유연한 연령기준'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연령에 의하여 특정 사회적 역할로의 진입과 퇴장, 수행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유연한 삶의 영위가 가능한 사회이다. 또한 노화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다층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가 발생하지만 제도상의 편리성과 필요

성 때문에 정책대상자로서의 노인은 역연령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을 수혜자로 보는 관점은 자칫 노인의 다양성을 간과하며, 노인의 잠재성을 발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동하며 결과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정병은·이기홍, 2009).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노인을 대상으로한 연구에도 반영되고 있다. 2001~2010년 까지의 10년간 『한국노년학』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한 최은영·김정석(2012)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노인을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연구는 ‘노인을 다른 세대로부터 도움을 받는 존재로 묘사’한 논문과 ‘노인을 피해자/수동적 존재/문제대상/취약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논문으로 총 발표 논문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을 피해자/수동적 존재/문제대상/취약한 존재’로 묘사한 논문의 주요 주제는 우울이 가장 많고 다음이 학대 및 자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10〉 노인을 보는 관점별 연구주제

분류	세부주제		비율
노인과 다른 세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28.9%)	세대간 인식이나 이해관련		28.4%
	노인을 다른 세대로부터 도움을 받는 존재로 묘사		54.1%
	세대간 상호교환과 세대통합 접근		9.5%
	노인을 다른 세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묘사		6.8%
	노인을 다른 세대의 가해자로 기술		1.3%
	계		100.0%(74편)
노인에 관한 연구 (71.1%)	노인을 피해자/수동적 존재/ 문제대상/취약한 존재로 묘사 (100.0%)	우울	38.7%
		학대피해	19.3%
		자살생각	14.4%
		스트레스	7.2%
		차별	7.2%
		외로움	4.8%
		빈곤	4.8%
		폭력	3.6%
	소계		34.1%
	노인을 능동적 존재/활동자/이용자/결정과 선택 주체로 기술		48.9%
	노인간의 상호성 주목		4.9%
프로그램 평가나 척도개발 관련		12.1%	
계		100.0(182편)	

주: 최은영·김정석(2012)의 〈표1〉과 〈표2〉 재정리
 자료: 최은영·김정석(2012). 최근 사회노년학의 연구동향.

2) 주제별 연구동향

이론적 관점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한 연구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동향 검토 결과도 있다.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을 분석틀로 하여 2002~2007년까지 『한국노년학』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정경희 외, 2008). 본 연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연구가 제출된 분야는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이며 다음이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 케어시스템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의 기본방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과 관련된 연구논문)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 하는 환경확보관련 연구논문) 노인과 발전)이행과 사후조치관련 및 기타 논문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의이행 권고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연구 과제의 진행을 위해서 향후 빈곤사회보장제도·노인의 경제적 보장의 측면에 대한 관심과 고령사회로의 이행을 예비하는 거시적 구조·환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차별, 자원봉사 및 취업관련, 학대와 관련된 논문에 비하여 노인의 사회경제적 기여에 관한 고찰 및 노인의 정치적 참여 실태 및 활성화 전략마련 등과 같은 주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4-11〉 국제적 노년 연구 과제 대비 국내 노년학 연구 현황

MIPAA의 기본 방향	연구영역	해당 연구편수
1. 노인과 발전	1) 사회참여 및 통합	25
	2) 경제적 보장	10
	3) 거시사회적 변화와 발전	2
	4) 빈곤	5
	5) 사회보장제도	5
2.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6) 건강한 노화	30
	7) 생의학	11
	8) 육체적·정신적 건강	47
	9) 삶의 질	53
3.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10) 케어 시스템	40
	11) 가족, 친족 및 지역사회의 구조 및 기능 변화	23

MIPAA의 기본 방향	연구영역	해당 연구편수
이행과 사후조치	12) 정책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	8
기타	13) 기타	25
	전체	284

자료: 정경희 외 (20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 대응 현황과 과제 (표 5-9)를 재인용하였음.

3) 노인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근 강조되는 것은 노인이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내부적인 다양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석재은 외, 2005; 장미혜, 2012). 즉, 전생애를 거쳐 누적된 차이들이 더 분명하게 도출되는 시기가 노년기이기 때문에 진정한 노인의 삶의 이해를 위해서는 노인 내부에 있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의 다양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역

노인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가 아니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이들의 특성이 다른 뿐만 아니라 당면하고 있는 생활환경에 차이가 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1차 산업에 종사할 기회가 많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반면 자원봉사참가율, 단체활동 및 여가문화활동 참가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태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물리적 환경은 도시거주 노인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경희, 2013). 또한 도시지역(동부)에 비하여 농어촌지역(읍·면부)의 경우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높다. 이는 현세대 노인의 경우 산업화에 따라 자녀세대들이 도시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는 노인들은 본인의 거주지역에 머물기를 선호하여 단독가구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의미와 기능에 있어 도시와 농어촌의 차이가 있어 지역성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오영희 외 2005; 오영희 외, 2013; 이윤경 외, 2012;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2003, 2005).

이러한 지역의 중요성은 고령화 정도가 시도별, 시·군·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는 점에서 정책대상의 규모와 정책적 대응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정경희 외, 2003). 대표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율에는 시도별, 시·군·구별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13, 정경희 외 2009). 또한 인프라의 규모에 있어서도 지역별 차이가 커,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도시에 많이 건립되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경우는 충족율이 도시보다 농어촌지역에서 더 높은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13; 정경희 외, 2012).

나) 성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성차별적인 관행은 현 노인세대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노인이 전통적인 성역할 수행으로 인하여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기회가 제한되었고, 그로 인하여 독자적인 노후소득준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적 연금을 갖고 있는 비율이 낮다.

한편 평균수명의 남녀차이(통계청, 2013)로 인하여 여성이 경험하는 노년기는 길고 여성노인중 후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후기노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정경희 외, 2013a). 이러한 맥락의 연속선상에서 여성노인중 독거의 비중이 높기도 하다(정경희 외, 2013b).

이러한 남녀간의 특성과 노년기의 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남녀 노인의 차이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다(강은정 2007; 김미경·송다영, 2002; 김정석, 2003; 김지아, 2004; 류연구 외, 2007; 이수연 외, 2010; 오영희 외, 2005; 장미혜 외, 2012; 정경희 외, 2009). 거의 모든 욕구수준에 있어 남성노인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노인을 위해서는 경제적 의존성, 신체적 건강 저하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함,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고립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의 악화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향후도 이러한 관심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 연령

노인중 연령군별 차이 또한 극명하다(이인정, 1999; 오영희 외 2005; 정경희,

2011).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노년기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늦어졌기 때문에 공적연금을 갖고 있는 비율이 연령이 높을수록 낮으며, 이러한 소득원의 독자성은 노인의 자율성과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또한 가치관의 차이 또한 커 후기노인일수록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 및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물학적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욕구 또한 상이하다. 80세를 전후로 하여 기능상태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의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중요한 타자인 배우자, 친척, 친구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또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연령의 의미는 평균수명 100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기존의 복지제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생활양식의 변화, 영양상태 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섰으며 장기적으로는 100세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이삼식 외, 2011). Peter Laslett은 0에서 100세까지 인생주기를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1기(출생 ~ 교육의 종결): 경제적 의존기, 교육 및 훈련의 시기이며, 제2기(취업 ~ 퇴직):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의무 수행의 시기, 제3기(퇴직 ~ 신체 건강한 시기): 자아실현의 시기, 제4기(신체적 또는 정신적 쇠약 ~ 사망): 의존의 시기이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증대는 연령구조에 있어 후기노인의 증대와 더불어 제3기 즉 자아실현의 시기를 가능한한 연장시키고자 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 욕구를 강화시키고 있다.

라) 거주형태

우리사회는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노인들의 단독가구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2a). 노년기의 거주형태는 노인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노인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결정하며, 노인부양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동거부양 규범을 갖고 있는 우리사회에 있어 별거부양으로의 변화는

노년기의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바람직하고 작동할 수 있는 역할분담 모델에 대한 고민, 특히 기능상태 저하에 따른 수발에 있어 공적 자원과 비공식 수발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Cantor & Little, 1985; Litwak, 1985).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간의 접촉과 가족간의 지원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물리적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지원책과 서비스 욕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가족구성의 변화, 가족부양 의식이 점차 악화되면서 공적 부조와 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사적 부양간의 조화와 균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여유진 외, 2003). 이에 따라 가족부양과 관련된 사회인식과 현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b)

이러한 맥락에서 거주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김경혜, 1998; 유성호, 2000; 윤현숙 외, 2012)와 더불어 거주형태에 따른 삶의 질 차이(김주희·정영미, 2002) 및 거주형태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방안,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 마련(조소영 외, 2010; 정경희 외, 2012b; 최인희, 2012)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나. 노인복지 분야 통계 수요

1) 노인의 삶의 질 파악을 위한 통계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체계 개발과 통계 제시를 통하여 사회보고의 기능을 수행한 정경희 외(2012d)는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개별지표 121개와 인구사회적 배경관련 25개의 총 146개의 개별지표가 제시된 바 있다. 기존의 노인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개발된 본 지표체계는 노인이 사회에 통합되고 다양한 참여활동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고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러한 비전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와 그러한 노후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제시된 146개의 개별지표중 13개의 개별지표에 대해

서는 통계원이 없어서 향후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146개의 개별 지표중 중 35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9>와 같다.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산출되어야 할 통계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12> 한국 노인의 삶의 질 대표지표

대영역	중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
0. 인구사회적 배경 (6개)	인구동향	인구고령화	1 노인인구비
		수명 및 사망	2 건강수명
	재정	정부	3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규모
			4 공공사회복지지출 대비 노인복지지출 규모
	시설기반	장기요양서비스	5 노인의료비 비율
			6 장기요양시설 충족률
1. 노인의 사회심리적 안정 (4개)	노인의 사회심리적 안정	사회심리적 안정의 침해	7 노인 자살률
			8 노인학대경험률
			9 노인의 범죄피해율
			10 노인 범죄율
2. 노인의 개인자원 및 가족사회관계 (3개)	개인자원	개인역량	11 노인의 교육수준
	가족관계	가족구성	12 노인의 가구형태
	사회관계	사회관계	13 노인의 친구이웃과의 접촉 빈도
3. 노인의 물리적 안전 (5개)	거주환경	주거의 질	14 노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율
	교통환경	교통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	15 노인의 교통사고 부상률
			16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률
			17 도시철도 E/S, E/V 설치달성률
		18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4. 노인의 경제상태 (6개)	소득	노인 빈곤	19 노인의 절대빈곤율
	자산 및 부채	자산	20 노인의 자산소유액 및 구성
	지출	지출실태	21 노인가구의 가구지출액
			22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소득 안전망	공적 소득 안전망	23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 및 수급액
		24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호비율	
5. 노인의 건강 (7개)	건강수준	기능제한상태	25 노인의 ADL 제한율
		신체적 건강상태	26 노인의 만성복합질환 유병률
		정신적 건강상태	27 노인의 치매유병률
	건강관리	건강검진	28 노인의 운동실천율
			29 노인의 영양관리 필요율

대영역	중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
6. 노인의 사회참여 (4개)	건강정책	노인질환서비스	30 노인의 치매진료율
			31 노인 1인당 건강보험 월평균 진료비
	경제활동	경제활동현황	32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33 노인의 종사직종
			34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율
여가문화활동	여가문화활동	35 노인의 평균여가시간	

주: 정경희 외(2012d)의 <표 4-1>을 재인용

다. 노인복지정책 동향

노인을 대상으로한 정책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산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기초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가장 최근(2012년 10월 발표)에 이루어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보완판을 기초로하여 정책수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향후 30년간 노인으로 진입할 예비 노인세대에 집중한 사전예방적 정책 수립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제2차 계획을 수정보완하였는데, 보완판은 사전예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을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민간이 함께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전으로 ‘함께 준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완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적 수요가 높은 건강, 소득, 사회참여(일거리), 주거·교통분야를 집중보완하였고 기존의 기본계획중 고령화 관련 과제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0개를 수정보완하고 22개의 과제를 신규개발하여 포함하였다.

소득 분야의 경우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을 목표로 하여 개인이 가입한 공사적 연금내역 조회로 국민 스스로 노후소득을 확인 및 대비할 수 있는 공사적연금 연계 종합 포털을 구축하고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자산시장 변화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신규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건강의 경우 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수명연장을 목표로 하여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길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낮은 여성 중고령자를 위해 여성건강을 위한 예방적 관리체계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지킴이 체계 마련을 위하여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정착 및 개선, 농어촌 거주 노인 대상 '건강지킴이' 운영, 지역사회중심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 등을 신규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과 치매노인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 문항 확대·개선, 치매 발생 위험요인 사전관리강화를 위한 노인운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하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진입자 중 치매환자 우선 선정하는 등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계획을 강화하고 있다. 수혜자 확대 등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 고령화 대비 의료비 재정 합리화를 위한 임종기 환자 완화의료서비스 확대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구조조정 방안마련을 신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⁸⁾.

[그림4-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보완계획

비전	함께 준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			
목표	■ 2012-2015년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 2016-2030년 잠재성장률 및 재정 지속가능성 향상			
세부 추진목표 및 과제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 실질적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자산시장 대응 기반 마련	건강수명 연장 ◆ 스스로 미리 지키는 건강증진 체계 추진 ◆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지킴이 체계 마련 ◆ 노인건강정책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적극적 노년의 삶 ◆ 더 많은 고령자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평생교육 확대로 고령인력 생산성 강화 ◆ 자원봉사 및 여가문화 활성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 고령자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시설 개선 ◆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환경 정비 ◆ 고령자가 살기 좋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추진기반	■ 정부·기업·지역사회·개인이 함께하는 노후준비 ■ 법·제도·추진기구 기반 강화			

자료: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보완판. 2012.

8) 보완판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동일한 보도자료 요약내용이 정경희(2013c)에도 제시되고 있음.

이외에도 노인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각종 계획 또한 향후 정책적 관심을 보여준다 하겠다. 무엇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2012년)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12년 5월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08년에 최초로 치매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후 2012년 9월에는 「제2차(2013~2015)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2010년 6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 15)」을 맞아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도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계획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중 원시자료 구성을 위한 수요 전망

노년기 삶과 관련한 공통적인 문제는 긴 여가시간과 역할상실, 수입 감소와 건강악화이다(최성재·장인협, 2010). 따라서 연구나 정책적 관심사는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화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질적 양적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와 관심의 폭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동향 검토에 기초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주제의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진입 등으로 노인의 특성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정책수요도 변화할 것이므로 이러한 노년층의 다양성에 관심을 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이 다양성을 파악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사회참여의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현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적절한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균형과 다층적인 노후소득확보 방안 모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러한 특정 영역 외에도 노년기의 거주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양성과 거주형태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체계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생활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공식 및 비공식 케어제 공실태 및 정책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정책동향 및 연구동향에 기초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통, 신청, 수급자, 지급, 바우처 영역의 노인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영역

고령화 정도가 시군구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시군구별 특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파악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성, 결혼상태, 학력, 가구형태 및 가구규모에 대한 정보 수요는 매우 높을 것이다. 또한 노인 개개인의 건강상태 및 취업상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공적 개입의 우선순위 설정이 경제수준과 매우 밀접하므로 경제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신체적 노화와 더불어 장애의 발생가능성도 증대하고, 퇴직에 따라 소득도 감소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또한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다.

〈표4-13〉 공통 및 주체 영역의 주요 노인복지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중요도
00. 공통	D_소득재산보유구분코드	소득재산보유구분코드	선택
	D_수혜서비스 상태코드	수혜서비스 상태코드	선택
	D_제공주체 구분코드	제공주체 구분코드	선택
	D_부양능력판정 사유코드	부양능력판정 사유코드	선택
	D_종합장애등급코드	종합장애등급코드	선택
	D_수급권상실 사유코드	수급권상실 사유코드	선택
	D_보장구분코드	보장구분코드	선택
	D_소득분위 코드	소득분위 코드	필수
	D_의료급여종별 코드	의료급여종별 코드	필수
	D_상위행정지역 코드	시도명	필수
	D_상위행정지역 코드	시군구명	필수
	D_성별코드	성별코드	필수
	D_자치단체구분코드	자치단체구분코드	선택
	D_건강상태코드	건강상태코드	필수
	D_결혼상태코드	결혼상태코드	필수
	D_취업상태유형코드	취업상태유형코드	필수
	D_직종코드	직종코드	필수
	D_수급자구분코드	수급자구분코드	필수
D_학력코드	학력코드	필수	
D_주거유형코드	주거유형코드	필수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중요도
01. 주체	복지주체	건강상태코드	필수
		성별코드	필수
		결혼상태코드	필수
		근로능력점수	선택
		취업상태유형코드	선택
		수급자구분코드	선택
		연령	필수
		장애인여부	필수

나. 신청 영역

신청 영역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성별과 연령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 지원 내용 등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출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노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 적용 여부와 더불어 기초수급자 시청료면제, 전기요금 할인, 전화요금 할인 등의 개별적인 급여의 적용 실태도 관심을 두고 파악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또한 노인만을 대상으로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급여액은 부부가 모두 지급받는가 여부에 따른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용 여부와 더불어 배우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4-14〉 신청 영역의 주요 노인복지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중요도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성별코드	필수
		연령	필수
		배우자주체ID	선택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신청보장구분코드	선택
		지원내용구분코드	선택
		가구구분코드	선택
	서비스급여신청보장가구원현황	보장가구원수	필수
		기초노령배우자구분코드	필수
		기초수급자시청료면제신청여부	필수
		기초수급자전기요금할인신청여부	필수
		기초수급자전화요금할인신청여부	필수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중요도
		신청자수	선택
		가구수	선택
		가구원수	필수
		보장가구원수	선택
		기초생활보장가구주관계코드	선택
		기초생활보장가구여부	필수
		기초노령연금가구여부	필수

다. 수급자 영역

노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성별에 따른 수급율도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서 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노인의 제특성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급자의 소득, 부채 등과 관련된 정보에 기초하여 제특성별로 상세한 기초보장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소득원원(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에 대한 정보는 노인의 경제적 자원의 규모와 질적 수준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보 들은 기초보장과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급여에 대한 자격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들이다.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금액, 금융재산금액, 자동차금액 등과 같은 재산 역시 생활수준 및 수급자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이러한 정보에 기초한 소득평가금액, 재산소득환산금액, 소득인정금액 등은 노인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표4-15〉 수급자 영역의 주요 노인복지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중요도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근로소득금액	필수
		사업소득금액	필수
		재산소득금액	필수
		기타소득금액	필수
		추정소득금액	필수
		일반재산금액	필수
		금융재산금액	필수
		자동차금액	필수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중요도
		부채금액	필수
		소득평가금액	필수
		재산소득환산금액	필수
		소득인정금액	필수
		총소득금액	필수
		총재산금액	필수
		총공제금액	필수
		총부채금액	필수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국민연금수급여부	필수
		배우자수급여부	필수
		가구구성원수	필수
		자녀수	필수
		신청사유코드	필수

라. 지급 영역

다음으로 지급 영역에서는 학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부양의무자 관련 정보가 중요하다. 학력, 취업상태는 노인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건강상태는 신체적 보호의 필요성을,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은 사적 부양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상세정보는 노인의 경제상황을 진간접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제도개편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이다. 이외에도 기초노령연금 소급지급 현황 수급자수나 등록종류(일반등록/직권등록)별 소급지급 현황 수급자수 등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파악되어야 할 정보이다.

〈표4-16〉 지급 영역의 주요 노인복지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중요도
06. 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학력코드	필수
		취업상태유형코드	선택
		건강상태코드	필수
		부양의무자존재유무	필수
		부양능력판정코드	필수
	D_지급_서비스수급자현황	부양능력판정사유코드	선택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수혜주체ID	선택
		지원유형코드	선택
		제공상세내용	필수
		제공서비스ID	선택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중요도
		지급여부	선택
		소득인정액	필수
		수혜지원값	선택
		지급금액	선택

〈표4-17〉 정형통계상의 주요 노인복지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중요도
정형통계	-	기초노령연금 성별, 가구유형별 신청 현황	필수
		기초노령연금 신청 상태 현황	필수
		기초노령연금 신청자수 및 신규수급자수	필수
		기초노령연금 소득종류별, 소득구간별 수급자 현황	필수
		기초노령연금 재산가액 구간별 신청자 현황	필수
		기초노령연금 소급지급 현황 수급자수	선택
		기초노령연금 일반등록 소급지급 현황 수급자수	선택
		기초노령연금 직권등록 소급지급 현황 수급자수	선택

마. 시설 영역

노인의 2~3% 정도가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선우덕 외, 2012). 따라서 시설 영역의 정보는 노인복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통계 수요도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 영역에서 복지시설의 수입, 지출 등은 복지시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나 수요자의 관점보다는 관리행정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정보이다. 또한 국고보조시설여부는 재정 상태 외에도 시설이 최저의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입소정원수, 주간야간보호인원수, 단기보호인원수, 생활자수, 이용자수 등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반면에 종사자수는 제공 가능한 서비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다.

〈표4-18〉 시설 영역의 주요 노인복지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중요도
08. 시설	BF_복지시설현황	복지시설종류코드	필수
		복지시설유형코드	선택
		자격증소유인원수	선택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중요도
		수입 총 금액	선택
		지출 총 금액	선택
		자산 총 금액	선택
		국고보조시설여부	필수
		입소정원수	필수
		주간야간보호인원수	필수
		단기보호인원수	필수
		복지시설수	필수
		종사자수	필수
		생활자수	필수
		이용자 수	필수
		총인원수	필수

사. 바우처 영역

바우처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는 점에서 노인을 기준으로 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 노인을 통계단위로 하여 노인의 성별 및 연령, 지역별 신청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제특성별 신청현황과 판정결과 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갖고 있어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우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제공금액, 본인부담금액, 판정결과 및 판정결과 사유내용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즉 바우처 신청의 판정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급받게 되는 전체 금액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파악할 수 있어서 장애인이나 바우처로 받게 되는 혜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우처 영역에는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공기관의 행정지역, 채용 도우미수, 관리인원수 및 바우처 서비스의 상세 내용에 대한 정보는 바우처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4-19〉 바우처 영역의 주요 노인복지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중요도
바우처	BF_바우처신청현황	카드발급종류 구분코드	선택
		바우처 신청 구분코드	선택
		관리행정지역 코드	필수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중요도	
		장애유형상세 코드	선택	
		장애등급 코드	선택	
		성별 코드	필수	
		연령	필수	
		자격증지건수	선택	
		신청건수	선택	
		판정건수	선택	
		판정결과 코드	선택	
	BF_바우처판정 현황	제공금액	필수	
			본인부담금액	필수
			판정결과코드	필수
			판정결과구분코드	필수
			판정결과 사유내용	필수
			BF_바우처제공기관 현황	행정지역 코드
				채용도우미수
	관리인원수	선택		
	바우처사업구분 코드	선택		
	바우처서비스 상세내용	선택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정보 수요 전망

기존의 정책 동향이나 정책과 관련된 통계 생산 환경을 고려할 때 통계 자료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 수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정보군은 정형통계 중 노인복지 분야에서 통계 생산을 위하여 그 수요가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 군이다. 우선 순위로 표시된 숫자 중 1은 그 필요성이 높아서 반드시 통계 생산을 위한 DM 구성에서 포괄이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며, 2는 그 필요성의 수준이 1보다 낮으나 DM의 포괄성을 높일 경우 포괄을 권장할 수준의 정보들을 의미한다.

〈표4-20〉 노인복지 분야 통계생산을 위한 정보 수요 분석 결과

중분류	보고서명	중요도 (우선순위)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주거유형별 현황	1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유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1
소득재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부채종류별 현황	1
신청, 탈락 통계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결과 현황	1
	월별신규신청자의 선정 및 부적합 현황	1

중분류	보고서명	중요도 (우선순위)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집행실적 현황	1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행실적 현황	1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집행실적 현황	1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집행실적 현황	1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집행실적 현황	1
	기초생활보장 보장탈피자 월별추이	1
	보장별 복지대상자 보장별(자격별) 상세현황(시군구별)	1
사업별 복지대상자 사업별 현황(중복제외)	1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소유 용도별 현황	1
소득재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부채별 현황(부양의무자 포함)	1
신청, 탈락 통계	기초생활보장 탈락 가구의 순재산 현황	1
정기통계	16개 시도 연령별 장애인(등급) 현황	1
시설/법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상세현황	1
급여	시설유형별 시설 생계급여 신청 현황	1
	지역별 시설 생계급여 신청 현황	1
	시설 생계급여 신청 현황(유형별 상세)	1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및 재산 보유 현황	1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현황	1
정기통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수 현황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종결자수 현황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중도종결 사유별 현황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수행건수 현황	1
	의료급여 관리사별 사례관리 종결자수 현황	1
	의료급여 관리사별 사례관리 수행실적 현황	1
	장기입원 사례관리 종결자수 현황	1
	장기입원 사례관리 중도종결 사유별 현황	1
	장기입원 사례관리 관리사별 사례관리 종결자수 현황	1
	장기입원 관외기관 사례관리 실적 현황	1
장기입원 사례관리 자원연계 현황	1	
수급자특성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직업현황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훈련 현황	1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종류별 건축상태 현황	1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장애인 포함 가구수 현황	1
시설/법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세현황	1
급여	시설유형별 시설 운영보조금 신청 현황	1
	지역별 시설 운영보조금 신청 현황	1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신청자수 및 신규수급자수	1
	기초노령연금 소득종류별, 소득구간별 수급자 현황	1
	기초노령연금 재산가액 구간별 신청자 현황	1

중분류	보고서명	중요도 (우선순위)
상담사례	상담사례 대상자 발굴경로 현황	1
정기통계	월별 급여지급현황(백만단위)	1
	월별 급여지급현황(원단위)	1
	보장별(자격별) 월별수급자 현황	1
	보장별(자격별) 보장탈피 원인별 현황	1
	보장별 환수대상자 및 환수액 현황	1
복지사각지대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현황(발굴경로)	1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현황(발굴장소)	1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현황(주요보호 필요사항)	1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현황(조치현황)	1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현황(지원 조치현황)	1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현황(미지원 조치현황)	1
정기통계	차상위 장애인 수당 신규 수급자 현황	1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신청 상태 현황	1
	기초노령연금 소급지급 현황 수급자수	1
	기초노령연금 일반등록 소급지급 현황 수급자수	2
	기초노령연금 직권등록 소급지급 현황 수급자수	2
통합	신규신청시 2종 이상의 급여 및 서비스 신청 건수	1
	급여유형별 제3자 계좌이용현황	2
	제3자 계좌이용자 예외사유별 현황	2
수급자통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별 총괄현황	1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수 현황	1
	기초생활보장 연령별, 수급자 구분별, 성별 현황	1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장애인 연령별 현황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애인등급별 현황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상태 현황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별, 교육수준별 현황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유형별 현황	2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사유별 현황	2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 가구구성별 현황	1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 가구유형별 현황	1
급여통계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별 급여지급 현황	2
소득재산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및 소득, 재산가액 현황	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별 현황	1
신청, 탈락 통계	기초생활보장 수급 종류별 보장탈피 원인별 현황	2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 가구원수별, 연령별 현황	2
	기초생활보장 가구원수별 현황	2

중분류	보고서명	중요도 (우선순위)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 연령별 현황	2
	기초생활보장 보장탈피자 현황	2
수급자통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현황	2
수급자특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상태별 현황	1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특례기준별 현황	2
소득재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소득공제유형별 현황	2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 현황 II	1
신청, 탈락 통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및 선정 현황(당월)	2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및 급여비 현황	2
보장별	복지대상자 보장별(자격별) 총괄현황	2
사업별	복지대상자 사업별 현황(중복허용)	2
시설/법인	사회복지시설 총괄현황	2
의료급여	의료급여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현황	2
정기통계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전·사후 접수 변화 현황	2
	의료급여 관리사별 사례관리 대상자수 현황	2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성별, 가구유형별 신청 현황	1
상담사례	상담사례 대상가구 유형별 현황	1
통합	급여지급현황	1
복지사각지대	복지소의계층 발굴지원현황(발굴대상)	1

4. 적정 공유주기 등 고려점

가. 정보의 유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정보의 활용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횡단자료와 더불어 종단자료의 형태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또는 일부 사례에 대한 종단자료의 DB 구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경우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노인 내부의 다양성이 크다. 특히 연령과 성은 노인 내부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변인이다. 60대의 건강한 노인과 80대의 신체적 노화가 상당히 진전된 노인은 생활현황 뿐만 아니라 복지수요 또한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부장적인 성역할을 경험해온 노인층에서의 여성노인의 불리함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성별 연령별로 구분된 통계가 산출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보는 노인 개인을 단위로 한 것인 반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강조되어야 할 것은 기초자치단체별로 통계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고령화 수준에 큰 차이가 있고 노인의 특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정책을 수립·수행함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 자료의 적정 공유주기

노인의 연령이나 성 등 인구사회적 특성은 변화가 적은 정보이다. 그러나 다른 정보와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1년 단위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명, 수혜서비스 급여나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여부 등은 월별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월 주기 단위로 제공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각종 소득 및 자산관련 정보 등은 일반적으로 1년 주기가 적절할 것이다. 정기 및 비정기적인 소득의 발생이나, 재산세 부과 시스템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포괄적으로 정보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자 관련 정보 또한 소득 및 자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년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3절 장애인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1. 연구동향과 주요 정보

이 절에서는 장애인 분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의 활용과 공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장애인 분야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장애인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변수들을 정리할 것이다. 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빈곤, 고용, 사회서비스, 특수교육, 재활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연구들은 크게 빈곤 및 소득보장, 고용, 사회서비스의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가. 빈곤과 소득보장 분야 연구

가구소득은 장애인 빈곤 관련 연구에서는 핵심 변수로 여러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다. 또한 빈곤 지위(빈곤 여부), 빈곤 상태의 변화와 소득이동(김태완 외, 2010), 빈곤탈출확률(이동영, 2005), 삶의 수준(이선우, 2005, 2008) 등도 많이 사용되는 종속변수이다.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원천별로 분석하는 연구도 많다. 김태완(2010)은 장애인의 소득을 임금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공적이전, 사적이전)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인(비장애인)과 비교하였다.

장애인의 빈곤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독립변수들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 관련 요인 및 경제적 요인 등이 있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인의 빈곤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구원 수, 교육수준, 지역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가구주의 성별은 가구소득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선우(2005)는 남성 가구주는 여성 가구주에 비해 가구소득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종진·박자경(2007)은 근로장애인의 빈곤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선우, 2005)도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인 가구주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구소득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박자경(2007)도 근로장애인에 대해서 유사한 결과를 밝히고 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김태완 외(2010)는 장애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빈곤에 처할 확률은 높아지며, 반복빈곤의 확률은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승현·백은령(2012)도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인노인의 빈곤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결혼상태도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종진·박자경(2007)은 이혼·사별한 근로장애인이 미혼 근로장애인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완 외(2010)는 유배우자에 비해 사별·이혼·별거하거나 미혼이 지속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복빈곤의 가능성은 유배우자에 비해 사별·이혼·별거자가 더 높았으며, 미혼자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구원 수는 많을수록 장애인의 가구소득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우, 2005). 또한 김태완 외(2010)도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속빈곤과 반복빈곤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김종진·박자경(2007)은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근로장애인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동화(2011)도 근로여성장애인은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김태완 외(2010)는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에 비해 낮은 학력자는 지속적으로 빈곤할 가능성과 반복빈곤의 가능성이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승현·백은령(2012)도 교육년수가 짧을수록 빈곤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임수정·유완식(2011)도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빈곤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여, 학력이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 요인은 가구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여러 연구(이선우, 2005, 2008)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되어 왔다. 이선우(2005)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군 지역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종진·박자경(2007)도 비수도권 거주 장애인이 수도권 거주 장애인보다 빈곤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였다. 김태완 외(2010)는 군 지역에 비해 서울은 지속빈곤과 반복빈곤의 가능성이 모두 낮고, 광역시와 시 지역은 지속빈곤의 가능성은 더 높고 반복빈곤의 가능성은 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2) 장애 관련 요인

장애가구원 유무, 장애종류,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장애 관련 요인들이다. 이선우(2005)는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선우(2008)도 내부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삶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장애종류를 보면, 김태완 외(2010)는 내부장애는 외부장애에 비해 지속빈곤의 가능성은 낮으나 반복빈곤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정신장애는 외부장애에 비해 지속빈곤의 가능성과 반복빈곤의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장애정도는 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데, 김종진·박자경(2007)은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형수·김용섭(2011)은 일상생활능력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장애발생시기도 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 김종진·박자경(2007)은 후천적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보다 빈곤에 빠질 확률이 더 낮다고 밝혔다.

3) 경제적 요인

취업여부, 취업자 수, 취업형태 등의 고용 관련 요인과 자가여부 등의 경제적 요인은 장애인 빈곤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들이다.

취업 여부는 장애인 가구의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경성(2013)은 장애인 가구주가 취업 시 가구원 근로소득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노승현·백은령(2012)은 미취업 장애노인이 취업 장애노인에 비해 빈곤 확률이 높으며, 취업가족비율이 낮을수록 빈곤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임수정·유완식(2011)도 취업 장애인이 미취업 장애인보다 빈곤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이동영(2005)도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호전될수록 장애인의 빈곤탈출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취업의 형태도 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동화(2011)는 근로여성장애인의 일자리가 고용안정성이 없을수록 빈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근로시간은 증가할수록 빈곤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자가 여부도 장애인 빈곤 연구(이선우, 2005, 2008)에서는 자주 사용된다. 이는 장애인가구의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가가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우, 2005).

나. 고용

장애인 연구의 고용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종속변수는 취업여부, 취업형태⁹⁾, 경제활

9) 취업형태는 임금고용과 자영업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영업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이선우, 1997).

동유형, 임금(근로소득), 고용유지기간(또는 직업유지¹⁰⁾), 직무만족도 등이다. 또한 독립변수로는 개입에 해당되는 고용정책, 직업재활서비스 등이 빈번히 활용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의 ICIDH가 개발되고,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제정된 이후 1990년대에는 장애를 개인에게 내재된 특성이 아니라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의 장애수준과 기능적 한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도, 노동시장의 상황, 작업장의 환경, 고용경력 등의 환경요소들의 제약을 극복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Westmorland and Williams, 2002; 이석원, 2008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고용분야 연구 경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강동욱·이혁구(2008)는 사업체를 분석단위로 활용하여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s)이 장애인의 고용증가와 유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용 분야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 관련 요인, 취업 관련 요인, 개입 관련 요인의 네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인 고용 연구에서도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매우 빈번하게 활용되는 변수들이다. 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구주여부, 가구소득, 그리고 교육정도 등 인적자원이 사용된다. 성별은 특히 종속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강동욱(2004)은 남성이 여성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선우(2001a)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근로소득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석원(2008)은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확률 및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직업재활사업 이용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10) 직업유지로 인정하는 기간은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연희·채인석(2009)은 1개월 이상을, 강순화·손용근(2008)은 자료의 특성에 따라 약 2년의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직업유지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 및 6개월 이상을 직업유지로 인정하고 있다.

나, 남자는 여자에 비해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용찬 외(2004)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근속기간이 길다고 보고하였다.

연령은 다양한 고용 관련 종속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연령은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데, 강동욱(2004)은 연령이 많을수록 자영업 종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연령은 장애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쳐서,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많다는 연구(이선우, 2001a)도 있다. 반면에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이 낮아진다는 연구(강동욱, 2002)도 있다. 또한 연령은 장애인의 고용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변용찬 외(2004)와 변용찬·이정선(2005)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속기간이 길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강순화·손용근(2008)도 연령이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유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는데, 이선우(1997)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이선우(2001a)는 기혼이 미혼이나 이혼·사별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결혼상태는 경제활동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선우(2001b)는 사별·이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고, 취업자보다는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결혼상태는 임금에도 영향을 미쳐서, 강동욱(2002)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기혼 및 이혼·사별은 모두 미혼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구주 여부는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또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이다. 이선우(2001b)는 가구주가 비가구주보다 비경제활동보다는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실업자보다는 취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동욱(2002)은 가구주 여부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가구주는 비가구주에 비해 비경제활동보다는 취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선우(2001a)에 따르면 가구주는 비가구주에 비해 근로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비가구주보다 근로소득이 더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강동욱, 2002). 변용찬 외(2004)는 취업자의 근속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유배우인 경우 근속기간이 더 길다고 밝혔다.

가구소득이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선우(2001b)는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장애인은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오세란(2008)은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이 많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교육정도와 자격증 등은 인적자원을 나타내는 변수로 고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그 영향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선우(2001a)와 오세란(2008)은 모두 교육정도가 취업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선우(2001b)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취업자보다는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에 이선우(2001a)는 자격증은 취업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교육정도가 장애인의 근로소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이선우, 2001a; 이석원, 2008)가 많이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이 많았다(강동욱, 2002).

2) 장애 관련 요인

장애 관련 요인은 장애인의 고용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들이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장애원인, 장애기간 등이 취업여부, 임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장애 관련 요인은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이선우(1997)는 장애유형이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쳐, 청각장애가 지체장애보다 취업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이석원(2008)은 장애유형이 직업재활사업 이용 확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정신장애인이 신체장애인에 비해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장애유형은 취업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신체장애인이 내부장애인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이선우, 2001a). 또한 장애유형의 임금이 대한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석원(2008)은 정신장애에 비해 비신체장애, 시각장애 및 신체장애가 모두 임금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이형렬(2008)은 청각장애인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보고하였다.

장애정도도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성규 외(2004)와 오세란(2008)은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강동욱(2002)은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가 높을수록 여성장애인이 취업이나 실업보다는 비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장애정도는 취업형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강동욱, 2004). 또한 이석원(2008)은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확률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선우(2001a)는 장애정도의 대리변수로 일상생활 도움필요도를 사용하면, 일상생활의 도움필요도가 낮아질수록 근로소득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변용찬 외(2004)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장애정도와는 별개로 건강상태를 변수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오세란(2008)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장애기간은 또 다른 장애 관련 요인이다. 이선우(2001b)는 장애기간이 증가할수록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실업자, 실업자보다는 취업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선우(2001a)는 장애기간이 길수록 근로소득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장애원인도 여러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유공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확률이 더 높았으며, 산업재해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임금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이석원, 2008). 또한 산업재해 장애인은 비산업재해 장애인보다 임금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이선우, 2001a).

3) 취업 관련 요인

급여, 사업체의 규모, 근속기간 등이 주요 취업 관련 요인이다. 유동철(2000)은 근속년수가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강순화·손용근(2008)은 실급여와 기업규모가 모두 직업유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실급여가 많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직업유지 가능성은 높아진다. 변용찬 외(2004)도 임금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남연희·채인석(2009)은 직업적응능력과 직업유지기간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채식·이성규(2005)는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4) 개입 관련 요인

장애인의 고용 분야에서 개입 관련 요인으로는 직업훈련 등의 직업재활서비스, 직업훈련기간, 직업훈련내용 등을 들 수 있다. 이석원(2008)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성과를 내는 장애인들이 주로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선택편의를 통제하지 않으면 임금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의 효과가 부정적이지만 이를 통제하면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변용찬 외(2004)는 직업훈련을 경험하였을 때 근속기간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한 이형렬(2008)도 뇌병변, 신장, 청각장애 근로자의 경우 직업훈련기간이 길수록 직업유지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에 직업훈련 내용은 직업훈련기간과는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 이형렬(2008)은 직업훈련내용이 업무와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연구는 연구대상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연구에서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는 빈곤 및 소득 관련 연구나 고용 관련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자료의 부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자료는 거의 대부분 장애인 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및 사회서비스 욕구 실태에 대한 자료이다. 반면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행정자료는 거의 구축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사회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의 자료는 구축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구축된 자료에 대한 접근도 내부연구자 등에게만 허용될 뿐 일반 연구자에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제공되는 통계도 요약 통계의 형태로만 제공될 뿐 특히 마이크로 데이터 형태의 자료로는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서비스의 효과성 분석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사회서비스 이용자 분석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분석하는 연구들 중에는 장애인만을 분리하여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도 있으나 특히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전체 이용자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돌봄서비스 이용자 분석의 경우,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종속변수이다. 이는 돌봄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돌봄서비스의 성과 지표로 주관적 건강상태, 취업(이익섭 외, 2007), 활동보조서비스 효과성¹⁾(이익섭 외, 2008; 이채식, 2012), 자기결정권(이채식 외, 2009)을 사용하기도 한다.

거주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정명숙·강석임, 2010) 들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생활만족도), 자립욕구(정병권·이선우, 2010) 등을 종속변수로 활용하기도 한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연구에서도 통제변수 또는 독립변수로 많이 사용된다. 특히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구원수 또는 동거가족수(이중섭, 2010) 등이 사용된다. 또한 학력(서연정, 2010; 이중섭, 2010)도 장애인의 인적 자원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된다.

성별의 경우, 이채식 외(2009)는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보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더 많이 갖는다고 하였다. 연령의 경우, 이익섭 외(2007)는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참여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중섭(2010)은 결혼상태가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쳐, 배우자가 있는 장애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동거가족수가 많을수록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학력의 경우, 이채식(2012)은 학력이 높을수록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사회

1) 이익섭 외(2008)는 활동보조서비스 효과성을 개인적 효과성과 사회참여적 효과성으로 구성하고, 전자는 서비스 이용 후 자신감의 변화, 잠재능력의 발견, 자신이 처한 상황의 극복의지 등 5개 문항, 후자는 여가 활동, 사회활동 참여, 지인들과의 만남, 공공시설의 이용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참여 효과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2) 장애 관련 요인

장애 관련 요인 중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일상생활능력 포함), 장애기간도 장애 관련 요인의 하나로 많이 사용된다.

장애유형은 중요한 장애 관련 요인이다. 이채식(2012)은 자폐성 장애에 비해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의 활동보조 개인적 효과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일상생활능력은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연구(김형수·김용섭, 2011; 서연정, 2010)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변수이다. 일상생활능력은 ADL(기본적 일상생활능력) 또는 IADL(수단적 일상생활능력) 척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서연정(2010)은 중도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이 높아지면 사회통합이 상승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중섭(2010)은 IADL이 높을수록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3)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가구소득이 많이 활용되며, 자가여부가 재산 및 계층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직업 유무도 빈번히 사용된다.

서연정(2010)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혔으며, 이중섭(2010)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채식 외(2009)는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더 많이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익섭 외(2007)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심리적 자기의존과 취업/고용유지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참여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채식(2012)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직업이 있는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개인적 효과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4) 환경 요인

서연정(2010)은 물리적 환경(시설의 편리성)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이 상승하며, 이 중섭(2010)은 집구조의 편리함 정도가 높을수록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5) 서비스 관련 요인

서비스 관련 요인으로는 도움제공자 유무, 서비스제공기관의 유형,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품질 등을 들 수 있다. 김윤수·류호영(2012)은 돌봄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가사지원만족도와 정서지원만족도로 나타나, 가사지원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서지원만족도가 높을수록 돌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중섭(2010)은 도움제공자가 있는 장애노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송재숙·정종화(2009)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 만족도가 차이가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활동보조인이 전업 활동보조인일수록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에 활동보조인의 경력이 많을수록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낮았다. 이동영·박경하(2010)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요인은 서비스 가치를 매개로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익섭 외(2007)는 활동보조서비스 1회 평균 이용시간이 길수록 심리적 자기의존이 높아지며, 서비스 이용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참여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정명숙·강석임(2010)은 작업치료 참여가 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 사회서비스 공급자 분석

(1) 기관 분석

사회서비스 공급자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변수들을 보면 사회서비스 성과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의 비용과 서비스의 품질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비용(또는 보호비용)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강용설·김용득(2008)은 장애인거주시설의 보호비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위해 거주시설의 유형(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홈),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주택임대 형태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보호비용에는 직접서비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서비스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비, 자산(감가상각비) 및 공간원가(건축물비의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시켰다.

(2) 서비스 제공자 분석

장애인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분석은 장애인활동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이 크게 증가하던 시기에 기관 및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 소진, 효능감 등에 대한 연구들이 매우 많이 시행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연구도 직무만족, 소진 등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시행되어 왔다. 또한 독립변수로 직무스트레스, 조직참여, 자아효능감, 직무지식 등을 들 수 있다.

이용·김동기(2011a)는 활동보조인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아지며, 코디네이터의 지원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소진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김동기(2011b)는 활동보조인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근식 외(2012)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조직참여(보수교육 및 간담회)가 높을수록 근무지속의사가 낮아진다고 밝혔다. 반면에 기대급여는 높을수록 근무지속의사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익섭 외(2010)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장애인과 성별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기관에서 활

동보조인의 의견반영정도가 낮을수록, 행정업무로 인한 어려움이 클수록 이직의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철·이용(2012)은 자아효능감과 직무지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용 외(2010)는 활동보조인이 지각하는 분배공정성이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김동기(2011)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소진이 낮을수록,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이직의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박경수·유효정(2010)도 장애인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는 직업공지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2. 원시자료 구성을 위한 수요 전망

여기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비정형통계에 대한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공통, 신청, 수급자, 지급, 장애인 및 바우처 영역의 장애인 관련 정보에 대한 연구 수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공통 영역

먼저 공통 영역에서는 대상자의 근로무능력 사유에 대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은 근로무능력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무능력 사유와 함께 근로능력판정과 관련된 근로능력판정 사유 및 근로능력판정 상태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공공부조성 급여는 기본적으로 자산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소득재산보유에 대한 정보 및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도 중요하다. 의료급여종별도 대상자의 소득계층을 보여줄 수 있는 대리변수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범위가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아직 부양의무자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부양능력판정 사유도 중요한 정보이다.

자활참여 소요기간은 최근 장애인에게도 관련이 높아지는 정보이다. 과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중증장애인의 고용활동은 최근에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

이다.

이미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중요한 통제변수들이다. 따라서 지역(시도명, 시군구명), 성별, 결혼상태, 학력, 주거유형 등에 대한 정보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은 빈곤, 취업, 사회서비스 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수요가 높은 정보들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고용상태는 고용 영역뿐 아니라 복지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독립변수들이다. 따라서 취업상태유형, 직종 등에 대한 정보 수요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4-21〉 공통 영역의 주요 장애인복지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공통	D_근로무능력 사유코드	근로무능력 사유코드
	D_상위서비스	서비스명
	D_소득재산보유구분코드	소득재산보유구분코드
	D_수혜서비스 상태코드	수혜서비스 상태코드
	D_제공주체 구분코드	제공주체 구분코드
	D_부양능력판정 사유코드	부양능력판정 사유코드
	D_근로능력판정 사유코드	근로능력판정 사유코드
	D_근로능력판정 상태코드	근로능력판정 상태코드
	D_장애유형코드	장애유형코드
	D_종합장애등급코드	종합장애등급코드
	D_수급권상실 사유코드	수급권상실 사유코드
	D_보장구분코드	보장구분코드
	D_소득분위 코드	소득분위 코드
	D_자활참여 소요기간 코드	자활참여 소요기간 코드
	D_의료급여종별 코드	의료급여종별 코드
	D_상위행정지역 코드	시도명
	D_상위행정지역 코드	시군구명
	D_성별코드	성별코드
	D_자치단체구분코드	자치단체구분코드
	D_건강상태코드	건강상태코드
	D_결혼상태코드	결혼상태코드
	D_취업상태유형코드	취업상태유형코드
	D_직종코드	직종코드
	D_수급자구분코드	수급자구분코드
	D_학력코드	학력코드
	D_주거유형코드	주거유형코드
	D_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구간코드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구간코드

나. 신청 영역

신청 영역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성별과 연령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 지원 내용 등의 정보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4-22〉 신청 영역의 주요 장애인복지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집)	성별코드
		연령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지원내용구분코드
		가구구분코드
서비스급여신청보장가구원현황	신청자수	

다. 수급자 영역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서 수급자 영역에서도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수급자의 소득, 부채 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수요는 높을 전망이다.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다양한 유형의 소득에 대한 정보는 장애인의 빈곤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각종 급여에 대한 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가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통해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 참여자로서의 취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역시 빈곤 지위와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일반재산금액, 금융재산금액, 자동차금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득평가금액, 재산소득환산금액, 소득인정금액 등은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총소득금액은 1절의 연구동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주요 변수로 사용된다. 따라서 가장 수요가 높은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4-23〉 수급자 영역의 주요 장애인복지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추정소득금액
		일반재산금액
		금융재산금액
		자동차금액
		부채금액
		소득평가금액
		재산소득환산금액
		소득인정금액
		총소득금액
		총재산금액
		총공제금액
총부채금액		

라. 지급 영역

다음으로 지급 영역에서 개인근로능력유무와 장애인여부는 장애인 대상자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대상여부, 국민연금수급여부, 의료급여종별, 장애인보장구분 등은 각종 장애인복지급여 자격여부 및 수급여부를 보여주는 정보로서 그 수요는 매우 높을 전망이다.

〈표4-24〉 지급 영역의 주요 장애인복지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6. 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개인근로능력유무
		장애인여부
		장애인연금대상여부
		국민연금수급여부
		의료급여종별코드
	D_지급_서비스수급자현황	장애인보장구분코드

마. 시설 영역

장애인은 노인과 함께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은 대상 집단이다. 따라서 시설 영역의 정보도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하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 영역에서 복지시설종류 및 복지시설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다. 또한 시설종사자에 대한 정보도 중요한데, 자격증소유는 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정보에 해당한다.

복지시설의 수입, 지출 및 자산 등은 복지시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비용을 산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 또한 국고보조시설여부는 재정 상태 외에도 시설이 최저의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입소정원수, 주간야간보호인원수, 단기보호인원수, 생활자수, 이용자수 등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반면에 종사자수는 제공 가능한 서비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다.

시설생활자 현황은 장애인복지에서 특히 중요한 정보이다.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외에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등 비교적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시설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시설생활자 현황 정보는 시설생활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시설생활자 현황에서는 입소 사유 내용, 입소 사유 구분, 퇴소 사유 구분, 성별, 입소자 연령, 학력, 그리고 직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1절 연구동향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직위 등 고용 관련 정보도 고용 분야 연구에서 매우 수요가 많은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입소와 퇴소의 사유는 시설서비스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나, 그동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거의 분석이 되지 않은 정보이다.

또한 시설종사자 현황에서는 시설종사자의 경력기간 및 종사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설의 인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서비스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이다.

〈표4-25〉 시설 영역의 주요 장애인복지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8. 시설	BF_복지시설현황	복지시설종류코드
		복지시설유형코드
		자격증소유인원수
		수입 총 금액
		지출 총 금액
		자산 총 금액
		국고보조시설여부
		입소정원수
		주간야간보호인원수
		단기보호인원수
		복지시설수
		종사자수
		생활자수
		이용자 수
		BF_시설생활자 현황
	입소사유구분코드	
	퇴소사유구분코드	
	성별코드	
	입소자연령	
	학력코드	
	직위코드	
BF_시설종사자 현황	경력기간내역	
	종사자수	

바. 장애인 영역

장애인 영역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장애 판정 및 진단 정보, 재활보조기구,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장애인편의시설용도는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보로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인 진단에서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장애등록구분 등의 정보는 장애 관련 정보 중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선천성 장애 사유, 후천성 장애 사유는 장애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서 고용 분야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변수들이다. 장애발생 연령과 등록일자 등은 생애주기 중에서는 어떤 시기에 장애가 발생을 했는지, 장애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빈곤, 고용 분야 연구에서 수요가 높은 정보이다. 또한 재활보조

기구에서는 재활보조기구 유형, 내구연한, 보조기구품목 구입금액 등의 정보는 장애인 재활과 관련 분야뿐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추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 해당 되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4-26>장애인 영역의 주요 장애인복지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17.장애인	BF_편의시설물	장애인편의시설용도 구분코드	
	BF-장애 판정 상·하향 변경 현황	주 장애 유형 코드	
	BF-장애인 진단		장애 유형 코드
			장애 등록 구분 코드
			장애 등급 코드
			선천성 장애 사유 코드
			후천성 장애 사유 코드
			장애발생연령
			등록일자
	중합장애 등급		
	BF_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		신청 재활보조기구 코드
			장애 등급코드
			내구연한
			장애인 보조 기구 기타 품목 코드
BF-중증장애인 위탁심사결과 내역		보조기구품목 구입금액	
		주 장애 유형 코드	
		주 장애 등급코드	
		중복 장애 여부	

사. 바우처 영역

재가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중에는 바우처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다. 따라서 바우처 영역의 정보는 장애인 분야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먼저 카드발급종류, 바우처 신청구분, 관리행정지역은 바우처를 분류하는 기본 정보에 해당한다.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영역의 장애인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애 관련 정보이다. 또한 바우처 신청자의 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정보도 빈곤, 고용 및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바우처 자격, 신청, 판정, 그리고 판정결과는 서비스에 대한 신청 상황과 함께 바우처를 받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우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제공금액, 본인부담금액, 판정결과 및 판정결과 사

유내용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즉 바우처 신청의 판정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급받게 되는 전체 금액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파악할 수 있어서 장애인이 바우처로 받게 되는 혜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우처 영역에는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공기관의 행정지역, 채용 도우미수, 관리인원수 및 바우처 서비스의 상세 내용에 대한 정보는 바우처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4-27〉바우처 영역의 주요 장애인복지정보

주제 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바우처	BF_바우처신청현황	카드발급종류 구분코드
		바우처 신청 구분코드
		관리행정지역 코드
		장애유형상세 코드
		장애등급 코드
		성별 코드
		연령
		자격중지건수
		신청건수
		판정건수
	판정결과 코드	
	BF_바우처판정 현황	제공금액
		본인부담금액
		판정결과코드
	BF_바우처제공기관 현황	판정결과구분코드
판정결과 사유내용		
행정지역 코드		
채용도우미수		
관리인원수		
		바우처사업구분 코드
		바우처서비스 상세내용

3.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정보 수요 전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장애인 분야 통계자료(정형통계)에 대한 수요는 연구자와 행정담당자 외에도 다양한 일반시민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상담사례 및 통합업무의 주요 정형통계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예상 수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정형통계 중에서 장애인과 관련되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장애인 연령별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애인 등급별 현황 및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직업현황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장애인 연령별 현황은 시도별 장애인이 있는 수급자가구수와 함께, 해당 가구의 장애인수, 장애인의 연령별 장애인수 등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통계는 지역별 장애인 수급자가구 수 및 수급장애인 수 뿐만 아니라 연령별 분포를 파악할 수 있어서 각 지역의 저소득층 대상 장애인서비스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애인 등급별 현황은 지역별로 장애인의 등급별 분포를 제공해주는 통계로서, 각 지역의 장애정도별 장애인서비스를 계획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의료재활서비스, 사회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직업현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장애인 수급자의 수와 직업과 관련된 소득이 없는 무직 장애인 수급자의 수를 제공해주는 통계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계산하고 있어서 개별 장애인 수급자의 직업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장애인 수급자 중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비율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유형별 현황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분포와 함께, 연령(연소 또는 연로), 장애, 질병부상(진단서 제출), 임신부, 군복무, 희귀난치성질환, 20세 미만 중고교재학생 등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판정 유형별 분포를 제시하는 통계이다. 이 통계를 활용하여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수급자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수급자수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가구 가구유형별 현황은 일반 수급가구 중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미혼부모세대, 조손세대, 기타 등

으로 구분된 세대의 가구수 및 가구원수 분포를 제공하는 통계이다. 전체 일반 수급가구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정보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소유 용도별 현황은 차량소유 용도를 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10년 미만 차량 50만원 이하, 보장기관 인정차량, 10년 이상 차량, 본인 질병 부상, 가구원 질병 부상, 2개월 이내 처분예정 및 전환예정 등으로 분류하여 분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수급가구의 장애인용 차량 소유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장애인 포함 가구수 현황은 장애인 수급가구의 장애인 수 분포를 제공하고 있어서, 장애인 수급가구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 내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구가 전체 장애인 수급가구의 10%에 달하고 있어서 이들 가구들은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큰 반면에, 가구원 중에 장애인들이 많아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소득공제유형별 현황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고엽제 후유증 중 중증장애인수당,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만성질환자 6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근로무능력자(직계존속비 제외)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수의 최저생계비, 장애인연금,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장애인 관련 소득공제유형별 가구 수의 분포를 가구원수 별로 제공한다. 이는 장애인 수급가구의 상세한 소득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표4-28〉 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장애인복지 통계

전체 번호	보고서명
정형-011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장애인 연령별 현황
정형-01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애인 등급별 현황
정형-013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직업현황
정형-01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유형별 현황
정형-022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가구 가구유형별 현황
정형-02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소유 용도별 현황
정형-026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장애인 포함 가구 수 현황
정형-030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소득공제유형별 현황

나. 장애인복지

장애인 유형별, 등급별 등록 현황은 15개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장애인 수 분포를 시도별로 제공하는 통계이다. 이 통계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 중 하나이다. 장애인 모두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요는 장애인 수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장애등급별 분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연령별, 등급별 등록 현황은 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를 장애등급별 및 성별로 제공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및 장애정도별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해당 생애주기에 맞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장애인 연령별, 유형별 등록 현황은 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를 장애유형별 및 성별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유형에 따라 생애주기별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유아기 및 아동기의 지체장애아동, 시각장애아동, 청각장애아동, 지적장애아동, 뇌병변장애아동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장애인을 위한 자폐성 장애인복지서비스, 청년기 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장년기 및 노년기 신체내부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 해당 생애주기에 맞는 특정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표4-29〉 장애인복지 분야의 주요 통계: 장애등록

전체 번호	보고서명
정형-051	장애인 유형별, 등급별 등록 현황
정형-052	장애인 연령별, 등급별 등록 현황
정형-054	장애인 연령별, 유형별 등록 현황
정형-055	장애인 등급별, 연령별, 유형별 등록 현황
정형-084	전국 장애인(유형, 등급) 현황
정형-085	장애유형에 대한 16개 시도 장애인(등급)현황
정형-086	전국 연령별 장애인(등급) 현황

전체 번호	보고서명
정형-087	16개 시도 연령별 장애인(등급) 현황
정형-088	전국 연령별 장애인(유형) 현황
정형-089	16개 시도 연령별 장애인(유형) 현황
정형-090	장애유형에 대한 시도별 장애인(연령, 등급) 현황
정형-092	232개 시군구 연령별 장애인(등급) 현황 232개 시군구 연령별 장애인(유형) 현황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및 지급실적은 장애인연급에 대한 수급권이 있는 수급권자수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지급자 수, 그리고 총 지급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균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연금의 장애인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기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 연령별 급여 지급 실적은 연령별로 장애인연금 급여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장애인연금 급수별 급여 지급실적은 장애등급별 지급자 분포를 제공해준다.

장애인연금 소득별 분포 I은 소득범주를 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그리고 80만원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자 수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소득별 분포 II는 소득범주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및 시설수급자로 나누어 지급자 수를 65세 이하¹²⁾와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의 수급자를 소득계층별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현황은 장애인연금 금액별 지급자수의 분포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1만원~15만원까지 나뉘어 있다. 장애인연금 장애유형별 현황에서는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장애인연금 지급자 수의 분포를 제공한다.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 현황(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성별로 장애수당 지급자 수의 분포를 각각 전체 지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 제공한다. 장애수당 지급 현황(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성별로 장애수당 총 지급액의 분포를 각각 전체 지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 제공한다.

장애인 수당 수급자 현황은 수급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시설, 차상위의 세 범주

12) 65세 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와 중증과 경증의 두 범주로 나누어 기초자치단체별로 장애수당 수급자 수의 분포를 제공한다. 장애인 수당 집행실적 현황은 수급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시설, 차상위의 세 범주와 중증과 경증의 두 범주로 나누어 기초자치단체별로 장애수당 지급액의 분포를 제공한다.

장애인 아동 수당 수급자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의 두 범주와, 중증과 경증의 두 범주, 그리고 18세 미만, 18~20세, 20세 초과의 세 범주로 나누어 기초자치단체별로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의 분포를 제공한다. 장애인 아동 수당 집행실적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의 두 범주와, 중증과 경증의 두 범주로 나누어 기초자치단체별로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의 분포를 제공한다.

〈표4-30〉 장애인복지 분야의 주요 통계: 장애급여

전체 번호	보고서명
정형-056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및 지급실적
정형-057	장애인연금 연령별 급여 지급실적
정형-058	장애인연금 급수별 급여 지급실적
정형-059	장애인연금 소득별 분포I
정형-060	장애인연금 소득별 분포II
정형-061	장애인연금 급여지급현황
정형-062	장애인연금 장애유형별 현황
정형-063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 현황(전체)
정형-064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 현황(기초생활수급자)
정형-065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 현황(차상위 계층)
정형-066	장애수당 지급 현황(전체)
정형-067	장애수당 지급 현황(기초생활수급자)
정형-068	장애수당 지급 현황(차상위 계층)
정형-069	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인 현황(전체)
정형-070	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인 현황(기초생활수급자)
정형-071	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인 현황(차상위 계층)
정형-072	장애아동수당 지급 현황(전체)
정형-073	장애아동수당 지급 현황(기초생활수급자)
정형-074	장애아동수당 지급 현황(차상위계층)
정형-078	장애인 수당 수급자 현황
정형-079	장애인 수당 집행실적 현황
정형-080	장애인 아동 수당 수급자 현황
정형-081	장애인 아동 수당 집행실적 현황

다음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실적은 급여액을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중학생, 고등학생)로 구분하여 광역자치단체 별로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현황은 지급 인원수를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중학생, 고등학생)로 구분하여 광역자치단체 별로 제공한다.

〈표4-31〉 장애인복지 분야의 주요 통계: 장애인 자녀교육비

전체 번호	보고서명
정형-076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실적
정형-077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현황

다. 시설·법인

사회복지시설 총괄현황은 대상 별로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부랑노숙인, 일반, 저소득, 결핵한센, 한부모가족, 여성, 가족, 다문화, 기타의 범주로 분류하고, 시설 구분은 생활시설, 이용시설, 기타의 범주로 분류하여, 시설수, 종사자수, 정원, 입소자수의 4가지 통계를 시도별로 제공한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상세현황은 기초자치단체별로 개별 시설의 명칭, 시설종별, 정원, 입소자수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세현황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시설의 명칭, 월별, 지역별, 시설종별, 종사자 직종별 현황을 제공한다.

〈표4-32〉 시설·법인 분야의 주요 장애인복지 통계

전체 번호	보고서명
정형-095	사회복지시설 총괄현황
정형-096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상세현황
정형-09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세현황
	시설유형별 시설 생계급여 신청 현황
	지역별 시설 생계급여 신청 현황
	시설 생계급여 신청 현황(유형별 상세)
	시설유형별 시설 운영보조금 신청 현황
	지역별 시설 운영보조금 신청 현황

라. 상담사례와 통합업무

상담사례 대상가구 유형별 현황에서는 대상가구 유형을 일반, 장애인, 다문화, 장애인/다문화의 4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를 독거노인, 조손가구, 소년소녀, 한부모가구, 노인부부, 청장년 1인, 부부중심, 미혼모가구, 기타가구의 9개 가구유형으로 분류하여 상담사례 수 분포를 제공한다.

또한 상담사례 대상자 발굴경로 현황은 발굴경로를 대상자 요청, 사례관리자의 발굴, 기관 내 의뢰, 타 기관 의뢰, 통장 및 이웃주민 의뢰, 129콜센터 이관, 기타로 나누어 상담사례 수 분포를 제공한다.

월별 급여지급현황은 기초생활의 생계급여(일반과 시설), 주거급여, 장애인복지의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시설), 장애인급여(지자체), 장애아동수당(기초, 지자체지원,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보육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장애인의료비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장애아입양아동의료비지원 등 급여 별 총 금액 자료를 제공한다.

보장별(자격별) 월별수급자 현황에서는 기초생활,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의 급여 종류 별 일반 수급가구 수 및 수급자 수, 시설 수급자 수, 수급이 중지된 수급가구 수 및 수급자 수, 일반에서 시설로 이동한 수급가구 수 및 수급자 수, 시설에서 일반으로 이동한 수급자 수, 신규 책정된 수급가구 수 및 수급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보장별(자격별) 보장탈피 원인별 현황에서는 기초생활,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의 급여 종류 별로 서비스 자격의 결정 사유를 수급자 요청에 의한 중지, 자녀성장, 신규 취업·창업, 질병완치(장애자격 중지 포함), 부양비 부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자활자립, 군입대, 시설수급자, 전출입, 사망, 소득(급여·사업) 증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해외체류(90일 이상, 180일 이상), 교정시설수용자, 보장기관 요구자료 제출 거부, 이주자(국적상실 포함), 연령도래, 말소 행방불명 및 사실상 미거주, 기타소득 증가(후원금 등), 신규 재산 취득(증여 포함), 재산가액증가, 수급제공기간 초과, 사업(자격) 종료, 자격·서비스 이동, 기타 제도변경에 의한 중지, 중지신청(본인 요구), 수급자격심의회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혼인 등으로 나누어 사례 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취업·창업, 자활자립, 소득 증가 등은 복지급여의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복지급여의 효과성도 볼 수 있는 정보로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정보가 정형통계가 아니라 비정형통계로 제공될 수 있다면 개별 복지급여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4-33〉 상담사례와 통합업무 분야의 주요 장애인복지 통계

전체 번호	보고서명
정형-152	상담사례 대상가구 유형별 현황
정형-153	상담사례 대상자 발굴경로 현황
정형-159	월별 급여지급현황(원단위)
정형-160	보장별(자격별) 월별수급자 현황
정형-161	보장별(자격별) 보장탈피 원인별 현황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 활용의 고려 사항

가. 정보의 유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상당수 정보들이 동일한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수집되어 자연스럽게 종단자료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이다. 횡단자료보다는 종단자료로 제공할 때 더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가 종단자료로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종단의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정보 자료의 적정 공유주기

변수에 따라 정보의 주기가 다를 수 있다. 먼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비정형통계에 대한 적정 공유주기를 범주별로 살펴 보았다.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정보와 장애발생연령, 등록일자, 선천성 장애 사유, 후천성 장애사유 등 일부 장애 관련 정보는 정보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회 제공으로 충분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장애유형, 장애등급, 근로무능력사유, 개인근로능력유무 등 장애 관련 정보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장애등급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3년 정도의 주기가 적절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비스명, 수혜서비스 급여 상태, 보장구분, 의료급여종별, 수급자구분, 지원내용, 장애인연금대상여부, 국민연금수급여부, 장애인보장구분 및 시설 영역의 정보 등 복지급여 관련 정보는 연간 변화를 보기 위해서 1년 주기가 적절한 정보에 해당한다. 반면에 바우처 영역의 제공금액, 본인부담금액, 판정결과 등의 정보는 복지급여 정보라고 하더라도 매달 변화가 가능한 정보로서 월 주기가 적절한 정보에 해당한다.

소득재산보유구분, 주거유형,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유형별 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유형별 재산금액, 소득평가금액, 소득인정액 등의 소득 및 재산 정보는 일반적으로 1년 주기가 적절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구소득 등의 소득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계절별 편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근로능력판정, 부양능력판정 등의 수급자격 관련 정보도 1년 주기가 적절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취업상태유형, 직종 등은 고용상태의 변화(역동성)를 파악하기 위해 월 주기가 적절한 정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형통계를 살펴보면, 정형통계는 대부분의 정보는 1년 주기가 적절하며 일부 정보는 월 주기가 적절하다. 정형통계는 이미 주기가 1년 또는 월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의 주기는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적정 규모

장애인 분야의 자료 분석은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집단 구분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15개 장애유형과 6개 장애등급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에 최대 90개¹³⁾ 집단 구분이 가능하다. 이를 모두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15개 장애유형과 6

13) 모든 장애유형에 6개 장애등급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등급이 상승되기 때문에 90개 집단 구분이 가능하다.

개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의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30개 집단 구분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각 집단별로 필요로 하는 최소의 사례수는 30¹⁴⁾ 정도이다.

14)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사례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중앙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을 적용시킨 것이다. 그러나 각 집단에서도 성별 구분을 한다면 다시 60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제5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유정보 수요분석 종합

제1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 활용 현황 분석

제2절 정보 수요 분석 결과 종합

제3절 수요분석의 함의와 이슈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유정보 << 수요분석 종합

제1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 활용 현황 분석

본 절에서는 3장과 4장에서 각 정책영역별로 정보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고 함의를 정리한다. 각 정책영역에서 정보 수요를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하는 것은 향후 정보 제공에서 중요한 고려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DM 구성을 위한 즉 통계 생산을 위한 정보 수요 분석에서는 정책영역별 DM의 구성이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으므로 종합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 수요 분석의 함의와 향후 수요 반영을 위하여 남겨진 과제를 검토하였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온라인 이용자의 이용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에 대한 수요를 이해하는데 있어 기존 이용자의 이용현황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 이용자는 중앙 정부의 일부 부처 공무원과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이용 중에 있다. 이들의 이용현황은 2012년 이후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DW 중 기존 이용자들의 온라인 이용현황을 주로 활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집계한 것이 아래 표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2012년과 2013년 상하반기의 이용실적이 정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이용 빈도를 보면 2012년 상반기에서 2013년 하반기로 갈수록 그 이용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선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2012년 하반기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용 빈도가 높았던 정보를 중심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관련 정보가 적지 않다. 그리고 차상위수급자 관련 정보, 장애인 등급 관련 정보, 기초노령연금 관련 정보, 자활사업과 영유아지원에 대한 정보도 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영역의 차이가 없이 그 내용은 주로 수급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어서 주요 정책영역 수급자 통계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2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표5-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 이용현황

행 레이블	2012년		2013년		총합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UI-ID-OL0101_전체복지대상자 보장(자격)별 분석	437	1,729	1,686	1,295	5,147
UI-ID-OL1002_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분석	390	1,766	876	1,143	4,175
UI-ID-OL1001_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인별 분석		1,469	977	1,217	3,663
UI-ID-OL1101_장애인 등록 현황 분석	404	1,648	786	653	3,491
UI-ID-OL1201_기초노령 수급자 분석	63	983	911	832	2,789
UI-ID-OL1311_차상위계층 수급자 분석	58	827	634	451	1,970
UI-ID-OL1006_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재산 분석	82	803	639	355	1,879
UI-ID-OL1312_차상위계층 수급자 가구별 분석	30	502	422	395	1,349
UI-ID-OL0104_전체복지대상자 인구대비 수급자 분석	25	602	495	209	1,331
UI-ID-OL1009_기초생활보장자격결정 분석	75	492	226	389	1,182
UI-ID-OL0103_전체복지대상자 신청 분석	65	444	473	169	1,151
UI-ID-OL1012_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탈피자 분석		505	279	249	1,033
UI-ID-OL2301_자활 참여현황 분석	120	526	136	197	979
UI-ID-OL1902_한부모가족 수급자 가구별 분석	25	381	271	241	918
UI-ID-OL1102_장애인복지 급여지급 분석	76	335	359	90	860
UI-ID-OL9801_행복e음_급여지급현황(사업선택)	73	359	260	161	853
UI-ID-OL2201_상담사례 분석	70	472	151	159	852
UI-ID-OL1401_영유아복지 수급자 분석	101	338	269	121	829
UI-ID-OL1007_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분석	491	288	15	35	829
UI-ID-OL1011_중점관리 소득 분석(구간전체 전월비교)			158	661	819
UI-ID-OL1105_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분석	25	615	58	113	811
UI-ID-OL1202_기초노령 급여지급 분석	49	335	197	138	719
UI-ID-OL1901_한부모가족 수급자 분석	27	298	150	177	652
UI-ID-OL1006_기초생활보장 급여증감 분석	81	257	231	71	640
UI-ID-OL1012_중점관리 소득 분석(선택월간 비교)			278	300	578
UI-ID-OL0102_전체복지대상자 급여 분석	77	154	194	142	567
UI-ID-OL1402_영유아복지 급여지급 분석	27	96	221	212	556
UI-ID-OL1701_복지시설현황 분석	45	234	169	73	521
UI-ID-OL9001_환수현황 분석	97	115	210	70	492
UI-ID-OL1205_기초노령연금지급결정 분석	16	280	105	59	460
UI-ID-OL1403_영유아복지 신청 분석	23	174	175	40	412
UI-ID-OL1011_기초생활보장 신청 분석	24	196	85	98	403
UI-ID-OL1702_복지시설 입소자 분석	20	152	108	109	389
UI-ID-OL1104_장애인복지 신청 분석	16	230	108	28	382
UI-ID-OL1203_기초노령연금 신청 분석	2	178	144	53	377
UI-ID-OL1404_영유아보장자격결정 분석	41	188	91	26	346
UI-ID-OL1801_의료급여 수급자 분석	42	138	93	60	333
UI-ID-OL2302_자활 대상자 현황		191	82	59	332
UI-ID-OL2501_바우처신청현황 분석	29	100	147	49	325
UI-ID-OL9901_수급자 현황	106	95	48	26	275
UI-ID-OL9803_행복e음_급여지급현황(전체사업)	38	65	124	30	257

행 레이블	2012년		2013년		총합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UI-ID-OL1107_장애인복지보장자격결정 분석	28	124	52	45	249
UI-ID-OL1903_한부모가족 급여지급 분석	31	57	73	76	237
UI-ID-OL1204_기초노령 수급가구 소득재산 분석	11	58	86	61	216
UI-ID-OL9002_이의신청 분석	1	199	3	3	206
UI-ID-OL1704_복지시설 종사자 분석	9	126	41	29	205
UI-ID-OL1906_한부모가족복지자격결정 분석	9	48	51	73	181
UI-ID-OL9904_수급자의 특례현황	67	75	25	8	175
UI-ID-OL2001_결혼중개업체 현황 분석	60	47	21		128
UI-ID-OL1803_의료급여 사례관리 분석	18	50	21	4	93
UI-ID-OL1103_장애인복지 보장구지급 분석	8	43	22	15	88
UI-ID-OL1501_아동복지 수급자 분석	11	40	21	15	87
UI-ID-OL9005_변동알림현황 분석	2	19	25	39	85
UI-ID-OL1802_의료급여 급여지급 분석	21	23	36	4	84
UI-ID-OL1804_요양비 지급 분석	24	16	38	5	83
UI-ID-OL1904_한부모가족 복지 신청 분석	17	20	16	28	81
UI-ID-OL9941_부양의무자 현황	18	19	30	12	79
UI-ID-OL1313_차상위계층 급여지급 분석	16	19	25	17	77
UI-ID-OL1010_기초생활보장 보유차량 분석	9	30	24	13	76
UI-ID-OL9943_별첨01_01.일반수급자 현황 - 시군구별	47	14	13	1	75
UI-ID-OL1009_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별 부양의무자 분석		70	3		73
UI-ID-OL1601_사할린동포 급여지급 분석	9	33	16	13	71
UI-ID-OL1502_아동청소년복지 급여지급 분석	31	14	17	7	69
UI-ID-OL9904-1_수급자의 특례현황 - 개인	18	19	28	4	69
UI-ID-OL9911_일반수급가구 현황 - 세대구분(가구유형)별	32	26	6	5	69
UI-ID-OL9802_행복e음_급여지급현황(비교)	6	30	24	7	67
UI-ID-OL9910_일반수급가구 현황 - 가구원수별	23	9	27	7	66
UI-ID-OL0105_개인급여 분석		63			63
UI-ID-OL1001_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석	63				63
UI-ID-OL1005_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분석				61	61
UI-ID-OL9905_일반수급자 현황 - 연령별	17	4	33	7	61
UI-ID-OL1314_차상위계층 수급가구 소득재산 분석	2	16	29	11	58
UI-ID-OL1008_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분석	15	38			53
UI-ID-OL9905-1_일반수급자 현황 - 연령별(상세)	20	11	16	6	53
UI-ID-OL1503_아동청소년 신청 분석	4	26	11	8	49
UI-ID-OL9945_별첨02.일반수급자 현황 - 시군구별, 연령별	21	5	17	2	45
UI-ID-OL9922_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	10	8	17	8	43
UI-ID-OL9902_일반수급자 현황 - 성별	12	8	19	3	42
UI-ID-OL9942_부양불능, 부양거부□기피 현황	14	8	17	1	40
UI-ID-OL9913_일반수급가구 현황 - 주거유형별	6	15	14	3	38
UI-ID-OL2401_의사상자 현황 분석	5	19	6	8	38
UI-ID-OL1302_긴급복지지원 급여지급 분석		26	2	10	38
UI-ID-OL9940_일반수급가구 소득인정액(평균) 현황 - 가구원수별	11	9	9	7	36

22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행 레이블	2012년		2013년		총합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UI-ID-OL9909_일반수급자 현황 - 취업유형별	16	4	9	2	31
UI-ID-OL1703_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금 분석	2	13	15	1	31
UI-ID-OL1112_장애인 주체자격 현황	30	.	.	.	30
UI-ID-OL9944_별첨02_02.일반수급자 현황 - 읍면동별	7	18	3	1	29
UI-ID-OL9923_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 - 가구원수별	6	7	11	3	27
UI-ID-OL1905_한부모가족 수급가구 소득재산 분석	3	9	7	5	24
UI-ID-OL1009_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결정 분석	24	.	.	.	24
UI-ID-OL9931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	10	3	6	4	23
UI-ID-OL9907-1_일반수급자 현황 - 연령별(남자)	3	3	13	1	20
UI-ID-OL2206_사례관리 진행 현황	20	.	.	.	20
UI-ID-OL1403_영유아복지 신청 및 결정 분석	19	.	.	.	19
UI-ID-OL2203_희망콜 실적	19	.	.	.	19
UI-ID-OL9908_일반수급자 현황 - 성별, 연령별	1	8	7	2	18
UI-ID-OL9932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 - 가구원수별	7	2	9	.	18
UI-ID-OL9919_일반수급가구 현황 - 보장기간별	8	2	6	1	17
UI-ID-OL9912_일반수급가구 현황 - 가구구성별	9	3	5	.	17
UI-ID-OL1403_영유아 복지 신청 분석	16	.	.	.	16
UI-ID-OL2217_사례관리 주요문제유형별 현황	16	.	.	.	16
UI-ID-OL9924_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1인가구)	5	2	8	1	16
UI-ID-OL1134_장애인 등록 현황(심장, 호흡기, 지체, 뇌병변)	16	.	.	.	16
UI-ID-OL1003_장애인복지 신청 및 결정 분석	15	.	.	.	15
UI-ID-OL2214_월별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15	.	.	.	15
UI-ID-OL1236_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급여지급현황?	14	.	.	.	14
UI-ID-OL9933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1인가구)_자치단체구분	.	11	3	.	14
UI-ID-OL1010_기초생활보장 신청 분석	14	.	.	.	14
UI-ID-OL9927_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4인가구)	6	.	7	.	13
UI-ID-OL1320_정부양곡지원 가능 대상자 분석	5	5	3	.	13
UI-ID-OL9914_일반수급가구 현황 - 주거유형별, 가구원수별	4	1	7	1	13
UI-ID-OL9915_일반수급가구 현황 - 주거유형별, 세대구분(가구유형)별	3	4	5	1	13
UI-ID-OL9932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 - 가구원수별_자치단체구분	.	2	10	.	12
UI-ID-OL9933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1인가구)	3	3	6	.	12
UI-ID-OL9921_일반수급가구 현황 - 보장기간별, 세대구분(가구유형)별	7	1	4	.	12
UI-ID-OL1330_노숙인 수용 시설 현황 분석	1	1	9	.	11
UI-ID-OL2213_상담결과요청일자기준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11	.	.	.	11
UI-ID-OL9916_일반수급가구 현황 - 건축상태별	3	1	7	.	11
UI-ID-OL2211_자원관리 현황(협력기관서비스제공실적)	11	.	.	.	11
UI-ID-OL2219_사례관리_현황	11	.	.	.	11
UI-ID-OL9920_일반수급가구 현황 - 보장기간별, 가구원수별	5	.	6	.	11
UI-ID-OL5006_급여지급정보 기준 전체 수급자 현황	11	.	.	.	11
UI-ID-OL1404_영유아복지서비스결정 분석	11	.	.	.	11
UI-ID-OL1504_아동신청보장자격결정 분석	1	7	3	.	11
UI-ID-OL9928_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5인가구)	6	.	4	.	10
UI-ID-OL2207_사례관리 선정 현황	10	.	.	.	10

행 레이블	2012년		2013년		총합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UI-ID-OL2215_방문상담 선정 및 담당자 할당 건수	10	.	.	.	10
UI-ID-OL5030_보장비용_환수현황	10	.	.	.	10
UI-ID-OL9907-2_일반수급자 현황 - 연령별(여자)	3	.	6	1	10
UI-ID-OL2216_연간 방문상담 대상자수/계획건수/실시건수	10	.	.	.	10
UI-ID-OL9937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5인가구)	6	.	3	.	9
UI-ID-OL1320_정부양곡지원 분석_DEL	9	.	.	.	9
UI-ID-OL1113_전체_장애인_현황	9	.	.	.	9
UI-ID-OL9925_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2인가구)	3	1	5	.	9
UI-ID-OL9917_일반수급가구 현황 - 건축상태별, 가구구성별	3	1	5	.	9
UI-ID-OL1906_한부모가족자격결정 분석	8	.	.	.	8
UI-ID-OL9926_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3인가구)	3	.	4	1	8
UI-ID-OL9918_일반수급가구 현황 - 건축상태별, 세대구분(가구유형)별	3	.	5	.	8
UI-ID-OL1304_긴급복지지원 급여지급 분석	8	.	.	.	8
UI-ID-OL2209_서비스 처리 현황	7	.	.	.	7
UI-ID-OL9936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4인가구)	3	.	4	.	7
UI-ID-OL1205_기초노령연금서비스결정 분석	7	.	.	.	7
UI-ID-OL9929_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6인가구)	3	.	4	.	7
UI-ID-OL2218_상담_유형_현황	7	.	.	.	7
UI-ID-OL1906_한부모가족서비스결정 분석	7	.	.	.	7
UI-ID-OL9934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2인가구)	3	.	3	.	6
UI-ID-OL9939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7인이상가구)	3	.	3	.	6
UI-ID-OL9938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6인가구)	3	.	3	.	6
UI-ID-OL1112_장애인 자격현황	6	.	.	.	6
UI-ID-OL9930_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7인이상가구)	3	.	3	.	6
UI-ID-OL5012_월별 성별 가구유형별 수급자 현황	6	.	.	.	6
UI-ID-OL9935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3인가구)	3	.	3	.	6
UI-ID-OL1147_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_현황	6	.	.	.	6
UI-ID-OL1203_기초노령 신청 및 결정 분석	6	.	.	.	6
UI-ID-OL9946_개인유효자격현황	.	.	1	5	6
UI-ID-OL1247_기초노령연금액별_지급_현황	5	.	.	.	5
UI-ID-OL5104_저소득_한부모가족_현황	5	.	.	.	5
UI-ID-OL9938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6인가구)_자치단체구분	.	4	1	.	5
UI-ID-OL9006_상계내역 분석	5	.	.	.	5
UI-ID-OL1221_출입국현황	5	.	.	.	5
UI-ID-OL2212_등록지식 현황	5	.	.	.	5
UI-ID-OL1135_1급 등록장애인 현황	5	.	.	.	5
UI-ID-OL2204_전문요원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실적	5	.	.	.	5
UI-ID-OL2208_월별 사례관리현황	5	.	.	.	5
UI-ID-OL2205_지역상담 시간대별 대응시간 현황	5	.	.	.	5
UI-ID-OL2210_자원관리 현황	5	.	.	.	5
UI-ID-OL1010_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분석	.	.	.	5	5
UI-ID-OL1238_기초노령연금액 지급금액별 현황	5	.	.	.	5
UI-ID-OL9939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7인이상가구)_자치단체구분	.	3	1	.	4
UI-ID-OL1012_기초생활보장_수급자_보장비용_환수현황	4	.	.	.	4

22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행 레이블	2012년		2013년		총합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UI-ID-OL9936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4인가구)_자치단체구분	-	3	1	-	4
UI-ID-OL1015_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판정사유별 현황(개인)	4	-	-	-	4
UI-ID-OL9934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2인가구)_자치단체구분	-	3	1	-	4
UI-ID-OL9935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3인가구)_자치단체구분	-	3	1	-	4
UI-ID-OL1232_부당이득환수현황(총괄)?	4	-	-	-	4
UI-ID-OL1212_기초노령연금 수급자현황	3	-	-	-	3
UI-ID-OL5009_월별신청자수 및 신규수급자수	3	-	-	-	3
UI-ID-OL1237_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세부현황?	3	-	-	-	3
UI-ID-OL1901_한부모가족_지원사업_현황	3	-	-	-	3
UI-ID-OL1013_기초생활보장_수급자_부정수급_현황	3	-	-	-	3
UI-ID-OL1216_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동시 수급자 현황	3	-	-	-	3
UI-ID-OL5004_급여지급정보 기준 수급자수	3	-	-	-	3
UI-ID-OL5002_가구유형별 기초노령연금 신청자현황	3	-	-	-	3
UI-ID-OL1202_행정자치부 노인인구 대비 신청수급현황	3	-	-	-	3
UI-ID-OL1904_한부모가족_부정수급_현황	3	-	-	-	3
UI-ID-OL1005_기초생활보장 주체 자격 현황(개인)	3	-	-	-	3
UI-ID-OL5003_기초노령연금 신청자 총괄 현황	3	-	-	-	3
UI-ID-OL2310_자활근로사업단수익금현황	3	-	-	-	3
UI-ID-OL9937_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5인가구)_자치단체구분	-	3	-	-	3
UI-ID-OL1233_이중수급자현황?데이터없음	3	-	-	-	3
UI-ID-OL1048-02_기초수급 개인별 자동차 보유 현황	3	-	-	-	3
UI-ID-OL1026_기초생활 특례수급자 현황	2	-	-	-	2
UI-ID-OL1239_소득산정현황	2	-	-	-	2
UI-ID-OL2201_상담 접수 현황	2	-	-	-	2
UI-ID-OL1801_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2	-	-	-	2
UI-ID-OL1142_장애인연금 수급자 수혜기준 현황	2	-	-	-	2
UI-ID-OL1211_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기초노령신청자 현황?	2	-	-	-	2
UI-ID-OL1119_장애인 월별 현황	2	-	-	-	2
UI-ID-OL1902_한부모가족_지원금액_현황	2	-	-	-	2
UI-ID-OL2202_상담 실적 현황	2	-	-	-	2
UI-ID-OL5010_시도별 가구별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2	-	-	-	2
UI-ID-OL5085_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바우치의 신청현황	2	-	-	-	2
UI-ID-OL2304_자활성공자현황	2	-	-	-	2
UI-ID-OL1145_장애인_활동보조_월별_제공기관_현황	2	-	-	-	2
UI-ID-OL1231_과태료부과현황	2	-	-	-	2
UI-ID-OL1503_아동복지 신청 및 결정 분석	2	-	-	-	2
UI-ID-OL5032_정부양곡 할인지원 대상 통계	2	-	-	-	2
UI-ID-OL1254_기초노령연금 결정건수	2	-	-	-	2
UI-ID-OL2101_특별지원 청소년 현황	2	-	-	-	2
UI-ID-OL9947_가구유�효자격현황	-	-	-	2	2
UI-ID-OL2403_의사자 강제급여 수급현황	1	-	-	-	1
UI-ID-OL1024_신청 급여결정 소요일수	1	-	-	-	1
UI-ID-OL1028_기초수급자 평균 소득, 재산, 부채 현황	1	-	-	-	1
UI-ID-OL5058_자활근로사업 참여 및 성공 현황	1	-	-	-	1

행 레이블	2012년		2013년		총합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UI-ID-OL1303_긴급복지지원 수급자 분석	1	.	.	.	1
UI-ID-OL1214_수급자의 65세미만 배우자 현황	1	.	.	.	1
UI-ID-OL1148_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현황(적합,부적합)	1	.	.	.	1
UI-ID-OL1020_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책정, 탈락자 현황	1	.	.	.	1
UI-ID-OL1503_아동청소년 복지 신청 분석	1	.	.	.	1
UI-ID-OL1037_기초수급자 가구 신청 및 결정현황	1	.	.	.	1
UI-ID-OL1504_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결정 분석	1	.	.	.	1
UI-ID-OL5074_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수급자현황	1	.	.	.	1
UI-ID-OL1244_국민연금액별_수급자_현황	1	.	.	.	1
UI-ID-OL0106_가구급여 분석	.	.	1	.	1
UI-ID-OL9007_자격증지 수급자 현황	1	.	.	.	1
UI-ID-OL1207_사망자 현황	1	.	.	.	1
UI-ID-OL1106_장애인서비스_수급자_현황	1	.	.	.	1
UI-ID-OL5078_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명단	1	.	.	.	1
UI-ID-OL5026_일반수급자 시도별 연령별 현황	1	.	.	.	1
UI-ID-OL1111_장애인연금_수급자_종합_현황	1	.	.	.	1
UI-ID-OL1310_긴급복지지원 비용환수현황	1	.	.	.	1
UI-ID-OL2314_자활사업대상자현황상세	1	.	.	.	1
UI-ID-OL1203_금융재산 조사의회 현황	1	.	.	.	1
UI-ID-OL5011_시도별 성별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1	.	.	.	1
UI-ID-OL1017_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서비스 결정 현황(개인)	1	.	.	.	1
UI-ID-OL1210_서비스급여신청자현황	1	.	.	.	1
UI-ID-OL1906_한부모가족_결정건수	1	.	.	.	1
UI-ID-OL1023_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사유별 현황	1	.	.	.	1
UI-ID-OL5061_자활근로사업 조건부수급자 추진실적	1	.	.	.	1
UI-ID-OL1010_기초생활보장_수급자_해외출입국_현황	1	.	.	.	1
총합계	4,835	20,175	14,206	11,618	50,834

2.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DW 잠재 이용자의 수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DW에 대한 수요는 기존 이용자 뿐 아니라 향후 이용자 범위를 확대할 때 이용자가 될 잠재 이용자의 수요를 포괄하여 파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유는 기존 이용자와 미래의 이용자가 같은 수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잠재 이용자의 수요는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는 잠재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체들이 정보개발원으로 정보를 요청한 기록이다.

잠재 이용자 중 설문에 응한 주체들의 응답을 보면 대체로 통계 생산의 필요성은 인정

하였다. 이용 빈도는 개인 차가 크지만 적어도 1개월 1회 이상의 이용 빈도를 보였다. 기존의 통계 활용은 통계청이나 관련 조직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고 현황자료 보고서도 이용하고 있었다. 이용 내용은 주로 수급이력 정보의 파악이 대부분이었다. 제도의 영역을 매우 다양하여 각 조직의 정책 영역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활용하였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역시 공통적인 관심 정보가 되었다. 기존 통계 이용에서 불만은 필요변수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보 원천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 지적이었다. 개선 요청사항 중에는 연관 기관의 정보와 연계된 정보가 통계로 집계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연구용 원시자료 뿐 아니라 필요한 통계의 집계에서도 여러 정보의 셋들 간의 연계로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발견되었다.

「외부요청통계 처리정보 제공대장」은 정보개발원으로 정보를 요청한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기록해 둔 자료이다. 2011년부터 그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나 2012년부터 기록이 본격화되었다. 아래는 2013년 기록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2013년의 경우 최근의 정책 변화 및 수요 변화를 반영한 최종의 자료로 선택하였다.

정보의 외부요청통계 처리 정보 중 2013년 약 750여건 중 분석이 가능한 요청통계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기록은 신청 조직과 요청을 받아 제공한 정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의 정확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누가 요청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복지부가 가장 많이 요청한 부처이지만 외부의 수요자가 복지부를 통하여 요청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 기록은 처리정보 제공 내역을 단순한 제목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제공한 정보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요청 정보도 단순 통계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야 하였다. 정부 간 정보 교환으로 구체적인 개인수준의 수급 사실을 확인하는 정보요청이 적지 않다.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개인명단 등 추출도 요청된다. 이렇듯 통계 생산의 목적이 다소 상이한 정보 수요도 배제하여 분석하였다.

요청된 정보를 정책별로 보자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정보 요청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수당에 대한 정보 요청도 다수였다. 하지만 단일 정보로는 장애인등록에 대한 통계 요청이 가장 빈번하였다. 돌봄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등 서비스 수급에 대한 정보 요청도 적지 않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DW 이용 권한이 확대 제공되면 이러한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포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5-2〉 DW 외부 요청통계 현황(2013년)

사업구분	산출통계 종류	빈도	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3	근로능력, 북한이탈주민, 희망키움 통장 등에 대한 정보 요청도 다수
	수급가구	9	
	급여액	28	
	소득, 재산	12	
	부양의무자	21	
	신청탈락 가구	6	
장애인복지	등록장애인	36	장애판정, 장애등급 등 현황에 관한 정보 요청이 다수. 장애인활동지원 에 대한 정보요청도 9건, 장애인보 장구 지원 관련 요청도 4건이었음.
	장애인연금 수급	13	
	장애수당수급	6	
	장애아동수급, 장애인자녀교육비수급	5	
의료급여	수급자	18	정기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대한 정보가 집계됨
	사례관리대상	19	
의사상자	신청자	0	
	인정자	0	
아동 청소년	요보호아동	2	
	소년소녀가정아동	1	
	장애입양아동	0	
	국내입양아동	0	
	가정위탁보호아동	1	
	지역아동센터	2	
	시설보호(퇴소)아동	1	
아동 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	2	
	청소년증 발급	0	
보육	영유아보육료	19	중복수급현황 등에 대한 정보 요청 이 빈번
	양육수당	28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수급	5	
결혼중개업	업체수	0	
	종업원	0	
시설/법인	사회복지시설	6	
	시설종사자	3	
	시설입소자	13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7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재 산 등
	수급자	13	
사후관리	복지사각지대	0	
	사망의심자	0	
자활사업	대상자	5	자활사업재참여자에 대한 정보 요 청이 다소 있음. 자활사업 재참여자에 대한 정보 요 청이 있음.
	참여자	2	
	자활급여	0	
상담사례	사례관리 등	6	
통합업무	신청자	3	
	급여지급	1	

사업구분	산출통계 종류	빈도	내용
	보장탈피	8	탈수급 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정보 요청
	환수	12	
	기타	40	긴급복지, 노인돌봄, 장기요양, 차상위에 대한 정보 요청이 다수

제2절 정보 수요 분석 결과 종합

1. 원시자료의 구성을 위한 정보 수요 분석결과

앞의 제3장과 4장에서 각 정책영역별로 원시자료를 구성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선정하고 제안하였다. 연구의 동향과 정책적 배경을 고려한 선택이자 해당 정책영역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선택이었다. 각 정책영역별로 선정한 정보의 목록은 당연 다양하다. 전체적인 목록의 합은 1,300개 정보(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를 넘어서고 있다. 각 정책영역의 정보는 서로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데 각 정책영역의 원시자료는 해당 영역의 정확한 연구를 진행하려면 인접한 관련 영역의 정보를 공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유 정보 중 원시자료 구성을 위한 수요를 분석하면서 고려하여야 하였던 또 다른 측면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유 정보가 구조화된 방식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유 정보는 여러 개의 정보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 주체, 신청, 조사결정, 소득재산, 수급자, 지급, 사후관리, 시설, 자활지원, 긴급복지지원, 상담사례, 장애인, 아동, 바우처, 결혼중개업, 정부양곡지원이 그 자료군의 영역이다. 그러니 복지주체로서의 개인 정보 중 성별, 신청에서의 민원인 초기 상담 정보, 조사 가구원정보, 급여정보의 개인정보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 정보 셋으로부터 유사하게 반복되는 정보의 선택과 처리에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유는 정보에 대한 설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영계에서 생성된 정보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각 정보는 그대로 옮겨져 있을 뿐이다. 추측컨대 운영계에서 참고하는 개별 정책의 지침이 정보의 설명서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는 정보 이용자나 수요자가 개별정책의 지침을 모두 찾아 정보의 성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정보

의 제공에서 정보의 설명이 마련되는 것이 첫 출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로는 각 정보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원시자료의 경우 그 수요 정보의 폭이 매우 넓어서 해당 정보의 충실도와 신뢰도를 확인하는 작업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충실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각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의 공동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할 것이다.

원시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적절한 제공주기와, 자료의 형태, 크기, 표본 등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원시자료의 제공 적정 주기는 정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복지정책에 대한 신청과 적격성 심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이후의 업무처리과정 또한 상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정보들은 일 단위로 갱신되지만 공유하는 정보까지 일단위로 추가갱신하여 제공될 수는 없다. 정보의 적정 제공 주기는 크게 월/분기 단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수급자의 인구학적 정보들과 같이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정보는 연 단위로 갱신하여 제공하고, 소득이나 재산, 부채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므로 분기단위가 적절하며, 반면 고용 관련 정보는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월 단위로 갱신하여 제공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료의 형태는 종단자료와 횡단자료로 구성될 수 있고, 연구자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형태가 다르므로 표본자료의 구성에서 종단자료를 구성해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종단자료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공 행정자료의 큰 강점이므로 종단자료의 제공 여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종단자료를 제공하자면 사전에 각 정보들이 어느 단계의 기준 시점으로 구분가능하고 누적 가능한지, 종단의 연결은 어느 단위(개인, 가구 등)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등 매우 정교한 설계와 사전 실험이 필요하며, 사전 실험한 자료를 기초로 이용자에게 종단자료의 구성이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종단화가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 등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시자료 구성 시 자료의 크기는 요청된 원시자료의 내용, 분석 방법에 따라 상이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연구자의 요청에 따르게 될 것이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표본수를 고려하면 가능한 수준에서 큰 표본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분석의 구성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수

준에서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구성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도 표본의 크기가 큰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시자료를 원자료 전체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쉬운 선택이지만 실제 분석시 자료의 크기가 장애가 될 수 있기에 연구자가 일부 표본으로 한정하여 자료의 크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 활용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원칙을 두고 권고하는 수준에서 제공 자료의 크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분석에서 고려되는 집단 구분의 수를 참고로 하여 각 집단별로 필요로 하는 최소의 사례수는 30으로 하한을 둘 수 있다. 지역단위로 집단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약 250개 기초자치단체를 가정할 수 있는데 이 단위로 유효한 표본의 수를 고려한다면 약 10만개의 표본이 필요하게 된다. 표본의 크기와 관련된 원칙을 예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시자료 이용자에게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제공하고자 한다면, 자료 추출기관은 적정표본을 결정하기 위해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이용목적), 모수 추정 방법(추출 방법), 모수 추정량의 정도(precision), 신뢰수준(confidence level)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경우, 원시자료 이용자는 주로 복지수급자 또는 급여지급액 특성, 수급이력 등과 관련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요청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임의추출로 모평균 또는 모비율을 추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정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실제 표본을 추출할 경우에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표본 추출방법을 선정해야하므로 적정 표본크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용자 혹은 자료추출 기관은 표본 추출 목적, 추출방법(단순임의추출, 층화추출, 계통추출, 집락추출 등), 조사에 소요되는 인원, 비용, 시간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표본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통계생산을 위한 정보 수요 분석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 중 통계생산을 지원하는 데이터마트(data mart: DM)¹⁵⁾는 정책영역별 필요 정보를 별도의 마트로 구성하기 보다는 하나의 마트에 필

15) 데이터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사용자 사이의 중간층에 위치한 것으로, 하나의 주제 또는 하나의 부서 중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마트 내 대부분의 데이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요한 정보들이 공히 포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각 정책영역에서 그 통계생산의 필요를 검토한 정보를 모아 정리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유 정보 중 데이터마트에 포괄할 정보로 선정한 근거들은 기존의 연구경향과 정책적 수요였다. 앞서 3장과 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DW에서 비정형통계와 정형통계 중 정형통계를 중심으로 정보를 검토하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는 비정형통계, 정형통계, 정기통계로 구분이 가능한데 자료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하자면 정형통계가 우위에 있으나 포괄성에서 보자면 비정형통계가 우위에 있다. 비정형통계 중 일부가 정형통계로 구축된 형상이다. 한편 정보를 관리하는 조직에서는 내부적으로 정기통계도 구분이 가능한데 정기통계는 정형통계 중 이미 현황 자료의 생산 등으로 그 충실도와 신뢰도가 검토된 자료군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의 안정성이나 신뢰도를 기준으로 하면 정기통계, 정형통계, 비정형통계 순이고 정보의 포괄성을 기준으로 하자면 비정형통계, 정형통계, 정기통계 순으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정기통계만으로 제공 정보를 한정하게 되면 안정성은 높지만 그 포괄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일 위험이 있으므로 정형통계 중 보유정보를 선정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각 정책 영역 연구진에게 정형통계 목록과 정형통계로 작성된 표를 전송하고 이를 기초로 통계 생산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정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는 정형통계 중 각 정책영역의 관심도를 고려할 때 통계생산에서 그 필요성이 어느 수준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정책연구분야 별 선정한 결과를 합산한 것으로 ‘중요도 평가’의 점수가 높을수록 통계생산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5-3〉 정형통계 중 통계생산 수요가 높은 정보

정보내용	중요도 평가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10
자활사업 대상자 조건제시 유예사유별 현황	10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수 및 자활급여 지급 현황	10
자활사업 대상자 조건부과제외사유별 현황	9
자활사업 참여자 수급유형별, 지원유형별 현황	9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유형별, 수급유형별, 성별 연령별 현황	9

터 복제되지만, 자체적으로 수집될 수도 있으며,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나 다차원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구축한다(컴퓨터인터넷IT용어 대사전)

정보내용	중요도 평가
자활사업 참여자 종료사유별,수급유형별,성별,연령별 현황	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별 총괄현황	8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수 현황	8
기초생활보장 연령별, 수급자 구분별, 성별 현황	8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장애인 연령별 현황	8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장애인등급별현황	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상태 현황	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별, 교육수준별 현황	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유형별 현황	8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사유별 현황	8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 가구구성별 현황	8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 가구유형별 현황	8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별 급여지급 현황	8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및 소득, 재산가액 현황	8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별 현황	8
기초생활보장 수급 종류별 보장탈피 원인별 현황	8
기초생활보장 가구원수별, 연령별 현황	8
기초생활보장 가구원수별 현황	8
기초생활보장 연령별 현황	8
기초생활보장 보장탈피자 현황	8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유형별,업종별,성별, 연령별 현황	8
자활사업 참여자 업종별,수급유형별,성별,연령별 현황	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현황	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상태별 현황	7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특례기준별 현황	7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주거유형별 현황	7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소득공제유형별 현황	7
부양의무자 유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7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 현황 II	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및 선정 현황(당월)	7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및 급여비 현황	7
복지대상자 보장별(자격별) 총괄현황	6
복지대상자 사업별 현황(중복허용)	6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부채종류별 현황	6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결과 현황	6
월별신규신청자의 선정 및 부적합 현황	6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집행실적 현황	6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행실적 현황	6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집행실적 현황	6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집행실적 현황	6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집행실적 현황	6

정보내용	중요도 평가
기초생활보장 보장탈피자 월별추이	6
장애인 유형별, 등급별 등록 현황	6
장애인 연령별, 등급별 등록 현황	6
전국 연령별 장애인(등급) 현황	6
전국 연령별 장애인(유형) 현황	6
사회복지시설 총괄현황	6
아동청소년 요보호아동 성별, 조치별 현황	6
아동청소년 소년소녀가정세대 성별, 연령별 현황	6
아동청소년 국내입양아동 성별, 연령별 현황	6
아동청소년 가정위탁 보호아동 유형별 현황	6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시설, 입소자 현황	6
영유아보육료 연령별 지원대상 현황	6
양육수당 지원대상 현황	6
유아학비 지원자격별 책정 가구수, 아동수 현황	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황	6
의료급여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현황	6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전·사후 접수 변화 현황	6
의료급여 관리사별 사례관리 대상자수 현황	6
복지대상자 보장별(자격별) 상세현황(시군구별)	5
복지대상자 사업별 현황(중복제외)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소유 용도별 현황	5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부채별 현황(부양의무자 포함)	5
기초생활보장 탈락 가구의 순재산 현황	5
장애인 등급별, 연령별, 유형별 등록 현황	5
장애유형에 대한 16개 시도 장애인(등급)현황	5
16개 시도 연령별 장애인(등급) 현황	5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상세현황	5
시설유형별 시설 생계급여 신청 현황	5
지역별 시설 생계급여 신청 현황	5
시설 생계급여 신청 현황(유형별 상세)	5
아동청소년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실적	5
영유아보육료 신청가구의 자녀수별 가구수 현황	5
영유아보육료 가구구성 유형별 지원, 탈락자 현황	5
영유아보육료 지원자격별 책정 아동수, 가구수 현황	5
영유아 보육료 신규신청 현황	5
한부모가족 연령대별 현황	5
한부모가족 급여지급 현황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연령구간별 지원현황	5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 지원현황	5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연령별 지원현황	5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현황	5

정보내용	중요도 평가
한부모가족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현황	5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및 재산 보유 현황	5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현황	5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수 현황	5
의료급여 사례관리 종결자수 현황	5
의료급여 사례관리 중도종결 사유별 현황	5
의료급여 사례관리 수행건수 현황	5
의료급여 관리사별 사례관리 종결자수 현황	5
의료급여 관리사별 사례관리 수행실적 현황	5
장기입원 사례관리 종결자수 현황	5
장기입원 사례관리 중도종결 사유별 현황	5
장기입원 사례관리 관리사별 사례관리 종결자수 현황	5
장기입원 관외기관 사례관리 실적 현황	5
장기입원 사례관리 자원연계 현황	5
복지대상자 자격별, 서비스별 현황	4
복지대상자 자격별, 서비스별 상세현황	4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직업현황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훈련 현황	4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종류별 건축상태 현황	4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장애인 포함 가구수 현황	4
기초생활보장 고등학교자녀학비 실적 현황	4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근로능력판정용 진단서 제출현황	4
장애인 연령구간별(5세 간격), 등급별 등록 현황	4
장애인 연령별, 유형별 등록 현황	4
장애인연금 소득별 분포II	4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 현황(전체)	4
장애수당 수급 현황(전체)	4
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인 현황(전체)	4
장애아동수당 지급 현황(전체)	4
전국 장애인(유형, 등급) 현황	4
장애유형에 대한 16개시도 장애인(등급)현황	4
아동청소년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실적	4
특별지원청소년 신청자 대비 지원금액 현황	4
특별지원청소년 신청자 대비 지원기간 현황	4
영유아보육료 신청가구의 출생순위별 아동수 현황(연령별)	4
영유아 보육료 신규신청 현황(일일현황)	4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현황	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4
기초노령연금 성별, 가구유형별 신청 현황	4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 현황	4
의사상자 연도별 인정 현황	4

정보내용	중요도 평가
상담사례 대상가구 유형별 현황	4
급여지급현황	4
복지소의계층 발굴지원현황(발굴대상)	4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이행급여특례 실적 현황	3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및 지급실적	3
장애인연금 연령별 급여 지급실적	3
장애인연금 급수별 급여 지급실적	3
장애인연금 소득별 분포	3
장애인연금 급여지급현황	3
장애인연금 장애유형별 현황	3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 현황(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 현황(차상위 계층)	3
장애수당 지급 현황(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수당 지급 현황(차상위 계층)	3
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인 현황(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인 현황(차상위 계층)	3
장애아동수당 지급 현황(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아동수당 지급 현황(차상위계층)	3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발급 내역	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실적	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현황	3
장애인 생활복지시설 명부	3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명부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명부	3
장애인 수당 수급자 현황	3
장애인 수당 집행실적 현황	3
장애인 아동 수당 수급자 현황	3
16개 시도 장애인(유형) 현황	3
16개 시도 연령별 장애인(유형) 현황	3
장애유형에 대한 시도별 장애인(연령, 등급) 현황	3
전국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인(연령 등급) 현황	3
장애등급에 대한 16개시도 장애인(유형) 현황	3
232개 시군구 연령별 장애인(등급) 현황	3
232개 시군구 연령별 장애인(유형) 현황	3
장애유형에 대한 232개 시군구 장애인(등급) 현황	3
장애등급에 대한 232개 시군구 장애인(유형) 현황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세현황	3
시설유형별 시설 운영보조금 신청 현황	3
지역별 시설 운영보조금 신청 현황	3
아동청소년 소년소녀가정 후견인 지정현황	3
특별지원청소년 중복지원 현황	3

정보내용	중요도 평가
아동청소년 청소년증 신청 및 발급 현황	3
아동청소년 청소년증 발급 현황	3
기초노령연금 신청자수 및 신규수급자수	3
기초노령연금 소득종류별, 소득구간별 수급자 현황	3
기초노령연금 재산가액 구간별 신청자 현황	3
상당사례 대상자 발굴경로 현황	3
월별 급여지급현황(백만단위)	3
월별 급여지급현황(원단위)	3
보장별(자격별) 월별수급자 현황	3
보장별(자격별) 보장탈피 원인별 현황	3
보장별 환수대상자 및 환수액 현황	3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현황(발굴경로)	3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현황(발굴장소)	3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현황(주요보호 필요사항)	3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현황(조치현황)	3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현황(지원 조치현황)	3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현황(미지원 조치현황)	3
장애인 아동 수당 집행실적 현황	2
차상위 장애인 수당 신규 수급자 현황	2
차상위 장애인 아동 수당 신규 수급자 현황	2
전국 5세 간격 연령별 장애인(등급) 현황	2
서울/부산 시군구 장애등급에 대한 장애인(연령 유형) 현황	2
광주/대구/대전/울산/인천 시군구 장애등급에 대한 장애인(연령 유형) 현황	2
경기/강원 시군구 장애등급에 대한 장애인(연령 유형) 현황	2
충북/충남 시군구 장애등급에 대한 장애인(연령 유형) 현황	2
전북/전남 시군구 장애등급에 대한 장애인(연령 유형) 현황	2
경남/경북/제주 시군구 장애등급에 대한 장애인(연령 유형) 현황	2
결혼중개업(국내) 지역별 현황	2
결혼중개업(국제) 지역별 현황	2
결혼중개업(국내) 보증보험가입 현황	2
결혼중개업(국제) 보증보험가입 현황	2
결혼중개업(국제) 관련 업체 이력(운영)	2
결혼중개업(국제) 관련 업체 이력(비운영)	2
기초노령연금 신청 상태 현황	2
기초노령연금 소급지급 현황 수급자수	2
기초노령연금 일반등록 소급지급 현황 수급자수	2
기초노령연금 직권등록 소급지급 현황 수급자수	2
신규신청시 2종 이상의 급여 및 서비스 신청 건수	2
급여유형별 제3자 계좌이용현황	2
제3자 계좌이용자 예외사유별 현황	2
장애인 활동보조기구 이용자 인명부	1

정보내용	중요도 평가
청소년 한부모가족 현황	1
장애아동수당 제3계좌 이용자 인명부	1
유아학비 지원자격별 책정 가구수 현황	1

제3절 수요분석의 함의와 이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 중 원시자료의 구성과 통계생산에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선정하면서 고려하여야 하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자료의 공유 주기와 표본의 크기에 대한 제안을 정리하고 자료의 형태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를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자료의 공유 주기와 표본의 크기 등을 보자면, 자료의 공유 주기는 정책 영역별로 다소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연간 자료의 공급이 적절할 수 있으니 이 역시 수급역동성을 분석하자면 그 자료 필요 주기가 월단위나 분기단위로 짧아질 수 있다. 저소득층 소득은 연간으로 분석하는 것이 계절적 변동을 줄이고 안정적이지만 하지만 계절적인 소득변동과 수급역동성을 분석하여야 할 경우는 이러한 전제가 적절하지 않으며 분기자료가 적절할 수 있다. 고용, 근로 영역에서의 분석은 좀 더 짧은 주기로 정보를 공유하여야 그 분석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득층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하여 짧은 시간에 변화를 반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료의 공유 주기는 정책영역별, 연구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일괄 정리는 쉽지 않다.

공유 정보를 원시자료로 구성할 때, 원시자료를 표본자료로 구성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원자료를 일부 표본자료로 구성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그 표본의 크기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물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원시자료를 구성할 때는 별개의 문제이다. 연구자의 연구 설계에 따라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원자료를 일부 표본자료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본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가능한 지역단위로 한정하여도 약 250개 기초자치단체를 가정할 수 있는데 이 단위로 유효한 표본의 수만 고려하여도 약 10만개의 표본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표본수를 고려하면 가능한 수준에서 큰 표본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분석에서 활용한 분석의 구성부분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수준의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구성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보호도 표본의 크기가 큰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시자료의 형태도 이슈가 되는데 자료의 형태는 종단과 횡단 모두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종단과 횡단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표본자료의 구성에서 종단자료를 구성해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종단자료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공 행정자료의 큰 강점이다. 따라서 종단자료의 제공 여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종단자료를 제공하자면 사전에 각 정보들이 어느 단계의 기준 시점으로 구분가능하고 누적 가능한지, 종단의 연결은 어느 단위(개인, 가구 등)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등 매우 정교한 설계와 사전 실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험한 자료를 기초로 이용자에게 종단자료의 구성이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종단화가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 등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6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제1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활용 현황 및 개선점

제2절 공공데이터 공개정책 및 사례

제3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활용 제고 방안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 이용 활성화 방안

제1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활용 현황 및 개선점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시자료 이용은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원시자료의 제공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기초로 한 통계자료 생산과 제공은 상대적으로 자주 경험하였다. 현재 통계자료의 생산은 DW(Data Warehouse)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 포털을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온라인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W 기반의 통계포털(복지정보통계시스템) 이용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 사용자로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시군구 공무원들로 국한되어 있다. 중앙부처 이용자는 전체 31명 수준인데, 이 중 보건복지부가 27개과 실무자가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을 통한 통계 정보 이용자는 시군구가 전체 이용 중 약 59%로 가장 많고 읍면동이 26% 정도로 조회가 빈번한 이용자 중 하나이다. 그리고 복지부가 약 4.6%정도에 이르고 있다. 중앙부처의 온라인을 통한 통계정보 이용은 저소한 수준에 있다. 그 밖의 다른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정보개발원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전 이용 중 58%, 감사원이 21%, 외부기관이 14%, 그리고 국회가 7%를 차지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정보의 경우 실제 보건복지부의 요청과 보건복지부로 자료 협조 요청이 온 외부 기관의 요청을 구분하지 못하여 그 수치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온라인 DW 이용이 활발한데, 각종 보고의 필요성에 기인해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달리 정보개발원으로 자주 발생하는 통계생산의 요구를 모두 의뢰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도 활용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된다. 각종 보고가 지방정부의 주요 이용사유가 되므로 사업팀의 이용 빈도와 이용 시점이 보고의 시점과 맞물려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월말, 분기 등의 시점에 이용 빈도가 높은 것이 그 예이다. 지방정부에서 온라인 통계정보를 자주 사용하는 부서는 희망복지지원단, 주민생활지원, 복지정

책, 사회복지과 등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활용이 저조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지급여권리과, 자립지원과의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이외 중앙부처 중, 여성가족부의 이용 빈도가 높았다. 결국 중앙부처의 경우 정보개발원으로 통계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전체적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나 통계생산의 필요성이 높은 부서들의 접근이 활발하다. 기초보장과의 이용도 높지만 이 과의 경우는 별도의 채널로 통계집계를 지원받고 있어서 이용 빈도가 높은 부서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이용 필요성이 이용 빈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 이용자 인터뷰와 현장방문 의견조사 등을 통해 현재 DW 이용자의 의견을 분석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W 이용자 중 시도, 시군구 이용자의 경우는 주로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운영계 자료와 DW의 자료 특성을 혼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매월 초 수급자 현황 보고 등 각종 보고 자료를 DW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었다. 주로 통합조사관리팀과 각 사업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 시기에 이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용자가 교체되면 역시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 소요 및 통계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용 상의 문제로 지적한 것은 정확성과 신뢰도, 통계조회 속도, 그리고 난이도였다. 새로운 정보의 보고시기 보다 통계 생산이 늦어 특정 시점의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얻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점은 DW는 운영계와 달리 다소의 시간을 두어 갱신되는 점에 대한 설명의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향후 이용자가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다. 한편 정형통계와 비정형통계가 수치 차이가 나기도 하여 신뢰도의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일부 정보의 경우 정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시점의 차이가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 검색에서 난이도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예로 조건검색이 너무 세분되어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조회 속도가 느려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앙부처의 경우 조회 속도가 늦어서 정보개발원에 요청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조회 속도를 높이는 개선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통계이용 방법의 난이도 지적도 적지 않았다. 비정형통계는 정형통계의 이용보다 더 어려워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고, 이 밖에 사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선택적 조건화 요청이 비교적 빈번하게 문제로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읍면동 단위 집계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필요한 읍면동의 해당 사항만 집계가 가능하도록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DW에서 얻은 정보를 재가공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계정보 이용자는 아니지만 곧 확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활용을 제고할 경우의 잠재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로 정보의 공유를 희망하고 있었다. 잠재적 이용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이용자로 한정하였으며, 조사 결과 범정부 이용자는 통계생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대세였다. 범정부 외 준 공공기관의 경우 정책개선 등을 위하여 기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통계를 생산한 경험이 있으며 자주 진행하는 편이라 응답하였다. 현재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 또는 관련 조직의 홈페이지에 의존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경향을 보였고 통계자료의 생산 주기는 월간, 연간 등으로 다양하였다. 특정한 시점의 현황집계, 지역별, 시점별 통계와 특정 대상의 명단 추출 등이 통계 생산의 주요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생산 또는 사용하였던 통계는 필요한 정보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같이 방대한 정보를 가진 정보의 원천이 없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이러한 의견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공유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설명과 경로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외에 DW 이용 확대 측면에서 꼭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질문에서 사회정책 민간수행기관을 포함하여 공단 등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제2절 공공데이터 공개정책 및 사례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에 관심이 주목되면서 여러 국가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오픈데이터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2013년 6월에 열린 북아일랜드 G816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조인한 오픈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에 함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현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 데이터 개방을 주요한 세계적 흐름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정보의 이용 영역을 국내를 넘어 국가 간 교류까지 논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다섯 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참가국의 오픈데이터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원칙으로는 첫째, 납득할 수 있는 비공개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한다. 둘째, 시의 적절하게 정확하고 질 높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장·단점이나 분석 상의 한계점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셋째,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행정 개선을 목적으로 데이터 수집, 표준, 발표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거둔 전문지식이나 경험 또한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오픈 데이터의 가치를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원칙으로 하되 영리적·비영리적 사용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 이 밖에 각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포털을 통한 데이터의 공개, 일관성 있는 메타데이터의 사용 및 최신화, 데이터 이용자 의견청취,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공개된 포맷으로 데이터 제공, 데이터 표준에 대한 공개, 오픈라이선스 이용권고 등 기술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이상 본 절에서는 일찍이 오픈데이터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단계에 돌입한 미국, 영국, 유럽연합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오픈데이터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사례를 조사하고 정보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

가. 미국

미국은 2009년 1월, ‘투명하고 열린 정부’라는 국정운영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개방정부정책(Open Government Initiative)’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 12월 ‘개방정부정책’을 통해 모든 연방정부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6) G8(Group of 8)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국민이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2009년 5월, 공공데이터 공유 플랫폼(data.gov)을 구축하였으며 이외에도 35개주, 19개 도시가 자체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고 개방하는 노력을 하였다. 2012년에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정부 전략(Digital Government: Buliding a 21st Century Platform To Better Serve The American People)’을 발표하면서 수치 데이터 이외에 문서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의 공개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2013년 5월에는 정부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의 공개를 골자로 하는 ‘자료개방정책(Open Data policy)’를 발표하면서 모든 공공 데이터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민간에 개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산관리국(OMB)이 오픈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연방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보유데이터의 내부색인 및 공개데이터 목록을 작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개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¹⁷⁾.

미국 정부는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를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여기서 데이터란 생성·수집, 처리, 배포, 폐기가 가능한 텍스트, 숫자, 그래픽, 지도,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정보 일체를 지칭한다. 공공데이터는 ‘data.gov’를 통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machine-readable formats)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정부 및 공공기관의 투명성, 시민참여, 협업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자유로운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픈 데이터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공개(public), 접근성(accessible), 기술(described), 재사용(reusable), 완전성, 적시성(timely), 배포·관리(managed post-release)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공개 원칙이라 함은 정부 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에 입각해 개인정보, 기밀, 안보 등의 제약 사항 외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HTML, ZIP, XML, TXT 등)로 제공하여야 하며, 다운로드, 색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편리하고 수정 가능한 오픈포맷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공개되는 정보는 되도록 사용자와 목적에 제약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개방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방정보의 강

17) 한국정보화진흥원 IT Issues Weelky(2013.5.16), p.1

점, 약점, 분석 상의 제약, 보안 요건, 처리 방법 등의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를 위해 메타데이터(데이터를 설명하는 필드 또는 요소), 데이터 요소의 문서화, 데이터 사전 등의 제공을 권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데이터 수집의 목적, 모집단, 표본 특성,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이용자가 시의적절하게 데이터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포 주기는 핵심사용자와 하향스트림 요구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6-1> 미국의 오픈데이터 정책 구현을 위한 주요 원칙

원칙	주요 내용
공개 (publ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 • 단, 개인정보보호, 기밀, 안보 등의 제약 조건의 데이터 제외
접근성 (access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운로드, 색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편리하고 수정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
기술 (describ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
재사용 (reus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보장
완전성 (comple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에서 수집된 원시형태로 데이터를 배포
적시성 (time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가능한 신속하게 공개
배포관리 (managed post-rele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사용지원 및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활동을 진행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 ICT R&D 정책동향 재인용

개방 정보는 어떤 제약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 라이선스로 공개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가공할 수 있도록 원시자료(raw data)로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료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오픈 플랫폼인 data.gov에서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는 웹페이지 연결을 통하여 원하는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ata.gov에서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형, 데이터 공개기관, 데이터 카테고리, 데이터 관련 태그, 관련 출처 등을 기준으로 검색결과를 정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공개 자료의 사용을 지원하고 관련한 요구사항과 민원을 응대하기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나. 영국

영국정부는 빅데이터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의 정보 공유 및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을 위해 데이터 공개·공유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을 제정하였고, 2007년 6월 ‘정보의 힘(Power of Information)’ 보고서를 근간으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였다. 2010년에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data.gov.uk)를 구축하였으며, 2012년 3월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재이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를 설치하였다. 위원회 산하에 공공데이터 그룹(Public Data Group)과 오픈데이터 이용자 그룹(Open Data User Group)을 두었는데 전자는 공공데이터 접근 향상, 공공기관의 모범경영 선구자, 새로운 활동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후자는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지,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 상에 개선점 등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2년 5월, 내각사무처는 세계 최초로 ‘오픈데이터 연구소(Open Data Institute)’를 설립하여 데이터 접근 및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데이터의 경제적 이익, 영향분석, 공공부문의 오픈데이터 이용 및 이해제고 등을 지원하고 있다(윤미영, 2012). 2012년 6월, 내각사무처는 데이터 접근성 강화 및 향후 개방 데이터 목록 등에 관한 ‘오픈 데이터 백서(Open Data Withe Paper)’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기업혁신숙련부 등 17개 주요부처가 오픈데이터 전략을 마련하고 의료, 교육, 세금, 고용, 기상데이터 등을 '1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각 부처에서 발표한 오픈데이터 전략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개인정보와 관련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경험 및 만족도와 관련된 데이터 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은 ‘역사상 가장 투명한 정부’를 목표로 오픈 데이터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 정부의 책임성 강화, 공공서비스의 향상,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국정부는 데이터를 사회와 경제성장을 위한 21세기 새로운 원자재 및 연료로 정의(윤미영, 2012)하고 공공기관의 문서, 음성, 영상 등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

일체를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사하게 우선 이용자에게 언제 어떠한 형태의 무슨 정보가 배포되는지를 포함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는 정보는 재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오픈 라이선스로 배포되어야 하며, 단일 온라인 창구를 통해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는 공개 표준(open standard)과 World Wide Web Consortium(W3C)의 관련된 권고에 따라서 제공되어야 하고 동일 주제로 각기 다른 부처에서 생산된 공공데이터는 표준화된 포맷 및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밖에 공공데이터는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시의적절하여야 하며, 이용 가능한 공개 표준 형태로 신속히 공개, 공공데이터 보유목록 및 관련 메타데이터를 제공해야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¹⁸⁾ 2005년에 제정된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을 통해 대상, 목적, 처리절차 등 상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표 6-2>와 같다.

<표 6-2>영국의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문서 또는 소리, 영상 등 전자적으로 저장된 문서 일체를 대상(제3조) • 신청자의 이름, 주소, 재사용하고자하는 문서의 특징, 재사용의 목적 등을 명시한 서면신청(제6조, 제7조) • 신속하게 답변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의 익일부터 20 근무일의 말일까지 공개 여부의 답변 의무(제8조) • 거부시 이유를 부기하여 신청인에게 제8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제9조) •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제8조제4항(b) 및 제8조 제4항의 ©가 정한 바에 따라 재이용신청에 대한 답변시에 존재하는 형태로 조건을 붙여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재이용의 요청에 적합하게 창출하거나 각색할 의무, 비례에 반하는 노력을 요하는 경우의 초록 제공 의무 및 다른사람의 재이용 목적을 위해 일정한 형태로 계속 생산할 의무 등은 부담하지 아니함(제11조) • 재사용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조건과 관계없이 문서의 재이용 방법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됨(제12조) • 수수료의 부과는 받은 수수료의 총수입이 문서의 수집, 생산, 재생산 및 분류의 수수료와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윤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표준수수료를 책정하여야 함(제15조) • 공공기관은 재사용의 조건, 재사용의 표준수수료, 재사용할 수 있는 주요문서의 목록, 신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나 실무와 관련하여 신청자 및 잠재적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정수단 등 정보를 공표하고 전자적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제16조) • 공공기관은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공단체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믿는 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의를 판단하여 지체없이 이의제기한 자에
--

18)동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The Public section transparency board(2012). 『public data principles』.

계 통지(제17조)

- 제17조에 의한 이의를 거친 경우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의가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의를 공공정보실에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고, 공공정보실(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왕립출판실(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및 스코틀랜드 왕립인쇄실(The office of the Queen's printer for Scotland)이 이의의 주체인 경우 또는 이들 기관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의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정보자문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제18조)
-

자료: 황주성 외(2008), 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pp.67~68

각 부처의 공개 데이터는 공유 플랫폼인 data.gov.uk를 통해 민간에 개방되고 있으며 2013년 12월 기준으로 13,188개에 달한다. 대부분이 시맨틱 기반의 LOD(Linked Open Data)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data.gov.uk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 아이디어 공유 등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data.gov.uk 상의 데이터는 공개여부(Published, Unpublished),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데이터 셋, 오픈저작권 여부, 주제, 자료 형태, 제공기관, 'openness score', 'UK location dataset type'으로 검색 결과를 정렬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2002년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PSI(Public Sector Information) 전문가 그룹을 개설하여 2003년 11월,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이하 PSI Directive)'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정보를 재이용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EU 집행위원회는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재이용 윈스톱 슝인 'ePSIplatform' 포털을 구축운영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오픈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 ODS)'을 수립(〈표 6-3〉 참조)해 27개 회원국의 공공기관이 모든 공공데이터 온라인 개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2013년 6월에는 오픈데이터 전략(ODS)의 구속력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PSI Directive'를 개정하였으며, EU의 데이터 포털 개설, 데이터 처리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실질

적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정보 목록 공개 의무화, 공공데이터의 가공이 용이하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각 회원국은 민간제공을 총괄하는 독립조직 설치, 제공실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 의무화, 제공에 따른 과금 산정 및 정보제공 형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데이터 공개 시, 이행 방법을 명확화 하였다.

〈표 6-3〉 EU 오픈데이터 전략(ODS)의 주요내용('11년 12월)

구분	내용
개방방식	공공데이터 온라인 게재 의무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 개인·기업의 정보 재가공 후 판매 허용
대상기관	EU 본부, 27개 회원국 공공기관, 공립대학,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 등
대상 데이터	문서자료, 통계수치, 지도, 지질학적 자료, 그래픽, 동영상 등 * 단 안보 관련이나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정보 등 특별한 경우 제외
제공창구	EU 차원의 통합데이터 제공포털(Pan-European) 구축 추진('13) * 영국(data.gov.uk), 프랑스(data.gouv.fr) 등 각국의 통합제공 사이트 연계
제도정비	공공데이터의 재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13년 발효)

EU는 공공 데이터의 범위를 EU의 공공조직에서 생산, 수집, 저작권이 있는 모든 정보로 설정하였다. 예컨대, 지리 정보, 통계, 기상데이터, 공적 자문에 의한 연구 프로젝트의 데이터, 도서관의 디지털화된 책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 컴퓨터를 통해 누구나 쉽고 읽기 가능한 형태로 사용 및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오픈 공공데이터로 명명하였다. EU는 공공데이터 재이용을 통해 신사업 창출로 한해 약 400억 유로의 경제적 가치를 얻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더 많은 데이터가 공개되어 사용가능해지면 근거기반 정책결정, 사회혁신 등 새롭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내적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 정치나 사회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오픈데이터 정책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EU는 공공데이터를 PSI Directive를 통해 회원국이 지켜야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전자 수단을 통한 사용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공공데이터

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문서의 수집, 생산, 재생산, 배포에 소요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기관의 회계원칙에 따라 과금되어야 하고, 적절한 회계처리 기간을 두어 비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은 어떠한 조건이 없이 공공정보의 재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제한된 이슈(안보,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재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회원국은 디지털 포맷으로 사용가능하고 전자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표준 라이선스(standard license)를 보급하여야 하며, 회원국은 모든 공공조직이 표준 라이선스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넷째, 회원국은 각 국의 분산된 공공정보를 연계한 포털 사이트 등 이용자가 하나의 접점에서 재이용 가능한 공공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영리 회사와 자선단체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문서의 이용을 원한다면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도 동등해야 한다. 여섯째, 공공정보의 재활용은 시장 내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공공기관과 제3자 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이러한 독점적인 이용권이 공적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할 때, 독점적인 권리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할 수 있다¹⁹⁾.

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을 기점으로 같은 해 6월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정보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2012년 6월부터 중앙행정기관 8곳과 지방자치단체 2곳으로 구성된 공공정보 개방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정보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같은 해 7월 관련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고 국회의결을 거쳐 201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제공법에는 목적 및 원칙,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책수립방안, 제공대상 범위, 공공데이터 등록 방법,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확정·공표, 품질관

19) EU의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본원칙은 EU PSI Directive(2013.6)를 참조하였다

리, 제공기반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먼저 법에서 정의한 공공데이터와 제공의 의미를 살펴보면, 공공데이터라 함은 각 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 된 파일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자화 된 파일이란 각 분야의 보고서, 연도별 백서, 통계연보 등 DB외에 개별형태로 생성·관리되는 데이터(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등)를 포함하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에서 제외된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표 6-4〉 참조), 상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권 등 제 3자 권리 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가 해당된다.

〈표 6-4〉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

-
-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단 다음과 같은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상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 정보는 제외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2013년 9월 현재 33개 대분류 117개의 중분류로 되어 있다. 공공정책, 통계, 법률, 정치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국토관리, 환경, 재정, 금융, 보건의료, 복지 등으로 상세분류가 되어 있다.

〈표 6-5〉 공공데이터 개방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공공 정책	공공기관 정책	재정	일반재정	보건 의료	건강관리
	공공분야 정보화		세금		보건산업
	기록물관리		관세		공공보건의료
			조달		한방의료
통계	국가기본통계	금융	국제금융	복지	연금
	주제별 통계		민간금융		건강보험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가족다문화	
법률	생활법률	교육	영유아교육	보훈	국가유공자
	지적재산권		초·중·고 교육		
	특허정보		대학교육		
			평생교육		
			직업·취업교육		민주유공자
			특수교육		
			학술자료		
정치	정당	과학	기초과학	고용 노동	고용보험·실업급여
			생명·바이오		고용평등
	국회		원자력		산업재해
			우주공학		노사협력
				취업정보	
국토 관리	도시계획	농축 수산	농업·농촌	산업	기업경제
	건설정보		농축산기술정보		소상공인
	공공건축		수산·어업		창업·벤처
	국토지리정보		검역		에너지자원
	부동산·주택				품질·기술표준
				소비자보호	
환경	생활환경	생물 및 산림자 원	산림생태	수송 물류	육상교통
	유해화학물질매출		생물종 정보		항공교통
	대기오염				해상교통
	수질·해양오염				물류정보
폐기물					
기상	날씨	여행·관 광	국내여행	방송 통신	방송
	기상관측기후변화		해외여행		정보통신
	생활·산업 기상정보				우정·우편
재해 예방· 안전	소방·방재	역사	문화유산	외교· 국제 관계	국제기구 및 협약
	재난·예방		한국사		국제교류 및 국제문제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안전교육		종교학		
치안	범죄수사	문화예 술	예술공연	통상 교역	통상무역
	범죄예방		문학		무역 및 투자유치
	경찰		음악		해외원조
			미술		
출입국 행정	외국인체류	체육	생활체육	남북 관계	통일정책
	재외동포		경기체육올림픽		북한정보
	국적·귀화난민				대북지원
인권	개인정보·인권 침해예방	식품 의약품	식품산업	국방	병무
			유통정보		
	범죄피해자보호		식품안전		국방사무·방위산업
			근로기준		
			화장품 및 위해정보		
	한약품				

자료: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가이드라인, 안전행정부(2013.9)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본원칙으로 공공데이터 이용권의 보편성, 접근과 이용의 평등 원칙, 이용저해행위 금지, 이용자의 영리·비영리적 활용 허용, 국가의 안전보장 및 타인의 권리 우선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하고,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가 평등하게 공공데이터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하며,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 행위를 금한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공방법 및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공대상으로 선정된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XLS, HWP, open API 등)로 변환하여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민간에게 제공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공공기관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 하는 방법,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우편 신청하는 방법을 택하여 이용자가 데이터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공표 대상에 없는 데이터는 이용자가 각 기관 및 공공활용 지

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제공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데이터 제공법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책수립을 하여야함을 명시하였으며, 각 기관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의무화 하였다. 더불어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데이터의 질 관리 뿐 만아니라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공공기관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공공데이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이용자 교육의 실시에 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이상 공공데이터 제공 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6-6>과 같다.

<표 6-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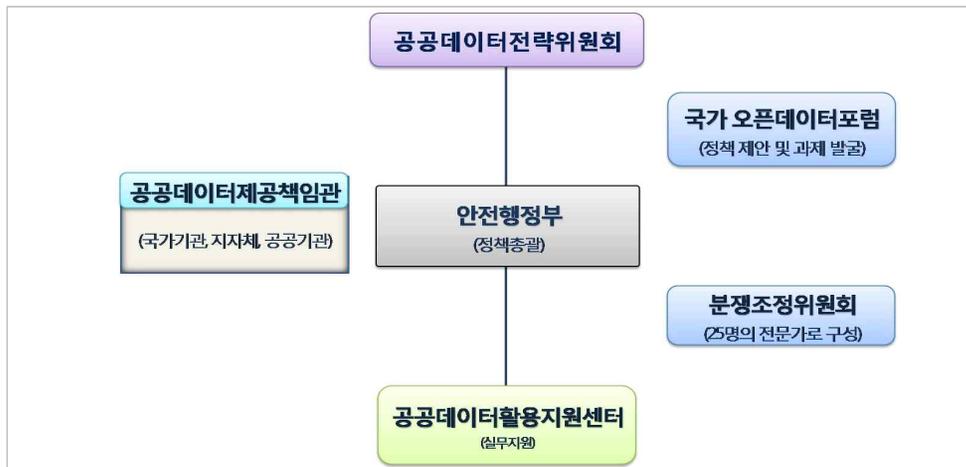
구분	주요 조문	내용
총칙	목적	• 목적: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
	기본원칙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보장
정책수립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 주요 정책심의 등을 위해 국무총리소속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신설 • 기능: 기본계획수립·변경,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심의·의결 등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제공 운영실태 평가	• 3년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행부) • 매년 시행계획 수립(중앙·지자체의 장)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전략위와 국무회의의 보고 후 공표 → 우수기관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선정·포상(안행부)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임명 및 활용지원센터 설치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총괄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를 임명하고 안행부장관에 통보 •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치(한국정보화진흥원)
기반조성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	• 제공대상 범위: 공개법 제9조 비공개정보,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 단, 제공 대상이 아닌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의무화 •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공공기관의 장은 모든 공공데이터 목록정보를 안행부장관(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확정·공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의결 → 안행부장관 제공 목록 종합·공표 →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제공대상 목록 홈페이지 공표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 • 품질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 • 제공기반 구축: 공공기관의 장은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 정비 및 다양한 형태의 제공방안 구축 등

구분	주요 조문	내용
공공 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및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 (단, 이용자는 공표된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 • 안행부장관 소속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중단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보칙	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품질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책

자료: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가이드라인, 안전행정부(2013.9)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추진체계는 안전행정부가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정책총괄을 맡아 제공목록 공표, 운영실태평가, 기본계획수립, 제공기반 조성을 담당한다. 위로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어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 추진사항 점검·평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아래로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두어 해당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총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대한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오픈데이터 포럼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을 위한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6-1]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체계



자료: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가이드라인, 안전행정부(2013.9)

2. 공공데이터 제공 사례

가. 통계청

통계청은 우리나라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 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와 각종 통계자료의 신속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통계청은 고품질의 통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법·제도·예산인력 등 물적 기반 강화, 통계기법의 정확성 제고, 정확성·시의성·유용성을 갖춘 통계 개발 및 생산, 행정자료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가통계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내부 구성원(직원) 및 외부관계자(국민, 정부기관, 언론 등 유관기관)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생산한 통계와 통계청에서 직접 생산하는 통계를 망라한 범정부적 국가통계통합 DB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 통계청모바일앱, e-나라지표, 통계지리정보, 통계분류체계, 마이크로데이터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은 이용자가 국가승인통계를 원스톱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e-나라지표는 국정에 관한 주요통계지표를 알기 쉽게 분석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통계지리정보는 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융합하여 지도처럼 재구성하여 한눈에 통계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산업, 직업, 질병·사인, 무역 등 한국표준분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표준화된 통계 작성에 기여하고 있다. 통계정보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원시자료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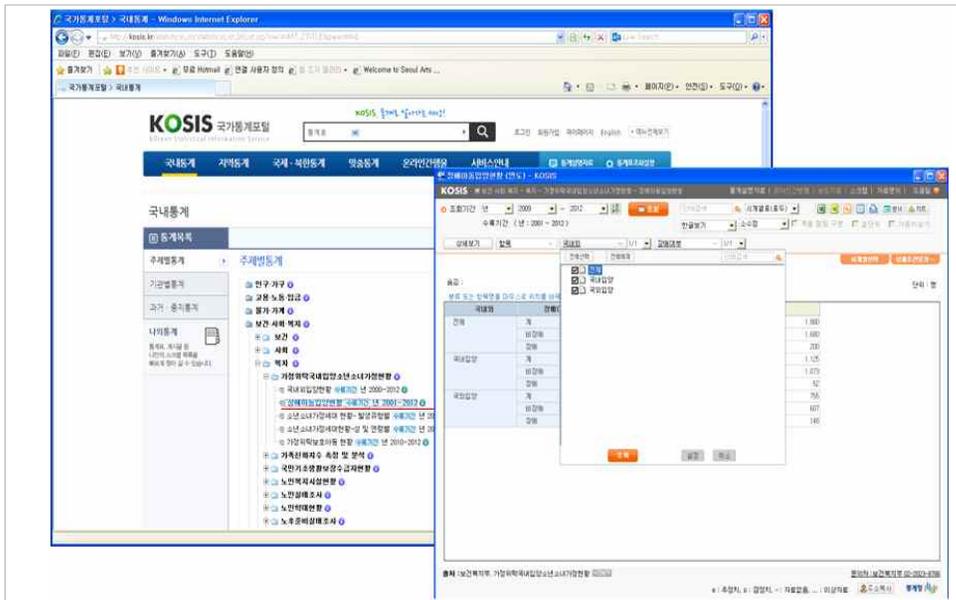
1) 정보제공 범위 및 방법

통계청의 정보제공 범위는 크게 국가승인통계와 원시자료²⁰⁾라 할 수 있다. 주로 국가승인통계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 높은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계 및

데이터 설명을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가독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통계를 다양한 각도로 재구성하여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시각화된 정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원시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있다.

통계정보는 390여개의 통계작성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1,036여종의 국가통계 전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접속하여 윈스톱으로 다양한 영역의 통계를 확인하거나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먼저 이용자가 메인화면에서 제공받고자하는 통계의 관심주제 영역을 선택하고, 관심 통계를 선택하면 마지막 단계로 세부 속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

[그림 6-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통계 제공 방식



20) 원자료에서 입력오류 등을 제거하여 공표 통계표 작성 등 데이터 가공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자료로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라고도 한다(<http://mdss.kostat.go.kr>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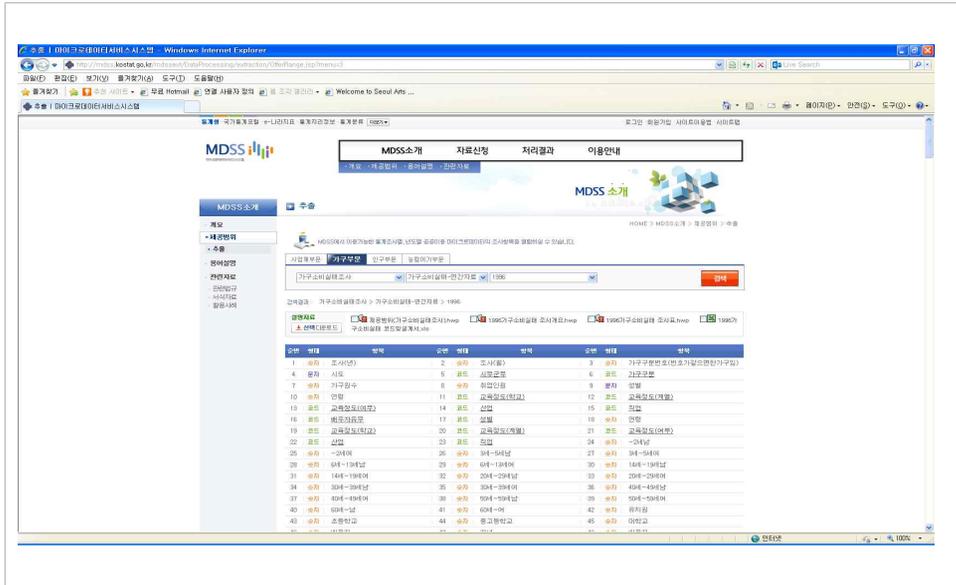
관심주제 영역은 주제별, 이용목적별, 사용자의 주요관심사 등에 따라 사용자 관점에서 접근방법을 상이하게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동일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제별로는 인구가구, 고용·노동·임금, 물가가계, 보건·사회·복지, 환경, 농림어업 등으로, 대상별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학생, 노인, 여성, 환자,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 관심주제 영역을 다시 세분화 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통계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통계 서비스 유형

- (주제별) 인구가구, 고용·노동·임금, 물가가계, 보건·사회·복지, 환경, 농림어업 등
- (대상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학생, 노인, 여성, 환자, 장애인, 외국인
- (이슈별) 가족관계, 건강·질병, 경기, 교통 및 교통사고, 인구, 일자리 등
- (통계시각화 콘텐츠) 한국의 주요지표(경기, 물가, 인구 등 선별된 주요지표), 통계로보는 자화상(성별, 연령별, 학력별 사회통계 제공), 인구추계교실(인구변화), 경기순환시계, 지역경제 상황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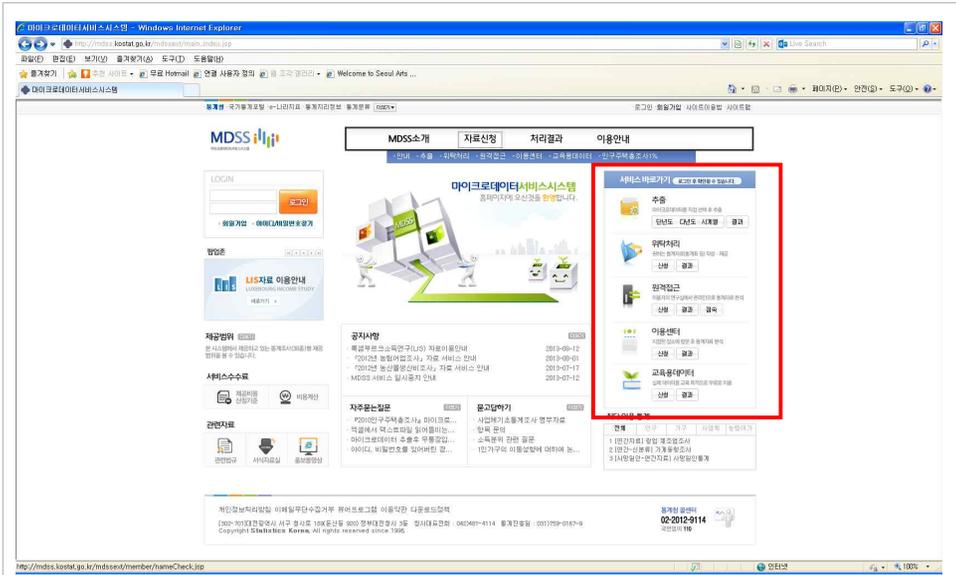
원시자료 서비스는 2006년부터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MDSS)을 통해 통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통계 조사 자료로는 통계청에서 작성·공표되는 사업체, 가구, 인구 및 농어가부문의 총 40종 통계조사자료가 해당된다. 이용자는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에 접속해서 사업체, 가구, 인구 및 농어가부문별 상세 조사 자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조사 자료의 항목을 상세 선택하여 단년도, 다년도, 시계열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조사 설계 등에 대한 조사개요 및 조사항목 설명서 등의 파일이 이용자에게 함께 제공된다.

[그림 6-3] 통계청 원시자료 제공방식



이용자는 직접추출, 위탁처리, 원격접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마이크로데이터 CD 등 다섯 가지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직접 추출은 이용자가 직접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이며, 위탁처리는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분석 작업을 통계청 혹은 한국통계진흥원이 대행해 주는 방식이다. 단, 통계분석은 KOSIS 집계기준과 동일해야 하며 이용자의 주관적인 통계분석 작업은 위탁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제약점이 있다. 원격접근은 이용자가 집,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통계청의 원격접근시스템에 접속하여 인가된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통계청이 분석 결과에 대하여 비밀보호 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는 이용자가 통계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통계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통계청이 분석 결과에 대하여 비밀보호 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울(KDI 내), 성남(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 내), 대전(통계청 내), 대구(동북지방통계청 내), 부산(동남지방통계청 내), 광주(호남지방통계청 내), 제주(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데이터 CD는 통계쇼핑몰에서 공공이용 마이크로데이터를 CD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림 6-4] 통계청 원시자료 취득 방법



데이터 취득 방법

- (추출)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가공
- (위탁처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통계진흥원이 처리
- (원격접근) 이용자가 집,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인가된 데이터를 통계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통계청이 분석 결과에 대하여 비밀번호 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공하는 방법
- (마이데이터 이용센터) 이용자가 통계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통계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통계청이 분석 결과에 대하여 비밀번호 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공하는 방법
- (마이데이터 CD) 데이터를 CD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법

2) 정보제공 운영 및 원칙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해 통계법시행령 및 통계청통계자료제공규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구성하여 통계자료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통계자료제공심의회는 위원장 1명, 위원 14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통계조사별 자료제공범위 설정, 통계 및 자료이용 목적의 적합여부, 자료제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마이크로데이터의 관리는 통계청이 하며, 제공은 통계청과 한국통계진흥원이 함께 수행한다. 통계청은 국가기관, 지자체, MOU체결기관, 자료교환기관 등에 대해 제공하며,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한국통계진흥원이 제공한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및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심층적인 경제, 사회현상 분석을 원하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위해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최대한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단, 자료 제공이전에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개인·가구·사업체·법인 또는 단체 등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 및 정도, 사전협의 없이 부당하게 공표한 이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효율적 정보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

통계청에서는 이용자가 쉽게 통계를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다. 인구, 고용, 경기, 물가 등의 주요지표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주요지표」,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가족, 교육, 여가, 건강, 경제, 환경 등 6개 분야의 통계를 대화식으로 살펴보는 「통계로 보는 자화상」, 지역 및 우리나라 인구를 예측하는 「인구추계교실」, 주요경제지표들이 순환국면(상승, 둔화, 하강, 회복)상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사분면 좌표평면상에서 시계처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경기순환시계, 지역별 주요경제 동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역경제상황판」, 그 밖에 물가, G20 국가의 주요지표 등을 시각화하여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e-나라지표는 정부기관에서 엄선한 지표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우리나라 현위치를 통계표, 도표를 통계 설명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림 6-5] 통계청의 통계시각화 콘텐츠



통계청은 통계표준용어, 통계용어지표서비스를 통해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통계학적 개념, 통계용어 및 통계청 공표 주요 통계지표 등을 정리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제 공함으로써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통계에 대한 인식 도모를 꾀하고 있다.

용어 뿐만 아니라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통계 설명DB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검색 조회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통계설명자료 에는 통계 작성 대상 및 단위, 시점, 이력 등의 통계개요, 조사방법론, 공표방법, 범위, 공표주기 등의 자료제공 정보, 이용 시 유의점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6-6] 통계청 통계자료설명 서비스 화면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보장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공단은 크게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건강보험사업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운영조직은 징수, 급여관리, 장기요양 부문으로 구분되며 정보지원실을 두어 관련 사업정보 관리를 비롯해 DW 개발, 통계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정책연구원 통계분석팀에서 통계분석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 9월부터 가동된 빅데이터운영센터에서 데이터분석 및 데이터개방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정보제공 범위 및 방법

공단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이슈화되기 전 일찍부터 국민건강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외부 연구자를 중심으로 원시자료도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다. 공단은 6종(건강검진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지역별의료이용통계, 건강보험통계,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는 통계청 및 기관홈페이지 통계자료실을 통해 제공한다. 그 외 정형화하여 생산하는 통계는 이용자 누구나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공하는 통계는 건강보험통계연보, 분기별 건강보험 주요통계, 의료급여 통계연보, 분기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일반통계, 주요수술 통계연보,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 건강검진 통계연보,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등으로, 다양한 양식의 파일(EXCEL, HWP,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 밖에 국가, 행정기관, 대학연구소 등에서 요청하는 통계는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의거하여 별도로 자료를 산출제공하고 있다. 공단 홈페이지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절차, 범위, 기준, 방법 등이 안내되고 있다. 자료 제공 절차를 보면, 이용자가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산출 가능한 통계자료 범위, 보유자료 항목 등에 대해 사전 이용 상담을 거쳐, 문서로 요청자료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제공범위 및 이용 목적의 적절성을 심의하여 이용자에게 보안서약을 받은 후 가공된 자료를 문서로 제공한다(그림 6-7 참조). 이러한 절차로 작성·제공하는 요청통계는 연간 1,000건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료제공 범위는 첫째, 국가 행정기관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둘째, 대학연구소 등 공공기관에서 국가 및 행정기관의 연구에 따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셋째, 비영리 또는 공익기관에서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 넷째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순수 연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통계자료의 제공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분석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자료 명칭, 사용목적, 내용 및 범위, 수령방법이 기재된 공문 등의 문서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림 6-7]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이용절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통계자료실

연구자 연구를 위한 원시자료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술연구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용된 경우, 요구된 자료를 구성하여 제공하되, 현재까지는 공단의 지정된 장소, 지정된 컴퓨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는 공단에서 검토 후 연구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을 유지하여 왔다. 또한 담당자는 보안 서약서를 연구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기제를 마련해두었다. 자료의 제공은 실비를 받고 있었으며 실비 계산을 위한 논리도 개발하여 두었다.

정보 제공을 위한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이용자는 방문하여 분석하는 방식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 코호트 표본자료를 구성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여전히 연구자의 정보 활용 윤리를 전제로 할 가능성이 높다. 동 자료는 해당 DB를 기반으로 표본설계를 하고 일종의 코호트 표본자료를 구성하여 자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현재는 일차 준비된 표본자료에 대한 실험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본 DB로 해결이 어려운 연구 설계의 경우 별도의 지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

2) 효율적 정보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

공단에서는 전문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유한 자료로부터 통계생산 및 원시자료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시 하였다. 우선, 내부 직원을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 자격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단은 2010년 고용노동부에서 건강보험정보분석사를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인증 받고 2013년 8월 현재까지 6회에 걸쳐 194명의 자격자를 배출하였다²¹⁾.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자격 검정은 공단이 보유한 전국민의 자격, 보험료, 건강검진, 진료내역, 장기요양 등 대량의 DW를 가치가 있는 통계정보로 가공하는 능력을 검정하는 제도로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한 직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현재 공단에서 발간하는 통계연보가 총 6종이 생산중인데 이러한 인프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단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리업무에 초점화 되어 축적된 정보를 공익적 연구로 활용 가능하도록 재편하여 공개할 계획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는 보유한 정보로부터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하였고 2012년에는 연구자를 위한 표본 코호트 DB를 설계하였으며, 2013년에는 표본 DB의 실용성을 검증하여 2014년 상반기 중, 공개할 계획에 있다. 국민건강정보 DB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권자 전체에 대한 진료명세서와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 내역 등이 포함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자격 및 보험료, 환자등록정보, 진료내역 및 명세서, 사망 및 신생아 정보, 요양기관정보, 건강검진 정보 등 6개 세부영역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이준영, 2012). 기존에 관련 업무 관리를 중심으로 DB를 구성하였다면 국민건강정보 DB는 연구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구성하였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를 기반으로 보험가입자의 진료내역, 검진결과, 거주지 및 보험료, 요양기관 정보 등을 바탕으로 층화계통추출 방법을 통해 연구용 표본 DB를 구축하였다²²⁾. 표본 DB는 약 100

2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3.8.13), “건보공단,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 자격검정」으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참조하였다.

2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3.1.23), “건보공단, 전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표본 DB 구축”을 참조하였다.

만 명의 표본코호트 DB,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희귀질병 DB, 건강검진 DB 등 3종이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료내역, 검진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표본 DB는 자료의 처리가 용이하나 규모가 큰 원시자료에 준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면서도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구축된 표본 DB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료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공개방안에 대해 공단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관련 학회, 연구기관, 대학 등과 MOU를 체결 및 이를 활용한 시범연구를 수행하여 표본 코호트 DB의 우수성과 제한점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공단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본 코호트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킨 후 국민건강 관련 연구용으로 2014년 상반기에 자료공개를 예정하고 있다²³⁾.

셋째, 대량의 데이터의 처리·분석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운영센터'를 설립하였다. 빅데이터 운영센터는 크게 '서비스개발팀', '데이터 분석팀', 'ICT 지원팀'으로 구성하였으며 빅데이터의 구축, 활용, 지속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²⁴⁾. 그 중 빅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표본DB의 검증 및 품질보정, 개인정보보호, 외부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운영, 연구자료 제공 및 결과관리, 정책통계 분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공단 정보, 심사평가원 심사자료, 외부기관 건강관련 자료 등 개인건강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 플랫폼(My Health Bank)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진료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에 운영조직은 경영·기획, 제도설계·기준설정·관리, 심사·평가, 연구 부문으로 구분되며 경영·기획파트에 정보통신실을 두어 관련 사업정보 관리를 비롯해 DW 개발 및 관리,

2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3.12.5), "건보공단, 빅데이터 시범연구 결과발표 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참조하였다.

2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3.9.9), "건보공단 10년 축적한 1조 3,034억 건의 빅데이터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운영센터」 본격 가동"을 참조하였다.

심사실적 등의 통계 기초자료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심사평가연구소 내에 통계 정보센터를 두어 통계관리, 통계분석, 정책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계관리팀은 대외 통계제공, 통계간행물 제작 및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며, 통계분석팀은 진료통계 산출 관리 제공, 지식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정책분석팀에서 급여비 변동현황, 요인분석연구 및 진료경향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정보제공 범위 및 방법

심평원은 국민의 의료이용과 관련한 통계와 원시자료를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해 하고 있다. 심평원은 3종(건강보험통계,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 의료기관별 급여적정성 평가현황)의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청 및 기관홈페이지 통계자료실을 통해 제공한다. 그 외 정형화하여 생산하는 통계는 이용자 누구나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공하는 통계는 건강보험통계연보, 진료비 통계 등으로, 파일(EXCEL, HWP)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DW를 기반으로 통계 및 원시자료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의 DW는 국민의 진료정보, 의약품 유통정보 등을 통합,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국가정보 통계를 산출하고 보건 의료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2003년부터 DW 시스템을 구축하여하여 선도적인 정보공유를 하여온 사례에 속한다. DW 구축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정보분석사 제도를 운영하여 전문 분석인력을 양성하는 등 DW의 이용활성화 방안에 적극적 검토를 시도한 바 있다. 특정 요양기관, 업무, 기간, 상병 별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여 정보를 재구성하였는데 그 자료의 주요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최근 5년 전국민 진료비 심사, 평가 정보 (250TB)
- 의약품 유통정보 (생산, 수입, 공급, 구입, 사용)
- 전국 모든 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정보
- 급여 기준정보 (약가, 수가, 재료대 등)

또한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통계 포털 등을 통한 사용자 분석

환경을 제공하여 왔다. 연간 DW 사용자는 '12년 기준 893명, 사용회수는 670,637건에 이른다. 정부 뿐 아니라 학술기관이나 대학에서 임상분석, 의료비용, 그리고 의약품 소비 등의 연구에 심평원의 정보를 활용 중이다.

이 밖에 건강보험 진료정보 통계자료를 보건의료 공공연구 목적으로 국가, 행정기관, 대학연구소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의거하여 별도로 자료를 산출제공하고 있다. 자료제공 범위 및 자료제공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사하였다. 진료정보 통계자료 제공 절차를 보면, 이용자가 사전 이용 상담을 거쳐, 문서로 요청자료를 접수하면, 심평원에서 제공범위 및 이용 목적의 적절성을 심의하여 이용자에게 보안서약을 받은 후 가공된 자료를 문서로 제공한다([그림 6-8] 참조).

[그림 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제공 절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통계정보

자료제공범위는 첫째,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둘째, 대학연구소 등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에 따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셋째, 비영리 학술연구단체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넷째 기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순수 연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통계자료의 제공은 심사평가연구소 통계정보센터 통계분석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연구자료 개요

서, 자료요청내역 및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원시자료는 환자 표본자료를 일 년 단위로 입원환자표본과 전체 환자 표본으로 구분하여 연구지원 목적으로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통계자료와 마찬가지로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원시자료를 정보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심평원 내에 외부 연구자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직접 방문해 자료 분석 후 분석결과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효율적 정보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

공공데이터 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료의 공유 및 사용자의 정보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DB 및 가상분석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다. 2013년에는 표본 DB 구성, 차기 년도에는 최근에는 온라인가상 분석시스템을 운영하여 연구자가 가상의 서버에서 자료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에 있다. 심평원도 건강보험공단과 유사하게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을 두고 심사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를 육성하여 정보의 제공에서 전문성,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양성측면에서, 2004년 '보건의료정보분석사 사내자격 검정' 제도를 도입하여 총 371(전 직원의 19%에 해당)명의 분석사를 배출하였다²⁵⁾. 특히 2013년에는 필기시험을 없애고 다양한 보건의료 정보통계를 산출하는 실무 위주의 검정 방식을 도입하여 내부 직원의 통계 생산·가공·분석능력 함양을 강화하였다. 타 기관과 차별화 된 점은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13년 민간기관(SAS Korea)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SAS사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데이터마이닝 챔피언십 대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2013.5.30). '심평원, 제 10회 보건의료정보분석사 검정 실시'를 참조하였다.

대회에서 통과한 입상자들로 구성하여 ‘건강보험 빅데이터 마이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외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심평원은 향후에도 다양한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²⁶⁾.

이상 사례를 조사한 조직의 경험 및 노력이 주는 함의를 보면, 정보공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심의 등 관련 논의를 담당할 조직의 구성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단기에 접근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보 제공은 쉽지 않으며 중기 이상의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그 준비에는 정보의 구성과 공유방식의 결정, 그리고 공유를 위한 인프라(시스템, 인력, 조직 등)의 마련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활용 제고 방안

앞 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공개정책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원칙, 제공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범위

2013년 10월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공공데이터란 각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화된 파일을 망라하여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수요가 높은 데이터베이스, 통계로 그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다.

여기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운영계 시스템에서 생성된 원자료로부터 입력오류 등을 제거하여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제한 자료들의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2013.11.5). ‘심평원, 진료비 청구경향 예측 모형에 개발에 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마이닝 발표회」 개최’를 참조하였다.

미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구분에 따라 <표 6-7>과 같이 제공형태에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 6-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 별 정보제공 범위

제공정보	사용자	내부사용자 (담당 공무원)	외부 사용자 (전문가, 연구자, 일반국민 등)
데이터베이스		수급가구 및 수급자 조회 조건의 상세 정보가 포함된 명부	연구 등 이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원자료를 가공한 원시자료
통계		사업 실적 중심의 통계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자료를 직접 생산하는 내부사용자(담당 공무원)는 행정처리 및 실적관리를 위해 특정 대상자 명부를 수시로 요구한다. 반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외부사용자는 주로 연구 및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내부 사용자에게 비해 규모있는 원시자료를 요구한다. 따라서 내부 사용자는 원자료에서 조회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의 자료로, 경우에 따라서는 원시자료와 통계가 병용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외부사용자는 이용목적에 맞게 원자료를 가공한 원시자료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는 시스템을 통해 기 제공되고 있는 정형화된 통계를 비롯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원자료 및 원시자료를 요약집계한 자료가 대상이 된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분류 체계는 공공정책, 통계, 재정, 금융, 보건의료, 복지 등 33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특히 복지 영역은 연금, 건강보험,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청소년, 노인, 가족·다문화로 세분류된다. 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범위를 고려해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복지사업의 수급이력 및 자격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통계와 연금 및 건강보험을 제외한 복지영역의 공공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

2. 제공원칙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빅데이터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의 확산과 궤를 같이 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점

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이면에는 효율적 활용에 따라 사회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공공데이터가 국민의 공유 재산이라는 인식이 잠재되어 있다. 이에 각 국은 국가의 안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저해하는 등 상식적으로 비공개가 납득되는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 공공데이터의 이용은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 활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복지수급 이력 및 자격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또한 공개 대상이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좁게는 내부 사용자(담당 공무원)가 효율적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하여야 하며 넓게는 외부 사용자(전문가, 연구자, 일반 국민 등)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은 궁극적으로 내·외부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정보 제공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이용의 보편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공하는 정보 측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는 국민의 정보로 당사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적 정보의 유출,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 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비공개 여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정보의 이용 측면에서는 이용자 및 이용 목적의 제한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법에서 명시한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접근 및 이용의 용이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가 쉽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급적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편의대로 정보제공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가 이해할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활용이 가능한 공개된 포맷(정보공개법에서는 XLS, HWP, open API 권고)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제공정보의 표준화 및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는

타 정보와 연계가 가능한 표준화된 형태의 메타데이터를 작성·사용하여야 하며 일관성 있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는 정보와 함께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제공정보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무가치한 데이터를 관리하면 무가치한 결과가 양산되는 것(garbage in, garbage out)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의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 이용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수요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스스로가 제공된 정보의 가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 활용사례 공유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3. 정보제공 방법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살펴보면 모든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데이터 공유 플랫폼-미국 data.gov, 영국 data.gov.uk, 유럽연합 publicdata.eu, 우리나라 data.go.kr-을 구축하는 추세이다. 또한 각 국에서는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손쉽게 재이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Ope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를 제공하고 정보 간 연계를 위해 링크드 데이터(LOD; Linked Open Data) 기술을 적용하여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3년 9월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약 609개 기관 1,714종의 데이터 및 243개의 Open API를 공개하고 있다(이승재, 2013).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생성된 공공데이터의 접근 및 재사용이 용이하도록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공공 DB피디아(lod.data.go.kr)를 통해 제공 중에 있다(박원주 외, 2013).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는 궁극적으로 이용자가 접근이 편리하고 외부 정보와 연계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는 크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생산·활용하는 내부사용자와 정보 활용만 하는 외부사용자로 분류할 수 있다. 내부 사용자는 주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수급자의 명부 및 사업실적 중심의 통계를 외부 사용자는 연구 및 특정주제의 분석을 위한 세부 원시자료와 통계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이용자에 따라 자료원 및 접근매체를 상

이하에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외부사용자에 비해 개인정보의 필요도가 높은 내부사용자에게는 접근매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업무포털로 하여 시스템 운영 DB 및 DW와 즉시 연계하여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한다. 외부사용자는 정보제공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하여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 지정된 이용장소를 이용하는 방법, 위탁처리 방법, 원격접근 방법 중에 선택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자료원은 운영 시스템과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필요한 행정자료 및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사업별, 수급자별로 가공된 맞춤형 DW를 별도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 원시자료 및 통계의 제공 뿐 만아니라 플랫폼 내에서 자료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 시스템을 구비하여 제공한다(그림 6-9 참조). 궁극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플랫폼과 공공데이터포털을 연계하여 원시자료 및 통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를 고려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6-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개념도



가. 원시자료의 제공

다음은 이용자가 원시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제공자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제공할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메타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 외부 자료와의 연계 및 일관성 있는 원시자료 생성을 위해 제공 형태, 제공 기술, 분류체계 등의 원시자료 생성에 필요한 표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표준화된 원시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제공 자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데이터의 품질개선 및 관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스템 개통 시점부터 데이터 모델링검토, 데이터 표준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응용 프로그램 영향도 분석시스템을 구축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12년에는 데이터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관리 포털을 도입한 바 있다. 데이터 관리 포털은 표준데이터 관리, 모델 및 구조관리,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 활용 성과관리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표 6-8〉 참조). 향후에도 규정화된 제공 자료의 품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한 활동이 지속유지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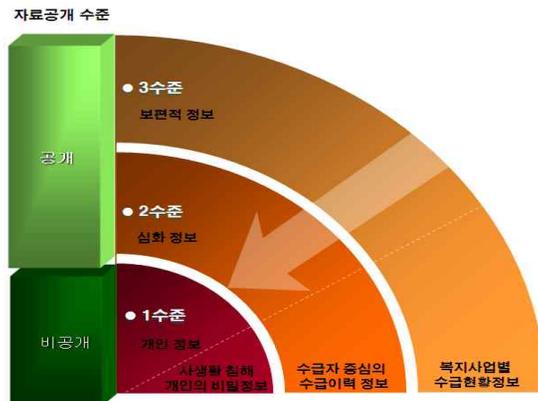
〈표 6-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 관리 포털의 주요기능

구분	주요기능
데이터관리 정책	데이터 관리원칙, 표준프로세스, 모델링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
표준데이터 관리	표준 단어, 용어, 도메인, 공통코드, ERD 관리
모델 및 구조관리	실제 DB에 존재하는 구조정보와 모델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ERD에 대한 수정 등을 처리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	데이터의 생애주기에 따라 설계부터 활용까지의 데이터 흐름을 추적 관리
DBMS 관리	테이블스페이스, 용량, 메타데이터 등 DBMS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정비 및 개선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실제로 등록하고 관리
활용성과 관리	특정 DB 요소(테이블, 컬럼 등)와 관련된 생성, 변경 이력등을 통합적으로 검색하여 제공하는 기능 및 개인별 품질개선 성과를 제공
공유작업 관리	대량작업 수행내용, 데이터변경에 대한 등록 관리

셋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시자료의 제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2010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2012년부터 구축 운영된 만큼 데이터 표준화 및 자료의 질 관리,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공유

가 가능한 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시간투입이 필요하다. 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시간적 요소 외에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형적 자원의 투입도 필요한 만큼 단계적 계획 하에 점진적으로 제공정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시자료의 공개 수준을 분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는 초기에는 복지사업별 수급현황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다음으로 수급자 및 수급가구 중심으로 수급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그림 6-10 참조). 정보 공개의 수준 뿐 만 아니라 이용자가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점진적 개방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자원의 제약으로 다소 소극적인 방식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요청하고 관리기관으로부터 이용을 득한 후 분석결과를 제공받는 형태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원하는 자료의 분석결과를 제공받는 방법, 원격접속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자료를 내려받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데이터 취득 방법을 다양화하여 이용자 편의대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원시자료의 구성측면에서도 초기에는 내·외부이용자가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핵심항목으로 데이터 셋을 구성한다면 점진적으로 외부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조항목들로 구성된 데이터 셋을 구축하여 유연한 정보자원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례와 같이 주요 관심주제를 중심으로 표본DB를 구축하여 누구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6-10] 원시자료 공개수준에 따른 제공 정보



나. 통계의 제공

원시자료에 비해 내·외부 사용자에게 비교적 단기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수행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먼저 통계 활용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통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통계시스템 기능을 학습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통계시스템의 기능을 학습하여야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이 못지 않게 어떤 의미로 통계가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전달도 필요하다. 일선의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왕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복지정보통계시스템 산출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삼곤 한다. 대개는 운영계 시스템의 자료로부터 생성되는 통계와 DW로부터 생성되는 복지정보통계시스템의 통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중 대부분은 운영계 자료를 하루 뒤에 적재(ETL: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되어 운영계 자료의 통계와 복지정보의 통계가 다를 수 있으며, 수시로 변화하는 운영계 자료를 매월 말 시점으로 DW 자료를 고정화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운영계 자료와 달리 복지정보통계시스템에서 산출되는 통계의 재현성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지정보통계시스템의 산출기준과 다르게 운영계에서 다른 기준으로 자료를 산출하면 같은 통계를 작성하여도 수치가 다를 수 있다. 이에 기존의 통계시스템 기능 위주의 교육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출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내부사용자에게는 보완된 교육으로 통계의 오용 및 잘못된 해석을 방지할 수 있고 외부사용자에게는 통계설명서를 제공하여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통계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통계는 주 이용자 층의 수요를 조사하여 생성되지만 목적을 상실하면 효용가치도 떨어지는 법이다. 정부부처, 연구소, 기업체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 이용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이를 다시 이용자에게 공유하면 통계 활용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수 통계활용 사례를 다시 통계교육에 환류하여 통계정보 활용도를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계 이력 및 수요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통계 활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 중에 있다. 그러나 통

계의 생성, 변경이력을 관리하는 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청사항을 복지광장을 통해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통계개선 및 개발 요구를 요청하는 전문 창구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향후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요구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 볼 때 통계 수요를 접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관심도가 높은 사용자일수록 명확한 통계수요를 제시하므로 통계활용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이용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계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도 수요자 중심의 통계를 제공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은 국가별 시민들의 통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Eurobarometer를 가동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Eurostat은 각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 정부 발표 통계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정책이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지 조사하여 각국 통계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통계청은 통계분야별 정책담당자,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일례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화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현재는 대부분 내부이용자의 수요에 의거해 통계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복지사업 추진과정 및 실적을 요약한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외부이용자를 고려했을 때 정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쉽게 통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외부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주제별로 통계를 그룹화하고, 단편적인 복지사업별 통계에서 탈피하여 범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매시업(mashup)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특화된 통계를 발굴·제공하여 할 것이다. 더불어 통계를 제공할 때도 이용자가 보다 쉽게 현상을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함께 시각화된 도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 제공절차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가이드라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은 해당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접속해서 간단한 사항을 입력하고 즉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가 제공 대상 외의 데이터

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활용 지원센터에 제출하고, 해당 기관은 제공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여 제공결정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따른다.

〈표 6-9〉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구분	제공절차
제공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이용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공공데이터포털 접속신청(성명 등 제공내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입력) → 다운로드 및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이용자 → 해당 공공기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공공데이터 수령 및 이용
제공대상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 (신청서 접수)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검토) 10일 이내에 제공기관이 제공여부 검토 및 결정 → (통보) 제공결정 여부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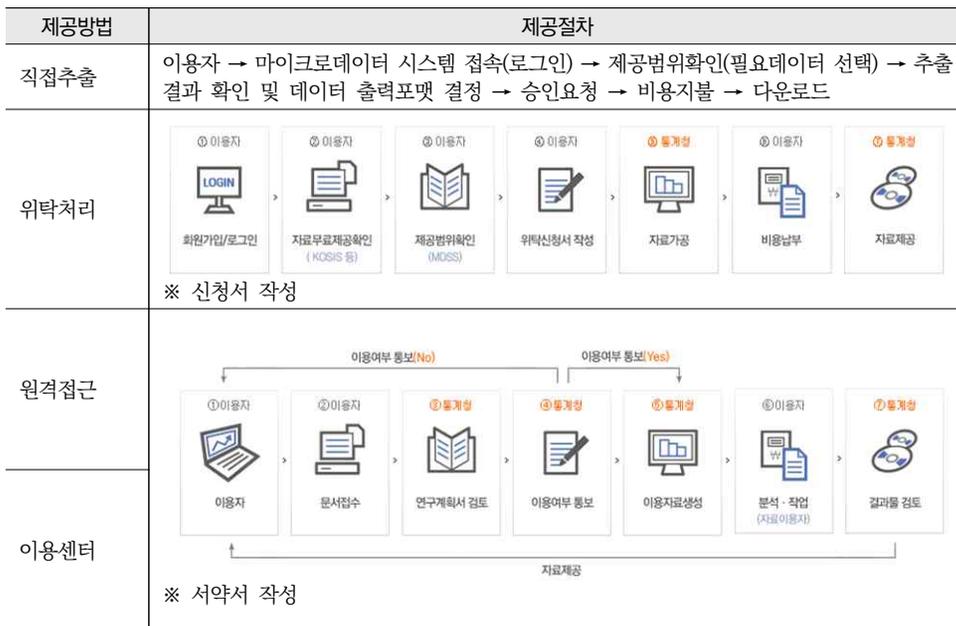
자료: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가이드라인(2013.9), 안전행정부

몇몇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절차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경우 통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계포털을 통해 이용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는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공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데이터 선택, 승인요청, 비용 지불 절차를 거친다.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에서 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추출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원가입, 필요 데이터 선택, 출력 형식 선택, 승인요청, 비용 지불 절차를 거쳐 다운로드 받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대형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이용자가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에서 필요자료를 선택한 후, 신청서 작성 제출, 비용 지불 절차를 거치면 대형 기관이 자료를 구성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원격접근 또는 이용센터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사전에 문서 접수를 하고 통계청에서 해당 계획서를 검토 후 이용여부를 통보하고 이용이 가능하면 이용자는 생성된 자료로 분석작업을 거쳐 결과물 제공여부를 통계청에 의뢰한다. 최종에 이용자는 통계청의 검토결과에 따라 분석결과를 제공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제공절차도 통계청과 유사하다.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통계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나 원시자료는 공개용 표본DB와 그 외 자료로 구분하여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개용 표본 DB는 공개를 목적으로 자료요청 수요가 높은 자료를 구성한 것으로 현재 두 기관이 준비 중에 있다. 공개용 표본 DB는 이용자 제한 없이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그 외 자료는 각 기관에서 이

용 목적을 심의하고 이용이 결정된 요청건에 한해 필요자료를 구성하여 제공하며,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해당기관에 의뢰하여 기관에서 결정한 결과자료를 제공 받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격접근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통계청과 유사하게 사전에 이용목적 검토하여 원격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가상화 서버에서 자료제공 및 분석과정을 거쳐 산출된 결과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표 6-10〉 통계청의 원시자료 제공 절차



참조: <http://mdss.kostat.go.kr>, 통계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 제공은 최소한의 절차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방침이며 제공 대상 외의 수요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는 통계와 원시자료로 설정한 바 있으며 제공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통계와 지정된 장소에서 원시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표본 DB, 원격접근, 위탁처리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공범위가 기 확정된 통계 및 원시자료(표본 DB)는 국가의 기본방침을 준용하여

공개 포털을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및 이용제한 없이 사용가능 하도록 한다. 그 외의 범위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 제공여부 검토, 정보제공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다(상세한 제공절차는 다음 <표 6-11> 참조). 다만 통계포털에서 제공되지 않는 통계는 원시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산정범위²⁷⁾내에서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표 6-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절차

제공방법		제공절차
제공 범위 기확정	통계 및 원시자료 직접추출	이용자 → 정보제공 플랫폼 접속 → 필요정보 검색 → 출력포맷결정 → 다운로드
그 외 (통계 및 원시 자료)	위탁 처리	
	원격 접근	
	지정 장소	

27) 안전행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 ① 공공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전자기록 매체 비용 등 일반경비
- ②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 ③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권리이용 비용



제7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 제공을 위한 과제

제1절 보유 정보 제공 방향과 단계의 구성

제2절 보유 정보 제공을 위한 과제의 정리

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 << 제공을 위한 과제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토 사항과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 중 어떠한 정보를 중심으로 원시자료와 통계자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수요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원시자료와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도 정보 제공 갱신 주기와 정보 형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원칙과 절차 등을 정리하였다.

본론에 더하여 본 장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제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준비절차나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내용들이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절차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제1절 보유 정보 제공 방향과 단계의 구성

1. 보유 정보 제공의 방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향하는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미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 분류에 복지영역의 주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보의 제공은 피하기 어렵고 피할 이유도 없는 주어진 과정이 될 것이다.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와 제공자,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 국민이 그 효과를 높게 누리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지향점은 정보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과거 정보의 공유가 갖는 이점과 필요성, 의의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리고 그 준비과정이 까다롭고 번거로워서, 예상되는 각종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은 소극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다. 정보의 제공은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관련 조직의 자원투입을 필요로 한다. 정보 제공이 쉽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정보의 제공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여도 소극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위험이 없지 않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는 매우 유용한 연구자료이자 정책자료이다. 따라서 동 자료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하고 그 영향이 클 것이다. 만약 모든 책임과 과제를 해당 부서 등으로만 미루어둔다면 자료의 제공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필요한 많은 자원의 마련조차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관련된 연구자 차원에서 협력하고 추진할 일이다.

둘째, 공공행정자료의 강점을 잘리는 방식으로 정보의 제공이 준비되어야 한다. 앞서 1장에서 간략하게 공공행정자료의 강점을 설명한 바 있다. 공공행정자료는 대개 자료의 크기가 커서 발생빈도가 낮은 문제나 연구하기 어려운 특이 집단에 대하여 연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작은 지역단위의 분석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공공행정자료로는 중단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중단 연구 자료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집단과 지역연구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료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타인의 권리 보장이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 이용의 용이성과 관계된 사람의 권리보장의 균형을 이루는 것,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방식을 고민하고 교육 등 이용을 돕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만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안전 기제를 두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익명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목적 내 제공·공유는 가능하다.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상 의무 준수 등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목적 내에서 제공·공유하는 것이 권장되는 것이다. 동 법 제18조 해당 시에만 목적 외 제공·공유가 가능한데,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상 근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범죄수사 및 법원재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률 근거 없이 개방이 불가하다. 그리고 비식별화 처리된 경우는 개방이 가능하다. 비식별화는 익명화가 다소 상이한 개념이며 그 이상의 주의가 요하는 개념이다.

2013년 9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배포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유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 방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개인 비식별화 조치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과 방법을 소개하고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제거, 범주화, 마스킹 등의 구체적 사례 제시하였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중 주요 식별요소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방식이다. 총계처리(Aggregation) 또는 평균값 대체(Replacement)로 데이터의 총합 값을 보임으로서 개별 데이터의 값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데이터 값(가치) 삭제(Data Reduction)는 데이터 공유·개방 목적에 따라 데이터 셋에 구성된 값 중에 필요가 없는 값 또는 개인 식별에 중요한 값을 삭제하는 방식이다²⁸⁾. 이 밖에 범주화(Data Suppression)와 같이 데이터의 값을 범주의 값으로 변환하여 명확한 값을 감추는 방법이 있으며²⁹⁾ 데이터 마스킹(data masking)과 같이 공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데 기여할 확률이 높은 주요 개인 식별자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³⁰⁾.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기술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단」을 구성하고 비식별화 기법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적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개인정보보호를 견고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단」과 한국정보화진흥원「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 외 연구에 임하는 연구자 윤리를 정하고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원시자료의 이용에서는 외부의 모니터링, 비식별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연구자의 윤리에 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국내의 자료 제공에서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된 규칙을 마련하고 연구자가 이를 따르도록 할 뿐 아니라 그 준수에 대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연구자가 각서를 작성하고 준수하는 것 등이 예가 된다.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윤리를 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관리할

28) 이러한 방식의 예는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졸업'을 '35세, 서울 거주'로 교체하거나 주민등록번호 901206-1234567을 '90년대 생, 남자'로 교체하는 것이다.

29) 이러한 방식의 예는 '홍길동, 35세'를 '홍씨, 30-40세'로 교체하는 것이다.

30) 이러한 방식의 예는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을 '홍**, 35세, 서울 거주, **대학 재학'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쉽게 개인 확인이 가능한 정보로 발생률이 낮은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표본으로 자료는 개인식별이 보다 쉬울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는 민간정보에 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절차상 보다 엄격한 과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제공방식에서 원시자료의 자료자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것이다. 해외의 사례로 룩셈부르크 소득자료(Luxembourg Income Study)를 이용할 때 원자료 분석이 가능하지만 원자료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분석을 위한 명령문만으로 분석을 수행하도록 자료이용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접근성을 높이면서 개인정보를 보호 수준을 역시 높이는 방식의 예가 될 것이다. 통계 생산과 관리하여서도 운영계와 자료원의 구분이 제공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원자료의 전형이 담기는 DW와 DM을 분리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긍정적일 것이다.

2. 보유 정보 제공의 단계 구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 매우 많다. 공공행정 정보의 제공 역사가 긴 여타 조직의 경험을 보면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준비가 중요함을 실감할 수 있다. 단기간에 수 많은 과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희망이지만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중기 이상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제공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정보 제공도 소극적인 방식에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안정적인 적은 정보에서 보다 광범위한 정보로 제공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 진행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정보의 형태와 내용 별로 제공의 수준을 구분하여야 한다. 정보의 제공, 공유, 개방은 구분이 필요한 개념으로 설명된다. 개방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유는 제공자와 이용자가 확인이 되는 제공방식이다. 초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는 개방보다 공유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정보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정보구성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원시자료는 공유로,

통계는 개방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는 개방으로 민감 정보는 공유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각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식으로 제공의 수준을 구분하여야 한다.

둘째, 제공할 정보를 정하고 정보의 수요를 감안하여 제공의 단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먼저 제공할 정보 군에 대하여 검토 작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약 3년 정도의 계획으로 제공할 정보를 구분하여 두고 이를 검토하며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가 적절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정보의 구분과 검토는 정보에 대한 정의서의 마련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로 통계청의 ‘필요 통계설명’과 같이 이용자의 정보 이해를 도울 다양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의 제공방법에 대하여 단계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보를 제공한 여타의 기관들의 제공방법이 변화되어 온 양상을 보면 초기에는 지정된 공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자의 공간적 접근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정된 공간에서의 제공에서 시작하여 온라인 이용으로 이어지는 제공방법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단계별 추진 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원시자료에서는 빈번하게 필요한 과제로 언급되었고, 통계 생산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 한 관련 자료원간의 연결 계획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 중 의료 보장과 관련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의 정보와 연결되었을 때 그 유용성이 배가된다. 관련 정보 간 연결은 다른 정책영역의 정보 간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조직이 상이하고 또 정보의 형태와 구성이 상이하여 정보 간 연결은 그리 쉽게 진행되지 않는다. 관련 정보 간 연결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조직 간 협력이 어렵다는 것인데, 각 조직은 해당 정보를 타 조직에 넘겨 연결을 가능하게 하면서 겪어야 하는 문제들을 감당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묘한 조직 간 견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보 간 연결에서 단순하게 조직간 협력의 취약성, 기술적 어려움만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행정자료가 한 조직으로 모이게 될 경우 해당 자료들이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개인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제도의 수급위하여 제공한 개인정보가 다른 제도의 사례관리에서 활용되면서 개인정보가 동의된 이상으로 사용될 위험도 적지 않다. 요는 정보 간 연결은 정책의 기획이나 평가 등에서 매우 요긴한 정보이지만 이를

위한 준비가 만만하지 않다. 정보 간 연결을 실현하자면 중기 이상의 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원시자료의 제공에 대한 단계적인 구성과 기획을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다. 단계의 구분은 정보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각종 준비에 필요한 시간소요를 감안한 것으로 초기-중기-장기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원시자료에 대한 신청을 시작으로 자료원에서 자료를 구성하고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료 신청 이후 연구계획서를 검토하고 허가를 하는 과정, 연구자의 서약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자료를 반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초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센터를 운영하여 결과물을 다운로드 하는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Micro Data Access Center; 이하 MDAS) 방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는 인가된 마이크로데이터를 열람·분석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활용한 자료공유방식이다. 이는 보안조치가 취해진 독립된 전산환경에서 이용자가 직접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MDAC의 이용절차는 ①이용신청서 접수(이용자) → ②연구계획서 검토 및 허가(제공자) → ③이용자료 생성(제공자) → ④이용센터 작업 및 결과물 반출 요청(이용자) → ⑤결과물 검토 후 반출승인(제공자) → ⑥MDSS에 결과물 파일 업로드 및 이용료 확인(제공자) → ⑦MDSS에서 비용결제 후 결과물 파일 다운로드(이용자)의 순서와 같다³¹⁾.

중기에는 신청에 기반을 두어 원시자료를 구성하고 제공하는 것은 초기단계와 유사하지만 원시자료 제공을 위한 자료원을 구성해두는 방식이다. 수요분석을 기초로 수요가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사전 신뢰도와 충실도를 검토하여 해당 정보로 원시자료 구성을 위한 후보 정보의 원천을 구성하여 둔다. 이러한 방식은 자료 신청 이후 제공시간을 단축하고 제공하는 원시자료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강점이 있다. 이 방식은 원격 접근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RAS)로 원시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데, 원격접근서비스는 인가받은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자의 PC는 원격단말 역할만 담당

31) 이하의 내용 중 정보제공의 방식과 관련된 설명은 김경미 외(2008), 류제정(2010),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2013)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하며,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서버가 제공하는 통계프로그램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RAS이용은 ①이용신청서 접수(이용자) → ②연구계획서 검토 및 허가(제공자) → ③이용료 확인 및 이용자료 생성(제공자) → ④원격접근시스템 이용(이용자) → ⑤결과물 반출 요청(이용자) → ⑥결과물 검토 후 반출승인(제공자) → ⑦MDSS에 결과물 파일 업로드(제공자) → ⑧MDSS에서 비용결제 후 결과물 파일 다운로드(이용자)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된다.

장기로 기간을 확장하여 보면 원시자료의 제공은 가장 수요가 높은 정보로 원시자료를 마련해두고 정보의 안정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식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각종 자료의 제공방식과 유사하게 원시자료를 구성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당연히 원시자료의 구성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와 신뢰도, 충실도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미리 준비된 원시자료의 제공에서는 쇼핑물과 같은 제공방식도 추진할 수 있다. 쇼핑물은 개인 식별 데이터를 제거한 마이크로데이터를 미리 CD로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만 주문받아 CD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단계별 원시자료 제공방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1〉 단계별 원시자료 제공 방식

단계	원시자료 제공 방식	비고
초기(약 1~2년)	- 신청에 기반하여 신뢰도와 충실도 검토 후 원시자료 구성과 제공	- 초기에는 MDAS 방식이 적절
중기(2년 이후 ~ 4년까지)	- 신청에 기반하여 원시자료를 구성하여 제공 - 단, 원시자료의 제공을 위한 사전 자료원을 구성하여 두고 자료 제공시간을 단축하고 자료의 안정성을 제고 - 수요가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일정 수의 원시자료를 구성하여 두고 이를 제공하는 방식을 병행	- 주요정보에 대한 신뢰도 등 충실도 검토가 전제 - RAS 등 추진
장기(4년 이후)	- 수요가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일정 수의 원시자료를 구성하여 두고 이를 제공하는 방식을 병행	- 신뢰도 등 검토가 전제 - 원시자료의 구성을 위한 자료의 형태, 크기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전제 - 쇼핑물형태의 제공도 가능

제2절 보유 정보 제공을 위한 과제의 정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은 본격화되었다기 보다 초기 준비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보유 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도 적지 않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유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전과 다른 많은 업무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식적인 제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적정 수준의 조직 구성과 인력의 배치, 물적 자원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정보의 제공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보의 제공을 위한 조직화, 인력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정보 제공의 전환기를 마련하면서 조직의 구조와 인력 배치를 변경한 바 있다. 심지어 초기에는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자들이 활용하도록 공간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행정자료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조직들은 이미 이러한 공간을 조직 내부에 마련하고 있다. 이 조직들도 기존 공간의 협소함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공간의 개선을 고민 중에 있다.

둘째, 필요한 지침과 위원회 등의 조직구성과 운영을 준비하여야 한다.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공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지침을 필요로 한다. 이미 이러한 지침의 사례는 매우 많다. 따라서 기존의 지침들을 참고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시자료의 제공 등 자료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관련 이슈를 검토할 심의위원회 등 필요 조직의 구성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경우 포괄하는 정보의 내용이 방대하여 이러한 심의 조직의 구성은 누구로 할 것인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숙고가 필요하다. 정보의 제공은 단순히 기술적인 과정으로 치부되기 어렵다. 해당정보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조직의 구성과 위치 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덧붙인다면 지침과 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실험적용 기간을 두어 정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공유 정보 중 수요도가 높은 정보로 제공이 예상되는 정보에 대한 검증작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통계생산을 위하여 개방수준으로 제공할 정보는 우선, 그리

고 정교한 수준의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이 정보들은 기술적 검증 외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데 관여된 정책부서의 협조를 구하여 내용상의 검증도 병행되어야 한다. 즉, 단순하게 정보의 결측치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이상치의 발견과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치의 발견과 보완은 정책내용을 이해하는 주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작업이다. 원시자료의 구성은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요청사례에 부응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자료의 요청이 있고 그 이후 정보에 대한 검증절차를 시작하면 자료제공 시한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의 요구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들을 우선 대상으로 검증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 정보의 범위를 두어 이 정보들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을 완료해두는 접근이 필요하다. 원시자료를 구성할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의 구성 셋을 넘어서는 검증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검증은 논리적 검증으로 관련 연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실험적 분석과 정보 검증과정을 거쳐서 보다 안정적인 정보 군을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강금지·노성윤·류혜숙·이혜숙·최성숙(2008). 쉽게 배우는 영양판정, 수확사.
- 강동욱·이혁구(2008). Reasonable Accommodations의 장애인 고용증가 및 유지효과. 직업 재활연구 18(2), pp.5~26.
- 강동욱(2004). 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와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 장애정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0(3), pp.145~171.
- _____(2002). 노동시장의 여성장애인 이중차별구조. 사회복지정책 15, pp.7~32.
- 강순화·손용근(2008). 뇌병변장애인근로자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4(3), pp.199~224.
- 강용설·김용득(2008).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이용자 보호비용(care-cost) 비교. 사회복지연구 37, pp.345~368.
- 강은정(2007). 한국 노인의 성별 일상생활활동 장애율. 한국노년학, 27(2), pp.409~425.
- 강은화(2006).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입양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2권 제3호
- 고경환·이선우·강지원·임완섭(2009). 자활사업의 평가 연구: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평가센터.
- 구인회(2011). 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보건복지포럼. 177, pp.18~22.
- _____(2010). 전환기에 선 자활 10년: 현황과 쟁점, 복지동향. 146, pp.5~8.
- _____(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1), 1-29.
- 국민생활체육회(2009). 2009 생활체육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매뉴얼.
- 국회예산정책처(2012). 자활사업 평가.
- 권중돈(2005). 노인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의 세대 통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pp.15~33.
- 김경미·이의규·정미옥(2008).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현황에 관한 해외사례연구”. 통계연구 13(1): 95-127.
- 김경민·정익중(2009).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25권
- 김경혜(1998). 노인들의 동거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pp.107~122.

- 김경호(20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정서적 고갈, 직무만족,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사 간의 인과관계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2), pp.111~144.
- 김교성·노혜진(2011). 한국의 빈곤: 다차원적 접근과 재생산 메커니즘. 서울: 나눔의 집.
- 김기현(2011). 생애초기 교육기회와 불평등: 취학 전 교육 및 보육 경험의 사회계층간 격차, 교육사회학연구, 제21권 제4호
- 김동기(201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재활복지 15(3), pp.267~288.
- 김동화(2011). 근로여성장애인의 근로빈곤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가구특성 및 고용의 질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1(2), pp163-187.
- 김미경·송다영(2002). 여성의 노인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미곤·송치호·오지현·유현상. 2007. "소득인정액 개념을 적용한 지역별 빈곤현황 및 요인".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령(2006).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pp.197-222.
- 김병인(2013a). 영국 보수-자민 연립정부의 노동연계복지 개혁: ② 근로유인형 공공부조체계 개편, 통합급여(UC) 개혁안, 자활Review. 2013-7.
- _____ (2013b).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사회자본 및 근로조건 만족도 수준: 개별적 특성 및 지역자활센터 차원의 요인을 중심으로, 자활Review. 2013-6.
- _____ (2013c). 영국 보수-자민 연립정부의 노동연계복지개혁: ① 노동연계복지개혁과 프로그램 개편, 자활Review. 2013-5.
- _____ (2013d). 영국 블레이어정부의 노동연계복지정책이 한국 자활사업에 주는 함의, 자활Review. 2013-4.
- 김소연·윤미은·승정자(2002). 케어복지사를 위한 노인영양, 교육과학사.
- 김안나·전지현·지은정(2006). 2006 자활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
- 김영인(2011). 가정위탁양육 중도해지 촉발 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2009) 농촌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6, pp.77~104.
- 김예성·최현숙·오승환(2013) 요보호아동의 성인보호자 동거여부가 심리적응 및 학교적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성인역부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2호
- 김옥경·최인화(2013). 가정 어린이집 부모교육 실태와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연구, 생태유

- 아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 김윤수·류호영(2012). 사회적 돌봄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2(3), pp.298~326.
- 김정석(2007). 고령화의 주요 사회이론과 담론. 한국노년학 27, pp.667~690.
- _____ (2003). 노후생활에서의 성별 차이-경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1), pp.59~77.
- 김정원(2013). 자활사업 정세 분석과 지역자활센터의 대응 방향, 자활Review. 2013-3.
- 김정원·전세나·김정자·조성은·백하영·김경휘(2013). 2012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
- 김정원·이문국·전세나(2013). 자활사업 제도개선 방안: 사회적 경제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38, pp.7~44.
- _____ (2011). 2011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실태 및 노동환경 조사연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
- 김정원·이문국·이선민·전세나(2010). 자활사업의 거시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
- 김정호 (2013).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정, 노동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 김종진·박자경(2007). 근로장애인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251~274.
- 김주현(2007). 생활시간사용으로 본 노년기 생산적 활동. 한국노년학, 27(4), pp.739~754.
- 김주희·정영미(2002). 독거노인의 건강실태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간호학회, 4, pp.16~26.
- 김준현(2012). 서울광역시 자활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연구. 13(4), pp.183~204.
- 김준현(2011). 서울의 지역자활거버넌스 구조 연구: 강남구와 광진구 사례, 서울시연구. 12(3), pp.107~128.
- 김지아(2004).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학대받는 여성노인에 대한 연구: 생애과정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한국사회복지학회 발표자료집 1권, pp.191~225.
- 김태완(2010).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 실태. 보건복지포럼 6월, pp.20~29.
- 김태완·윤상용·박지혜(2010). 장애인 소득이동과 그 요인에 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 37(3), pp.115~139.
- 김태완·전지현(2009). 자활 전달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148, pp.76~86.
- 김형수·김용섭(2011).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비교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pp.355~379.
- 김혜원(2010). 농촌지역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및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초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승연(2013). 지역자활센터의 조직역량과 자활사업 성과에 관한 상황이론적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4), pp.287~314.
- 남연희·채인석(2009).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관한 연구: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취업의지, 직업적응능력, 직업환경만족도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19(1), pp.187~201.
- 노국희(1998). 일부 지역 사회 노인들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9(1), 104~116.
- 노대명(2013a). 근로빈곤층 실태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Issue&Focus. 193.
- _____(2013b).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근로빈곤층 지원제도 개편방안 검토, 보건복지포럼. 197, pp.7~22.
- _____(2013c).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의 쟁점과 향후 과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검토의견, 보건복지포럼. 204, pp.42~51.
- _____(2010). 자활사업 10년의 평가 및 전망, 보건복지포럼. 167, pp.14~27.
- 노대명·이소정·김수현·유태균·이선우·손기철(2010).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2008). 자활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44, pp.7~20.
- 노대명·강병구·강석훈·홍경준·최승아·주연선·구지윤·원일(2006). 2005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노대명·김안나·류만희·이인재·이찬진·최승아(2006).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법률체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노대명·문세경·최승아(2004). 자활사업 성과평가지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박찬임·강병구·구인회·이문국·이병희·이인재·이찬진·홍경준·황덕순·송민아·최승아(2004).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노대명·강혜규·류만희·김선미·최승아(2003).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취업-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노대명·박찬용·선우덕·이태진·송연경·송경아·김선미(2002).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각국 탈빈곤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류연구·황정인·석재은(2007). 여성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류재정(2010).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2010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증진 워크숍 발표자료. 통계청.

-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2013). 자료신청안내. <http://mdss.kostat.go.kr> 2013년 11월 22일 추출.
- 문성희·이대균(2011).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바람, 열린유아교육 연구 제16권 제3호
- 미래창조과학부(2013). 일본, 주요국의 오픈데이터 정책.
- 박경수·유효정(2010). 장애인 활동보조 코디네이터의 직무특성과 직업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4(4), pp.29~53.
-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 박선욱(2008).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보육비 지출실태와 영향요인, 소비문화연구 제11권 제2호
- 박영란·홍백의(2011).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 박용수(2012). 자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복지동향. 166, pp.38~41.
- 박원주·남궁현·조기성·류원(2013). 링크드 데이터기술 기반의 공공 오픈데이터 기술 동향. 주간 기술동향 제1598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박윤미·장연집(2009).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여성의 한부모 체험연구, 심리치료 제9권 제1호
- 박지선, 류한수, 정운태, 김정숙, 나카지마 카즈오(2013) 영유아 어머니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욕구와 인구학적 요인 관계, 한국유아교육 보육행정연구, 제17권 제1호
- 박혜련(1996). 연령층별 영양상태, 지역사회영향학회지. 1(2), pp.301~332.
- 배성훈·이종용·송석현·장주병·강상규·윤진석·이동환·김제완(2013).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6권제3호. pp.67~86.
- 배태순(2000). 해체된 가정의 아동들, 그들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 국내 해체가정의 아동보호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9호
- 백선희(2000) 영유아보육비용 재정분담 구조의 현황과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1집
- 백승호(2012). 노동수급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저소득층 활성화 정책 연구, 보건사회연구 32(3), pp.327~352.
- 백학영·구인회·김경휘·조성은·안서연(2011). 자활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 논리모델을 적용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2), pp.3~35.
- 변용찬·이정선(2005). 취업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인고용 15(1), pp.153~171.
- 변용찬·이은정·이계철(2004). 경기도 취업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직업재활연구 14(1), pp.105~131.
- 변재관 외(1998). 국민복지기본선과 국민기초보장법.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_____ (2013). 2012 보건복지백서
_____ (2013).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 복지.
_____ (2013). 통계론 본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2013). 고용 - 복지 선순환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중산층 복원계획(안).
보건복지부(2012). 201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_____ (2012).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_____ (2012). 방문건강관리사업·건강생활실천사업 연계 건강검진결과상담 매뉴얼, 한국건강
증진재단.
_____ (2012).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_____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_____ (2011). 2011년 자활사업안내.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인생 백세시대 대응 전략.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
령사회포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0). 2009 국민건강통계.
-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보건의료미래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서연정(2010). 중도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9, pp.
33~57.
- 서정희·오옥찬·박경하(2013).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비교 연구, 노동정
책연구. 13(2), pp.95~126.
- 석재은·유은주. 2007. “노인의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가족의무와 국가책임의 균형”. 가족
법연구, 21(1), 31-56.
- 석재은·오영화·박수천·김수봉·김미혜·윤동성·김은혜·이윤경·송민경(2005). 노인생활지원 종합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병환·박경수·나백주 등(1997). 농촌지역 노인들의 인지기능 장애와 사망과의 관련성.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30(3), pp.630~642.
- 선우덕·이윤경·김진수·유근춘·석재은·강임옥·양찬미·이은진(2012).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미애·진미정(2009) 빈곤 한부모 여성의 부모권 보장과 일가족 양립, 가족과 문화 제21집 제3호

- 손능수·허만용(2006). 자활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비교 분석: 대구지역의 근로중점형과 시장지향형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3), pp.123~149.
- 손석준·신준호·신희영·정은경·범민선·권순석(2000). 농촌지역 노인의 우울수준과 관련요인. 농촌의학·지역보건 25(1), pp.85~98.
- 송경섭(2013). 어린이집 유형별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실태 및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요구-서울, 경기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제13권 제2호
- 송재숙·정중화(2009).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비교 연구. 재활복지 13(1), pp.187~213.
- 신동면·김도한(2012).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에서 포괄적 성과지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4), pp.201~229.
- 신원식·김민주(2010).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인식 유형,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2), pp.78~97.
- 안전행정부(20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가이드라인.
- 어윤배·이성기·김용하·김미곤·전학석·이상은·석재은·노인철(1995).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 : 자활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2013). 한부모가족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종고, 보도자료
_____ (2012). 2013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여유진·김미곤·임완섭·김민희(2009).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김미곤·김수봉·손병돈·김수연·송연경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오경숙·김규수(2011). 보육시설 재정의 운영 실태 및 공평성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5호
- 오영희·석재은·권중돈·김정석·박영란·임정기(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욱찬(2011). 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임금 격차 분석, 사회보장연구 27(1), pp.1-25.
- 유동철(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차별 영향 분석: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성호(2000).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2. 노인복지연구 2, pp.169~185.
- 육아정책연구소(2012). 한국아동패널 2012

- 윤미영(2012). 新 가치창출을 위한 주요국의 빅데이터 추진전략 분석. IT&Future Strategy 제 11호. 한국정보화진흥원.
- 윤석명·최미선·신현구·신화연·서문화·양혜진(2011). 100세 행복연금 프로젝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현숙·윤지영·김영자(2012).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1), pp.249~271.
- 윤현숙·김영범·허소영(2006). 한국 노년학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노년학 26, pp.447~460.
- 윤희숙(2013). 근로빈곤층의 빈곤현황과 정책평가, 보건복지포럼. 197, pp.33~41.
- 이동영·박경하(2011).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연구: 서비스 품질요인 및 서비스 가치와의 인과모형 분석. 사회보장연구 27(4), pp.81~109.
- 이동영(2005).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생명표 분석과 이산시간분석. 사회복지정책 23, pp.183~211.
- 이문국·김승오·노대명·김정원·이선민(2009). 자활사업 15주년 기념 백서 자활운동의 역사와 철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
- 이배근(2000) 해체가정과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개선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제9권 제1호
- 이삼식 외(2011). 인생 100세 시대 대응 전략.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철·이용(2012). 활동보조인의 자아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무지식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9, pp.193~210.
- 이석원(2008).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이용 결정과정 및 사업성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7(4), pp. 89~111.
- 이선우(2008). 장애인 가구의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 별 추가비용 계측: 삶의 수준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 32(3), pp. 7~26.
- _____(2005).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한 연구: 삶의 수준 방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pp215-242.
- _____(2001a). 장애인의 취업형태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21(2), pp.3~33.
- _____(2001b).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Multinomial Logit(다항로짓)을 이용한 분석. 사회복지연구 18, pp.113~135.
- _____(1997).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프로빗을 이용한

-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3, pp. 287~313.
- 이성규 외(2004). 뇌병변장애인의 직업영역에 관한 연구.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이성립(2011). 영유아 자녀 가계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소비 실태, 생활과학 제4호
- 이수연·최인화·김인순(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호아과 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승재(2013).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민간 활용 촉진 방안. 지역정보화 동향 분석 제7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이승호·구인회(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평가”. 보건사회연구, 30(1), 29-61.
- 이영범·남승연(2013). 자활사업 성과지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4(2), pp.141~162.
- 이용·강은나·추경민(2010). 서울지역 활동보조인이 지각하는 분배공정성이 클라이언트 비인격화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연구. 11(3), pp.105~122
- 이용·김동기(2011a).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각된(perceived)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8, pp.123~146.
- _____ (2011b).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7(2), pp.115~140.
- 이윤경·정경화·염지혜·오영희·윤혜영·이은진(2010).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선·이영신·김보연(2013).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어린이집 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78권
- 이익섭·김성연·이병화(2010).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20(1), pp.289~312.
- 이익섭·김경미·조한진·변용찬(2008).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익섭·김경미·김동기(2007). 활동보조서비스 성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pp.117~143.
- 이인숙(2012) 한부모 여성의 공동체 참여 요인과 사회 자본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2호
- 이인재·김성우(2012). 자활실무자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2), pp.1~25.

- 이인재(2010). 자활 프로그램 개편의 의의와 주요 내용, 복지동향. 146, pp.9~14.
- 이인정(1999).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관한 연구 - 건강, 삶의 만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 19(3), pp.35~50.
- 이정애·김진순·염영희(2001). 일부 농촌지역노인의 신체기능 및 생활기능 관련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8, pp.93~108.
- 이준영·김기환(2012).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적정 표본설계 및 구축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중섭(2010).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7, pp.187~211
- 이채식(2012).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지각한 자기결정권, 활동보조인의 자질 및 역량, 서비스 질이 서비스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6(1), pp.87~112.
- _____(2011).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실태 분석. GRI연구논총 13(1), pp.121~144.
- 이채식·이성규(2010).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소진과 직무만족의 관계 연구. 재활복지 14(2), pp.223~248.
- 이채식·이성규·김명식(2009).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이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3(1), pp.111~134.
- 이채식·이성규(2005). 정신지체인의 적응행동 요인이 직업유지기간과 이직경험횟수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1, pp.271~294.
- 이채정(2012). 자활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이태진·김상균·홍경준·석재은·구인회·이선우·강신욱·이소정·여유진·강석훈·강혜규·김교성·김종숙·김진우·류만희·박찬임·손병돈·신영석·양병찬·이병희·이인재·전병목·정원오·채창균·최현수·박형준·박은경·김상은·김정은(2012). 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김태완·최현수·김문길·우선희·박경희·박은영·전세나(2008).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수급자 및 전담공무원 대상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센터.
- 이현주·금현섭·박정민·황보람·박수진(2011). 공공부조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강신욱·김안나·김태완·노대명·박세경·이태진·정경희·신현웅·손창균·최현수·박능후·이선우·홍경준·유진영·전지현·유정예·윤필경(2008).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김미곤·노대명·강석훈·손병돈·유진영·임완섭(2006).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형렬(2008). 장애유형별 취업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직업훈련, 직업만족이 직업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 뇌병변, 시각, 신장, 청각장애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2, pp.109~134.
- 이희은·김순호·김현익·우연희·문수백(2012). 보육교사의 부정적 훈육행동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직무스트레스, 공감, 직장 내 지지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8권 제4호
- 임동호(2008). 요보호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 방안: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중심으로, 논문집 제41권
- 임수정·유완식(2011). 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 취업과 소득보장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세미나 토론회 자료집, pp.45~71.
- 장미혜·이민정·윤덕경·문미경·이인선(2012).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혜림(2012). 빈곤가정 한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 간 관계: 한부모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3). pp.67~97.
- 전병유(2013). 근로빈곤층 고용서비스의 쟁점과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197, pp.23~32.
- 전세나(2011). 자활공동체 관련 문헌의 시기별 특징, 자활Review. 2011-3.
- 정경희(2013a). 노인실태조사의 조사 개요와 주요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13b). 고령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현황.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81호.
- _____ (2013c). 고령화 시대의 노년기 준비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04호. pp.6~14.
- 정경희·남상호·정은지·이지혜·이윤경·김정석·김혜영·진미정(2012a).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윤경·박보미·이소정·이운황(2012b).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오영희·이윤경·손창균·박보미·이수연·이지현·권중돈·김수봉·이소정·이용식·이윤환·최성재·김소영(2012c).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오영희·이윤경·박보미(2012d).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2011).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72호.
- 정경희·이윤경·최현수·김태완·이현주·이소정·손창균·강성호·권혁진·이은진·윤지은(2009).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윤경·이소정·이은진·조혜현(20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 대응 현황과 과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오영희·이윤경(2003). 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명숙·강석임(2010). 시설거주 정신장애인의 삶에 대한 만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4, pp.81~108.

정병권·이선우(2011). 지체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의 자립생활의지에 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6, pp.139~154.

정병오(2007).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49권

정병은·이기홍(2009).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pp.953~970.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미국정부의 오픈 데이터 추진현황.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3년 제6호. pp.77~88.

정정호·정익중(2012). 요보호 아동의 표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38호

조근식·김다경·황소하(2012).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이직의도(Turnover)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4), pp.185~216.

진영·김을동(2012).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진재문(2008). 자활사업의 사회적 기업 전환에 관한 연구: 안정적 이익 창출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4), pp.221~248.

채승병·박성민(2013). 스마트뉴딜: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 CEO Information 제907호. 삼성경제연구소.

최성재·장인협(2010).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윤정(2008) 한부모 가족 여성 가장의 정신 건강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9권 제4호

최은영·김정석(2012). 최근 사회노년학의 연구동향. 사회과학연구. 제19권. pp.165~185.

통계청(2011). 2011년 완전생명표.

한경성(2013). 장애인 취업의 가구소득 효과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장애와 고용 23(1), pp.5~36.

한경혜 (1998). 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21세기 변화 전망 및 지원책 모색. 한국노년학, 19(1). pp.46-58.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2012). 2012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인식조사 분석 결과와 향후 전망.

_____ (2011). 자활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2012). 2011년 자활현장강화포럼 자료집.

_____ (2012). 2012 자활정책연감.

- 한림대학교(2005). 한국노인의 삶의 질.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_____(2003). 한국노인의 삶의 질.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 한상진(2006). 생태적 자활: 친환경 고용 창출의 모델과 그 사례들, ECO. 10(2), pp.207~232.
- 한상진·김용식(2007). 사회적 배제 과정과 자활의 측면들: 울산 동구 빈곤층의 생애과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7(1), pp.139~171.
- 한상진(2004). 지구화, 공동체, 자활의 전략, 서울도시연구. 5(2), pp.105~116.
- 허남순(2000)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9권 제1호
- 허선·김미곤·유현상(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에 대한 평가: 형평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5(1), 1-24.
- 허선·박효진(2010). 보육료지원제도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제63권
- 홍경준·이상은·김미곤(2004). “재산의 소득환산제: 이슈, 시행결과, 그리고 개선방향”. 사회보장연구, 20(2), 57-80.
- 홍경준(2002). “한국 빈곤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8(1), 105-127.
- 홍성우(2011).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성 분석: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1(3), pp.413~439.
- 황정희·고은경(2011) 한부모 가정 유아의 양육자와 유아교사의 소통 과정: 교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5호
- 황주성·권성미·정준현·김준모(2008). 공공정보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Cantor, M. H. and Little, V.(1985). Aging and Social Care, in Binstock, R.H. and Shanna, 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2nd Edition)*, NY. pp.745 ~ 780.
- Dahlgren, G. and Whitehead, M.(1991).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Equity in Health*. Stockholm: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2012). *BIS open data strategy 2012-14*. UK. (<http://www.bis.gov.uk>)
- EU(2013). *EU PSI Directive*
- Fried. P. F., Tangen, C. M., Walston, J., Newman, A. B., Hirsch, C., Gottdiener, J., Seeman, T., Tracy, R., Kop, W. J., Burke, G., and Mcburnie. (2001). Frailty in older adults: evidence for a phenotype, *Journal of Gerontology: Medical*

- Sciences*, 56A(3).
- Goerge, Robert M. & Bong Joo Lee, Matching and Cleaning Administrative Data. *Panel on Data and Methods for Measuring the Effects of Changes in Social Welfare Programs*.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pp.195~219.
- Jun BH·Lee HG(2000). An investigation of the intake of the health food among the salarymen in Seoul. *Kor J Soc Food Sci* 16(1), pp.9~16.
- Kang MH(1994). Nutritional status of Korean elderly people. *Korean J of Nutr*, 24(6), pp.616~636.
- Laslett, P.(1989).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 Lee, Bong Joo, Lucy Mackey-Bilaver(2007). Effects of WIC and Food Stamp Program participation on child outcom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9 pp.501-517.
- Litwak, E.(1985). *Helping the Eldelry: The Complementary Roles of Informal Networks and Formal System*. Guilford Press, New York.
- Reidy, Mairead, Robert Goerge, Bong Joo Lee(1998). Developing an Integrated Administrative Database. Draft. Chapin Hall Center for Children.
- Riley, M. W. & Riley, J. W.(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Vol.40, No.3, pp. 266 ~ 270.
- The Public section transparency board(2012). *public data principles*.
- Walker, A.(1982). Dependency and Old Age,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16. pp.115~135.

웹사이트

<http://www.data.gov/>

<http://www.whitehouse.gov/open/documents/open-government-directive>

<http://data.gov.uk/>

<http://www.epsplatform.eu/>

<https://ec.europa.eu/digital-agenda/en/news/revision-psi-directive>

<https://open-data.europa.eu/>

<https://www.data.go.kr/>

부록 <<

〈부표1〉 원자료 구성을 위한 정책분야별 전문가 추천 항목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0.공통	D_근로무능력 사유코드	근로무능력 사유코드
00.공통	D_근로무능력 사유코드	근로무능력 사유코드명
00.공통	D_상위서비스	상위서비스ID
00.공통	D_상위서비스	서비스명
00.공통	D_상위서비스	시행시작일자
00.공통	D_상위서비스	시행종료일자
00.공통	D_상위서비스	제공주체 구분코드
00.공통	D_상위서비스	시작연령
00.공통	D_상위서비스	종료연령
00.공통	D_소득재산보유구분코드	소득재산보유구분코드
00.공통	D_소득재산보유구분코드	소득재산보유구분코드명
00.공통	D_수혜서비스 상태코드	수혜서비스 상태코드
00.공통	D_수혜서비스 상태코드	수혜서비스 상태코드명
00.공통	D_수혜서비스 상태코드	최종적재일시
00.공통	D_제공주체 구분코드	제공주체 구분코드
00.공통	D_부양능력판정 사유코드	부양능력판정 사유코드
00.공통	D_부양능력판정 사유코드	부양능력판정 사유코드명
00.공통	D_부양의무자 구분코드	부양의무자 구분코드
00.공통	D_부양의무자 구분코드	부양의무자 구분코드명
00.공통	D_근로능력판정 사유코드	근로능력판정 사유코드
00.공통	D_근로능력판정 사유코드	근로능력판정 사유코드명
00.공통	D_조건부과제외 사유코드	조건부과제외 사유코드
00.공통	D_조건부과제외 사유코드	조건부과제외 사유코드명
00.공통	D_근로능력판정 상태코드	근로능력판정 상태코드
00.공통	D_근로능력판정 상태코드	근로능력판정 상태코드명
00.공통	D_활동평가항목별 접수코드	활동평가항목별 접수코드
00.공통	D_활동평가항목별 접수코드	활동평가항목별 접수코드명
00.공통	D_활동평가항목 코드	활동평가항목 코드
00.공통	D_활동평가항목 코드	활동평가항목 코드명
00.공통	D_가구 구분코드	가구 구분코드
00.공통	D_가구 구분코드	가구 구분코드명
00.공통	D_신청 보장구분코드	신청 보장구분코드
00.공통	D_신청 보장구분코드	신청 보장구분코드명
00.공통	D_장애유형코드	장애유형코드
00.공통	D_장애유형코드	장애유형코드명
00.공통	D_종합장애등급코드	종합장애등급코드
00.공통	D_종합장애등급코드	종합장애등급코드명
00.공통	D_수혜자와 관계코드	수혜자와 관계코드
00.공통	D_수혜자와 관계코드	수혜자와 관계코드명
00.공통	D_수급권상실 사유코드	수급권상실 사유코드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0.공통	D_수급권상실 사유코드	수급권상실 사유코드명
00.공통	D_보장구분코드	보장구분코드
00.공통	D_보장구분코드	보장구분코드명
00.공통	D_소득분위 코드	소득분위 코드
00.공통	D_주거급여판정 코드	주거급여판정 코드
00.공통	D_주거급여판정 코드	주거급여판정 코드명
00.공통	D_자활참여 소요기간 코드	자활참여 소요기간 코드
00.공통	D_자활참여 소요기간 코드	자활참여 소요기간 코드명
00.공통	D_의료급여종별 코드	의료급여종별 코드
00.공통	D_월별서비스	서비스ID
00.공통	D_월별서비스	서비스명
00.공통	D_월별서비스	시행시작일자
00.공통	D_월별서비스	시행종료일자
00.공통	D_월별서비스	제공주체 구분코드
00.공통	D_월별서비스	시작연령
00.공통	D_월별서비스	종료연령
00.공통	D_최상위행정지역 코드	최상위행정지역 코드
00.공통	D_상위행정지역 코드	상위행정지역 코드
00.공통	D_상위행정지역 코드	시도명
00.공통	D_상위행정지역 코드	시군구명
00.공통	D_성별코드	성별코드
00.공통	D_성별코드	성별코드명
00.공통	D_자치단체구분코드	자치단체구분코드
00.공통	D_자치단체구분코드	자치단체구분코드명
00.공통	D_건강상태코드	건강상태코드
00.공통	D_건강상태코드	건강상태코드명
00.공통	D_결혼상태코드	결혼상태코드
00.공통	D_결혼상태코드	결혼상태코드명
00.공통	D_취업상태유형코드	취업상태유형코드
00.공통	D_취업상태유형코드	취업상태유형코드명
00.공통	D_직종코드	직종코드
00.공통	D_직종코드	직종코드명
00.공통	D_수급자구분코드	수급자구분코드
00.공통	D_수급자구분코드	수급자구분코드명
00.공통	D_학교분류코드	학교분류코드
00.공통	D_학교분류코드	학교분류코드
00.공통	D_학교세분류코드	학교세분류코드
00.공통	D_학교세분류코드	학교세분류코드명
00.공통	D_학력코드	학력코드
00.공통	D_학력코드	학력코드명
00.공통	D_재학구분코드	재학구분코드
00.공통	D_재학구분코드	재학구분코드명
00.공통	D_주거유형코드	주거유형코드
00.공통	D_주거유형코드	주거유형코드명
00.공통	D_건축상태코드	건축상태코드
00.공통	D_건축상태코드	건축상태코드명
00.공통	D_서비스	서비스ID
00.공통	D_서비스	서비스명
00.공통	D_서비스	시행시작일자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0.공통	D_서비스	시행종료일자
00.공통	D_서비스	제공주체 구분코드
00.공통	D_서비스	서비스분류코드
00.공통	D_서비스	시작연령
00.공통	D_서비스	종료연령
00.공통	D_서비스	상세서비스유무
00.공통	D_서비스	상세서비스 급여여부
00.공통	D_서비스	상세서비스 분류코드
00.공통	D_장애인연금소득인정액 구간코드	장애인연금소득인정액 구간코드
00.공통	D_장애인연금소득인정액 구간코드	장애인연금소득인정액 구간코드명
01.주체	복지주체	복지주체ID
01.주체	복지주체	복지주체명
01.주체	복지주체	복지주체대분류코드
01.주체	복지주체	복지주체중분류코드
01.주체	복지주체	복지주체소분류코드
01.주체	복지주체	복지주체식별번호
01.주체	복지주체	복지주체식별일련번호
01.주체	복지주체	기준가구주체ID
01.주체	복지주체	소재행정지역코드
01.주체	복지주체	허가행정지역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주체시작일자
01.주체	복지주체	주체종료일자
01.주체	복지주체	주체종료사유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출생일자
01.주체	복지주체	주민등록기준출생일자
01.주체	복지주체	연령
01.주체	복지주체	건강상태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성별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출생순위
01.주체	복지주체	결혼상태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종교코드
01.주체	복지주체	근로능력유무
01.주체	복지주체	근로능력접수
01.주체	복지주체	근로무능력사유코드
01.주체	복지주체	근로능력판정일자
01.주체	복지주체	취업상태유형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직종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수급자구분코드
01.주체	복지주체	거주시작일자
01.주체	복지주체	교육기관코드
01.주체	복지주체	학교분류코드
01.주체	복지주체	학교세분류코드
01.주체	복지주체	학력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재학구분코드
01.주체	복지주체	학교급지코드
01.주체	복지주체	공사립구분코드
01.주체	복지주체	특례유형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외국인여부
01.주체	복지주체	연령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1.주체	복지주체	배우자주체ID
01.주체	복지주체	장애인여부
01.주체	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
01.주체	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호
01.주체	복지주체	주장애유형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주장애등급
01.주체	복지주체	부장애유형코드
01.주체	복지주체	부장애등급
01.주체	복지주체	의료급여종별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의료급여대상자구분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위탁가정유형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위탁아동유형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아동발생원인코드
01.주체	복지주체	가구주주체ID
01.주체	복지주체	가구구성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세대구분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주거유형코드
01.주체	복지주체	건축상태코드
01.주체	복지주체	가구구성원수
01.주체	복지주체	자녀수
01.주체	복지주체	최종적재일시
01.주체	월별주민등록인구대비기초노령수급요약	기준년월
01.주체	월별주민등록인구대비기초노령수급요약	성별코드
01.주체	월별주민등록인구대비기초노령수급요약	행정지역코드
01.주체	월별주민등록인구대비기초노령수급요약	연령
01.주체	월별주민등록인구대비기초노령수급요약	인구수
01.주체	월별주민등록인구대비기초노령수급요약	기초노령연금신청자수
01.주체	월별주민등록인구대비기초노령수급요약	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
01.주체	월별주민등록인구대비기초노령수급요약	기초노령연금신규수급자수
01.주체	월별주민등록인구대비기초노령수급요약	신청율
01.주체	월별주민등록인구대비기초노령수급요약	수급율
01.주체	월별주민등록인구대비기초노령수급요약	최종적재일시
01.주체	배우자	복지주체ID
01.주체	배우자	배우자복지주체ID
01.주체	배우자	배우자복지주체명
01.주체	배우자	주주체와관계코드
01.주체	배우자	복지주체중분류코드
01.주체	배우자	복지주체소분류코드
01.주체	배우자	성별코드
01.주체	배우자	주민등록기준출생일자
01.주체	배우자	출생일자
01.주체	배우자	연령
01.주체	배우자	최종적재일시
01.주체	복지주체주소	복지주체ID
01.주체	복지주체주소	주소분류코드
01.주체	복지주체주소	거주시작일시
01.주체	복지주체주소	전체주소
01.주체	복지주체주소	법정동코드
01.주체	복지주체주소	행정동코드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1.주체	복지주체주소	우편번호
01.주체	복지주체연락채널	복지주체ID
01.주체	복지주체연락채널	연락채널분류코드
01.주체	복지주체연락채널	연락채널내용
01.주체	복지주체연락채널	최종적재일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기준년월
01.주체	월별복지주체	복지주체ID
01.주체	월별복지주체	복지주체명
01.주체	월별복지주체	복지주체대분류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복지주체중분류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복지주체소분류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복지주체식별일련번호
01.주체	월별복지주체	기준가구주체ID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소재행정지역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허가행정지역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주체시작일자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주체종료일자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출생일자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주민등록기준출생일자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연령
01.주체	월별복지주체	건강상태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성별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출생순위
01.주체	월별복지주체	거주시작일자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주체종료사유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건강상태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성별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출생순위
01.주체	월별복지주체	근로능력유무
01.주체	월별복지주체	근로능력점수
01.주체	월별복지주체	근로무능력사유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취업상태유형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직종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수급자구분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재학구분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외국인여부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연령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장애인여부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호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주장애유형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주장애등급
01.주체	월별복지주체	부장애유형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부장애등급
01.주체	월별복지주체	특례유형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의료급여종별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의료급여대상자구분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위탁가정유형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위탁아동유형코드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아동발생원인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가구주주체ID
01.주체	월별복지주체	가구구성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세대구분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주거유형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건축상태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가구구성원수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자녀수
01.주체	월별복지주체주소	복지주체ID
01.주체	월별복지주체주소	주소분류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주소	거주시작일시
01.주체	월별복지주체주소	법정동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주소	행정동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주소	전체주소
01.주체	월별복지주체주소	우편번호
01.주체	월별복지주체주소	거주시작일시
01.주체	월별배우자	복지주체ID
01.주체	월별배우자	배우자복지주체ID
01.주체	월별배우자	주주체와관계코드
01.주체	월별배우자	복지주체중분류코드
01.주체	월별배우자	복지주체소분류코드
01.주체	월별배우자	소재행정지역코드
01.주체	월별배우자	성별코드
01.주체	월별배우자	출생일자
01.주체	월별배우자	연령
01.주체	월별복지주체	교육기관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학교분류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학교세분류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학력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재학구분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학교급지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	공사립구분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연락채널	복지주체ID
01.주체	월별복지주체연락채널	연락채널분류코드
01.주체	월별복지주체연락채널	연락채널내용
01.주체	복지주체	연령
01.주체	복지주체	주주체와관계코드
01.주체	복지주체	거주시작일시
01.주체	복지주체	의료급여종별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급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호내역
01.주체	복지주체	주장애등급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위탁가정유형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위탁아동유형코드
01.주체	복지주체	가구주주체ID
01.주체	복지주체	의료급여종별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주장애유형명
01.주체	복지주체	변경의료급여종별코드
01.주체	복지주체	의료급여대상자구분코드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집]	복지주체ID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집]	복지주체명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집]	복지주체대분류코드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집]	복지주체중분류코드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집]	복지주체소분류코드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집]	주체시작일자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집]	주체종료일자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집]	주체종료사유코드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집]	성별코드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집]	외국인여부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집]	주민등록기준출생일자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집]	연령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집]	연령도달구분코드
02. 신청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집]	배우자주체ID
02. 신청	D_신청_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신청ID
02. 신청	D_신청_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보장구분지원내역일련번호
02. 신청	D_신청_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가구구분코드
02. 신청	D_신청_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신청일자
02. 신청	D_신청_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신청보장구분코드
02. 신청	D_신청_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지원내용구분코드
02. 신청	D_신청_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가구구분코드
02. 신청	D_신청_신청관련인현황	신청ID
02. 신청	D_신청_신청관련인현황	신청관련인일련번호
02. 신청	D_신청_신청관련인현황	신청관련주체ID
02. 신청	D_신청_신청관련인현황	신청관련인구분코드
02. 신청	D_신청_신청관련인현황	수혜자와관계코드
02. 신청	D_신청_신청보장가구원현황	신청ID
02. 신청	D_신청_신청보장가구원현황	신청관련인일련번호
02. 신청	D_신청_신청보장가구원현황	신청관련주체ID
02. 신청	D_신청_신청보장가구원현황	주민등록기준출생일자
02. 신청	D_신청_신청보장가구원현황	연령
02. 신청	D_신청_신청보장가구원현황	연령도달구분코드
02. 신청	D_신청_신청보장가구원현황	성별코드
02. 신청	D_신청_신청보장가구원현황	외국인여부
02. 신청	D_신청_신청보장가구원현황	누적신청횟수
02. 신청	D_신청_신청현황	신청ID
02. 신청	D_신청_신청현황	신청일자
02. 신청	D_신청_신청현황	관리행정지역코드
02. 신청	D_신청_신청현황	신청시군구행정지역코드
02. 신청	D_신청_신청현황	신청서식구분코드
02. 신청	D_신청_신청현황	신청상태코드
02. 신청	D_신청_신청현황	자치단체구분코드
02. 신청	D_신청_신청현황	신청경로구분코드
02. 신청	D_신청_신청현황	신청구분코드
02. 신청	D_신청_신청현황	신청경로구분코드
02. 신청	D_신청_신청현황	신청사유코드
02. 신청	D_신청_신청현황	결정통지방법코드
02. 신청	D_신청_신청현황	신청상태변경일자
02. 신청	개별서비스신청자현황	서비스ID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2. 신청	개별서비스신청자현황	신청ID
02. 신청	개별서비스신청자현황	신청관련인일련번호
02. 신청	개별서비스신청자현황	사업구분코드
02. 신청	개별서비스신청자현황	신청관련주체ID
02. 신청	개별서비스신청자현황	신청자수
02. 신청	개별서비스신청자현황	최종적재일시
02. 신청	기초노령미지급연금청구신청현황	신청ID
02. 신청	기초노령미지급연금청구신청현황	수급자주체ID
02. 신청	기초노령미지급연금청구신청현황	미지급시작년월
02. 신청	기초노령미지급연금청구신청현황	미지급종료년월
02. 신청	기초노령미지급연금청구신청현황	미지급개월수
02. 신청	기초노령미지급연금청구신청현황	미지급총금액
02. 신청	기초노령미지급연금청구신청현황	미지급연금지급일자
02. 신청	기초노령미지급연금청구신청현황	인정기준지급순위코드
02. 신청	기초노령미지급연금청구신청현황	인정기준부합여부코드
02. 신청	기초노령미지급연금청구신청현황	사망일자
02. 신청	기초노령미지급연금청구신청현황	미지급연금청구건수
02. 신청	기초노령미지급연금청구신청현황	미지급연금청구금액
02. 신청	기초노령연금수급권상실신고신청현황	신청ID
02. 신청	기초노령연금수급권상실신고신청현황	수급권상실사유코드
02. 신청	기초노령연금수급권상실신고신청현황	상실사유발생일자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신청ID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보장구분지원내역일련번호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신청일자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신청보장구분코드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지원내용구분코드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가구수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가구원수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보장가구원수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가구구분코드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특별지원청소년연장지원여부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특별지원청소년연장지원년도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특별청소년지원기관명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정부양곡신청수량코드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타법의료급여구분코드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경로연금대상여부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기초노령배우자구분코드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기초수급자신청료면제신청여부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기초수급자전기요금할인신청여부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기초수급자전화요금할인신청여부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신청료면제고객번호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신청일자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신청건수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신청자수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최종적재일시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가구수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가구원수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보장가구원수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가구구분코드
02. 신청	서비스급여내용신청현황	장애인연금배우자동시신청여부
02. 신청	서비스급여보장신청현황	신청ID
02. 신청	서비스급여보장신청현황	신청보장구분코드
02. 신청	서비스급여보장신청현황	신청일자
02. 신청	서비스급여보장신청현황	신청진수
02. 신청	서비스급여신청보장가구원현황	신청ID
02. 신청	서비스급여신청보장가구원현황	보장구구분지원내역일련번호
02. 신청	서비스급여신청보장가구원현황	신청관련인일련번호
02. 신청	서비스급여신청보장가구원현황	신청자수
02. 신청	서비스신청자현황	신청ID
02. 신청	서비스신청자현황	신청관련인일련번호
02. 신청	서비스신청자현황	신청관련주체ID
02. 신청	서비스신청자현황	사업구분코드
02. 신청	서비스신청자현황	서비스ID
02. 신청	서비스신청자현황	신청자수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신청ID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신청일자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신청관련인일련번호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신청관련주체ID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신청가구일련번호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신청일자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관리행정지역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신청관련인구분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신청인관계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아동관계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세대주외관계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수혜자와관계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수혜자와기타관계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수혜자와기타관계내용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보호자와관계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신청인과동일여부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관련인주체구분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당시장애유형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거주시작일자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복지대상자여부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주거유형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주장애등급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장애종류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장애유형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종합장애등급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종합장애등급코드 기타내역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중증장애여부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보행장애여부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현재장애유형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의료급여종별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상이등록자등급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상이등록자여부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후견인여부

3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독거장애인여부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의사불능여부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사회보장번호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가구원수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전입일자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동거여부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미동거사유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미동거사유내용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미동거사유내용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건강상태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질병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질병기타내용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학력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직종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종교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직업명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취업유형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취업상태유형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근로능력유무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근로능력없음사유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근로능력없음사유내용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신청시점 근로능력유무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학비지원신청여부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임신출산여부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출산예정일자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종교코드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입양주체기관ID
02. 신청	신청관련인현황	입양일자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신청ID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신청관련인력번호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신청관련주체ID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누적신청횟수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세대주와관계코드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가구주와관계코드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기초생활보장가구주관계코드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기초생활보장가구여부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한부모가족가구주관계코드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한부모가족가구여부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기초노령연금가구주관계코드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기초노령연금가구여부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보육가구주관계코드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보육가구여부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특별청소년가구주관계코드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특별청소년가구여부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긴급복지가구주관계코드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긴급복지가구여부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바우처가구주관계코드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바우처가구여부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의료급여가구주관계코드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의료급여가구여부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타법의료급여가구주관계코드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타법의료급여가구여부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장애인연금가구주관계코드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장애인연금가구여부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차상위장애인가구주관계코드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차상위장애인가구여부
02. 신청	신청보장가구원현황	누적신청횟수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소득산정ID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복지주체ID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소득산정단위코드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근로소득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사업소득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재산소득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기타소득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추정소득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일반재산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금융재산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자동차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소득공제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일반재산공제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금융재산공제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부채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일반재산환산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금융재산환산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승용차환산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소득평가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재산소득환산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소득인정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공제전소득인정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총소득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총재산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총공제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소득산정현황	총부채금액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복지주체ID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기준년월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장애인여부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호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장애인여부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호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주장애유형코드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주장애등급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부장애유형코드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부장애등급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의료급여종별코드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의료급여대상자구분코드
05. 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위탁가정유형코드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위탁아동유형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월별복지주체	아동발생원인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자격서비스결정현황	결정ID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자격서비스결정현황	자격서비스결정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자격서비스결정현황	자격서비스결정사유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자격서비스결정현황	결정일자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자격ID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복지주체ID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결정ID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신청ID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조사ID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소득산정ID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관리행정지역코드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보장기간코드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장애인보장구분코드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의료급여종별변경구분코드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자격취득일자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최초자격취득일자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당월신규여부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자격상태코드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자격상태일자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최종결정ID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자격수
05.수급자	주체자격현황	보장가구원수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결정ID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자치단체구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가구구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연령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성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결혼상태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복지주체대분류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복지주체중분류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복지주체소분류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종교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학교세분류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주거유형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건축상태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가구구성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세대구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수급자구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특례유형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의료급여종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의료급여종별사유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개인근로능력유무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근로능력판정사유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학력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취업상태유형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건강상태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부양의무자존재유무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부양능력판정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부양능력판정사유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출생일자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주민등록기준출생일자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장애인여부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외국인여부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장애인연금대상여부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국민연금수급여부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배우자신청여부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배우자수급여부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배우자주체ID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가구주주체ID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기준가구주체ID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가구구성원수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자녀수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신청사유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자격]_결정기준 복지주체	학교분류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소득산정ID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복지주체ID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소득산정단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근로소득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사업소득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재산소득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기타소득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추정소득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일반재산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금융재산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자동차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부채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일반재산환산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금융재산환산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승용차환산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소득평가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재산소득환산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소득인정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공제전소득인정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총소득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총재산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총공제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소득산정현황	총부채금액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복지주체	복지주체ID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복지주체	장애인여부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호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복지주체	주장애유형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복지주체	주장애등급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복지주체	부장애유형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복지주체	부장애등급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복지주체	의료급여종별코드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복지주체	의료급여대상자구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복지주체	위탁가정유형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복지주체	위탁아동유형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복지주체	아동발생원인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자격서비스결정현황	결정ID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자격서비스결정현황	자격서비스결정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자격서비스결정현황	자격서비스결정사유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자격서비스결정현황	결정일자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수혜서비스ID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기준년월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신청ID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조사ID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결정ID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서비스ID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복지주체ID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소득산정ID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관리행정지역코드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보장기간코드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장애인보장구분코드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수혜주체ID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최초서비스시작일자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수혜서비스시작일자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수혜서비스종료일자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수혜서비스상태코드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상태변경사유코드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수혜서비스등록경로코드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최상위서비스ID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지급주기코드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서비스레벨코드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서비스결정자격ID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신청일자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최초지급일자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책정일자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수혜가구주체ID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수혜가구원여부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당월신규여부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수급자수
05.수급자	서비스수급자현황	보장가구원수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서비스	서비스ID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서비스	기준년월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서비스	수혜대상구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서비스	사업구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서비스	제공주체구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서비스	서비스상태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월별서비스	지급대상구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결정ID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자치단체구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가구구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연령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성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결혼상태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복지주체대분류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복지주체중분류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복지주체소분류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종교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주거유형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건축상태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가구구성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세대구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수급자구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특례유형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의료급여종별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의료급여종별사유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개인근로능력유무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근로능력판정사유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학력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취업상태유형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건강상태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부양의무자존재유무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부양능력판정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부양능력판정사유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출생일자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주민등록기준출생일자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장애인여부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외국인여부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장애인연금대상여부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국민연금수급여부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배우자신청여부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배우자수급여부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배우자주체ID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가구주주체ID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기준가구주체ID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가구구성원수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자녀수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신청사유코드
05.수급자	D_수급자[서비스]_결정기준복지주체	학교분류코드
06.지급	BF_공제내역	상계공제ID
06.지급	BF_공제내역	기준년월
06.지급	BF_공제내역	상계대상수혜서비스ID
06.지급	BF_공제내역	복지주체ID
06.지급	BF_공제내역	처리시작일자
06.지급	BF_공제내역	처리종료일자
06.지급	BF_공제내역	처리금액
06.지급	BF_공제내역	상계공제구분코드
06.지급	BF_공제내역	상계사유코드
06.지급	BF_공제내역	ASIS상계사유내용
06.지급	BF_공제내역	상계유형코드
06.지급	BF_공제내역	공제유형코드

33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6.지급	BF_공제내역	주거유형코드
06.지급	BF_공제내역	대상년월
06.지급	BF_공제내역	환수ID
06.지급	BF_교육비지원상세	수혜서비스ID
06.지급	BF_교육비지원상세	서비스ID
06.지급	BF_교육비지원상세	교육비사용계좌ID
06.지급	BF_교육비지원상세	학교명
06.지급	BF_교육비지원상세	교육기관코드
06.지급	BF_교육비지원상세	학년코드
06.지급	BF_교육비지원상세	지급1분기선택여부
06.지급	BF_교육비지원상세	지급2분기선택여부
06.지급	BF_교육비지원상세	지급3분기선택여부
06.지급	BF_교육비지원상세	지급4분기선택여부
06.지급	BF_교육비지원상세	지급금액
06.지급	BF_교육비지원상세	기타지급월
06.지급	BF_교육비지원상세	관리행정지역코드
06.지급	BF_급여지급	급여지급ID
06.지급	BF_급여지급	계좌식별번호
06.지급	BF_급여지급	수혜주체ID
06.지급	BF_급여지급	지급행정지역코드
06.지급	BF_급여지급	지급일자
06.지급	BF_급여지급	지급금액
06.지급	BF_급여지급	지급상태코드
06.지급	BF_급여지급	지급대상코드
06.지급	BF_급여지급	최종적재일시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기준년월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서비스지원수단ID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지원수단식별번호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식별번호유효여부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복지주체ID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발급대상주체ID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수혜지원수단구분코드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카드종류코드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카드발급대상구분코드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장애인관계코드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표지유형코드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보행장애인수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차량표지발급수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발급일자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수령자주체ID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신청ID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카드상태코드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카드상태사유코드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관리행정시도코드
06.지급	BF_수혜서비스지원수단현황	관리행정시군구코드
06.지급	BF_월별미지급급여현황	기준년월
06.지급	BF_월별미지급급여현황	서비스ID
06.지급	BF_월별미지급급여현황	복지주체ID
06.지급	BF_월별미지급급여현황	관리행정지역코드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6.지급	BF_월별미지급급여현황	미생성여부
06.지급	BF_월별미지급급여현황	미생성사유코드
06.지급	BF_월별미지급급여현황	미지급여부
06.지급	BF_월별미지급급여현황	미지급연금청구여부
06.지급	BF_월별미지급급여현황	미지급연금청구금액
06.지급	BF_월별미지급급여현황	최종적재일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결정ID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가구구성원수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수급자구분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가구구분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세대구분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연령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성별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출생일자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주민등록기준출생일자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주거유형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개인근로능력유무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장애인여부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외국인여부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장애인연금대상여부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국민연금수급여부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배우자신청여부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배우자수급여부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배우자주체ID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가구주체ID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기준가구주체ID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차상위계층여부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학교분류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학교세분류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학교급지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공사립구분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신청사유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의료급여종별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의료급여종별사유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자치단체구분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복지주체대분류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복지주체중분류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복지주체소분류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건축상태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가구구성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특례유형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학력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취업상태유형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건강상태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부양의무자존재유무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부양능력판정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부양능력판정사유코드
06.지급	D_지급_결정기준복지주체	자녀수
06.지급	D_지급_급여지급	급여지급ID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6.지급	D_지급_서비스수급자현황	기준년월
06.지급	D_지급_서비스수급자현황	수혜서비스ID
06.지급	D_지급_서비스수급자현황	보장기간코드
06.지급	D_지급_서비스수급자현황	수혜서비스상태코드
06.지급	D_지급_서비스수급자현황	상태변경사유코드
06.지급	D_지급_서비스수급자현황	장애인보장구분코드
06.지급	D_지급_서비스수급자현황	당월신규여부
06.지급	D_지급_서비스수급자현황	최초지급일자
06.지급	D_지급_서비스수급자현황	수혜가구주체ID
06.지급	D_지급_서비스수급자현황	수혜가구원여부
06.지급	D_지급_서비스수급자현황	보장가구원수
06.지급	D_지급_소득산정현황	소득산정ID
06.지급	D_지급_소득산정현황	복지주체ID
06.지급	D_지급_소득산정현황	신청ID
06.지급	D_지급_월별복지주체	복지주체ID
06.지급	D_지급_월별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
06.지급	D_지급_월별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호
06.지급	D_지급_월별복지주체	주장애유형코드
06.지급	D_지급_월별복지주체	주장애등급
06.지급	D_지급_월별복지주체	부장애유형코드
06.지급	D_지급_월별복지주체	부장애등급
06.지급	D_지급_월별복지주체	의료급여종별사유코드
06.지급	D_지급_월별복지주체	의료급여대상자구분코드
06.지급	D_지급_월별복지주체	위탁가정유형코드
06.지급	D_지급_월별복지주체	위탁아동유형코드
06.지급	D_지급_월별복지주체	아동발생원인코드
06.지급	D_지급_월별서비스	기준년월
06.지급	D_지급_월별서비스	서비스ID
06.지급	D_지급_월별서비스	사업구분코드
06.지급	D_지급_월별서비스	기준년월
06.지급	D_지급_월별서비스	자격ID
06.지급	D_지급_월별자격	기준년월
06.지급	D_지급_월별자격	자격ID
06.지급	D_지급_자격서비스결정현황	결정ID
06.지급	D_지급_자격서비스결정현황	자격서비스결정코드
06.지급	D_지급_자격서비스결정현황	자격서비스결정사유코드
06.지급	D_지급_행정지역코드	행정지역코드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기준년월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복지주체ID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서비스ID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지급결정년월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당월신규여부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관리행정지역코드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지급행정지역코드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조사ID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결정ID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소득산정ID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급여변동구분코드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수급자상태구분코드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지급제외사유코드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지급제외시타사유내용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미지급여부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전월수급자수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전월보장가구원수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전월지급금액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전월지급건수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당월수급자수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당월보장가구원수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당월지급금액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당월지급건수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급여생성금액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급여생성건수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급여생성인원수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환수금액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환수건수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환수인원수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미지급청구금액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미지급청구건수
06.지급	지급기준서비스수급자현황	미지급청구인원수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수혜서비스ID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서비스지원내역일련번호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기준년월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서비스ID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관리행정지역코드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지급행정지역코드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수혜주체ID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최상위서비스ID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서비스지원수단ID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지원유형코드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제공상세내용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제공주체구분코드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제공주체ID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제공서비스ID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신청ID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마감진행코드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통합급여항목구분코드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지급여부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교육비대상년도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교육비대상분기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추가급여여부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소득인정액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급여생성금액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수혜지원값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급여생성여부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지급금액
06.지급	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지급건수
07.사후관리	D_사후관리_결정기준복지주체	결정ID
07.사후관리	D_사후관리_결정기준복지주체	복지주체대분류코드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7.사후관리	D_사후관리_결정기준복지주체	복지주체중분류코드
07.사후관리	D_사후관리_결정기준복지주체	복지주체소분류코드
07.사후관리	D_사후관리_결정기준복지주체	배우자수급여부
07.사후관리	D_사후관리_결정기준복지주체	가구구분코드
07.사후관리	D_사후관리_결정기준복지주체	수급자구분코드
07.사후관리	D_사후관리_결정기준복지주체	차상위계층여부
07.사후관리	D_사후관리_결정기준복지주체	부양의무자존재유무
07.사후관리	D_사후관리_결정기준복지주체	부양능력판정코드
07.사후관리	D_사후관리_결정기준복지주체	외국인여부
07.사후관리	D_사후관리_결정기준복지주체	성별코드
07.사후관리	D_사후관리_신청현황	신청ID
07.사후관리	변동인립현황	변동알림코드
07.사후관리	사망자현황	연금지급여부
07.사후관리	사망자현황	관리행정지역코드
07.사후관리	사망자현황	사망자수
07.사후관리	사망자현황	사망자지급개월수
07.사후관리	사후관리현황	사후관리대상유형코드
07.사후관리	사후관리현황	사후관리처리결과코드
07.사후관리	사후관리현황	추출기준분류코드
07.사후관리	이중수급자현황	수혜주체ID
07.사후관리	이중수급자현황	수혜서비스ID
07.사후관리	이중수급자현황	복지주체대분류코드
07.사후관리	이중수급자현황	복지주체중분류코드
07.사후관리	이중수급자현황	복지주체소분류코드
07.사후관리	이중수급자현황	배우자수급여부
07.사후관리	이중수급자현황	가구구성코드
07.사후관리	이중수급자현황	수급자구분코드
07.사후관리	이중수급자현황	지급액
07.사후관리	환수현황	수급자주체ID
07.사후관리	환수현황	수혜서비스ID
07.사후관리	환수현황	서비스ID
07.사후관리	환수현황	환수업무구분코드
07.사후관리	환수현황	환수대상합계금액
07.사후관리	환수현황	부당이득개월수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시설주체 ID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복지시설종류코드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복지시설유형코드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설치일자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업체상태코드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폐지일자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휴지시작일자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휴지종료일자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재개일자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자격증소유인원수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시설장직업명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수입 총 금액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지출 총 금액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자산 총 금액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신고조건내용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시설운영주체구분코드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시설운영주체ID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시설위탁운영주체ID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위탁직영구분코드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국고보조시설여부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입소정원수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입소자수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전원인원수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퇴소인원수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위탁인원수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입양인원수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아동조치계획내용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주간야간보호인원수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단기보호인원수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복지시설수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종사자수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생활자수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이용자 수
08.시설	BF_복지시설현황	총인원수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생활자주체ID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시설주체ID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입소일시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입소자자격구분코드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입소사유내용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입소사유구분코드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퇴소일시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퇴소사유내역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퇴소사유구분코드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성별코드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입소자연령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생년월일일자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입원일자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퇴원일자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직업코드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생활자수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동반아동유무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동반아동인원수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종사자주체 ID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시설주체 ID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학력코드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직위코드
08.시설	BF_시설생활자 현황	근무시작일자
08.시설	BF_시설종사자현황	자격증명
08.시설	BF_시설종사자현황	졸업학교명
08.시설	BF_시설종사자현황	경력기간내역
08.시설	BF_시설종사자현황	호봉명
08.시설	BF_시설종사자현황	종사자수
08.시설	BF_기능보강보조금정산현황	기능보강보조금정산ID
08.시설	BF_기능보강보조금정산현황	사업년도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08.시설	BF_기능보강보조금정산현황	시설주체ID
08.시설	BF_기능보강보조금정산현황	보조사업코드
08.시설	BF_기능보강보조금정산현황	사업종류코드
08.시설	BF_기능보강보조금정산현황	사업종류명
08.시설	BF_기능보강보조금정산현황	사업시작일자
08.시설	BF_기능보강보조금정산현황	사업종료일자
08.시설	BF_기능보강보조금정산현황	기능보강사업명
08.시설	BF_기능보강보조금정산현황	정부보조금예산금액
08.시설	BF_기능보강보조금정산현황	정부보조금집행금액
08.시설	BF_기능보강보조금정산현황	자부담집행금액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자활참여년월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복지주체ID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성별코드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연령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수급자구분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자격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관리행정지역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자활기관주체ID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자활사업단주체ID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자활위탁구분코드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자활지원유형코드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자활사업종류코드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자활이행상태코드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자활계획종료사유코드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자활참여소득에대한공제구분코드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자활수익금구분코드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실제근무일수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근무일수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자활공동체여부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국민연금액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건강보험액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고용보험액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급여증지액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산재보험액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자활소득금액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실비지급금액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전체지급금액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인건비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일별수당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월별수당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전담관리자수당금액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장기요양보험금액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지급금액
12.자활지원	자활참여현황	최종적재일시
12.자활지원	자활대상자현황	기준년월
12.자활지원	자활대상자현황	복지주체ID
12.자활지원	자활대상자현황	관리행정지역코드
12.자활지원	자활대상자현황	성별코드
12.자활지원	자활대상자현황	연령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12.자활지원	자활대상자현황	자격ID
12.자활지원	자활대상자현황	자활대상자구분코드
12.자활지원	자활대상자현황	최종적재일시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사후조사현황	신청ID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사후조사현황	사후조사차수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사후조사현황	관리행정지역코드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사후조사현황	주요위기사유코드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사후조사현황	중지여부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사후조사현황	주대상자주체ID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사후조사현황	성별코드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사후조사현황	외국인여부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사후조사현황	연령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신고현황	신청ID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신고현황	신고일자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신고현황	관리행정지역코드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신고현황	주요위기사유코드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신고현황	중지여부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신고현황	주대상자주체ID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신고현황	성별코드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신고현황	외국인여부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긴급복지신고현황	연령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자격서비스결정현황	결정ID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자격서비스결정현황	관리행정지원코드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자격서비스결정현황	대상자주체ID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자격서비스결정현황	판정대상가구ID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자격서비스결정현황	결정서비스ID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자격서비스결정현황	사업구분코드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자격서비스결정현황	보장가구원수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자격서비스결정현황	소득산정ID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수혜서비스ID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관리행정지역코드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수혜주체ID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서비스ID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지원유형코드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지원일자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지원종료일자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교육비대상년도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교육비대상분기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학교분류코드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당월신규여부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보장가구원수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소득인정액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급여생성금액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지원발생값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수혜지원값
13.긴급복지지원	D_긴급복지_통합수혜서비스지원현황	지급금액
13.긴급복지지원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복지주체ID
13.긴급복지지원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복지주체명
13.긴급복지지원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복지주체대분류코드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13. 긴급복지지원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복지주체중분류코드
13. 긴급복지지원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복지주체소분류코드
13. 긴급복지지원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주체시작일자
13. 긴급복지지원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주체종료일자
13. 긴급복지지원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주민등록기준출생일자
13. 긴급복지지원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성별코드
13. 긴급복지지원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외국인여부
13. 긴급복지지원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연령
13. 긴급복지지원	D_신청_복지주체[신청시점]	배우자주체ID
13. 긴급복지지원	D_신청_신청현황	신청ID
13. 긴급복지지원	D_신청_신청현황	신청일자
13. 긴급복지지원	D_신청_신청현황	신청구분코드
13. 긴급복지지원	D_신청_신청현황	신청사유코드
13. 긴급복지지원	D_신청_신청현황	자치단체구분코드
13. 긴급복지지원	결정기준긴급복지신고현황	신청ID
13. 긴급복지지원	결정기준긴급복지신고현황	주대상자주체ID
13. 긴급복지지원	결정기준긴급복지신고현황	주요위기사유코드
13. 긴급복지지원	결정기준긴급복지신고현황	보장가구원수
13. 긴급복지지원	결정기준긴급복지신고현황	기초생활수급자여부
13. 긴급복지지원	결정기준긴급복지신고현황	긴급복지결정구분코드
13. 긴급복지지원	결정기준긴급복지신고현황	환수여부
13. 긴급복지지원	결정기준긴급복지신고현황	환수총액
13. 긴급복지지원	결정기준긴급복지신고현황	중지여부
13. 긴급복지지원	결정기준긴급복지신고현황	취소사유구분코드
13. 긴급복지지원	결정기준긴급복지신고현황	지원완료여부
13. 긴급복지지원	결정기준긴급복지신고현황	신청건수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사후조사소득재산현황	신청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사후조사소득재산현황	사후조사차수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사후조사소득재산현황	소득재산세분류코드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사후조사소득재산현황	소득재산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사후조사소득재산현황	복지주체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사후조사소득재산현황	소득재산금액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사후조사소득재산현황	소득재산반영내역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사후조사현황	신청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사후조사현황	조사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사후조사현황	적합여부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사후조사현황	긴급복지결정구분코드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사후조사현황	지원내용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신고현황	신청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신고현황	주대상자주체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신고현황	주요위기사유코드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신고현황	보장가구원수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신고현황	기초생활수급자여부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신고현황	긴급복지결정구분코드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신고현황	환수여부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신고현황	환수총액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신고현황	취소사유구분코드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신고현황	지원완료여부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결정내역현황	결정ID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결정내역현황	신청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결정내역현황	대상자주체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결정내역현황	지원회차수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결정내역현황	서비스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결정내역현황	지원시작일자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결정내역현황	지원종료일자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결정내역현황	교육지원년도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결정내역현황	교육지원분기코드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결정내역현황	기타사유내용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내역현황	수혜서비스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내역현황	지원회차수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내역현황	신청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내역현황	수혜주체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내역현황	서비스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내역현황	지원일자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내역현황	기초생활수급자여부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내역현황	지원유형코드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내역현황	지원건수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불가내역현황	신청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불가내역현황	지원불가사유코드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불가내역현황	주요불가유무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불가내역현황	불가사유내용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타지원현황	타지원코드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타지원현황	대상자주체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타지원현황	긴급복지타지원구분코드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타지원현황	타지원완료여부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타지원현황	타지원사유내용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타지원현황	타지원연계건수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환수현황	수혜서비스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환수현황	신청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환수현황	납부일자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환수현황	서비스ID
1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환수현황	환수금액
17. 장애인	BF_편의시설물	편의시설물ID
17. 장애인	BF_편의시설물	장애인편의시설용도 구분코드
17. 장애인	D_편의시설용도구분	장애인편의시설용도 구분코드
17. 장애인	BF-장애 판정 상하향 변경 현황	주 장애 유형 코드
17. 장애인	BF-장애 판정 상하향 변경 현황	장애등급 판정 상하향구분코드
17. 장애인	BF-장애 인 진 단	장애 유형 코드
17. 장애인	BF-장애 인 진 단	장애 등록 구분 코드
17. 장애인	BF-장애 인 진 단	복지주체ID
17. 장애인	BF-장애 인 진 단	장애 등급코드
17. 장애인	BF-장애 인 진 단	선천성 장애 사유 코드
17. 장애인	BF-장애 인 진 단	후천성 장애 사유 코드
17. 장애인	BF-장애 인 진 단	장애발생연령
17. 장애인	BF-장애 인 진 단	등록일자
17. 장애인	BF-장애 인 진 단	종 합장애 등급
17. 장애인	BF-장애 인 진 단	중합장애 등급 호
17. 장애인	BF_재활보조기구 교부대장	신청 재 활보조기구코드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17.장애인	BF_재활보조기구 교부대장	장애 등급코드
17.장애인	BF_재활보조기구 교부대장	부장애 유 형 코 드
17.장애인	BF_재활보조기구 교부대장	내구연한
17.장애인	BF_재활보조기구 교부대장	장애 인 보조 기 구기 타 품 목 코드
17.장애인	BF_재활보조기구 교부대장	보조기구품목 구입금액
17.장애인	BF-중증장애인 위탁심사결과 내역	종합장애 등급코드
17.장애인	BF-중증장애인 위탁심사결과 내역	주 장애 유 형 코 드
17.장애인	BF-중증장애인 위탁심사결과 내역	주장애 등급코드
17.장애인	BF-중증장애인 위탁심사결과 내역	부장애 유 형 코 드
17.장애인	BF-중증장애인 위탁심사결과 내역	부장애 등급코드
17.장애인	BF-중증장애인 위탁심사결과 내역	중복 장애 여 부
18.아동	복지주체	복지주체ID
18.아동	복지주체	복지주체명
18.아동	복지주체	복지주체대분류코드
18.아동	복지주체	복지주체중분류코드
18.아동	복지주체	복지주체소분류코드
18.아동	복지주체	복지주체식별번호
18.아동	복지주체	복지주체식별일련코드
18.아동	복지주체	기준가구주체ID
18.아동	복지주체	소재행정지역코드
18.아동	복지주체	허가행정지역코드
18.아동	복지주체	주체시작일자
18.아동	복지주체	주체종료일자
18.아동	복지주체	주체종료사유코드
18.아동	복지주체	출생일자
18.아동	복지주체	주민등록기준출생일자
18.아동	복지주체	연령
18.아동	복지주체	건강상태코드
18.아동	복지주체	성별코드
18.아동	복지주체	출생순위
18.아동	복지주체	거주시작일자
18.아동	복지주체	외국인여부
18.아동	복지주체	가구주주체ID
18.아동	복지주체	가구구성코드
18.아동	복지주체	세대구분코드
18.아동	복지주체	주거유형코드
18.아동	복지주체	가구구성원수
18.아동	복지주체	수급자구분코드
18.아동	복지주체	특례유형코드
18.아동	복지주체	의료급여종별코드
18.아동	복지주체	의료급여대상자구분코드
18.아동	복지주체	위탁가정유형코드
18.아동	복지주체	위탁아동유형코드
18.아동	복지주체	아동발생원인코드
18.아동	복지주체	교육기관코드
18.아동	복지주체	학교분류코드
18.아동	복지주체	학교세분류코드
18.아동	복지주체	학력코드
18.아동	복지주체	재학구분코드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18.아동	복지주체	학교별급지구분코드
18.아동	복지주체	공사립구분코드
18.아동	복지주체	장애인여부
18.아동	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
18.아동	복지주체	종합장애등급호
18.아동	복지주체	주장애유형
18.아동	복지주체	주장애등급
18.아동	복지주체주소	복지주체ID
18.아동	복지주체주소	주소분류코드
18.아동	복지주체주소	법정동코드
18.아동	복지주체주소	행정동코드
18.아동	복지주체주소	전체주소
18.아동	복지주체주소	우편번호
18.아동	복지주체주소	거주시작일시
18.아동	복지주체연락채널	복지주체ID
18.아동	복지주체연락채널	연락채널분류코드
18.아동	복지주체연락채널	연락채널내용
18.아동	BF_위탁아동보호신청	신청ID
18.아동	BF_위탁아동보호신청	아동보호신청유형코드
18.아동	BF_위탁아동보호신청	위탁가정보호구분코드
18.아동	BF_위탁아동보호신청	위탁가정유형코드
18.아동	BF_위탁아동보호신청	위탁아동유형코드
18.아동	BF_위탁아동보호신청	희망아동지정유무
18.아동	BF_위탁아동보호신청	희망성별코드
18.아동	BF_위탁아동보호신청	희망연령개월수
18.아동	BF_위탁아동보호신청	아동거주시설주체
18.아동	BF_위탁아동보호신청	위탁가정시작일자
18.아동	BF_위탁아동보호신청	위탁아동종료일자
18.아동	BF_입양아동	복지주체 ID
18.아동	BF_입양아동	입양일자
18.아동	BF_입양아동	입양기관주체ID
18.아동	BF_입양아동	당시장애유형코드
18.아동	BF_입양아동	현재장애유형코드
18.아동	BF_입양아동	연락주의 내용
18.아동	BF_후견인등록	후견인자원ID
18.아동	BF_후견인등록	후견인구분코드
18.아동	BF_후견인등록	후견인종결여부
18.아동	BF_후견인등록	자격증명
18.아동	BF_후견인등록	후견인등록일자
18.아동	BF_후견인등록	관리행정지역코드
18.아동	BF_후견인연결	후견인자원ID
18.아동	BF_후견인연결	후견아동주체ID
18.아동	BF_후견인연결	후견시작일자
18.아동	BF_후견인연결	후견종료일자
18.아동	BF_후견인연결	책정일자
18.아동	BF_후견인연결	후견인유형코드
18.아동	BF_후견인연결	지원유무
18.아동	D_아동_복지주체	복지주체ID
18.아동	D_아동_복지주체	복지주체명

34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18.아동	D_아동_복지주체	복지주체운영
18.아동	D_아동_복지주체	복지주체대분류코드
18.아동	D_아동_복지주체	복지주체중분류코드
18.아동	D_아동_복지주체	복지주체소분류코드
18.아동	D_아동_복지주체	복지주체식별번호
18.아동	D_아동_복지주체	소재행정지역코드
18.아동	D_아동_복지주체	허가행정지역코드
18.아동	D_아동_복지주체	주체시작일자
18.아동	D_아동_복지주체	주체종료일자
18.아동	D_아동_복지주체	주체종료사유코드
18.아동	D_아동_자원	자원ID
18.아동	D_아동_자원	자원대상주체ID
18.아동	D_아동_자원	복지주체 ID
18.아동	D_아동_자원	유효시작일자
18.아동	D_아동_자원	유효종료일자
18.아동	D_아동_자원	민간자원구분코드
18.아동	D_아동_자원	자원승인상태코드
18.아동	D_아동_자원	자원승인일자
18.아동	D_아동_자원	자원관리구분코드
18.아동	D_아동_자원	자원제공주체구분코드
18.아동	D_아동_조사	복지주체 ID
18.아동	D_아동_조사	관리행정지역코드
18.아동	D_아동_조사	조사진행상태코드
18.아동	D_아동_조사	조사구분코드
18.아동	D_아동_조사	조사업무구분코드
18.아동	D_아동_조사	조사등록일자
18.아동	D_아동_조사	소득재산조사여부
18.아동	D_아동_조사	연계요청번호
19.의료급여	BF_보장구급여지급내역현황	보장구분류코드
19.의료급여	BF_보장구급여지급내역현황	기준년월
19.의료급여	BF_보장구급여지급내역현황	보장구유형코드
19.의료급여	BF_보장구급여지급내역현황	보장구구분코드
19.의료급여	BF_보장구급여지급내역현황	의료급여종별코드
19.의료급여	BF_보장구급여지급내역현황	보장구용도내용
19.의료급여	BF_보장구급여지급내역현황	보장구구입가격
19.의료급여	BF_보장구급여지급내역현황	주장에유형코드
19.의료급여	BF_보장구급여지급내역현황	본인부담금액
19.의료급여	BF_보장구급여지급내역현황	의료급여지급금액
19.의료급여	BF_요양비지급내역현황	관리행정지역코드
19.의료급여	BF_요양비지급내역현황	상병코드
19.의료급여	BF_요양비지급내역현황	의료급여종별코드
19.의료급여	BF_요양비지급내역현황	요양비진료구분코드
19.의료급여	BF_요양비지급내역현황	의료급여자격상태코드
19.의료급여	BF_요양비지급내역현황	요양비지급액
19.의료급여	BF_요양비지급내역현황	진료기간일수
24.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종사자현황	종사자복지주체ID
24.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종사자현황	복지주체ID
24.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종사자현황	기준년월
24.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종사자현황	담당업무내용

주제영역	테이블명	항목명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종사자현황	채용일자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종사자현황	해임일자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종사자현황	교육훈련내용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종사자현황	학력비고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종사자현황	주요경력내역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종사자현황	교육수료일자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종사자현황	교육이수여부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종사자현황	종사자수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현황	복지주체ID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현황	기준연월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현황	결혼중개업체사무소주체ID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현황	주사무소분사무소코드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현황	영업여부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현황	사무소수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사무소현황	종사자수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현황	복지주체ID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현황	기준연월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현황	국내국제구분코드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현황	법인개인구분코드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현황	신고등록일자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현황	교부번호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현황	허가일자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현황	업체상태구분코드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현황	위반상태구분코드
24. 결혼중개업	BF_결혼중개업체현황	결혼중개업체수